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709-14



국가 회 계 편 랐

2025. 1.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 국가회계편람은 기획재정부 사이트(www.moef.go.kr)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사이트 (<https://gafsc.kipf.re.kr/gafsc/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민생 안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와 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재무제표는 정부의 정책운영 결과를 발생주의 회계의 관점에서 정리한 보고서로 정책운영에 따른 자원의 흐름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성과를 세밀하게 확인함과 동시에 재정에 대한 미래 예측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식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방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구성과 양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 국가회계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흐름표를 국가재무제표에 추가하였고, 재정상태표를 보다 간소한 형태로 개선하였으며, 재정운영표를 기능 중심의 재정운영표와 성질 중심의 재정운영표로 이원화하였습니다.

2025년 국가회계편람은 이러한 국가재무제표 개편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가회계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부재정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재정정보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박 봉 용

발 간 사

우선 국가회계편람의 2025년판 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는 정부 재정정책의 결과를 이용하기에 유용한 형태의 정보로 바꾸어 주기 위한 발생주의 회계 원칙과 기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는 검증 가능하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틀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이 지난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해 온 국가회계편람은 이러한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 뿐 아니라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풍부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결산 담당자뿐만 아니라, 회계 전문가, 감사원, 국회 관계자, 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2025년판 국가회계편람은 기획재정부와 우리 원의 국가회계재정통제센터가 정부 재정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능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결산 체계개편의 결과를 담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이 재무제표로 추가된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필요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을 신설 배치하였으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양식 및 구성의 광범위한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2025년판 국가회계편람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어 정부 재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집중시킴으로써 나아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일러두기

수록범위

-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국가회계예규(23개) 등 수록
- 국가회계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실무 해설, 적용사례, 문단제정근거 등 관련 부록을 수록
- 참고를 위해 계정과목 해설서 및 계정과목 총괄표 수록

편집방식

- 상위법령을 우선 수록하고 그 다음에 국가회계예규 등을 수록하여 체계적 배치
-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재무제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에서 세부적(계정과목별, 사업별)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순으로 수록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규정은 후반부에 배치
-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예규와 관련 부록은 용지의 좌·우측에 이단 비교형식으로 구성

관련규정 및 관련부록(문단제정근거, 실무해설, 적용사례)

- 국가회계예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규정 및 관련부록 수록
 - **관련규정**: 국가회계예규 내 특정문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등
 - **문단제정근거**: 국가회계예규 내 특정문단을 제정한 논거 및 배경
 - **실무해설**: 국가회계예규를 보완하기 위한 설명
 - **적용사례**: 국가회계예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사례

참고(계정과목 해설서, 계정과목 총괄표)

- **계정과목 해설서**: 재무계정과목의 정의 및 세부설명과 회계처리 시 유의점 서술
- **계정과목 총괄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시 사용할 표준화된 계정과목 제시

목 차

I. 국가회계법·시행령	1
II.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9
III. 국가회계예규	61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63
2.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99
3.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113
4.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129
5.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03
6.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269
7.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281
8. 리스 회계처리지침	295
9.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311
10.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27
11.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47

12. 비용 회계처리지침	375
13. 연금 회계처리지침	399
14. 보험 회계처리지침	447
15. 보증 회계처리지침	461
16. 응자 회계처리지침	469
17.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491
18.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503
19.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515
20.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537
21.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567
22.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579
23.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591
IV. 계정과목 해설서	603
V. 계정과목 총괄표	775

I

국가회계법·시행령

국가회계법·시행령

법	를	시	행	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5	제1조(목적)		5
제2조(정의)	5			
제3조(적용범위)	6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6			
제5조(회계연도)	6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6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6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6
제8조<삭제>	7	제2조<삭제>		7
		제2조의2<삭제>		7
제9조<삭제>	7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8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8
제12조<삭제>	8			

법	률	시	행	령
제3장 결 산				
제13조(결산의 수행)	9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9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10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10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12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13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13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14			
제17조 ~ 제23조<삭제>	15			
제4장 보 칙				
제24조(내부통제)	15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16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16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16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16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17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17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17			
부 칙	17	부 칙	22	

법	률	시	행	령
	제정 2007.10.17., 시행 2009. 1. 1. 개정 2024. 3.26., 시행 2025. 1. 1.			제정 2009. 3.25., 시행 2009. 3.25. 개정 2024. 1.16., 시행 2024. 1.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 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3. 삭제 <2008. 12. 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삭제 <2008. 12. 31.>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률	시	행	령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말한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8.]		
제8조 삭제 <2023. 7. 18.>		제2조 삭제 <2024. 1. 16.>		
제9조 삭제 <2008. 12. 31.>		제2조의2 삭제 <2024. 1. 16.>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법 률	시 행 령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 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삭제 <2008. 12. 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2조 삭제 <2008.12.31.>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 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 28.] [제2조의2에서 이동 <2015. 12. 31.>]

법 률	시 행 령
제3장 결 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 3. 26.>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법	률	시	행	령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전문개정 2008. 12. 31.]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법	시행령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전문개정 2008. 12. 31.]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법	률	시	행	령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2. 27., 2017. 12. 26., 2021. 6. 15.>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1. 6. 15.>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28., 2021. 12. 31.>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률	시	행	령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2021. 6. 15.> [본조신설 2008. 12. 31.]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21. 12. 31.>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21. 12. 31.>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법	률	시	행	령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삭제 <2008. 12. 31.> 제18조 삭제 <2008. 12. 31.> 제19조 삭제 <2008. 12. 31.> 제20조 삭제 <2008. 12. 31.> 제21조 삭제 <2008. 12. 31.> 제22조 삭제 <2008. 12. 31.> 제23조 삭제 <2008. 12. 31.> 제4장 보 칙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법 률	시 행 령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8636호, 2007. 10.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 28.]

법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인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4.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5.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6.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7.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법 률	시 행 령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제2항제1호의 자 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소속의 회계관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 추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국가회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회계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와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제공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실무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령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중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법 률	시 행 령
⑪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279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부 칙 <법률 제10289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361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제1호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641호, 2011.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885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법률의 개정) ①~⑩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④3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법	률	시	행	령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4463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법	률	시	행	령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285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161호, 2019.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부 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18241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첨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282호, 2021. 12. 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20402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134호, 2024. 1. 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4조 삭제 <2024. 7. 31.>	37
		제15조 삭제 <2024. 7. 31.>	37
		제16조 삭제 <2024. 7. 31.>	37
제1조(목적)		제3절 부 채	
제2조(정의)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37
제3조(적용범위 등)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37
제4조(일반원칙)		제19조 삭제 <2024. 7. 31.>	37
제5조(재무제표)		제20조(차입부채)	37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제21조(충당부채)	37
		제22조(기타 부채)	37
제 2 장 재정상태표		제4절 순자산	
제1절 총 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37
제7조(재정상태표)		제 3 장 재정운영표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제1절 총 칙	
제2절 자 산		제24조(재정운영표)	38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38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제11조(금융자산)			
제12조(유·무형자산)			
제13조(기타 자산)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39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44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40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44
제2절 수익과 비용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44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40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44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40	제4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45
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41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45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41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45
제31조(원가계산)	41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46
제 4 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46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41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46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42	제 5 장 순자산변동표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42	제52조(순자산변동표)	47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42	제53조(조정항목)	47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42	제5장외2 현금흐름표 <신설 2024. 7. 31.>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43	제53조의2(현금흐름표)	47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43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48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43	제 6 장 주식 <개정 2024. 7. 31.>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43	제54조 삭제 <2024. 7. 31.>	48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43	제55조(주식)	48
제40조(유·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43	제56조 삭제 <2024. 7. 31.>	48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44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44		

제 7 장 보 칙 <신설 2010. 1. 12.>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48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48
부 칙	49

규	칙
제정 2009. 3.19., 시행 2009. 3.19. 개정 2024. 7.31., 시행 2025.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 "재정상태표일"이란 제7조에 따른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5. "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규	칙
제5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31.> ② 삭제 <2024. 7. 31.>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2.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 지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목개정 2024. 7. 31.]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입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 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재정상태표	
제1절 총 칙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삭제 <2024. 7. 31.>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규	칙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자 산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 7. 31.>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4. 7. 31.>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	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12조(유·무형자산) ①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④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규	칙
제14조 삭제 <2024. 7. 31.>	제20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15조 삭제 <2024. 7. 31.>	
제16조 삭제 <2024. 7. 31.>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3절 부 채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 7. 31.>	제22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순자산
제19조 삭제 <2024. 7. 31.>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규	칙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4. 7. 31.> 제3장 재정운영표 제1절 총 칙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프로그램순원가} = \text{프로그램총원가} - \text{프로그램수익}$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재정운영순원가} = \text{프로그램순원가} + \text{관리운영비} + \text{비배분비용} - \text{비배분수익}$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규	칙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재정운영결과} = \text{재정운영순원가} - \text{비교환수익 등}$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 거래 금액.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전문개정 2024. 7. 31.]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사업순원가} = \text{분야별 총원가} - \text{분야별 수익}$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재정운영순원가} = \text{사업순원가} + \text{관리운영비} + \text{비배분비용} - \text{비배분수익}$ •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규	칙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 거래 금액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전문개정 2024. 7. 31.]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제2절 수익과 비용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7. 31.>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 7. 31.>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27., 2021. 10. 28.> 1.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

규	칙
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6. 삭제 <2014. 2. 27.> 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7. 31.>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제목개정 2024. 7. 31.]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본조신설 2024. 7. 31.] 제31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

규	칙
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2024. 7. 31.> ④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비품 등의 평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①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4. 7. 31.> ② 삭제 <2024. 7. 31.>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24. 7. 31.> ④ 삭제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31.]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①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용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식으로 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평가 방법의 정당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 재고자산의 시가(時價)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규	칙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4. 2. 27.]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2.]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유·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규	칙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①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등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 7. 31.> ② 국채등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등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개정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기타 충당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 7. 31.> ②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①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보험수리적가정(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 전체 추정근무기간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③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연금추정지급액”은 “퇴직수당추정지급액”으로, “연금비용”은 “퇴직수당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

규	칙
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31.] 제4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채권·채무로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제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개정 2024. 7. 31.>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8. 3. 5.>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개정 2018. 3. 5., 2024. 7. 31.> ④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함께 반영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신설 2018. 3. 5., 2024. 7. 31.> ⑤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 3. 5.> ⑥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8. 3. 5.>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

규	칙
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①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24. 7. 31.> ③ 파생상품 거래는 그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移延)된 손익금액 등을 표시한다.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8. 3. 5.]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①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5. 12. 31.>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순자산 기초금액 및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이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회

규	칙
제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가.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유 나.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방법 다.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시기 4.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사항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오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 7. 31.> ④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 7. 31.> 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 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전문개정 2024. 7. 31.] 제5장의2 현금흐름표 <신설 2024. 7. 31.> 제53조의2(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31.]

규	칙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 투자활동: 자금의 용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31.] 제6장 주식 <개정 2024. 7. 31.> 제54조 삭제 <2024. 7. 31.> 제55조(주식) ① 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주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24. 7. 31.>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③ 주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1.> 제56조 삭제 <2024. 7. 31.> 제7장 보 칙 <신설 2010. 1. 12.>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2.]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규	칙
[본조신설 2010. 1. 12.]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60호, 2009.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5조(보증충당부채 부분에 한정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제6조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사회기반시설의 인식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및 관리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가격개정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정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자산가액으로 본다.	제5조(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관한 특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운영지침」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 또는 상각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유예한 사실 및 이유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12.]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126호, 2010.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I.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규	칙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400호,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과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 11. 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I. 재정은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2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와 총당부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2019.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527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657호, 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규	칙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재정상태표 [별지 제2호서식]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별지 제3호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 [별지 제4호서식] 분야별 재정운영표 [별지 제5호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 [별지 제6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별지 제7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별지 제8호서식] 현금흐름표	

재정상태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OO부처, OO기금,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자산			
Ⅰ. 금융자산		XXX	XXX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X	XXX	XXX
2. 금융상품	X	XXX	XXX
3. 투자증권	X	XXX	XXX
4. 정부출자금	X	XXX	XXX
5. 대여금	X	XXX	XXX
6. 미수채권	X	XXX	XXX
7. 기타 금융자산	X	XXX	XXX
Ⅱ. 유·무형자산		XXX	XXX
1. 일반유형자산	X	XXX	XXX
2. 사회기반시설	X	XXX	XXX
3. 무형자산	X	XXX	XXX
Ⅲ. 기타 자산		XXX	XXX
자산계		XXX	XXX
부채			
Ⅰ. 차입부채		XXX	XXX
1. 국채	X	XXX	XXX
2. 차입금	X	XXX	XXX
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X	XXX	XXX
4. 기타 차입부채	X	XXX	XXX

Ⅱ. 총당부채		XXX	XXX
1. 연금총당부채	X	XXX	XXX
2. 퇴직수당총당부채	X	XXX	XXX
3. 보증총당부채	X	XXX	XXX
4. 보험총당부채	X	XXX	XXX
5. 기타 총당부채	X	XXX	XXX
Ⅲ. 기타 부채		XXX	XXX
부채계		XXX	XXX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XXX	XXX
Ⅱ. 적립금 및 잉여금		XXX	XXX
Ⅲ.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계		XXX	XXX
부채와순자산계		XXX	XXX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부처, OO기금 (단위:)

	주석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X	XXX	(XXX)	XXX	XXX	(XXX)	XXX
1. 프로그램(A)		XXX	(XXX)	XXX	XXX	(XXX)	XXX
2. 프로그램(B)		XXX	(XXX)	XXX	XXX	(XXX)	XXX
3. 프로그램(C)		XXX	(XXX)	XXX	XXX	(XXX)	XXX
4. 프로그램(D)		XXX	(XXX)	XXX	XXX	(XXX)	XXX
5.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			XXX			XXX
IV. 비배분수익	X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 이전수익 등	X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XXX			XXX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31.>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부처, OO기금		(단위:)	
주석		20XY	20XX
수익(Ⅰ+Ⅱ)		XXX	XXX
Ⅰ. 이전수익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 이전수익	X	XXX	XXX
Ⅱ. 국가운영수익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X	XXX	XXX
2. 연금수익	X	XXX	XXX
3. 이자수익	X	XXX	XXX
4. 배당수익	X	XXX	XXX
5. 자산처분이익	X	XXX	XXX
6. 자산평가이익	X	XXX	XXX
7. 기타 국가운영수익	X	XXX	XXX
비용(Ⅲ+Ⅳ)		XXX	XXX
Ⅲ. 이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	XXX	XXX
2. 출연사업비	X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	XXX	XXX
4. 지방교부금	X	XXX	XXX
5. 기타 이전비용	X	XXX	XXX

Ⅳ. 국가운영비용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X	XXX	XXX
2. 연금비용	X	XXX	XXX
3. 인건비	X	XXX	XXX
4. 이자비용	X	XXX	XXX
5. 운영비	X	XXX	XXX
6. 감가상각비	X	XXX	XXX
7. 자산평가손실	X	XXX	XXX
8. 기타 국가운영비용	X	XXX	XXX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XXX	XXX

분야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사업순원가	X	XXX	(XXX)	XXX	XXX	(XXX)	XXX
1. 분야(A)		XXX	(XXX)	XXX	XXX	(XXX)	XXX
2. 분야(B)		XXX	(XXX)	XXX	XXX	(XXX)	XXX
3. 분야(C)		XXX	(XXX)	XXX	XXX	(XXX)	XXX
4. 분야(D)		XXX	(XXX)	XXX	XXX	(XXX)	XXX
5. ...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			XXX			XXX
IV. 비배분수익	X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국세수익	X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3. 부담금수익	X			XXX			XXX
4. 제재금수익	X			XXX			XXX
5. 기타 이전수익 등	X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XXX			XXX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31.>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수익(Ⅰ+Ⅱ+Ⅲ)		XXX	XXX
Ⅰ. 국세수익	X	XXX	XXX
Ⅱ. 이전수익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 이전수익	X	XXX	XXX
Ⅲ. 국가운영수익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X	XXX	XXX
2. 연금수익	X	XXX	XXX
3. 이자수익	X	XXX	XXX
4. 배당수익	X	XXX	XXX
5. 자산처분이익	X	XXX	XXX
6. 자산평가이익	X	XXX	XXX
7. 기타 국가운영수익	X	XXX	XXX
비용(Ⅳ+Ⅴ)		XXX	XXX
Ⅳ. 이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	XXX	XXX
2. 출연사업비	X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	XXX	XXX
4. 지방교부금	X	XXX	XXX
5. 기타 이전비용	X	XXX	XXX

Ⅴ. 국가운영비용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X	XXX	XXX
2. 연금비용	X	XXX	XXX
3. 인건비	X	XXX	XXX
4. 이자비용	X	XXX	XXX
5. 운영비	X	XXX	XXX
6. 감가상각비	X	XXX	XXX
7. 자산평가손실	X	XXX	XXX
8. 기타 국가운영비용	X	XXX	XXX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XXX	XXX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Ⅵ.~Ⅹ.)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Ⅰ.~Ⅴ.)

OO부처, OO기금 (단위:)

	주석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Ⅱ.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수익			XXX		XXX
(4) 제재금수익			XXX		XXX
(5) 기타 이전수익			XXX		XXX
2. 재원의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기타 이전비용			XXX		XXX
Ⅳ.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V.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Ⅳ)		XXX	XXX	XXX	XXX

Ⅵ.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Ⅶ.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Ⅷ.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수익			XXX		XXX
(4) 제재금수익			XXX		XXX
(5) 기타 이전수익			XXX		XXX
2. 재원의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기타 이전비용			XXX		XXX
Ⅸ.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Ⅹ. 당기 기말순자산(Ⅵ-Ⅶ+Ⅷ+Ⅸ)		XXX	XXX	XXX	XXX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31.>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Ⅴ.~Ⅷ.)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Ⅰ.~Ⅳ.)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식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IV. 전기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XXX	XXX	XXX	XXX
V.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VI. 재정운영결과			XXX		XXX
V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VIII. 당기 기말순자산(V - VI + VII)		XXX	XXX	XXX	XXX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31.>

현금흐름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부처, OO기금,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	XXX	XXX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세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제재금수입		XXX	XXX
(4) 이자수입		XXX	XXX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보조금 지급		XXX	XXX
(2) 출연금 지급		XXX	XXX
(3) 지방교부금 지급		XXX	XXX
(4) 사회보험지출		XXX	XXX
(5) 인건비 지급		XXX	XXX
(6) 이자지급		XXX	XXX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	XXX	XXX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처분		XXX	XXX
(2) 대여금 회수		XXX	XXX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처분		XXX	XXX
(4) 무형자산 처분		XXX	XXX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취득		XXX	XXX
(2) 대여금 지급		XXX	XXX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취득		XXX	XXX
(4) 무형자산 취득		XXX	XXX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	XXX	XXX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공채 발행		XXX	XXX
(2) 차입금 차입		XXX	XXX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국공채 상환		XXX	XXX
(2) 차입금 상환		XXX	XXX
...			
IV. 현금의 증감(I + II + III)		XXX	XXX
V. 기초의 현금		XXX	XXX
VI. 기말의 현금(IV+V)		XXX	XXX

Ⅲ

국가회계예규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65	● 국세징수활동표	27-30	81
● 적용범위	2	65	● 주식	31	83
● 용어의 정의	3	65	● 부칙		83
● 일반사항	4-7	66	● 별지서식		89
● 재무제표	8-26	70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2	
○ 재정상태표	8-12	70	부록 2. 실무해설	1-14	
○ 재정운영표	13-20	73			
•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15-16	74			
• 중앙관서 또는 국가의 재정운영표	17-20	76			
○ 순자산변동표	21-25	78			
○ 현금흐름표	26	80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다만,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는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한다.
 -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 (2) 「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 등을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는 기준을 말한다.
 - (2) "복식부기"란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 (3)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 (4) "행정형회계"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5), 16. (3),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사업형 회계실체에 포함된다.

- (5) "사업형 회계"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관련규정

-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1. 3. 8.>
 -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III 일반사항

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일반원칙)

실무해설2. (☞ 관련문단 4, 7)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객관성), 명료성(이해가능성), 충분성, 비교가능성, 중요성, 경제적 실질의 반영과 같은

-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뢰성(객관성)은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명료성(이해가능성)은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용어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성은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회계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나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누락이 없음을 의미한다.

비교가능성은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회계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국가회계기준에서도 재무제표를 당해 연도와 과거 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성은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실질의 원칙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으로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6. (재무제표의 목적) (1)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나)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다)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7.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1)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6

관련규정

-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 제3항, 제4항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일반원칙)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문단 5(재무제표의 합산과 내부거래 제거 등)

실무해설3. (☞ 관련문단 7. (3)) 계정과목의 체계 및 재무제표의 표시 수준

- (1) 국가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의 5단계 구조로 구성(Level I, II, III, IV, V)된다.
- (2) 대분류(Level I)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기본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의 구분을 말하며, 이는 다시 일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항목으로 나뉜다.
- (3) 중분류(Level II)는 대분류를 국가회계기준(자산 유형 등)에 따라 구분 (예: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등)하는 것을 말한다.
- (4) 회계과목(Level III)은 재무결산 보고의 기본단위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과목(예: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미수채권 등)을 말한다.
- (5) 관리과목(Level IV) 및 세부관리과목(Level V)은 회계과목의 상세한 정보제

공을 위하여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기표과목이며,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은 향후 필요 시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7. \(3\)](#)) 중요성은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중요성은 재무제표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중요성과 개별 계정잔액, 거래 및 공시사항 수준에서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과 제 규정상의 요구사항 그리고 개별 계정잔액이나 계정잔액 간 상호 관련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서는 대상 재무제표에 따라 중요성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중요성 판단은 회계실체가 처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도 질적인 측면에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7. \(3\)](#)) 질적 요소가 중요성기준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비율이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는 회계실체가 그 약정의 위반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또는 그러한 약정위반을 피할 수 있는) 회계변경효과를 공시할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국가회계실체보다 더욱 낮은 금액적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계정과목 분류 오류의 경우, 선박및항공기로 분류되어야 할 항목을 기계장치로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계정과목 분류 오류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유형 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의 분류

오류인 경우에도 선박및항공기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중요할 수 있다.

- (3) 보통의 상황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공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 (4) 재무제표 왜곡표시 등의 고의성여부도 당해 항목의 중요성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 중요하지 않을 금액이라도 고의적인 경우에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왜곡표시 등은 불법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무해설6. (☞ 관련문단 7. (4)) 내부거래 상계 제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라 아래 항목 관련 거래로 발생한 수익·비용, 자산·부채와 같이 내부거래가 소액 다수 건이어서 제거로 인한 효익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을 수 있다.

- (1) 조달청에 납부하는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 (2) 우편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는 우편요금
- (3) 등기특별회계에 납부하는 등기로
- (4) 국세청, 관세청에 납부하는 제세
- (5) 중앙전파관리소에 납부하는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

III 재무제표

II 재정상태표

8. (재정상태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 별지 제1호서식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9.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1) 자산과 부채는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2)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10. (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2)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자산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써,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등을 말한다.

(나)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1)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3)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다) 기타자산은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11. (부채의 정의와 구분) (1)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2)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차입부채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차입부채를 말한다.

(나)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다) 기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사회보험부채,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12.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2) 순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으로 표시한다.

(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다)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및 기타순자산의증감 등을 표시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별지 제1호서식

II 재정운영표

13. (재정운영표의 정의와 구분) (1)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재정운영의 결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나)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다)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분야별 재정운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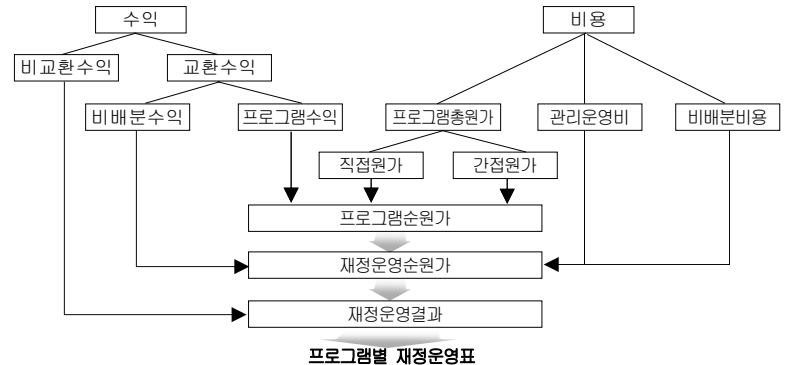
☞ 관련부록 실무해설 8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실무해설7. (☞ 관련문단 12. (2)) 증권에 평가에 따라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익은 관련 증권에 처분, 감액 시 투자증권처분손익 또는 투자증권감액손익에 반영된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또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재정운영결과)"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재정운영결과)"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작성체계



14.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I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15.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수익은 이전수익과 국가운영수익을 더하여 표시한다.

(가) 이전수익: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기타이전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나)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 외의 모든 수익으로서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기타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 (2) 비용은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을 더하여 표시한다.

(가) 이전비용: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 및 기타이전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나)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으로서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및 기타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 (3)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 관련문단 17, 19

별지 제3호서식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16.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프로그램별로 표시한다.

(가)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로, 프로그램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나)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나)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다)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3)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가)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이전수익과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회계실체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포함한다.

(나) 사업형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에 표시하고, 행정형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 관련문단 21

관련부록 실무해설 1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6)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투입한 원가로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형회계의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원가에서 관련 수익을 차감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개별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형회계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수익자가 부담한 수익의 규모와 이러한 수익이 제공한 서비스 등의 원가를 얼마나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6)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작성주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 뿐 아니라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전체 재정활동을 통해 소요된 원가를 나타낸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다) 비교환수의 등은 사회보험수의, 부담금수의, 제재금수의 및 기타이전수의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관련문단 18, 20

관련부록 실무해설 9~10

별지 제2호서식

I 중앙관서 또는 국가의 재정운영표

17.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5를 준용한다.

☞ 관련문단 15

별지 제3호서식

18.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작성시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표시한다.

(2)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3) 소관 사업형회계의 비교환수의 등은 재정운영표에 표시하며, 소관 행정형회계의 비교환수의 등은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4) (1) 내지 (3)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6을 준용한다.

☞ 관련문단 16

별지 제2호서식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19.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1)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을 더하여 표시한다.

(가) 국세수익: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와 관세 등의 수익

(나) 이전수익: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다)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 외의 모든 수익

(3) (1)과 (2)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5를 준용한다.

☞ **관련문단 15**

별지 제5호서식

20.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 (1)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순원가는 분야별총원가에서 분야별수익을 차감하여 분야별로 표시한다.

(가) 분야별총원가: 각 중앙관서별 프로그램총원가를 통합하여 분야별로 집계

(나) 분야별수익: 각 중앙관서별 프로그램수익을 통합하여 분야별로 집계

(3)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4) 비교환수익 등은 국세수익,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기타이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5) (1) 내지 (4)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분야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6을 준용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 관련문단 16
별지 제4호서식

Ⅱ 순자산변동표

21. (순자산변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3)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관련문단 16, (3)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실무해설 11. (☞ 관련문단 21) (1)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반면, "재무제표상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이 금액이 통상 자본이 되나 국가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여재산 성격인 순자산이 된다. 수익·비용이 아닌 자산·부채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일 경우(예: 차입, 대여 등) 결산상 잉여금에는 세입 또는 세출로 반영되나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

(예1) 20X1년 정부는 100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실질적으로는 90이 회수되었으며, 90의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70이 지출되었다.

- 결산상 잉여금 = $90 - 70 = 20$
- 순자산 = $100 - 90 = 10$

(예2) 기중의 수익 및 원가, 수입 및 지출은 위 (예1)과 동일하며, 20X1년 정부는 장기투자증권의 평가로 기말시점 20의 투자증권평가이익을 인식하였다.

- 결산상 잉여금 = $90 - 70 = 20$
- 순자산 = $100 - 90 + 20 = 30$

(예3) 기중 세입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10차입을 하였다.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상 잉여금과 순자산은 다음과 같다.

- 결산상 잉여금 = 10
- 순자산 = 0

- (2) "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예) 20×1년의 세계잉여금 100 구성: A특별회계 30, B특별회계 70
세계잉여금 100의 20×2년 세입처리: A특별회계 50, B특별회계 50(A특별회계의 자금
추가 필요에 의하여 B특별회계 잉여금 20을 A특별회계의 20×2년 세입으로 배정하여 증)
→ 세계잉여금의 연도간 전용으로 20×1년도의 잉여금은 '0'이 됨.

예산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 잔액을 차년도의 세입으로 이입하는 '연도간전용'을 별도의 거래로 보아 세입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회계에서는 '연도간전용'을 별도의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관련규정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문단 6(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문단 8(중대한 전기오류수정)

22.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23. (재정운영결과)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결과를 말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24.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은 행정형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가) 국고수입

(나) 사회보험수익

문단제정근거1. (별지 관련문단 24) 행정형회계는 국고통합의 원칙에 의해 각 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국고에 불입한 후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형회계는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는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다) 부담금수익
- (라) 제재금수익
- (마) 기타이전수익
- (2) 재원의 이전
- (가) 국고이전지출
- (나) 기타이전비용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25.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투자증권평가손익
- (2) 자산재평가이익
- (3) 보험수리적손익
- (4)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 (5) 기타순자산의증감

☞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Ⅱ 현금흐름표

26.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현금흐름을 구분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금흐름표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 별지 제8호서식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조정항목)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현금흐름표)

III 국세징수활동표

27. (국세징수활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 및 관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한 "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2)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국세수익 인식에 따른 순자산 증가를 의미하는 "국세수익"과 현금 수납액의 국고이전 등에 의한 감소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9호서식

28.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 국세수익은 국세수익발생금액에서 미수국세의 대손상각비를 차감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국세수익발생금액은 발생주의에 의한 해당 국세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환입은 미수국세에 대한 대손상각비 설정액 또는 대손충당금환입액을 의미한다.

별지 제9호서식

29. (국세징수활동표상 처분) 처분은 국고이전지출에 "타회계이전", "물납이전", "미수국세의 증감"을 가산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고이전지출은 국세수익 중 현금수취분을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키는 금액으로 총현금수입에서 지급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타회계이전은 국세징수 이후 국고금회계 외의 타회계로 이전하는 금액으로 농특세이전지출과 주세이전지출 등이 있다.

(3) 물납이전은 국세를 물납으로 징수하여 물납된 자산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이전한 금액을 말한다.

실무해설12. (별지 관련문단 29) 국세징수활동 부처는 "미수국세의 증감"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 효과를 제거하고 국세징수활동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상대계정을 미수국세의 차감항목인 "국세수익조정"으로 처리하여 조정한다. 조정이 완료되면 국세징수활동표상 "차감계" 잔액은 "0"이 된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시 국세징수활동표상 반영했던 "미수국세의 증감"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 금액과 재정상태표상 반영되었던 "국세수익조정"에 대하여 취소시키는 분개를 수행한다.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미수국세의 증감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은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과 실수납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기말과 당기말의 미수국세와 대손충당금의 차이금액 등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별지 제9호서식

(예시)		
구 분	미수국세	대손충당금
기초금액	100	10
기말금액	200	20
증감액	100	10

- 국세청 기말결산시 -

차) 미 수 국 세 의 증 감	100	대) 국 세 수 익 조 정	100
차) 국 세 수 익 조 정	10	대) 대 손 충 당 금 의 증 감	10

-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시 -

차) 국 세 수 익 조 정	100	대) 미 수 국 세 의 증 감	100
차) 대 손 충 당 금 의 증 감	10	대) 국 세 수 익 조 정	10

30. (국세수익의 국가 재무제표 표시) 중앙관서의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은 재정부영표의 국세수익으로 표시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
실무해설 13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30) 국세수익은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재정부영표가 아닌 국세징수활동표(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 표시되나 국가결산보고서의 관점에서는 국세수익은 국가재정의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각 중앙관서의 경우와 같이 예산배정의 절차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부영표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30)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III 주식

31. (주식) (1) 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2) 다음의 사항을 주식으로 표시한다.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에서 주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3) 주식의 종류와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주식)
- 주식의 작성방법 및 예시는 결산작성지침 참조

실무해설14.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개요

(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제도

(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의 정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계적 개념의 거래(transaction)란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

(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한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채권, 미수수익, 미지급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의 발생주의 계정을 사용한다.

〈발생주의의 차이점〉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선급비용 선수수익	비용 인식 수익 인식	자산 인식 부채 인식
감가상각, 대손상각	인식 없음	비용 인식

(참고) 예산회계

예산회계는 예산이나 현금의 유입 유출의 영향을 주는 사건을 인식대상으로 하며 예산, 수입, 지출, 세계잉여금의 구조로 되어있음. 수입의 경우 예산액, 징수액이나 수납액, 미수납액 등과 지출의 경우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등 재정집행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예산회계는 예산행위를 통해 회계기록이 이루어지며,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하여 운영수지인 세계잉여금을 산출하여 보고함. 예산회계의 주목적은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각 부처의 역할 강조를 통해 정부의 예산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회계책임을 확보하는 것임.

예산회계는 예산행위를 통한 현금의 수입, 지출을 측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와 같이 자산이나 부채 관련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수익이나 비용이 측정되지 않으므로 정책이나 사업 등 정부활동의 원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단식부기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이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방식이다.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거래의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하는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복식부기에서 각 계정의 잔액을 합산하는 경우 '자산 = 부채 + 순자산'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라) 이원화 시스템(dual-track accounting system)

우리나라 국가회계는 한편으로는 예산집행 및 관리통제 등을 위해 예산 회계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dBrain의 자동분개 시스템에 의하여 자산이나 부채관리, 정부활동의 원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발생주의 재무회계에 의한 재무보고를 병행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2. 국가회계기준의 구조와 내용

(1) 국가회계기준의 의의와 구조

(가) 국가회계기준의 의의

회계(accounting)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거래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절차이며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은 그러한 회계행위의 표준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이다. 기업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절차의 최종적 산물은 조직의 재무상태(또는 재정상태)나 경영성과(또는 운영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이 도입·적용됨에 따라 국가기관(더 정확히 표현하면 '국가회계실체'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절한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 부문의 새로운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따른 세입·세출의 운영내역을 보여주는 예산회계방식에 추가하여 다양한 이용자에게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회계제도의 변화와 회계기준〉

구분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회계기록방식	단식부기	복식부기
회계인식원칙	현금주의	발생주의
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 등 9종의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재정상태표 등) 성과보고서
회계기준	체계적 회계기준이 아닌 현금주의 결산을 위한 결산작성지침	결산작성지침 외에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은 국가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회계기준으로 2009년 3월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제3조)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의 회계처리에는 국가회계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의 제정은 국가회계실체가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식)를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작성하게 함으로써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등 유용한 재정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프로그램(정책사업)별 원가계산 및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검증 기능으로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며,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국가자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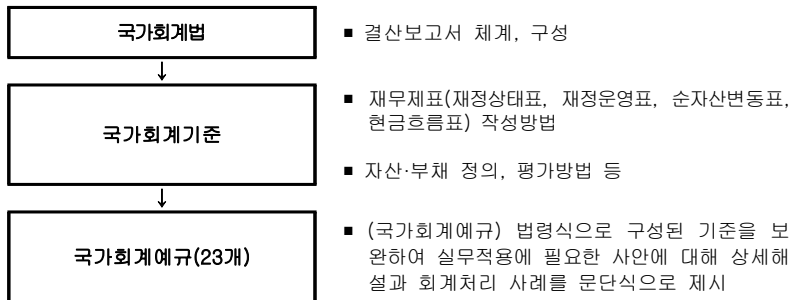
(나) 국가회계기준의 법적 근거와 체계

국가회계기준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제11조 (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③ 삭제 <2008.12.31.>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가회계기준의 법적 명칭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기준은 총 8장으로 나누어진 61개 조문과 보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 하부기준으로 국가회계예규 23개가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법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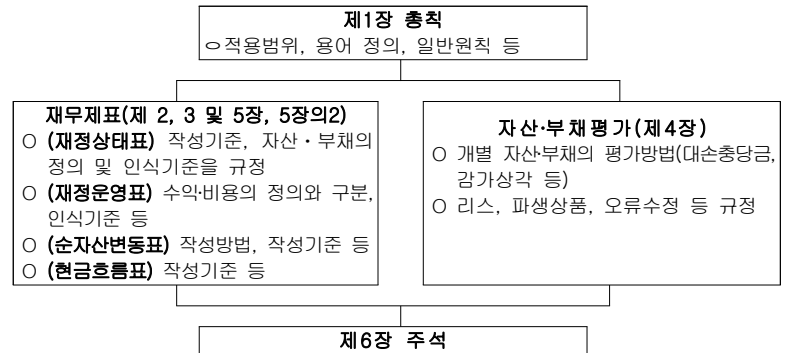


(2) 국가회계기준의 내용

(가) 국가회계기준의 전반적 내용

국가회계기준에는 일반원칙과 재무제표 및 자산·부채 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각 기금 및 중앙관서별, 국가 전체의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신뢰성과 명료성, 비교가능성 등 회계 처리의 일반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와 같은 개념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의 구성>



재정상태표는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표시하며, 재정운영표는 각 기금 및 중앙관서별, 국가전체의 정책·사업원가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순자산변동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내역을 표시한다. 또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낸다.



(나) 국가회계기준의 세부 내용

1) 제1장 총칙

총칙은 국가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재무제표의 종류와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 산출을 위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는 "국가회계실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다. 회계실체는 재무제표의 작성주체인 보고실체(이 기준에서는 보고실체를 정의하지는 않았음)의 구성부분으로 각각의 특성, 기능 및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 "재정상태표일", "공정가액", "내부거래" 및 "회수가능가액"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3조(적용범위 등)에서는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민간기금 포함)으로 규정하고 기준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계기준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회계기준 및 해석, 지침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습적인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 기업회계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제4조(일반원칙), 제5조(재무제표),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는 문단4에서 문단7를 참고한다.

2) 제2장~제6장 세부 내용

국가회계기준 제2장에서 제6장까지 규정하고 있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과 부채의 평가,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식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관련 예규를 참고한다.

3. 회계순환의 과정

(1) 거래의 개념 및 계정과목

(가) 복식부기 회계의 거래

복식부기 회계에서의 거래(transaction)란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과 수익이나 비용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으로 일상적 거래의 개념과는 그 범위가 다르며, 예산거래는 물론 예산외 거래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다.

구 분	일상적 거래	일상적 비거래
회계상 거래	임대료의 수입, 임차료의 지급	건물·재고자산 등의 손실·훼손, 금전·물품 등의 망실, 건물·비품·기계장치 등의 감가, 채권의 대손
회계상 비거래	상품의 매매계약, 건물의 임대차 계약	종업원의 사망

(나) 계정과목

계정과목이란, 자산·부채·순자산·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의 명칭이다. 계정과목에는 결산보고서에 보고되는 계정과목과 원장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결산보고서에 보고용으로 나타나는 과목이 회계과목이며, 원장에 나타나는 세부과목은 관리과목이다. 회계과목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관리과목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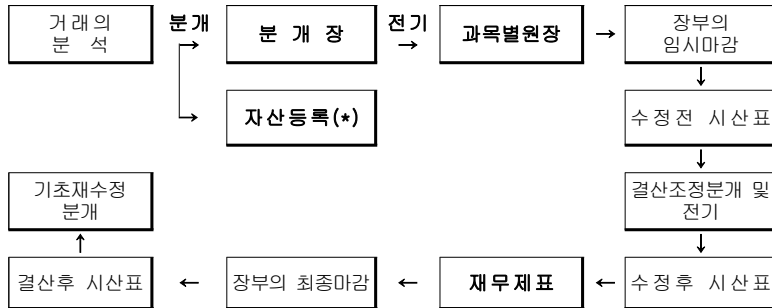
〈계정과목 예시〉

회계과목	관리과목		비 고
보험충당부채			1:1구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1:N구조
	산업재산권		
	광업권		
	기타무형자산		

(2) 회계순환과정**(가) 회계순환과정**

회계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따라 회계실체의 재무적 정보를 1년 등과 같은 회계기간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한 후, 각 회계기간마다 회계정보를 산출하여 보고한다. 이를 위하여 회계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들을 장부에 일일이 기록한 후 기말에 이를 재무제표로 요약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같이 매 회계기간마다 거래를 식별, 기록,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환적 과정을 회계순환과정이라 한다.

회계순환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래들을 식별하고 분개장에 기록하며,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에 전기하는 일이다. 다른 부분은 회계기간 말에 이르러 회계기간 동안의 기록을 요약하여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를 결산이라 한다.

〈회계순환과정〉

(*) 분개를 통해 분개장에 거래가 기록되며 해당 거래가 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된 거래일 경우 자산대장에 해당거래가 동시에 기록됨

(나) 회계기간 중의 회계순환과정

- 1) 분개장: 분개장은 회계자료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로써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따로 기록하는 원시데이터이다. 거래가 다양하고 분량이 많은 기업에서는 분개장 대신에 전표를 사용한다.
- 2) 원장: 원장이란 계정과목별로 분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모아 놓은 회계장부이며 전기란 분개의 내용을 각 계정별로 집계하기 위하여 원장의 해당 계정에 이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 회계기간 말의 회계순환과정

- 1) 시산표: 대차금액 일치의 원리에 의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한다. 시산표의 차변잔액은 자산과 비용, 대변잔액은 부채, 순자산, 수익으로 나타난다.
- 2) 결산조정분개: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나 운영성과 등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 계정의 기말잔액을 결산 시점에서 수정하는 분개를 말한다.

〈결산조정 항목 예시〉

이연항목	비용의 이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인식(예: 선급비용) 수익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예: 선수수익)
발생항목	비용의 발생-비용의 인식과 함께 부채를 인식(예: 미지급비용) 수익의 발생-수익의 인식과 함께 자산을 인식(예: 미수수익)
추정항목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히 나타내기 위해 회계추정하여 계정에 반영하는 항목(예: 대손상각비)
기타항목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자산계정의 정리 등

- 3) 수정 후 시산표: 결산조정분개가 반영된 시산표를 의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정상태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OO부처, OO기금,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자산			
I. 금융자산		<u>XXX</u>	<u>XXX</u>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X	XXX	XXX
2. 금융상품	X	XXX	XXX
3. 투자증권	X	XXX	XXX
4. 정부출자금	X	XXX	XXX
5. 대여금	X	XXX	XXX
6. 미수채권	X	XXX	XXX
7. 기타 금융자산	X	XXX	XXX
II. 유·무형자산		<u>XXX</u>	<u>XXX</u>
1. 일반유형자산	X	XXX	XXX
2. 사회기반시설	X	XXX	XXX
3. 무형자산	X	XXX	XXX
III. 기타 자산		<u>XXX</u>	<u>XXX</u>
자산계		<u>XXX</u>	<u>XXX</u>
부채			
I. 차입부채		<u>XXX</u>	<u>XXX</u>
1. 국제	X	XXX	XXX
2. 차입금	X	XXX	XXX
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X	XXX	XXX
4. 기타 차입부채	X	XXX	XXX

II. 총당부채

1. 연금총당부채	X
2. 퇴직수당총당부채	X
3. 보증총당부채	X
4. 보험총당부채	X
5. 기타 총당부채	X

<u>XXX</u>	<u>XXX</u>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III. 기타 부채

부채계

순자산

I. 기본순자산
II. 적립금 및 잉여금
III. 순자산조정

<u>XXX</u>	<u>XXX</u>
XXX	XXX
XXX	XXX
XXX	XXX

순자산계

부채와순자산계

<u>XXX</u>	<u>XXX</u>
XXX	XXX
XXX	XXX

☞ 관련문단 8~12

별지 제2호서식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부처, OO기금		(단위:)					
	주석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X	XXX	(XXX)	XXX	XXX	(XXX)	XXX
1. 프로그램(A)		XXX	(XXX)	XXX	XXX	(XXX)	XXX
2. 프로그램(B)		XXX	(XXX)	XXX	XXX	(XXX)	XXX
3. 프로그램(C)		XXX	(XXX)	XXX	XXX	(XXX)	XXX
4. 프로그램(D)		XXX	(XXX)	XXX	XXX	(XXX)	XXX
5.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			XXX			XXX
IV. 비배분수익	X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 이전수익 등	X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XXX			XXX

별지 제3호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부처, OO기금

(단위:)

	주석	20XY	20XX
수익(Ⅰ+Ⅱ)		XXX	XXX
Ⅰ. 이전수익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 이전수익	X	XXX	XXX
Ⅱ. 국가운영수익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X	XXX	XXX
2. 연금수익	X	XXX	XXX
3. 이자수익	X	XXX	XXX
4. 배당수익	X	XXX	XXX
5. 자산처분이익	X	XXX	XXX
6. 자산평가이익	X	XXX	XXX
7. 기타 국가운영수익	X	XXX	XXX
비용(Ⅲ+Ⅳ)		XXX	XXX
Ⅲ. 이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	XXX	XXX
2. 출연사업비	X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	XXX	XXX
4. 지방교부금	X	XXX	XXX
5. 기타 이전비용	X	XXX	XXX

Ⅳ. 국가운영비용

1.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X	XXX	XXX
2. 연금비용	X	XXX	XXX
3. 인건비	X	XXX	XXX
4. 이자비용	X	XXX	XXX
5. 운영비	X	XXX	XXX
6. 감가상각비	X	XXX	XXX
7. 자산평가손실	X	XXX	XXX
8. 기타 국가운영비용	X	XXX	XXX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XXX

XXX

☞ 관련문단 13~14, 15, 17

별지 제4호서식							
분야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사업순원가	X	XXX	(XXX)	XXX	XXX	(XXX)	XXX
1. 분야(A)		XXX	(XXX)	XXX	XXX	(XXX)	XXX
2. 분야(B)		XXX	(XXX)	XXX	XXX	(XXX)	XXX
3. 분야(C)		XXX	(XXX)	XXX	XXX	(XXX)	XXX
4. 분야(D)		XXX	(XXX)	XXX	XXX	(XXX)	XXX
5. ...		XXX	(XXX)	XXX	XXX	(XXX)	XXX
II. 관리운영비	X			XXX			XXX
III. 비배분비용	X			XXX			XXX
IV. 비배분수익	X			XXX			XXX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XXX			XXX
V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국세수익	X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3. 부담금수익	X			XXX			XXX
4. 제재금수익	X			XXX			XXX
5. 기타 이전수익 등	X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V-VI)				<u>XXX</u>			<u>XXX</u>

별지 제5호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수익(Ⅰ+Ⅱ+Ⅲ)		XXX	XXX
Ⅰ. 국세수익	X	XXX	XXX
Ⅱ. 이전수익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제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 이전수익	X	XXX	XXX
Ⅲ. 국가운영수익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X	XXX	XXX
2. 연금수익	X	XXX	XXX
3. 이자수익	X	XXX	XXX
4. 배당수익	X	XXX	XXX
5. 자산처분이익	X	XXX	XXX
6. 자산평가이익	X	XXX	XXX
7. 기타 국가운영수익	X	XXX	XXX
비용(Ⅳ+Ⅴ)		XXX	XXX
Ⅳ. 이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	XXX	XXX
2. 출연사업비	X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	XXX	XXX
4. 지방교부금	X	XXX	XXX
5. 기타 이전비용	X	XXX	XXX

Ⅴ. 국가운영비용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X	XXX	XXX
2. 연금비용	X	XXX	XXX
3. 인건비	X	XXX	XXX
4. 이자비용	X	XXX	XXX
5. 운영비	X	XXX	XXX
6. 감가상각비	X	XXX	XXX
7. 자산평가손실	X	XXX	XXX
8. 기타 국가운영비용	X	XXX	XXX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XXX	XXX

관련문단 13~14, 19, 30

별지 제6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VI.~X.)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I.~V.)

OO부처, OO기금

(단위:)

	주석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수익			XXX		XXX
(4) 제재금수익			XXX		XXX
(5) 기타 이전수익			XXX		XXX
2. 재원의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기타 이전비용			XXX		XXX
IV.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V. 전기 기말순자산(I-II+III+IV)		XXX	XXX	XXX	XXX

VI.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V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V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수익			XXX		XXX
(4) 제재금수익			XXX		XXX
(5) 기타 이전수익			XXX		XXX
2. 재원의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기타 이전비용			XXX		XXX
IX.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X. 당기 기말순자산(VI-VII+VIII+IX)		XXX	XXX	XXX	XXX


 관련문단 21~25

별지 제7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V.~Ⅷ.)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I.~Ⅳ.)

관련문단 21~25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기본 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IV. 전기 기말순자산(I - II + III)		<u>XXX</u>	<u>XXX</u>	<u>XXX</u>	<u>XXX</u>
V.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VI. 재정운영결과			XXX		XXX
V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X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X	-	XXX	-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VIII. 당기 기말순자산(V - VI + VII)		<u>XXX</u>	<u>XXX</u>	<u>XXX</u>	<u>XXX</u>

현금흐름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부처, OO기금,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석	20XY	20XX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	XXX	XXX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세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제재금수입		XXX	XXX
(4) 이자수입		XXX	XXX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보조금 지급		XXX	XXX
(2) 출연금 지급		XXX	XXX
(3) 지방교부금 지급		XXX	XXX
(4) 사회보험지출		XXX	XXX
(5) 인건비 지급		XXX	XXX
(6) 이자지급		XXX	XXX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	XXX	XXX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처분		XXX	XXX
(2) 대여금 회수		XXX	XXX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처분		XXX	XXX
(4) 무형자산 처분		XXX	XXX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취득		XXX	XXX
(2) 대여금 지급		XXX	XXX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취득		XXX	XXX
(4) 무형자산 취득		XXX	XXX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	XXX	XXX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공채 발행		XXX	XXX
(2) 차입금 차입		XXX	XXX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국공채 상환		XXX	XXX
(2) 차입금 상환		XXX	XXX
...			
IV. 현금의 증감(Ⅰ+Ⅱ+Ⅲ)		XXX	XXX
V. 기초의 현금		XXX	XXX
VI. 기말의 현금(Ⅳ+Ⅴ)		XXX	XXX

➡ 관련문단 26

별지 제9호서식

국세징수활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20XY	20XX
I. 국세수익	XXX	XXX
(1) 국세수익발생금액	XXX	XXX
1. 소득세수익	XXX	XXX
2. 법인세수익	XXX	XXX
3. 부당이득세수익	XXX	XXX
4. 상속세수익	XXX	XXX
5. 증여세수익	XXX	XXX
6. 재평가세수익	XXX	XXX
7. 부가가치세수익	XXX	XXX
8. 주세수익	XXX	XXX
9. 전화세수익	XXX	XXX
10. 증권거래세수익	XXX	XXX
11. 인지세수익	XXX	XXX
12. 관세수익	XXX	XXX
13. 방위세수익	XXX	XXX
14.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XXX	XXX
15. 교육세수익	XXX	XXX
16. 농어촌특별세수익	XXX	XXX
17. 종합부동산세수익	XXX	XXX
18. 기타내국세수익	XXX	XXX
19. 토지초과이득세수익	XXX	XXX
20. 지방교육양여세수익	XXX	XXX
21. 개별소비세수익	XXX	XXX
(2) 대손상각비	(XXX)	(XXX)
(3) 대손충당금환입	XXX	XXX

II. 처분

(1) 국고이전지출

(가) 총현금수입

	XXX	XXX
1. 소득세수입	XXX	XXX
2. 법인세수입	XXX	XXX
3. 부당이득세수입	XXX	XXX
4. 상속세수입	XXX	XXX
5. 증여세수입	XXX	XXX
6. 재평가세수입	XXX	XXX
7. 부가가치세수입	XXX	XXX
8. 주세수입	XXX	XXX
9. 전화세수입	XXX	XXX
10. 증권거래세수입	XXX	XXX
11. 인지세수입	XXX	XXX
12. 관세수입	XXX	XXX
13. 방위세수입	XXX	XXX
14. 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	XXX	XXX
15. 교육세수입	XXX	XXX
16. 농어촌특별세수입	XXX	XXX
17. 종합부동산세수입	XXX	XXX
18. 기타내국세수입	XXX	XXX
19. 토지초과이득세수입	XXX	XXX
20. 지방교육양여세수입	XXX	XXX
21. 개별소비세수입	XXX	XXX

(나) 국세환급금

	XXX	XXX
(2) 타회계이전	XXX	XXX
(3) 물납이전	XXX	XXX
(4) 미수국세의증감	XXX	XXX
(5) 대손충당금의증감	XXX	XXX

III. 차감 계

관련문단 27~30

2.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101	● 공시	11	112
● 적용범위	2	101	● 부칙		112
● 용어의 정의	3	102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4	
●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4	102	부록 2. 실무해설	1-10	
●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6	103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	10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	110			
●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9-10	111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 (2) 「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관련규정

-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 3. 26.>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전문개정 2008. 12. 31.]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란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 (1)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I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4.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1) 현금흐름표는 국가회계실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2~3](#)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1\)](#) "현금및현금성자산"이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관련규정

-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5(현금및현금성자산)

실무해설2. [☞ 관련문단 4](#) 국가회계실체의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현금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4](#) 현금 증감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II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 부담금, 제재금의 징수 등에 따른 현금유입

(나)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다) 연금·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보험수익과 관련된 현금유입

(라)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에 따른 현금유입

(마) 전입금, 국고수입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입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2
실무해설 4

6.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을 말한다.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보조금, 출연금, 교부금의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나)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다) 국가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라) 연금·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금·보험비용과 관련된 현금유출

(마) 이자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5~6)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자와 배당금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타 업종의 경우에는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이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적으로 대부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회계실체의 경우 금융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회계실체도 존재하고, 이자수입이 국가의 정책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괄 운영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국공채, 차입금 등에 따른 이자지급 등은 별도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해당 이자비용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된다는 점, 이자비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표시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5~6) 일반회계 등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 현금을 회계 내에 보유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할 때는 ‘국고수입’으로 국고금회계에서 현금을 이전받아 지출하고, 현금이 들어왔을 때는 ‘국고이전지출’로 국고금회계로 바로 이전하는 거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고금과의 거래를 운영활동에 표시할 경우 일반회계 등의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일부 투자활동을 제외한 순액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국고금과의 거래는 국가통합 시 모두 제거되어 국가통합 현금흐름표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운영활동 내 유입·유출 금액에서는 총액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고금의 별도표시의 효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운영활동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바) 전출금, 국고이전지출 등 타 국가회계실체와의 이전거래에 따른 현금유출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2 실무해설 5																																			
실무해설4. (☞ 관련문단 5)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 관련 상세 계정과목 <table><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회계과목</th><th>관리과목</th><th>세부관리과목</th></tr><tr><td rowspan="17">현금 흐름표</td><td rowspan="17">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td><td rowspan="17">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유입</td><td>국세수입</td><td></td></tr><tr><td rowspan="4">사회보험수입</td><td>국민연금수입</td></tr><tr><td>사학연금수입</td></tr><tr><td>고용보험수입</td></tr><tr><td>산재보험수입</td></tr><tr><td rowspan="2">부담금제재금수입</td><td>부담금수입</td></tr><tr><td>제재금수입</td></tr><tr><td rowspan="4">이자수입</td><td>금융상품이자수입</td></tr><tr><td>투자증권이자수입</td></tr><tr><td>대여금이자수입</td></tr><tr><td>기타이자수입</td></tr><tr><td rowspan="5">기타유입</td><td>연금수입</td></tr><tr><td>재화및용역제공수입</td></tr><tr><td>배당수입</td></tr><tr><td>정부내전입금</td></tr><tr><td>기타의기타유입</td></tr><tr><td>국고수입</td><td></td></tr></table>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유입	국세수입		사회보험수입	국민연금수입	사학연금수입	고용보험수입	산재보험수입	부담금제재금수입	부담금수입	제재금수입	이자수입	금융상품이자수입	투자증권이자수입	대여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유입	연금수입	재화및용역제공수입	배당수입	정부내전입금	기타의기타유입	국고수입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유입	국세수입																																
			사회보험수입	국민연금수입																															
				사학연금수입																															
				고용보험수입																															
				산재보험수입																															
			부담금제재금수입	부담금수입																															
				제재금수입																															
			이자수입	금융상품이자수입																															
				투자증권이자수입																															
				대여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유입	연금수입																															
				재화및용역제공수입																															
				배당수입																															
				정부내전입금																															
				기타의기타유입																															
			국고수입																																

실무해설5. (※ 관련문단 6)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유출	보조금지급	공공기관보조금지급
				자치단체보조금지급
				민간보조금지급
				해외보조금지급
			출연금지급	일반사업출연금지급
				연구개발출연금지급
			지방교부금지급	지방재정교부금지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급
			사회보험지출	국민연금지출
				사학연금지출
				고용보험지출
				산재보험지출
				사학퇴직수당지출
			인건비지급	급여지급
				퇴직급여지급
			이자지급	국채이자지급
				공채이자지급
				차입금이자지급
				기타이자지급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운영활동으로 인한현금유출	기타유출	운영비지급
				연금비용지급
				재화및용역제공지출
				수선유지비지급
				연구개발비지급
				외주용역비지급
				정부내전출금
				선급금지급
				기타의기타유출
			국고이전지출	

I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투자증권 및 유·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금액이 포함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3
실무해설 6~7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7) 저리용자금 등 정책목적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 처분 활동에 대하여 운영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저리용자금 외에도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자산 중 상당수가 정책목적에 따라 취득하므로 이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다는 점,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은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국가회계실체의 현금흐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실무해설6. (※ 관련문단 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유입	금융상품, 투자증권처분	금융상품처분
				투자증권처분
				정부출자금처분
			대여금회수	일반용자금회수
				저리용자금회수
				전대차관대여금회수
				정부내예탁금회수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처분	토지처분
				건물처분
				구축물처분
				군수품처분
				기계장치처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처분
				기타일반유형자산처분
				국도처분
				고속국도처분
				철도처분
				항만처분
				댐처분
				공항처분
				하천처분
				상수도처분
				국가어항처분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유입	무형자산처분	
			기타유입	기타금융자산처분
				기타비금융자산처분

실무해설7. (※ 관련문단 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유출	금융상품, 투자증권취득	금융상품취득
				투자증권취득
				정부출자금취득
			대여금지급	일반용자금용자
				저리용자금용자
				전대차관대여금지급
				정부내예탁금예탁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취득	토지취득
				건물취득
				구축물취득
				군수품취득
				기계장치취득
				집기비품차량운반구취득
				기타일반유형자산취득
				건설중인토지취득
				건설중인건물취득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유출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취득	건설중인구축물취득
				건설중인기계장치취득
				건설중인집기비품 차량운반구취득
				건설중인기타 일반유형자산취득
				건설중인국도취득
				건설중인고속국도취득
				건설중인철도취득
				건설중인항만취득
				건설중인댐취득
				건설중인공항취득
				건설중인하천취득
				건설중인상수도취득
				건설중인국가어항취득
				국도취득
				고속국도취득
				철도취득
				항만취득
				댐취득
				공항취득
				하천취득
				상수도취득
				국가어항취득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은 차입·상환 및 출연금의 증가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국·공채의 발행, 차입금의 차입, 출연금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국·공채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 출연금의 감소, 리스부채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8~9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유출	무형자산취득	
			기타유출	기타금융자산취득
				기타비금융자산취득

실무해설8. (☞ 관련문단 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현금유입	국공채발행	국채발행
				공채발행
			차입금차입	국내차입금차입
				해외차입금차입
				정부내차입금차입
			기타유입	

실무해설9. (☞ 관련문단 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현금유출	국공채상환	국채상환
				공채상환
			차입금상환	국내차입금상환
				해외차입금상환
				정부내차입금상환
			기타유출	

III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9.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법이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법 적용 시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회계 기록을 통하여 얻거나 재정운영표의 수익·비용에 다음 항목을 조정하여 얻을 수 있다.

(가) 운영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 등 자산·부채의 변동

(나) 기타 비현금항목

(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 관련부록 실무해설 10
문단제정근거 4

10. (기타 표시방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세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 현금흐름이 국가회계실체의 활동이 아닌 상대방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이를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국·공채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9) 간접법이란 재정운영결과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말한다.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3) "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한다.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9) 운영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 기업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과는 달리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은 직접법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III 공시

11. (주석사항)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3.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115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5	
● 적용범위	2	115	부록 2. 실무해설	1-5	
● 용어의 정의	3	115	부록 3. 적용사례	1-10	
● 재무제표 통합절차	4-6	116			
●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방법	7-11	118			
● 국가 재무제표 작성방법	12-16	122			
● 공시	17	127			
● 부칙		127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통합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관서 재무제표"란 중앙관서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2) "국가 재무제표"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3) "내부거래"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III 재무제표 통합절차

4.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1)**
실무해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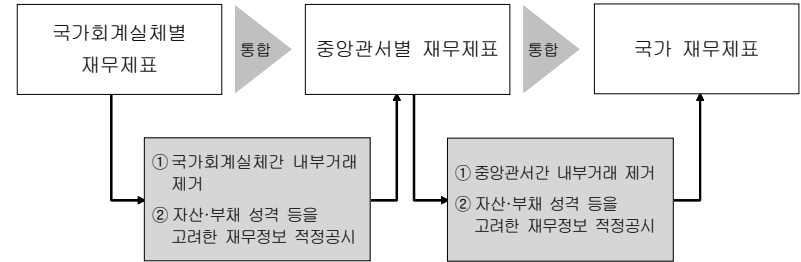
5. (재무제표의 합산과 내부거래 제거 등) (1)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2)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3) 국가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는 국고금회계의 통합,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국제징수활동표의 국제수익 조정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1)~(2), 2**
실무해설 1~2

실무해설1. (☞ **관련문단 4~6**) 재무제표의 통합절차



실무해설2. (☞ **관련문단 5**) 국가회계실체 간 또는 중앙관서 간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비용 및 상호 보유한 채권·채무를 제거하는 이유는 수익·비용의 중복 표시 및 자산·부채의 과대 표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단제정근거1. '재무제표 통합'의 목적은 국회, 정책결정자,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중앙관서 또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보이용자들은 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의 개별적인 재정상태나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중앙관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다.

'재무제표 통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 (1) (☞ **관련문단 4~5**) 해당 중앙관서 및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 및

6. (재무정보 공시방법 결정)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3)
실무해설 1

재정운영 내역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국가 재무제표는 개별 국가회계실체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한 재무제표이므로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 내역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 (2) (☞ 관련문단 5, 7, 12) 통합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회계실체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손익거래를 제거함으로써 자산 또는 부채의 과대 표시 및 수익 또는 비용의 중복 표시를 방지할 수 있다.
- (3) (☞ 관련문단 6) 자산 및 부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등 적절한 공시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재정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5) 합산은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동일한 계정과목별로 모아 합친 것이고, 통합은 합산한 재무제표에서 채권·채무 및 손익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의 합산된 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재무제표의 통합'이라 한다. 즉, 재무제표의 통합은 재무제표의 단순합산과 차이가 있으며 합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III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방법

7. (자산·부채의 내부거래 제거) (1)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간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제거한다.
- (2) 상호간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유·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2)
적용사례 1
8. (자기국채(공채) 대체)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은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함으로써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시킨다.
-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3
적용사례 2

적용사례1. (☞ 관련문단 7)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채권·채무 상계제거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전대차관 1천만원을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으며,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AA부처 일반회계>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	대) 정 부 내 차 입 금 - 전 대 차 관	10,0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차) 전 대 차 관 대 여 금	10,000,000	대) 해 외 차 입 금	10,000,000
<기말 내부거래 제거>			
차) 정 부 내 차 입 금 - 전 대 차 관	10,000,000	대) 전 대 차 관 대 여 금	10,000,000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8, 13) "국채"는 자기국채를 차감한 순액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다만, 중앙관서 또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적정 정보 제공을 위해 국채의 발행총액과 자기국채 보유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기국채를 국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9. (수익·비용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

적용사례2. (☞ 관련문단 8)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국채 발행 및 취득 관련 채권·채무 상계제거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가 20x0년에 발행한 국채 100,000원(액면발행, 5년만기)을 국채시장에서 동 부처 bb기금이 20X3년에 70,000원에 취득한 경우(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으며, 국고금 회계처리하는 생략함)

2. 회계처리

<AA부처 일반회계_20X0년 최초 발행 시>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 대) 국 채 100,000

<AA부처 bb기금_20X3년 국채 취득 시>

차) 투 자 증 권 - 채 무 증 권 70,000 대)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70,000

<당기말 내부거래제거>

차) 자 기 국 채 70,000 대) 투 자 증 권 - 채 무 증 권 70,000

적용사례3. (☞ 관련문단 9)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이자수익·비용의 제거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가 동 부처 aa기금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경우 대여/차입 및 상환/회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으며, 국고금 회계처리하는 생략함)

2. 회계처리

AA부처 일반회계		AA부처 aa기금	
<대여 시>		<차입 시>	
차) 정부내예탁금	100,00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정부내예수금	100,000,000

10.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이전수익"과 "기타이전비용"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4~5

<이자수익 수취 시>		<이자비용 상환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차)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5,000,000
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5,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기말 내부거래 제거>			
차) 정 부 내 예 수 금	100,000,000	대) 정 부 내 예 탁 금	100,000,000
차)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5,000,000	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5,000,000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0)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의 내부거래 제거(전입·전출금)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동 부처 aa기금으로 전출금이 발생하는 경우(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거래	AA부처 일반회계	AA부처 aa기금
전입/ 전출	<전출금 지출 시>	<전입금 수령 시>
	차) 기 타 이 전 비 용 (기 금 전 출 금) ^(*) 5,00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대) 기 타 이 전 수 익 (일반회계전입금) ^(*) 5,000,000
	(*)순자산변동표 표시	(*)재정운영표 표시
내부 거래 제거	차) 기 타 이 전 수 익 (일 반 회 계 전 입 금) 5,000,000	대) 기 타 이 전 비 용 (기 금 전 출 금) 5,000,000

11.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 중앙관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항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 (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및 수익·비용은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적정한 재무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
- (2) 세입·세출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이러한 예수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예수금에

적용사례5. (☞ 관련문단 10)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의 내부거래 제거(출연금)

회계처리

AA부처 aa기금에서 동 부처 bb기금으로 출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	AA부처 aa기금	AA부처 bb기금
전입/전출	<출연금 지출 시> 차) 기 타 이 전 비 용 (기 금 전 출 금) (*) 5,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재정운영표 표시	<출연금 수령 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대) 기 타 이 전 수 익 (기 금 전 입 금) (*) 5,000,000 (*)재정운영표 표시
내부거래 제거	차) 기 타 이 전 수 익 (기 금 전 입 금) 5,000,000	대) 기 타 이 전 비 용 (기 금 전 출 금) 5,000,000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11)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은 실질적으로 예금가입자와 보험계약자의 자산으로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할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해당 예금가입자와 보험계약자에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자산 및 그와 관련된 부채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가 속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타인소유 자산·부채로 인해 해당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자산·부채가 과대표시 되어 중앙관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 등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국가 재무제표에도 적정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성과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한 이자비용 등은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과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 (3) 만약, 우체국예금이 구분경리 되지 않아 우체국예금(부채)에 대해 운용자산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구분경리 시까지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동일한 금액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
적용사례 6

다만,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수익·비용은 국가회계 실체에 귀속되지 않고 고객에게 배당되며 보험충당부채 전입(보험비용) 등으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세입·세출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 관련 수익·비용은 실제 예수금 운용에 따른 수익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와 국가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되, 별도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1, 17)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시 사례

공시 사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우 고객예수금 관련 부채는 예수부채 등 총 〇〇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은 순자산조정 〇〇백만원입니다. 이와 대응되는 자산은 금융상품 〇〇백만원, 투자증권 〇〇백만원 및 미수채권 등을 포함하여 총 〇〇백만원입니다.
한편, 세입·세출 내 거래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고객예수금 운용에 따른 손익은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으로 〇〇백만원을,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〇〇백만원을 재정운영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경우 책임준비금 등 보험적립금 관련 부채는 보험충당부채 〇〇백만원과 파생상품 등 총 〇〇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은 적립금및임여금 등 〇〇백만원입니다. 관련 부채에 대응되는 자산은 투자증권 〇〇백만원 등 총 〇〇백만원입니다.
보험적립금과 관련 세입·세출 외로 관리되는 수익과 비용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각각 〇〇백만원과 〇〇백만원입니다.

III 국가 재무제표 작성방법

12. (내부거래의 제거) (1)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통해 상호 발생한 채권·채무, 수익·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제거한다.
- (2) 상호간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유·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2)

13. (자기국채(공채) 대체) 중앙관서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다른 중앙관서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은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함으로써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시킨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3**
실무해설 3

14. (국고금회계의 통합)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국고금회계의 통합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 (1)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 (2) 여유자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국고금회계의 손익은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으로 표시한다.
- (3)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과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적용사례 7~8

실무해설3. (☞ **관련문단 13**) AA부 소관 aa기금에서 국채(공채)를 발행하여 BB부 소관의 bb기금이 보유할 경우 AA부 혹은 BB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자기국채(공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결산보고서(AA+BB) 재무제표에서는 자기국채(공채)에 해당하므로 국채(공채)는 국채(공채)총액에서 자기국채(공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또한, 보유목적이 소각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자금운용 또는 재발행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회계처리 한다.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4**)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국고수입의 내부거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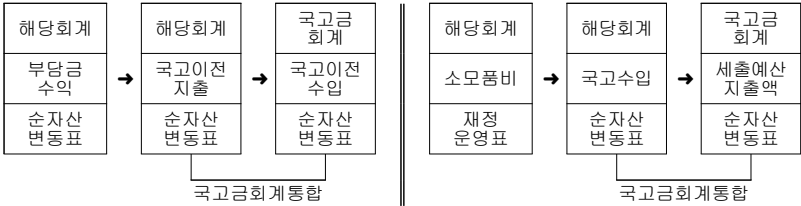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정부산하기관에 1억원을 대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2. 회계처리	
<AA부처 일반회계>	
차) 일 반 용 자 금	100,000,000 대) 국 고 수 입 100,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1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기말 내부거래 제거>	
차) 국 고 수 입	100,000,000 대) 세 출 예 산 지 출 액 100,000,000

적용사례8. (☞ **관련문단 14**)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국고이전지출의 내부거래 제거

1. 배경정보	
국세청은 00씨로부터 소득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 받았다.	

2. 회계처리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5,000,000	대) 소 득 세 수 익	5,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5,000,000	
<기말 내부거래 제거>				
차) 국 고 이 전 수 입	5,000,000	대) 국 고 이 전 지 출	5,000,000	

실무해설4. (☞ 관련문단 14) 국고금회계 통합절차



15.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1)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순 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 (2)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 ☞ 관련부록 적용사례 9

적용사례9. (☞ 관련문단 15)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1. 배경정보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재원의 조달거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
부담금수익	100
변상금수익	200
위약금수익	100
가산금수익	300
벌금수익	400
몰수금및추징금수익	200

16.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국고 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하는 국고금회계 통합절차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5
실무해설 5
적용사례 10

2. 회계처리

- 국가 기말 시 -

동일계정과목을 차변과 대변에 기재하는 것이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된 재원조달거래를 국가 재정운영표상 반영하기 위해 비교환수익을 대체시키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차) 부담금수익(순자산변동표)	100	대) 부담금수익(재정운영표) ^(*)	100
변상금수익(순자산변동표)	200	변상금수익(재정운영표) ^(*)	200
위약금수익(순자산변동표)	100	위약금수익(재정운영표) ^(*)	100
가산금수익(순자산변동표)	300	가산금수익(재정운영표) ^(*)	300
벌금수익(순자산변동표)	400	벌금수익(재정운영표) ^(*)	400
물수금및추징금수익(순자산변동표)	200	물수금및추징금수익(재정운영표) ^(*)	200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항목에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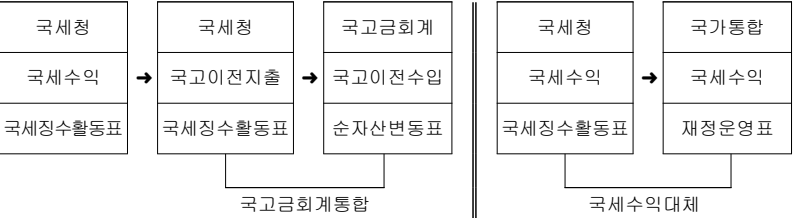
문단제정근거5. (☞ [관련문단 16](#))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 세금(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세금(국고이전지출)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국(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만 작성하는 것으로, 주석으로 공시한다.

납세자가 국(관)세를 국고금수납대리점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국(관)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활동표에 해당세목의 "국세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국고로 이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국고금회계에서는 이를 받아 현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과되지 되는 국(관)세의 경우에는 부과지 시점에 "국세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미수국세"를 계상하였다가 납부시점에 "미수국세"의 회수 처리를 한 후 국고

로 이전되는 수납액을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한다.

국세징수활동표상의 수익은 국(관)세청, 기획재정부 해당 회계의 수익이 아니므로 재정운영표가 아닌 국세징수활동표(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 표시된다. 그러나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국세수익"은 국가결산보고서의 관점에서는 국가재정의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각 중앙관서의 경우와 같이 예산배정의 절차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16) 국세징수활동표 통합절차



적용사례10. (☞ 관련문단 16)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국세수익 계정대체분개

1. 배경정보
국고금회계 통합 이후 남은 국세징수활동표상의 국세수익을 재정운영표에 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체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회계처리
- 계정대체분개 -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을 재정운영표상 국세수익으로 계정대체하는 분개
차) 국 세 수 익 (국 세 징 수 활 동 표) xxx 대) 국 세 수 익 (재 정 운 영 표) xxx

III 공시

17. (주석사항)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와 같이 재무제표 통합 시 공시방법의 결정에 따라 개별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와 공시방법이 상이해진 내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관련부록 적용사례 6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4.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131	● 특수한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48-53	165
● 적용범위	2	131	○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48-49	165
● 용어의 정의	3	131	○ CPS차관	50	168
●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구분	4-16	133	○ 물가연동국채	51	169
○ 금융자산의 구분	4-11	133	○ 변동금리부국채	52	170
○ 차입부채의 구분	12-16	141	○ Strips채권	53	171
●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17-34	148	● 표시	54-55	171
○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17-20	148	● 공시	56-57	172
○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21-27	151	● 부칙		172
○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28-33	155			
○ 금융자산의 제거	34	160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6	
● 차입부채의 회계처리	35-47	161	부록 2. 적용사례	1-40	
○ 차입부채의 최초 인식	35-38	161	부록 3. 실무해설	1-52	
○ 차입부채의 인식 후 평가	39-44	162			
○ 차입부채의 제거	45-47	164			

III 목 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에 적용한다.
 - (1) 국고금의 수납·지출, 여유자금운용 등에 따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금(「융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3) 금융리스부채(「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 (2) "차입부채"란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를 말한다.
 - (3) "취득원가"란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5\)](#)) 미래에 얻게 될 부는 명목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회비용인 시간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표면상으로 동일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부와 현재부의 가치는 달라진다. 현재가치란 이러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개념으로 미래의 명목가액을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한 가치를 의미한다.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시장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말한다.
- (5) "현재가치"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개념으로 특정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명목가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한 가치를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 (6)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 (7)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상각후취득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 (8) "상각후취득원가"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 (9) "회수가능가액"이란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실무해설2. (☞ 관련문단 3. (5)) 이자의 발생 형태는 단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단리는 매년 동일한 이자가 발생하는 형태이며,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과 합쳐져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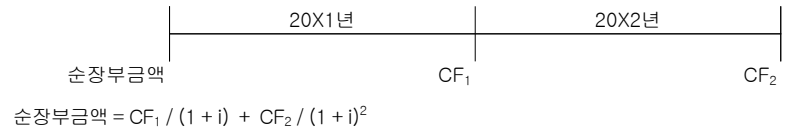
단리의 경우 원리금 합계 = $P + P \times i \times n$

복리의 경우 원리금 합계 = $P \times (1+i)^n$

P : 원금 i : 이자율 n : 기간

일반적으로 현재가치 평가대상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계산방식은 주로 복리 이자계산 방식이다. 복리계산에서 미래가치는 현재가치에 $(1+i)^n$ 을 곱해야 하며, 반대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래가치를 $(1+i)^n$ 으로 나누어야 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3. (6)) 이 지침에서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차입부채)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그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산정된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3. (7)~(8))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기 계상되는 이자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매기 계상되는 이자 = 해당 기간의 채권·채무의 기초잔액 × 유효이자율

이와 같이 유효이자율법이란 해당 기간의 이자를 매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유효이자(실질이자)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매기 적용되는 이자율이 동일하나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매 회계기간의 채권·채무의 기초잔액을 산출하여야 이자를 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와 채권·채무의 변동 관계를 반영하여 매기 이자를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위의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이 상각후취득원가이다.

III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구분

II 금융자산의 구분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5**
적용사례 1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4**) 금융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국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당해 국채의 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국채/단기’로 계상하며, 기중에 실행한 일반용자금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후에 도래한다면 ‘일반용자금/장기’로 계상한다.

취득 당시 장기의 금융자산으로 구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금융자산의 만기일 또는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 대체를 통해 단기의 금융자산 계정과목으로 계상한다.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금"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10
적용사례 2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4.]

관련규정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3(정의)

실무해설6. (☞ 관련문단 5) 현금및현금성자산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는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

6.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 (2) "금융상품"은 상품 종류에 따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의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8, 10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된다.

- (1) 현금은 통화(지폐나 주화 등)와 통화대용증권을 말한다. 통화대용증권은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기일도래 공사채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등을 의미한다. 다만, 타인발행차용증서, 수입인지, 부도어음, 부도수표 등은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MMF 포함),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3개월 이내의 환매하는 조건의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의미한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6) 기타 정형화된 상품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구좌 또는 자산관리계좌(CMA),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 특정금전신탁, (지역발전)예탁금, CDMA 등이 있다.

실무해설8. (☞ 관련문단 6) 금융상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금융상품	정기예금/단기	
			정기예금/장기	
			정기적금/단기	
			정기적금/장기	
			기타의금융상품/단기	
			기타의금융상품/장기	

7. (투자증권) (1) 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 (2) 투자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국세물납증권으로 구분한다.
- (가) 국세물납증권이란 국세 물납을 통해 취득한 투자증권을 말한다.
- (나)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투자증권으로서 국세물납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로 구분한다.
- (다) 지분증권이란 주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투자증권으로서 국세물납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주식과 기타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9~10
8. (정부출자금) (1) 정부출자금은 법령·정책적 목적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증권을 말한다.
- (2) 정부출자금은 출자 대상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출자금과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으로 구분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실무해설9. (☞ 관련문단 7~8) 투자증권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투자증권	지분증권	주식/단기
				주식/장기
				기타지분증권/단기
				기타지분증권/장기
			채무증권	국채/단기
				국채/장기
				공채/단기
				공채/장기
				지방채/단기
				지방채/장기
				회사채/단기
				회사채/장기
			국세물납증권	주식/국세물납증권단기
				주식/국세물납증권장기
				기타지분증권/국세물납증권단기
				기타지분증권/국세물납증권장기
				국채/국세물납증권단기
				국채/국세물납증권장기
				공채/국세물납증권단기
				공채/국세물납증권장기
				지방채/국세물납증권단기
				지방채/국세물납증권장기
				회사채/국세물납증권단기
				회사채/국세물납증권장기
		정부출자금	정부출자기업출자금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5~7)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금융상품	투자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MMDA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조건부채권(RP)		○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표지어음		○		
MMT		○		
특정금전신탁		○		
(지역발전) 예탁금		○		
어음관리구좌(CMA)		○		
CDMA		○		
국채			○	
공채			○	
지방채			○	
회사채			○	
장기사모채권투자신탁				○
MMF				○
ELS				○
ELF				○
ELD				○
ETF				○
연기금풀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2			○	○
신종자본증권				○

*1)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은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다.

*2)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사가 운용하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특정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이 때 투자일임계약자산이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야 한다.

- ① 단순한 위탁투자지침 제공 여부가 운용지시가 아니라 각 계약별로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운용지침서상에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수행하는지 여부
- ② 투자자가 위탁투자지침의 내용이나 운용지시를 통해 운영사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③ 투자자가 위탁투자지침상에서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가격, 매매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운영사에게 지시하여 운영사의 투자판단 시 재량권이 현저히 낮은 경우

9.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2) "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9) 미수채권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국세	미수국세/단기
				미수국세/장기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장기

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부담금수익	미수부담금수익/단기
				미수부담금수익/장기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단기
				미수제재금수익/장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장기
			미수연금수익	미수연금수익/단기
				미수연금수익/장기
			미수이자수익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단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장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단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장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단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장기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
				미수기타이자수익/장기
			미수보험수익	미수보험수익/단기
				미수보험수익/장기
			미수보증수익	미수보증수익/단기
				미수보증수익/장기
			미수기타수익	미수기타수익/단기
				미수기타수익/장기
			기타의미수금	기타의미수금/단기
				기타의미수금/장기

10. (대여금) (1) 대여금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2) "대여금"은 자금의 대여 목적 등에 따라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 "전대차관대여금" 및 "정부내예탁금"으로 구분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적용사례 3
11. (기타금융자산) 기타의 금융자산은 문단5부터 문단10의 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KIC위탁운용자산", "파생상품자산", "조달사업회전자금", "구상채권", "지급보증금", "신탁사업수익권", "투자회원권", "대지금급" 등을 말한다.
- (1) "KIC위탁운용자산"은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의미한다.
- (2) "파생상품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를 의미한다.
-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10) 대여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대여금	일반용자금	일반용자금/단기
				일반용자금/장기
			저리용자금	저리용자금/단기
				저리용자금/장기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단기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장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단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장기
			정부내예탁금/단기	
			정부내예탁금/장기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11) 기타금융자산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KIC위탁운용자산	
			파생상품자산/단기	
			파생상품자산/장기	
			조달사업회전자금	
			구상채권	구상채권/단기
				구상채권/장기
			지급보증금	임차보증금-국유/단기
				임차보증금-국유/장기
				임차보증금-채권/단기
				임차보증금-채권/장기
				임차보증금-일반/단기
				임차보증금-일반/장기
				전신전화가입권
				기타지급보증금/단기
				기타지급보증금/장기

(다) 미래에 결제된다.

- (3) "조달사업회전자금"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조달특별회계가 사업 운영을 위해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하는 자금을 말한다.
- (4) "구상채권"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구채권을 말한다.
- (5) "지급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해 예치하는 담보 성격의 지급액으로서 보증금의 유형에 따라 "임차보증금", "전신회화가입권", "기타지급보증금"으로 구분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자산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구분한다.
- (6) "신탁사업수익권"은 부동산 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설정한 수익권을 말한다.
- (7) "투자회원권"은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원제 체육·휴양시설 등의 회원권을 말한다.
- (8) "대지급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3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신탁사업수익권	
			투자회원권	
			대지급금/단기	
			대지급금/장기	
			기타의기타금융자산/단기	
			기타의기타금융자산/장기	

II 차입부채의 구분

1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기타차입부채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4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12) 차입부채는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국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당해 국채의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국채/단기’로 계상하며, 기중에 도입한 전대차관의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후에 도래한다면 ‘전대차관/장기’로 계상한다.

13. (국채) 국채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5**

장기의 차입부채로 구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차입부채의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 대체를 통해 단기의 차입부채 계정과목(예: 전대차관/유동성장기)으로 계상한다.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13**) 국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국채	국채/단기	
			국채/유동성단기	
			국채/장기	
			재정증권	
			국채할인발행차금/단기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국채할증발행차금/단기	
			국채할증발행차금/유동성장기	
			국채할증발행차금/장기	
			자기국채/단기	
			자기국채/유동성장기	
			자기국채/장기	

현재는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행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 (1) 국고채권은 각 기금 및 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1998년 9월 기존의 "국채관리기금채권"의 명칭이 "국고채권"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현재 한국의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채권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지표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 (2)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 1년 이내의 할인채로 발행된다.

14. (차입금) (1) 차입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말한다.

(2) 차입금은 "국내차입금", "정부내차입금",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6](#)
[적용사례 3](#)

- (3)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의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한국의 경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재까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해외 채권시장에서 발행되었으며, 외화표시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 (4)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주택도시보증법」에 의해 참가소화 방식으로 발행된다. 과거 국민주택채권은 의무취득자, 취득사유 등에 따라 제1종~3종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다.

실무해설16. (☞ [관련문단 14](#)) 차입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차입금	국내차입금	국내차입금/단기
				국내차입금/유동성장기
				국내차입금/장기
			정부내차입금	전대차관/단기
				전대차관/유동성장기
				전대차관/장기
				정부내예수금/단기
				정부내예수금/유동성장기
				정부내예수금/장기
			해외차입금	해외차입금/단기
				해외차입금/유동성장기
				해외차입금/장기

15.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연도에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었으나 그 대가가 미지급된 부분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7~19
적용사례 4~5

실무해설17. (☞ 관련문단 15)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국고채무부담행위액/단기	
			국고채무부담행위액/장기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실무해설18. (☞ 관련문단 15)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이 중 국채와 차입금 등의 법적채무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도 부채로 처리하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실무해설19. (☞ 관련문단 15)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연도에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었으나 그 대가가 미지급된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채무의 한 종류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하게 된다. 즉,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으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예산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발생주의 회계의 관점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지급금과 유사하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 시)가 이루어진 시점에도 채무로 인식하는 반면, 미지급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기성이 완료되었지만 대가가 미지출되거나 또는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인식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채무로 기록하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에서는 채무의 일종으로 보지만, 발생주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채무의 확정행위가 없어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실무해설20. (☞ 관련문단 16) 기타차입부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공채	공채/단기
				공채/유동성장기
				공채/장기
				공채할인발행차금/단기
				공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공채할인발행차금/장기
				공채할증발행차금/단기
				공채할증발행차금/유동성장기
				공채할증발행차금/장기
				자기공채/단기
				자기공채/유동성장기
				자기공채/장기

16. (기타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는 문단13부터 문단15의 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파생상품부채", "금융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 (1) "공채"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중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2) "미지급금"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한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부채를 말한다.
- (3) "미지급비용"은 기간경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4) "예수금"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받았다가 돌려줄 선금이나 보증금을 말한다.
- (5) "파생상품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부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의무를 의미한다.
-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 미래에 결제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0 적용사례 6~7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BTL임대료미지급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금/장기
					사회보험미지급금/단기
					사회보험미지급금/장기
					보험미지급금/단기
					보험미지급금/장기
					보증미지급금/단기
					보증미지급금/장기
					연금미지급금/단기
					연금미지급금/장기
					퇴직수당미지급금/단기
					퇴직수당미지급금/장기
					기타의미지급금/단기
					기타의미지급금/장기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비용/단기
					미지급이자비용/장기
					미지급법인세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기타의미지급비용/장기
				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부가세예수금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예수금	임대보증금/단기
				임대보증금/장기
				기타의예수금/단기
				기타의예수금/유동성장기
				기타의예수금/장기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단기
				파생상품부채/장기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금융리스부채/장기	
			기타의기타차입부채/단기	
			기타의기타차입부채/유동성장기	
			기타의기타차입부채/장기	

기타차입부채로 인식하는 공채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 있으며 발행주체와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발행근거법	발행주체	부담주체
중소기업진흥채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III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II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17. (인식기준) (1) 금융자산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2) 금융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8. (투자증권의 취득원가) (1)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가) 지분증권의 매입가액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 (나)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의 시장가격을 지분증권의 매입가액으로 한다.
- (다) (가)와 (나)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 또는 취득한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매입가액으로 한다.
- (2) 채무증권의 취득원가는 (1)에 따라 산정하되,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직전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를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21
- (3) 국세물납증권은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10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수익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9. (정부출자금의 취득원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실무해설21. (☞ 관련문단 18. (2)) 이자지급일에 채무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수령하는 약정이자 중에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전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를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다.

20. (미수채권 등의 취득원가)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대여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미수채권 중 "미수국세", 대여금 중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 (2) (1)에 따른 현재가치는 해당 금융자산으로 미래에 받을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3) (1)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
- (4) (1)에서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
- (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명목가액의 30%를 초과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3
실무해설 22~24
적용사례 8~9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20. (1)) 미수채권 중 "미수국세"의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되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은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명목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대여금 중 "전대차관대여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차관을 도입하여 대여함에 따라 차관도입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환율변동 등을 모두 전대차주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치 평가 회계처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정부내예탁금"의 경우는 내부거래제거로 상계 제거되어 국가의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현재가치 평가 회계처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20) 국가회계실체가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현재가치로 평가된 채권과 채무를 명목가액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인식하여 일정기간의 재정운영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일정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20. (4), 38. (4))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의 성격(질적 기준)과 금액의 크기(양적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데, 질적 요소의 고려 등 판단이 필요하므로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치 평가의 경우 실무적인 적용 여부에 공통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무상 편의를 위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실무해설22. (☞ 관련문단 20, 38)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 거래, 이와 유사한 거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는 재고 또는 일반유형자산의 매매, 용역의 수수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이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조건의 거래를 의미한다.
- (2) 장기금전대차 거래는 금전대차에 따른 원금의 회수가 1년을 초과하여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 (3) 이와 유사한 거래는 장기연불조건의 거래와 장기금전대차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현금의 유입·유출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래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실무해설23. (☞ 관련문단 20, 38) 미래에 유입·유출될 금액 및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현재가치 평가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산·부채가 현재가치 평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채무로부터의 현금 유입·유출 일정이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실무해설24. (☞ 관련문단 20) 미수채권 등의 현재가치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대여금	일반융자금	일반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일반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채권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부담금수익	미수부담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부담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제재금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재화및 용역제공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연금수익	미수연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연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보험수익	미수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보증수익	미수보증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보증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기타수익	미수기타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기타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의미수금	기타의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II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21.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금융자산은 이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및 MMF 등의 수익증권이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을 재정운영표에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반영한다.
- (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증권(MMF, 채권, 환매채 등)에 포함

실무해설25. (☞ 관련문단 22) 현금및현금성자산 평가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이자수익	금융상품이자수익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기타의기타이자비용

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5
적용사례 10~11

23. (투자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국세물납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권의 공정가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 (3) (2)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가)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사용한다.
- (나)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국세물납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하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장가격을 산정한다.
- 1) 재정상태표일과 해당 투자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사용한다.
 - 2)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실무해설26. (☞ 관련문단 23) 투자증권 평가 및 이익분배금 수취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변동	조정항목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증권평가이익	
			투자증권평가손실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처분이익	투자증권처분이익	

실무해설27. (☞ 관련문단 23) 기타금융자산 중 KIC위탁운용자산은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해 높은 자산운용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자산으로, 문단23에 따른 투자증권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하여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6~27
적용사례 12~15

24. (정부출자금의 인식 후 평가) 정부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8

25. (미수채권 등의 인식 후 평가) 미수채권, 대여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26. (파생상품의 인식 후 평가) (1)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2)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9~30

실무해설28. (☞ 관련문단 24) 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출자금은 국가회계실체가 현금 또는 현물 등 유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만 발생(증가)하므로 피투자기관에 100% 출자한 경우라도 피투자기관의 자본금과 다를 수 있다. 피투자기관의 자본전입 등(예: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회계실체의 출자금은 증가되지 않는다.

실무해설29. (☞ 관련문단 26)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구 분		재무제표	비고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으로 처리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27. (외화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3)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4) (1)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자산평가손실" 또는 "외화자산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5)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조정항목에 반영한다. 그러나, 비화폐성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6) 화폐성 외화자산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은 해당 자산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실무해설30. (※ 관련문단 26) 파생상품 평가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변동	조정항목	기타순자산의증감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자산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실무해설31. (※ 관련문단 27, 42) 기준환율이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오전 8시 30분 1회 공시)을 말한다.

실무해설32. (※ 관련문단 27) 외화자산 평가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평가이익	외화자산평가이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자산평가손실	외화자산평가손실	

실무해설33. (※ 관련문단 27) 다음과 같이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보고기간 말의 장부가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구 분	장부가액
재고자산	MIN(①취득원가, ②순실현가능가치)
감액사유가 발생한 자산	MIN(①장부가액, ②회수가능가액)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7)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 유동성대체되는 경우 외화 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에 유동성대체를 수행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1~33
적용사례 16~18

II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28. (금융자산의 감액) 금융자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
실무해설 34

29. (금융자산 감액의 회복) 감액한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금융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4

비교 금액	환산 환율
① 취득원가, 장부가액	취득원가나 장부가액이 결정된 날의 기준환율* * 예)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기준환율
② 순실현가능가치, 회수가능가액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가액이 결정된 날의 기준환율* * 예) 보고기간 말의 기준환율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28)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미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므로 추가적인 감액손실 인식이 불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자산에는 문단22.(1)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문단26에 따른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실무해설34. (☞ 관련문단 28~29) 금융자산의 감액 및 회복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감액손실	금융상품감액손실
				투자증권감액손실
				정부출자금감액손실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무형자산감액손실
				기타자산감액손실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감액손실환입	금융상품감액손실환입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정부출자금감액손실환입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30. (투자증권의 감액과 회복) 투자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문단23.(2)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투자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투자증권의 경우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투자증권의 경우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국세물납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실무해설35. (※ 관련문단 30~32) 투자증권과 정부출자금, KIC위탁운용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그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증지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이후 감액손실이 환입되어 그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 인식되었을 상각후취득원가까지 회복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 관련문단 32

☞ 관련부록 실무해설 35

☞ 적용사례 19~20

31. (정부출자금의 감액과 회복) 정부출자금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정부출자금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2) 정부출자금의 경우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5

32. (KIC위탁운용자산의 감액과 회복) 기타금융자산 중 KIC위탁운용자산의 감액은 문단30을 준용한다.

☞ 관련문단 30

☞ 관련부록 실무해설 35

33. (미수채권 및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과 대여금은 기말 잔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 (1) 기말 미수채권과 대여금 잔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 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해설36. (☞ 관련문단 33. (1)) 문단 33. (1). (다)의 대손실적률법의 예로는 채권에 대한 과거 3년간 평균 결손율을 대손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1) 대손율 = (과거 3년간 채권의 결손 처분액 ÷ 과거 3년간 채권 기말잔액) × 100

(2) 대손상각비 = (대손율 × 미수채권 잔액(다음연도이월액)) - 결산조정분개전 대손충당금 잔액

(가)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나)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다)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6

(2)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채권 또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7
적용사례 21

실무해설37. (☞ 관련문단 33)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국세	미수국세대손충당금/단기 미수국세대손충당금/장기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부담금수익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연금수익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이자수익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기타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기타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장기
				기타의미수금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단기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장기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구상채권	구상채권대손충당금/단기
				구상채권대손충당금/장기
		대여금	일반용자금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단기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장기
			전대차관대여금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단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장기
비용	국가운영 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대손상각비	미수국세대손상각비
				전대차관대여금대손상각비
				일반용자금대손상각비
				구상채권대손상각비
				미수재화및용역수익대손상각비
				미수제재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부담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연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이자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증수익대손상각비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기타수익대손상각비
				기타의미수금대손상각비
수익	국가운영 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미수국세대손충당금환입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환입
				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환입
				구상채권대손충당금환입
				미수재화및용역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 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환입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환입

II 금융자산의 제거

3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은 문단17에 따른 금융자산의 인식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8~39
적용사례 22~23

실무해설38. (☞ 관련문단 34)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미수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39. (☞ 관련문단 34)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임차보증금은 세입처리여부와 관계없이 회수 시 관련 자산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회수 시 세입처리 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관리하다가 타 임차계약 시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회수 시 세입처리할 경우 현실적으로 예산수립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세입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 회수 시 자동분개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적절한 내부절차 및 규정에 따라 회수 및 재계약에 관련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II 차입부채의 회계처리

II 차입부채의 최초 인식

35. (인식기준) (1) 차입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2)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차입부채의 가액은 이 예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36. (국채의 최초 측정) (1)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 (2)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한다.
- (3)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불일치할 경우 매출일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산출한다. 발행일과 매출일 불일치로 매출경과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할인(할증)발행차금에 가산(차감)한다.

$$\text{할인(할증)발행차금} = \text{발행액면금액} - \text{발행대금납입액} + \text{매출경과료}$$

☞ 관련문단 37, 40
 관련부록 실무해설 40
 적용사례 24~28

37. (공채의 최초 측정) 공채의 최초 측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채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 관련문단 36

38. (차입금 등의 최초 측정)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차입금 중 "정부내차입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실무해설40. (☞ 관련문단 36) 국채와 기타차입부채 중 공채는 발행 시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로 인하여 할인 또는 할증 발행하게 되며, 이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할증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구분	이자율	금액
할인발행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액면가액 > 발행가액
액면발행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액면가액 = 발행가액
할증발행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액면가액 < 발행가액

실무해설41. (☞ 관련문단 38) 차입금 등의 최초 측정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차입금	국내차입금	국내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국내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 (2) (1)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차입부채로 인해 미래에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3)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차입부채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한다.
- (4) (1)에서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
- (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명목가액의 30%를 초과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3**
실무해설 22~23, 41
적용사례 29~30

II 차입부채의 인식 후 평가

39. (차입부채의 인식 후 평가) 차입금, 미지급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9~30**

40. (국채의 인식 후 평가) (1)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환입액)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에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할인(할증)발행차금을 매 이자지급일마다 상각(환입)하되, 기중에 국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른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한다. 또한 분할상환이나 조기상환 시에도 상환되는 액면금액과 관련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한다.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차입금	해외차입금	해외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해외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국고채무 부담행위액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의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지급비용	기타의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실무해설42. (☞ **관련문단 40**)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환입) 시 적용되는 기간간 유효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일수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하지만 국채의 경우 액면이자율 산출 시 월수가 적용되므로 월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3) 문단36. (3)에 따라 산정한 할인(할증)발행차금 중 매출일부터 최초이자 지급일까지의 금액은 최초이자지급일 도래 시 상각(환입) 처리하고, 매출경과료를 정산한다.

☞ 관련문단 36. (3), 41
 관련부록 실무해설 42
 적용사례 27~28

41. (공채의 인식 후 평가) 공채의 인식 후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채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 관련문단 40

42. (외화부채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3)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4) (1)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부채평가손실" 또는 "외화부채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5)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조정항목에 반영한다. 그러나,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6)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

실무해설43. (☞ 관련문단 42~44) 외화부채 평가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평가이익	외화부채평가이익
			기타수익	외환차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평가손실	외화부채평가손실
			기타비용	외환차손

화부채는 해당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 (7)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차입부채가 유동성대체되는 경우 외화 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에 유동성대체를 수행한다.

☞ 관련문단 43~44

관련부록 실무해설 31, 43

43. (외화표시 국채) (1) 외화표시 국채의 원금과 이자(미지급이자비용을 포함한다)를 상환할 때 환율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장부금액과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 (2) 외화표시 국채의 이자비용은 (1)의 실제 이자지급액(미지급이자비용을 포함한다)에 직전 평가시점에 적용한 환율로 평가한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환입액)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 (3) 재정상태표일 현재 외화표시 국채의 원금 및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문단42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관련문단 42, 44

관련부록 실무해설 43

적용사례 31

44. (외화표시 공채) 외화표시 공채의 회계처리는 문단43을 준용한다.

☞ 관련문단 42, 43

관련부록 실무해설 43

II 차입부채의 제거

45. (차입부채의 제거) 차입부채(또는 차입부채의 일부)는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46. (국채의 조기상환) 국채를 발행한 기관이 국채를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경우 국채의 장부가액이 국채의 상환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채무상환손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47
 관련부록 실무해설 44
 적용사례 32

47. (공채의 조기상환) 공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문단46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관련문단 46
 관련부록 실무해설 44

III 특수한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II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48.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1) 전대차관은 정부와 실 수요자가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결제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는 외화자금을 말한다.

(2) 전대차관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차주의 차입시점에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인식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으로부터 전대차관을 차입한 국가회계실체는 "전대차관"으로 인식한다.

(3) "해외차입금" 및 "전대차관대여금"의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은 실질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5
 실무해설 45~47
 적용사례 33

실무해설44. (☞ 관련문단 46~47) 국채와 공채의 조기상환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수익	채무상환이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비용	채무상환손실

문단제정근거5. (☞ 관련문단 48) 전대차관의 경우 도입 시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에게 직접 자금이 이전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에 반영되지 않으나, 상환 시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차관선에게 상환하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에 반영된다. 따라서 예산기록(실제 자금의 흐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1) 전대차관 상환에 대한 1차적 의무가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에 있음에도 회계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의 전대차관에 대한 의무를 나타낼 수 없다.
- (2) 전대차주가 국가회계실체가 아닐 경우 전대차관 도입액을 회계상 반영할 수 없어 부채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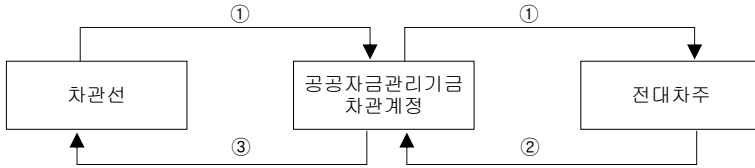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차관을 도입하고 전대차관을 대여하는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실무해설45. (※ 관련문단 48) 전대차관 및 전대차관대여금의 예산편성 체계

```
graph TD; A[차관선] -- ① --> C[전대차주]; C -- ② --> B[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B -- ③ -->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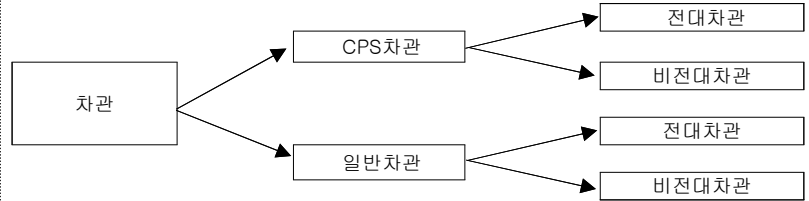
자금흐름	예산	예산편성	비고
① 차관선 → 전대차주	세입	· 해외차입금 -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과 전대차관으로 해외전대처에서 민간 혹은 정부내로 도입되는 차관수입	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가 직접차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됨
② 전대차주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세출 (전대차주)	·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 대한 전대차관 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상환하게 되어 전대차주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됨
	세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 전대차관원금회수 -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 회수금 -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 회수금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 차관선	세출	· 해외차입금 원금의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이 차관선에 상환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의 세출 예산에 편성됨

실무해설46. (☞ 관련문단 48) 전대차관 및 전대차관대여금의 회계처리



자금흐름	회계처리발생자	회계처리	비고
① 차관선 → 전대차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차관도입 시> 차) 전대차관대여금 *** 대) 해외차입금 ***	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가 차관을 수취하는 시점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서 전대차관을 도입하여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다.
	전대차주 (국가회계기준 적용대상일 경우)	<차관도입 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 대) 전대차관 *** (*) 회계/기금별 차이가 있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통칭함	
② 전대차주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전대차주 (국가회계기준 적용 대상일 경우)	<전대차관 상환 시> 차) 전대차관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전대차관대여금 회수 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전대차관대여금 ***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 차관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차관상환 시> 차) 해외차입금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실무해설47. (☞ 관련문단 48) 해외차입금 분류



해외차입금은 환율변동에 의한 원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CPS차관, 일반차관으로 구분하며, 다시 전대차관 여부에 따라 전대차관과 비전대차관으로 구분되므로 일반차관 및 CPS차관 모두 전대차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의 CPS차관, 일반차관, 전대차관, 비전대차관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CPS차관은 차관액이 차관통화의 환율변화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관원금을 PUV(Pool Unit Value)로 고정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차관을 말한다.
- (2) 일반차관은 CPS차관이 아닌 차관으로 차관통화의 환율변화에 따라 차관 원금이 변동하는 차관을 말한다.
- (3) 전대차관은 정부가 차관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체결한 전대계약에 따라 전대차주에게 전대할 조건으로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을 말하며 전대차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 (4) 비전대차관은 차관 중 전대차관이 아닌 차관으로 정부가 전대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직접 사용하는 차관을 의미한다.

49.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의 원화정산)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차관대여금을 회수하는 때에 차관 상환 원화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 (1) 전대차관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된 환율보다 차관 상환 시 적용된 환율이 더 클에 따라 전대차주로부터 향후 회수할 금액은 "미수기타수익"과 "외환차익"으로 인식한다.
- (2) 전대차관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된 환율보다 차관 상환 시 적용된 환율이 더 적음에 따라 전대차주에게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기타의미지급비용"과 "외환차손"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8
적용사례 34

실무해설48. (☞ 관련문단 49) 원화정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에서 일반차관을 도입하여 전대차관대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전대차관대여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환율과 차관을 상환할 때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전대차주와 정산하는 것이다. 원화정산을 하면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은 최종적으로 전대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차관선으로부터 상환일로부터 두 달 정도 앞선 시점에 상환요청서를 수령하고 전대차주에게 한 달 정도 후에 상환요청서를 송부한다. 이 때 차관선으로부터의 상환요청서에는 차관통화 기준 원리금의 상환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대차주에게 발송하는 상환요청서에는 상환요청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상환금액을 요청한다.

상환요청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한 환율과 실제 차관 상환 시에 적용한 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전대차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수취하여야 하는 원화 정산금액은 다음 상환 요청서에 반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게 된다.

실무해설49. (☞ 관련문단 50) CPS차관의 경우 발생하는 원금변동분은 PUV라는 통합 통화 단위로 고정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PUV도 통화의 단위임을 고려할 때 원금변동분 또한 "외환차손익"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시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 상환가액과의 차이 및 기말시점의 PUV 기준 환산에 의한 평가가액은 "외환차손익" 또는 "외화부채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II CPS 차관

50. (CPS 차관의 외화정산) (1) CPS차관은 차관액이 차관통화의 환율변화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관원금을 PUV(Pool Unit Value)로 고정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차관을 말한다.

- (2) CPS차관 형태로 도입한 "해외차입금"의 외화정산을 위한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차관선에 대한 상환시 외화정산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나) 이자비용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PUV의 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실제 미지급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만 환율변동을 인식하여, 이자지급 시점에 PUV를 적용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인식하고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 (다) 차관상환시 실제 적용된 PUV와 원 상환일의 PUV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상환액의 차액을 추가지급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타의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수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타의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 때, 미지급비용 및 미수금의 발생사유는 환율변동으로 보아 상대계정으로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 계정을 사용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9~50
적용사례 35~37

II 물가연동국채

51. (물가연동국채) (1)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 (2) 물가연동국채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 (가) 물가연동국채의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조정액은 매출일, 매 회계연도말 결산일 및 만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에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하며 국채의 장부가액에 반영한다.
- (나) 회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조정액은 국채와 구분하여 물가조정금으로 관리하되 재정상태표에는 국채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실무해설50. (☞ 관련문단 50) 외화정산이란 IBRD 등의 해외CPS 차관선으로부터 상환요청서 수령 시 상환요청서상에 기재된 PUV 기준의 차관통화 환산금액으로 차관을 상환함에 따라 실제 상환시점의 PUV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차관선과 정산하는 것이다.

상환요청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한 환율과 실제 차관상환시에 적용한 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전대차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수취하여야 하는 원화 정산금액은 다음 상환 요청서에 반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게 된다.

문단제정근거6. (☞ 관련문단 51) 매출일의 물가조정금은 국채달러가 부담하는 부분이며 매출일에 대금납부액에 가감·정산되므로 "국채물가연동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해설51. (☞ 관련문단 51) 물가연동국채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수익	국채물가연동이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비용	국채물가연동손실

- (다)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변동액(채권액면과 물가연동원금의 차액)은 물가조정금 계정에 계상한다.
- (라) 물가연동국채 원금은 매 결산일마다 조정하되, 결산일의 물가연동계수로 조정액을 산출하고 "물가조정금"과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마) 직전결산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물가연동원금 변동액을 "물가조정금"과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한다.
- (바) 결산일의 물가연동국채이자 수정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미지급이자비용"과 "국채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text{미지급이자} = \text{액면금액} \times \text{결산일의 물가연동계수} \times \text{금리}/m \times a/b$$

* m:연간이자지급횟수 a:경과일수 b:이자지급기간 일수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6
실무해설 51
적용사례 38

II 변동금리부국채

52. (변동금리부국채) (1) 변동금리부국채는 이자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국채로서 기준금리(예: CD, Libor 등)에 일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매기 지급이자가 변동하게 되는 국채를 말한다.
- (2) 변동금리부국채는 결산기말 가산금리효과를 반영하여 미지급이자금액을 계산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9

II Strips채권

53. (Strips채권) (1) Strips채권(원금이자분리채권)은 원본과 이권 부분을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Strips채권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취득자는 취득시 하나의 채무증권으로 인식하며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를 분리해 매각하는 시점에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의 장부금액과 매각 대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분리 및 재결합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국채에서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를 분리해서 매각한 경우 국채의 장부금액, 순자산조정을 매각시점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나) 발행자는 일반적인 국채 발행 시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52

III 표시

54. (자기국채)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후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채인 자기국채는 발행국채 총액에서 차감한다.

☞ 관련문단 55

관련부록 적용사례 40

실무해설52. (☞ 관련문단 53)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채권)이란 원금과 이표 부분을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채권으로 원금 부분을 구입한 투자자는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액면대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입가격과 액면의 차이를 이자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표 부분도 이자지불 시기가 만기인 무이표채권으로서 이자지불 금액을 할인하여 매매된다.

55. (자기공채)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후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채인 자기공채는 문단54의 자기국채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관련문단 54 III 공시 56. (파생상품 거래 공시) 파생상품 거래는 그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표시한다. 57.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적용사례1. (☞ 관련문단 4) 장기미수채권의 유동성대체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2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미수채화용역수익에 대해 20×1년 기말 결산 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2. 회계처리			
- 20X1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차) 미수채화및용역수익 / 단기	100,000	대) 미수채화및용역수익/장기	100,000
미수채화및용역수익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	8,000	미수채화및용역수익 -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8,000
미수채화및용역수익 - 대손충당금 / 장기	3,000	미수채화및용역수익 - 대손충당금 / 단기	3,000

적용사례2. (☞ 관련문단 5) 현금성자산의 취득

1. 회계처리	
i)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취득당시 계약기간 3개월 이내인 MMF를 매입한 경우 OO부처의 OO일반회계에서 초단기수익증권 1억원을 매입하였다.	
- 취득 시 (국고금세부운용계정) -	
차) 기 타 국 고 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 기말 (국고금세부운용계정) -	
차)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100,000,000
대) 기 타 국 고 금	100,000,000
ii) 중앙관서 장이 관리하는 기금에서 취득당시 계약기간 3개월 이내인 MMF를 매입한 경우 OO부처의 OO기금에서 초단기수익증권 1억원을 매입하였다.(한국은행 예입 보통예금으로 매입함을 가정함)	
차) 기 타 국 고 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적용사례3. (☞ 관련문단 10, 14) 정부내예탁금 및 정부내예수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 BB회계는 CC부처 DD회계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차입 및 상환/회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회계처리		
거래	AA부처 BB회계	CC부처 DD회계
대여/차입	<대여 시> 차) 정부내예탁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차입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정부내예수금 100,000,000
	<회수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정부내예탁금 100,000,000	<상환 시> 차) 정부내예수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이자수취/지급시	<이자수익 수취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대) 정부내예탁금 5,000,000 이자수익	<이자비용 상환 시> 차) 정부내예수금 5,000,000 이자비용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5)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자산취득(1)

1. 배경정보	
국방부는 병영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2009회계연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 50억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A 건설업자와 병영시설 건설공사 계약(계약총액 40억, 계약기간 ‘10.12.31’)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수하였다. 2009년 말 20억에 대한 기성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2월 28일 대금을 지급하였다.	
발생주의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처리할 때 예산과는 별도로 실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연도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으로 부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회계처리

-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승인 시-
- 회계처리 없음
- 계약체결시-
- 회계처리 없음
- 2009년 12월 31일 (계약이행분)-
- 차) 건 설 중 인 자 산 2,000,000,000 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2,000,000,000
- 2010년 대금지급 시-
- 차) 국고채무부담행위액 2,0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2,000,000,000

※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연도	전기말 현재액	한도	채무행위액	상환 및 소멸액	계
2009회계연도	-	50억	40억	-	40억
2010회계연도	40억	-	-	20억	20억

2. 회계처리

- 2007년 6월 30일 (계약체결 시)-
- 회계처리 없음
- 2007년 12월 31일 (계약이행분 국고채무부담행위 결산)-
- 차) 건 설 중 인 자 산 3,000,000,000 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3,000,000,000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6)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가는 민간에게 20X1년 7월 1일에 토지를 임차하고 1년 임차료에 대하여 20X2년 6월 30일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회계처리

- 20X1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 차) 토 지 임 차 료^(*) 5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50,000
- (*) 100,000원(1년 임차료) × 6월/12월 = 50,000원
- 20X2년 6월 30일 미지급비용 지출 시 -
- 차) 토 지 임 차 료^(*) 5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
-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50,000
- (*) 100,000원(1년 임차료) × 6월/12월 = 50,000원

적용사례5. (☞ 관련문단 15)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자산취득(2)

1. 배경정보

2007년 이후 향후 3년간에 걸쳐 연간 30억씩 부담하여 ‘재외공관청사의 매입비’를 지출할 것을 국회의 승인을 득하고 실제 2007년 6월 30일 재외공관청사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12월 31일 30억에 대한 기성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7년 6월 30일 계약체결시 90억원의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을 반영했다.

발생주의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처리할 때 예산과는 별도로 실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연도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으로 부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6) 장기미지급비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가는 민간에게 20X1년 7월 1일에 토지를 임차하고 2년 임차료에 대하여 20X3년 6월 30일에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회계처리

- 20X1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차) 토 지 임 차 료^(*1) 5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장기 50,000

(*1) 200,000원(2년 임차료) X 6월/24월 = 50,000원

- 20X2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차) 토 지 임 차 료^(*1) 10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장기 100,000

(*1) 200,000원(2년 임차료) X 12월/24월 = 100,000원

차) 기타의미지급비용/장기 15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150,000

(*) 유동성대체 분개

- 20X2년 6월 30일 미지급비용 지출 시 -

차) 토 지 임 차 료^(*1) 5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200,000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150,000

(*1) 200,000원(2년 임차료) X 6월/24월 = 50,000원

적용사례8. (☞ 관련문단 20)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회계처리 - 자산 처분

1. 배경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초에 장부가액 ₩200,000,000,000의 토지를 ₩300,000,000,000에 매각하면서 현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2011년 12월 31일에 ₩300,000,000,000

을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한편 토지 매각 시 유효이자율은 15%이다. (유동성대체 회계처리 생략)

1. 매각조건

총 수령금액: 300,000,000,000

액면이자율: 연 0%

유효이자율: 연 15%

수령일: 2011년 12월 31일

공정가액: 197,254,869,730^(*1)

(*1) $300,000,000,000 \div (1+15\%)^3 = 197,254,869,730$

2. 현재가치(PV)

총 수령금액	300,000,000,000
원금(PV)	197,254,869,730
이자(PV)	0
합계	197,254,869,730
현재가치할인차금	102,745,130,270

3. 상각표 (단위: 원)

기간	유효이자	액면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장부가액 (원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9. 1. 1				197,254,869,730
2009.12.31	29,588,230,459	-	29,588,230,459	226,843,100,189
2010.12.31	34,026,465,028	-	34,026,465,028	260,869,565,217
2011.12.31	39,130,434,783	-	39,130,434,783	300,000,000,000
합계	102,745,130,270		102,745,130,270	

2. 회계처리

- 2009년 1월 1일 -

차) 기타의미수금/장기 300,000,000,000 대) 토 지 200,000,000,000

일반유형자산 기 타 의 미 수 금

처 분 손 실^(*2)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1)

(*1) 총 수령금액 - 현재가치 = 300,000,000,000 - 197,254,869,730 = 102,745,130,270

(*2) 200,000,000,000 - (300,000,000,000 - 102,745,130,270) = 2,745,130,270

- 2009년 12월 31일 -
차) 기 타 의 미 수 금 29,588,230,459 대) 기타이자수익 29,588,230,459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 197,254,869,730 × 15% = 29,588,230,459

- 2010년 12월 31일 -
차) 기 타 의 미 수 금 34,026,465,028 대) 기타이자수익 34,026,465,028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 226,843,100,189 × 15% = 34,026,465,028

- 2011년 12월 31일 -
차) 기 타 의 미 수 금 39,130,434,783 대) 기 타 이 자 수 익 39,130,434,783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300,000,000,000 기타의미수금/장기 300,000,000,000
(*) 260,869,565,217 × 15% = 39,130,434,783

적용사례9. (※ 관련문단 20) 장기금전대차거래 회계처리 - 금전대여

1. 배경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초에 XX에게 현금 ₩197,254,869,730을 3년간 장기대여하였다. 동 일반용자금은 2011년 말에 일시 회수할 예정이며, 약정이자율은 0%이다. 2009년초의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유동성대체 회계처리는 생략하며,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대여조건
만기 회수금액: 300,000,000,000
액면이자율: 연 0%
유효이자율: 연 15%
만기일: 2011년 12월 31일
공정가액: 197,254,869,730^(*)

(*) 300,000,000,000 ÷ (1+15%)³ = 197,254,869,730

2. 현재가치(PV)

총 수령금액	300,000,000,000
원금(PV)	197,254,869,730
이자(PV)	0
합계	197,254,869,730
현재가치할인차금	102,745,130,270

3. 상각표

(단위: 원)

기간	유효이자	액면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장부가액 (원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9. 1. 1				197,254,869,730
2009.12.31	29,588,230,459	-	29,588,230,459	226,843,100,189
2010.12.31	34,026,465,028	-	34,026,465,028	260,869,565,217
2011.12.31	39,130,434,783	-	39,130,434,783	300,000,000,000
합계	102,745,130,270	-	102,745,130,270	

2. 회계처리

- 2009년 1월 1일 -
차) 일반용자금/장기 300,0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97,254,869,730
일반용자금 102,745,130,270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 2009년 12월 31일 -
차) 일반용자금 29,588,230,459 대) 일반용자금 29,588,230,459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이 자 수 익

- 2010년 12월 31일 -
차) 일반용자금 34,026,465,028 대) 일반용자금 34,026,465,028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이 자 수 익

- 2011년 12월 31일 -
차) 일반용자금 39,130,434,783 대) 일반용자금 39,130,434,783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이 자 수 익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0,000 일반용자금/장기 300,000,000,000



적용사례10. (☞ 관련문단 22)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인식

1. 회계처리
i) 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수익증권 평가 시 ① OO부처, OO기금에서는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기타지분증권(수익증권) 1억원을 매입, 기말시점 공정가액이 1.1억원이 되었다. - 기말 - 차) 투자증권 - 지분증권 - 10,000,000 대) 투자증권평가이익 ^(*) 10,000,000 기타지분증권/단기(수익증권) (*) 순자산변동표에 반영 ② OO부처, OO기금에서는 취득당시 만기가 1년 초과인 기타지분증권(수익증권) 1억원을 매입, 기말시점 공정가액이 1.1억원이 되었다. - 기말 - 차) 투자증권 - 지분증권 - 10,000,000 대) 투자증권평가이익 ^(*) 10,000,000 기타지분증권/장기(수익증권) (*) 순자산변동표에 반영 ii)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기타지분증권(수익증권) 평가 시(평가증 발생 시) OO부처, OO기금에서는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기타지분증권(수익증권) 1억원을 매입, 기말시점 공정가액이 1.1억원이 되었다. OO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다. - 기말 - 차) 기 타 현 금 성 자 산 10,000,000 대)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 10,000,000 (*) 재정운영표에 반영 iii)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기타지분증권(수익증권) 평가 시(평가감 발생 시) OO부처, OO기금에서는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기타지분증권(수익증권) 1억원을 매입, 기말시점 공정가액이 0.9억원이 되었다. OO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다. - 기말 - 차) 기타의 기타이자비용 ^(*) 10,000,000 대) 기 타 현 금 성 자 산 10,000,000 (*) 재정운영표에 반영

적용사례11. (☞ 관련문단 2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이익분배금 수취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 OO기금에서는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수익증권(예: MMF등) 1억원을 매입, 20X1년 기말시점 공정가액이 1.1억원이 되었다. 20X2년 중 일부 회수하였으며, 회수 시점의 기준가격과의 차액 0.2억원을 수취하였다. OO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다.
2. 회계처리
- 20X1년 기말 - 차) 기 타 현 금 성 자 산 10,000,000 대)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 10,000,000 (*) 재정운영표에 반영 - 20X2년 일부 회수 시 - 차) 보 통 예 금 20,000,000 대)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 10,000,000 기 타 현 금 성 자 산 10,000,000 (*) 재정운영표에 반영

적용사례12. (☞ 관련문단 23) 할인발행된 국채 취득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는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국민주택채권 3종을 취득하였으며, 발행가액(발행수수료 등 비용 차감 후 금액)은 93,925,301원으로 할인발행되었다.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연 1회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취득당시 유통수익률은 12%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차금상각은 다음과 같다.
액면가액: 100,000,000 액면이자율: 연 10% 이자지급: 12월 31일 (연 1회) 국민주택채권 만기일: 20X4년 12월 31일
20X1년부터 20X4년까지의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본 예제에서는 유통성대체는 생략한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단위: 원)

일자	장부가액 (액면가액-할인차금)	유효이자 (장부가액 × 시장이자율)	액면이자 (액면가액 × 표시이자율)	상각액 (유효이자 - 액면이자)
20X1.1. 1	93,925,301	-	-	-
20X1.12.31	95,196,337	11,271,036	10,000,000	1,271,036
20X2.12.31	96,619,898	11,423,561	10,000,000	1,423,561
20X3.12.31	98,214,286	11,594,388	10,000,000	1,594,388
20X4.12.31	100,000,000	11,785,714	10,000,000	1,785,714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 대) 국 채 이 자 수 익 11,594,388
투자증권-채무증권-국채/장기 1,594,388

- 20X4년 12월 31일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 대) 국 채 이 자 수 익 11,784,714
투자증권-채무증권-국채/장기 1,784,714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대) 투자증권-채무증권 100,000,000
- 국 채 / 장 기

2. 회계처리

- 20X1년 1월 1일 -

차) 투자증권-채무증권-국채/장기 93,925,301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93,925,301

취득당시 가액을 투자증권 중 채무증권의 국채/장기로 분류한다.

- 20X1년 12월 31일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 대) 국 채 이 자 수 익^(*) 11,271,036

투자증권-채무증권-국채/장기^(*) 1,271,036

(*)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93,925,301 \times 12\% = 11,271,036$

(*) 액면이자금액 10,000,000원과 유효이자금액 11,271,036의 차액 1,271,036
만큼을 투자증권 중 채무증권의 국채/장기로 인식함

- 20X2년 12월 31일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 대) 국 채 이 자 수 익 11,423,560

투자증권-채무증권-국채/장기 1,423,560

- 20X3년 12월 31일 -

적용사례13. (☞ 관련문단 23) 투자증권 이익분배금 수취 시 회계처리

1. 회계처리

i) 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수익증권으로부터 이익분배금 수취 시 (사례①)

OO부처, XX기금에서는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수익증권(예: MMF 등) 1억원을 매입, 20X1년 기말시점 공정가액이 1.1억원이 되었다. 20X2년 중 일부 회수하였으며, 회수 시점의 기준가격과의 차액 0.2억원을 보통예금으로 수취하였다.

- 20X1년 기말 -

차) 투자증권 - 지분증권 - 10,000,000 대)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000
기 타 지 분 증 권 / 단 기

(*) 순자산변동표에 반영

- 20X2년 일부 회수 시 -

차) 보 통 예 금 20,000,000 대) 투자증권처분이익^(*) 20,000,000
투 자 증 권 평 가 이 익 10,000,000 투자증권 - 지분증권 - 10,000,000
기 타 지 분 증 권 / 단 기

(*) 재정운영표에 반영

투자증권처분이익 = 기준가격 - 장부가액 (±) 투자증권평가손익
= 120,000,000 - 110,000,000 + 10,000,000 = 20,000,000



ii) 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수익증권 이익분배금 수취 시 (사례②)

OO부처, OO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에서는 취득당시 만기가 1년 초과인 수익증권 1억원을 매입, 20X1년 기말시점 공정가액이 1.1억원이 되었다. 20X2년 중 일부 회수하였으며, 회수 시점의 기준가격과의 차액 0.2억원을 보통예금으로 수취하였다.

- 20X1년 기말 -

차) 투자증권 - 지분증권 10,000,000 대) 투자증권 평가이익^(*) 10,000,000
- 기타지분증권/장기

(*) 순자산변동표에 반영

- 20X2년 일부 회수 시 -

차) 보통예금 20,000,000 대) 투자증권 처분이익^(*) 20,000,000
투자증권 평가이익 10,000,000 투자증권 - 지분증권 - 10,000,000
기타지분증권/장기

(*) 재정운영표에 반영

투자증권처분이익 = 기준가격 - 장부가액 (±) 투자증권평가손익
= 120,000,000 - 110,000,000 + 10,000,000 = 20,000,000

적용사례14. (※ 관련문단 23) 투자증권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7월 1일, 여유자금운용의 목적(1년 이내 처분 예정)으로 A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100,909원에 취득하였다. 이 취득가액은 경과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액면가액은 100,000원, 표시이자율은 10%, 취득 당시 유통수익률은 12%,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20X2년 4월 1일에 이 회사채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96,000원(처분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처분하였다.

2. 회계처리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단위: 원)

일자	장부가액 (액면가액-할인차금)	유효이자 (장부가액 × 시장이자율)	액면이자 (액면가액 × 표시이자율)	상각액 (유효이자 - 액면이자)
20X1.1. 1	95,197	-	-	-
20X1.12.31	96,621	11,424	10,000	1,424
20X2.12.31	98,214	11,593	10,000	1,593
20X3.12.31	100,000	11,786	10,000	1,786

- 20X1년 7월 1일 취득 시 -

차) 투자증권-채무증권-회사채/단기^{(*)1} 95,909 대) 한국은행 국가예금 100,909
미수채권이자수익/단기^{(*)2} 5,000

(*)1 95,197 + (1,424 × 6/12) = 95,909

(*)2 100,000 × 10% × 6/12 = 5,000

- 20X1년 12월 31일 기말 이자수령 및 평가 시 -

차) 한국은행 국가예금 10,000 대) 미수채권이자수익/단기 5,000
투자증권-채무증권-회사채/단기^{(*)1} 712 회사채이자수익^{(*)2} 5,712

(*)1 1,424 × 6/12 = 712

(*)2 (100,000 × 10% × 6/12) + 712 = 5,712

- 20X2년 4월 1일 처분 시 -

차) 미수채권이자수익/단기^{(*)1} 2,500 대) 회사채이자수익 2,898
투자증권-채무증권-회사채/단기^{(*)2} 398

(*)1 100,000 × 10% × 3/12 = 2,500

(*)2 1,593 × 3/12 = 398

차) 한국은행 국가예금 96,000 대) 투자증권-채무증권-회사채/단기^{(*)1} 97,019
투자증권 처분손실 3,519 미수채권이자수익/단기 2,500

(*) 96,621 (2001년말 장부가액) + (1,593 × 3/12) (2002년 상각액) = 97,019

적용사례15. (☞ 관련문단 23) 장기투자증권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2월 1일 장기 자금운용목적으로 A사가 발행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4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 12월 31일(결산일) 현재 A사 주식의 공정가액은 42,000이다.			
20X2년 9월 1일 보유중인 A사 주식 중 50%를 25,000에 처분하였으며 20X2년 12월 31일(결산일) 현재 보유중인 A사 주식의 공정가액은 23,000이다. (유동성 대체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2월 1일 매입 시 -			
차)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4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40,000
- 20X1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2,000	대) 투자증권평가이익 ^(*)	2,000
(*) 42,000(공정가액) - 40,000(평가전장부가액) = 2,000 투자증권평가이익은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에 반영함			
- 20X2년 9월 1일 처분 시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25,000	대)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2}	21,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	1,000	투자증권처분이익	5,000
(*)1 2,000 X 50% = 1,000 (*)2 42,000 X 50% = 21,000			
- 20X2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2,000	대) 투자증권평가이익 ^(*)	2,000
(*) 23,000(기말공정가액) - 21,000(평가전장부가액) = 2,000			

적용사례16. (☞ 관련문단 27) 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평가

1. 배경정보	
AA 기금은 기말현재 보통예금 \$200,000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보통예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다. 취득당시 기준환율은 ₩1,000/USD이었으나 기말현재 기준환율은 ₩1,200/USD이다.	
2. 회계처리	
- 취득 시 -	
차) 보통예금 ^(*)	2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000
(*) \$200,000 × 1,000 = 200,000,000	
- 기말평가 시-	
차) 보통예금	40,000,000 대) 외화자산평가이익 ^(*) 40,000,000
(*) \$200,000 × (1,200 - 1,000) = 40,000,000, 재정운영결과에 반영	

적용사례17. (☞ 관련문단 27)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평가

1. 배경정보	
AA 기금은 20X1년 중 \$100,000인 토지를 취득하였다. 20X1년말 재평가를 통해 측정한 토지의 공정가액은 \$150,000이다. 취득당시 기준환율은 ₩1,000/USD이었으나 기말 현재 기준환율은 ₩1,200/USD이다.	
2. 회계처리	
- 취득 시 -	
차) 토지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 기말평가 시 -	
차) 토지 ^(*)	80,000,000 대) 자산재평가이익 ^(*) 80,000,000
(*) \$150,000 × 1,200 - 100,000,000 = 80,000,000, 환율변동 효과를 포함하여 재평가이익(조정항목)으로 반영	

적용사례18. (☞ 관련문단 27) 역사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평가

1. 배경정보			
AA 기금은 20X1년 중 \$100,000인 건물을 취득하였다. 해당 건물은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역사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이다. 취득당시 기준환율은 W1,000/USD이었으나 기말현재 기준환율은 W1,200/USD이다.			
2. 회계처리			
- 취득 시 -			
차) 건	물(*)	100,000,000	대) 한국은행 국가예금 100,000,000
(*) \$100,000 × 1,000 = 100,000,000			
- 기말 -			
회계처리 없음			

적용사례19. (☞ 관련문단 30)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의 감액손실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10월 1일 XX부처는 시장성 없는 AA주식 10주를 10,000원(1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지만, 20X2년 12월 31일 주식 발행회사가 완전자본장식 상태에 있다는 것이 공시되었다.			
2. 회계처리			
- 20X2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감액손실	10,000	대)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10,000
※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여기서 회수가능가액은 지분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평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완전자본장식 상태인 주식 발행사의 순자산가치는 0이므로 장부가액 전액을 투자증권감액손실로 인식한다.			

적용사례20. (☞ 관련문단 30)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의 감액손실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10월 1일 XX부처는 시장성 있는 AA주식 10주를 10,000원(1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지만, 20X2년 12월 31일 주식 발행회사가 완전자본장식 상태에 있다는 것이 공시되었다.			
2. 회계처리			
[Case 1]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액 8,000원이며, 투자증권평가손실이 2,000원을 인식함. 20X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은 1,000원임			
- 20X2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감액손실	9,000	대) 투자증권평가손실	2,000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7,000
※ 당해 미실현보유손실 금액이 당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인식된 미실현보유손실을 제거하여 감액손실로 반영한 후,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지분증권의 장부가액에서 감액시킴			
[Case 2]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액 15,000원이며 투자증권평가이익이 5,000원을 인식함. 20X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은 1,000원임			
- 20X2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감액손실	9,000	대)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14,000
	투자증권평가이익	5,000	
※ 당해 지분증권과 관련한 미실현보유이익이 순자산조정항목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미실현보유이익 전액을 제거하여 지분증권의 장부가액을 감액시킴			
[Case 3]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액 15,000원이며 투자증권평가이익이 5,000원을 인식함. 20X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은 1,000원임. 하지만 20X3년 12월 31일 주식 발행사는 완전자본장식에서 벗어났으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공정가액이 20,000원으로 평가되었음			

- 20X2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감액손실	9,000	대)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14,000
투자증권평가이익	5,000		

- 20X3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19,000	대)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9,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		

※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의 향상)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Case 4]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은 15,000원이며 투자증권평가이익 5,000원을 인식함. 20X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은 1,000원이며, 20X3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이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공정가액의 증가는 감액손실의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0X2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감액손실	9,000	대)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14,000
투자증권평가이익	5,000		

- 20X3년 12월 31일 기말평가 시 -

차) 투자증권·지분증권·주식·장기	4,000	대) 투자증권평가이익	4,000

※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액이 상승하더라도 위와 같은 감액손실의 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액 상승금액을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함

적용사례21. (☞ 관련문단 33)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XX회계의 20X1년말 현재 재화를 판매하고 아직 수취하지 못한 미수채권 총 ₩4,500,000에 대해서 기말 결산 시 대손예상액을 연령분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위: 원)

회수기간 경과일수	금 액	추정대손율
미경과분	2,000,000	0%
10일 초과 ~ 1개월 이내	1,000,000	1%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00,000	2%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0,000	3%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0,000	10%
1년 초과	100,000	50%
계	4,500,000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각 상황별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 상황 1: 대손충당금잔액이 없는 경우
- 상황 2: 대손충당금잔액이 ₩50,000 있는 경우
- 상황 3: 대손충당금잔액이 ₩120,000 있는 경우

2. 대손예상액의 추정 및 각 상황별 회계처리

1. 대손예상액의 추정

(단위: 원)

회수기간 경과일수	금 액	추정대손율	대손예상액
미경과분	2,000,000	0%	0
10일 초과 ~ 1개월 이내	1,000,000	1%	10,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00,000	2%	14,00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0,000	3%	15,00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0,000	10%	20,000
1년 초과	100,000	50%	50,000
계	4,500,000		109,000

2. 각 상황별 회계처리

상황 1: 차) 미수재화및용역 제공수익대손상각비	109,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 수익대손총당금	109,000
상황 2: 차) 미수재화및용역 제공수익대손상각비 (*) 109,000 - 50,000 = 59,000	59,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 수익대손총당금 ^(*)	59,000
상황 3: 차) 미수재화및용역제 공수익대손총당금 (*) 109,000 - 120,000 = -11,000	11,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 수익대손총당금환입 ^(*)	11,000

적용사례22. (☞ 관련문단 34) 미수채권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정부는 20X1년 5월 31일 현재 장부가액 500,000원(대손총당금 20,000원, 유효이자율 5%로 평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원)인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을 채권의 조기 회수 등의 목적으로 490,000원에 매각하였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회계처리

- 20X1년 5월 31일 채권 처분 시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미 수 재 화 및 용 역 제 공 수 익 대 손 총 당 금	490,000	대) 미 수 재 화 및 용 역 제 공 수 익	530,000
미 수 재 화 및 용 역 제 공 수 익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20,000		
미 수 재 화 및 용 역 제 공 수 익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10,000		
기 타 금 융 자 산 처 분 손 실 ^(*)	10,000		

(*) 미수채권의 조기처분에 따른 매각손실로서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채권매각손실)로 계상함

적용사례23. (☞ 관련문단 34)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국세에 대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관세부과액 50,000,000원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였다. 장부에서 제거 전 대손총당금이 30,000,000원인 경우와 60,000,000원인 경우, 그리고 잔액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회계처리

- 대손총당금이 30,000,000원인 경우 -

차) 미 수 국 세 대 손 총 당 금	30,000,000	대) 미 수 국 세	50,000,000
국 세 수 익 - 대 손 상 각 비 (국 세 징 수 활 동 표)	20,000,000		

- 대손총당금이 60,000,000원인 경우 -

차) 미 수 국 세 대 손 총 당 금	50,000,000	대) 미 수 국 세	50,000,000

- 대손총당금이 없는 경우 -

차) 국 세 수 익 - 대 손 상 각 비	50,000,000	대) 미 수 국 세	50,000,000

적용사례24. (☞ 관련문단 36) 고정금리채(이표채)회계처리 - 할인발행, 연2회 이자지급, 발행일과 매출일이 상이

1. 배경정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009년 3월 10일에 발행한 액면가액 100,000,000원인 국고채권 5년물을 2009년 7월 27일에 매각하였다.

1. 국채발행조건

액면가액: 100,000,000
발행가액: 88,413,455
액면이자율: 연 5%

시장이자율: 연 8%
 6개월 복리이자: 3.923%^(*)
 액면이자(매반기): 2,500,000
 이자지급: 3월 9일, 9월 9일 (연 2회)
 국채 만기일: 2014년 3월 10일

(*) 6개월 복리 이자 계산식
 $(1+8\%) = (1+X)^2$
 $X \approx 3.923\%$

2. 국채현재가치(PV)

액면가액	100,000,000
원금(PV)	68,058,319
이자(PV)	20,355,135
합계	88,413,455
국채할인발행차금	11,586,545

3. 국채상각표

(단위: 원)

기간	유효이자	액면이자	할인발행차금상각액	국채가액 (원금-할인발행차금)
2009. 3.10				88,413,455
2009. 9.10	3,468,502	2,500,000	968,502	89,381,957
2010. 3.10	3,506,497	2,500,000	1,006,497	90,388,454
2010. 9.10	3,545,982	2,500,000	1,045,982	91,434,436
2011. 3.10	3,587,017	2,500,000	1,087,017	92,521,453
2011. 9.10	3,629,661	2,500,000	1,129,661	93,651,114
2012. 3.10	3,673,978	2,500,000	1,173,978	94,825,092
2012. 9.10	3,720,034	2,500,000	1,220,034	96,045,126
2013. 3.10	3,767,896	2,500,000	1,267,896	97,313,022
2013. 9.10	3,817,637	2,500,000	1,317,637	98,630,659
2014. 3.10	3,869,341	2,500,000	1,369,341	100,000,000
합계	36,586,545	25,000,000	11,586,545	

2. 회계처리

- 2009년 7월 27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91,033,682 대) 국 채 / 장 기 10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2} 10,854,905 미지급이자비용/단기^{(*)3} 1,888,587

(*) 국채액면가액 + 매출경과료 - 매출시점 국채할인발행차금잔액

(*)2 매출일시점의 국채할인발행차금: 11,586,545 - (968,502 × 139/184)

(*)3 매출경과료: 100,000,000 × 5%/2 × 139/184 = 1,888,587

- 2009년 9월 10일 -

차) 국 채 이 자 비 용^{(*)1} 236,852 대)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236,852
 국 채 이 자 비 용^{(*)2} 611,413 한국은행국가예금 2,500,000
 미지급이자비용/단기 1,888,587

(*)1 매출일부터 최초이자지급일까지 상각액

236,852 = (88,413,455 × 3.923% - 2,500,000) × 45/184 (단수차이)

(*)2 액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611,413 = (100,000,000 × 2.5% × 45/184)

- 2009년 12월 31일 -

차) 국 채 이 자 비 용^{(*)1} 622,804 대)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622,804
 국 채 이 자 비 용^{(*)2} 1,546,961 미지급이자비용/단기 1,546,951

(*)1 622,804 = 1,006,497 × 112/181

(*)2 1,546,961 = 2,500,000 × 112/181



적용사례25. (☞ 관련문단 36) 국민주택채권 회계처리 - 만기 시 복리지급

1. 배경정보

주택도시보증금은 2009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국민주택채권을 100,000,000원에 액면발행 하였다. 세부적인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이자가 원금에 가산됨) 다만, 본 예제에서는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1. 국채발행조건

액면가액: 100,000,000
액면이자율: 연 3%
시장이자율(발행 시): 연 3.00%
액면이자(만기): 15,927,407 만기일시상환
발행일: 2009.1.1
만기일: 2013.12.31
만기: 5년

2. 국채현재가치(PV)

만기지급액	115,927,407
현재가치	10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	-
국채가액	100,000,000

3. 국채상각표

(단위: 원)

기간	액면이자 (3%)	유효이자 (3%)	할인발행차금상각액	국채가액 (원리금-할인발행차금)
2009. 1. 1				100,000,000
2009.12.31	3,000,000	3,000,000	-	100,000,000
2010.12.31	3,090,000	3,090,000	-	100,000,000
2011.12.31	3,182,700	3,182,700	-	100,000,000
2012.12.31	3,278,181	3,278,181	-	100,000,000
2013.12.31	3,376,526	3,376,526	-	100,000,000
합계	15,927,407	15,927,407	-	

2. 회계처리

1) 2009.1.1. 발행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국 채 / 장 기 100,000,000

2) 2009.12.31. 결산 시
차) 국 채 이 자 비 용 3,000,000 대) 미지급이자비용/장기 3,000,000

3) 2012.12.31. 만기직전결산 시
차) 국 채 이 자 비 용 3,278,181 대) 미지급이자비용/장기 3,278,181

4) 2013.12.31. 만기 시

<이자상환>

차) 미지급이자비용/장기 15,927,407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5,927,407

<원금상환>

차) 국 채 / 장 기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적용사례26. (☞ 관련문단 36) 국민주택채권 무이표채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09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국민주택채권을 100,000,000원에 액면발행 하였다. 세부적인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본 예제에서는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1. 국채발행조건

액면가액: 100,000,000
액면이자율: 연 0%
액면이자(만기): - (만기일시상환)
발행일: 2009. 4. 1
만기일: 2013.12.31
만기: 5년

2. 국채현재가치

만기지급액	100,000,000
현재가치	10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	-
국채가액	100,000,000

3. 국채상각표 (단위: 원)

기간	액면이자 (0%)	유효이자 (0%)	할인발행차금상각액	국채가액 (원리금-할인발행차금)
2009. 4. 1				100,000,000
2009.12.31	-	-	-	100,000,000
2010.12.31	-	-	-	100,000,000
2011.12.31	-	-	-	100,000,000
2012.12.31	-	-	-	100,000,000
2013.12.31	-	-	-	100,000,000
합계	-	-	-	

2. 회계처리

1) 2009.4.1. 발행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대) 국 채 / 장 기 100,000,000

2) 2013.12.31. 만기 시

차) 국 채 / 장 기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적용사례27. (☞ 관련문단 36, 40) 기중 발행한 국채 회계처리 - 분할상환

1. 배경정보

2009년 6월 1일 다음과 같은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였다. 발행가액은 97,257,402 원으로 할인발행되었다. 액면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유효이자율은 7%이다.

1. 국채발행조건

액면가액: 100,000,000

액면이자율: 연 5%

이자지급: 5월 31일 (연 1회)

국고채 2년물 만기일: 2011년 5월 31일

2009년 및 2011년까지의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본 예제에서는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2. 국채상각표

(단위: 원)

일자	장부가액 (액면가액 - 할인차금)	유효이자 (장부가액 × 시장이자율)	액면이자 (액면가액 × 표시이자율)	상각액 (유효이자-액면이자)
2009.6. 1	97,257,402	-	-	-
2010.5.31	49,065,420	6,808,018	5,000,000	1,808,018
2011.5.31	-	3,434,580	2,500,000	934,580

2. 회계처리

- 2009년 6월 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97,257,402 대) 국 채 / 장 기 10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2,742,598

- 2009년 12월 31일 -

차) 국 채 이 자 비 용 3,991,550 대) 미지급이자비용/단기^{(*)1} 2,931,507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2} 1,060,043

<유동성대체 시>

차) 국 채 / 장 기 50,000,000 대) 국 채 / 유 동 성 장 기 50,000,000
국 채 할 인 발 행 차 금 / 유 동 성 장 기 (*1) 1,808,018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808,018

(*1) 2010년에 실현될 국채할인발행차금을 유동성대체함

<재정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국채/유동성장기	5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1,808,018)
국채/장기	5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934,579)

- 2010년 12월 31일 -

<국채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국채/유동성장기 5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5,000,000
국 채 이 자 비 용 6,808,018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1,808,018

<유동성대체 시>

차) 국 채 / 장 기 50,000,000 대) 국 채 / 유 동 성 장 기 5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 / 유 동 성 장 기 934,579 국 채 할 인 발 행 차 금 / 장 기 934,579

- 2011년 12월 31일 -

<국채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국채/유동성장기 5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2,500,000
국 채 이 자 비 용 3,434,579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934,579

적용사례29. (☞ 관련문단 38~39)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회계처리 - 자산 취득

1. 배경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초에 장부가액 ₩200,000,000,000의 토지를 ₩300,000,000,000에 취득하면서 현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2011년 12월 31일에 ₩300,000,000,000을 일시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한편 토지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13%이다(유동성대체 회계처리 생략).

1. 매각조건

총 지급금액: 300,000,000,000

액면이자율: 연 0%

유효이자율: 연 13%

수령일: 2011년 12월 31일

공정가액: 207,915,048,683^(*1)

(*1) $300,000,000,000 \div (1+13\%)^3 = 207,915,048,683$

2. 현재가치(PV)

총 수령금액	300,000,000,000
원금(PV)	207,915,048,683
이자(PV)	0
합계	207,915,048,683
현재가치할인차금	92,084,951,317

3. 상각표

(단위: 원)

기간	유효이자	액면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장부가액 (원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9. 1. 1				207,915,048,683
2009.12.31	27,028,956,329	-	27,028,956,329	234,944,005,012
2010.12.31	30,542,720,652	-	30,542,720,652	265,486,725,664
2011.12.31	34,513,274,336	-	34,513,274,336	300,000,000,000
합계	92,084,951,317		92,084,951,317	

2. 회계처리

- 2009년 1월 1일 -

차) 토 지 207,915,048,683 대) 기타의미지급금/장기 300,000,000,000
 기 타 의 미 지 급 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92,084,951,317

(*) 총 수령금액 - 공정가액 = 300,000,000,000 - 207,915,048,683 =
 92,084,951,317

- 2009년 12월 31일 -

차) 기타의기타이자비용^(*) 27,028,956,329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27,028,956,329

(*) 207,915,048,683 × 13% = 27,028,956,329

- 2011년 12월 31일 -

차) 기타의기타이자비용^(*) 34,513,274,336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34,513,274,336

기타의미지급금/장기 300,00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0,000

(*) 265,486,725,664 × 13% = 34,513,274,336

적용사례30. (☞ 관련문단 38~39) 장기금전대차거래 회계처리 - 금전차입

1. 배경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초에 민간은행으로부터 현금 ₩197,254,869,730을 3년간 장기차입하였다. 동 차입금은 2011년 말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며, 약정이자율은 0%이다. 2009년초의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유동성대체 회계처리 생략)

1. 대여조건

만기 상환금액: 300,000,000,000

액면이자율: 연 0%

유효이자율: 연 15%

만기일: 2011년 12월 31일

공정가액: 197,254,869,730^(*)

(*) $300,000,000,000 \div (1+15\%)^3 = 197,254,869,730$

2. 현재가치(PV)

총 상환금액	300,000,000,000
원금(PV)	197,254,869,730
이자(PV)	0
합계	197,254,869,730
현재가치할인차금	102,745,130,270

3. 상각표

(단위: 원)

기간	유효이자	액면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장부가액 (원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9. 1. 1				197,254,869,730
2009.12.31	29,588,230,459	-	29,588,230,459	226,843,100,189
2010.12.31	34,026,465,028	-	34,026,465,028	260,869,565,217
2011.12.31	39,130,434,783	-	39,130,434,783	300,000,000,000
합계	102,745,130,270	-	102,745,130,270	

2. 회계처리

- 2009년 1월 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97,254,869,730 대) 국내차입금/ 장기 300,000,000,000
 국 내 차 입 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102,745,130,270

- 2009년 12월 31일 -

차) 국내차입금이자비용 29,588,230,459 대) 국 내 차 입 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29,588,230,459

- 2010년 12월 31일 -				
차) 국내차입금이자비용	34,026,465,028	대) 국내차입금 현재차입금/장기	34,026,465,028	
- 2011년 12월 31일 -				
차) 국내차입금이자비용	39,130,434,783	대) 국내차입금 현재차입금/장기	39,130,434,783	
국내차입금/장기	300,00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0,000	

적용사례31. (☞ 관련문단 43) 외화표시 국채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기획재정부 OO기금에서는 2009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외화표시 국채를 발행하였다. 발행가액은 \$97,257로 할인발행되었다. 액면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유효이자율은 7%이다.

1. 국채발행조건
액면가액: \$100,000
액면이자율: 연 5%
이자지급: 12월 31일 (연 1회)
원금상환: 2009년 말 \$50,000, 2010년 말 \$50,000
환율변동에 관한 자료: 2009년 초 ₩1,000/\$, 2009년 말 ₩1,200/\$, 2010년 말 ₩1,100/\$

2. 외화표시 국채상각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단위: \$)

일자	장부가액 (액면가액 - 할인차금)	유효이자 (장부가액 × 시장이자율)	액면이자 (액면가액 × 표시이자율)	상각액 (유효이자 - 액면이자)
2009. 1. 1	97,257	-	-	-
2009.12.31	49,065	6,808	5,000	1,808
2010.12.31	-	3,435	2,500	935

2. 회계처리

- 2009년 1월 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2) 97,257,000 대) 국채 / 장기^(*1) 10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3) 2,743,000

(*1) 국채 = \$100,000 × ₩1,000/\$ = 100,000,000
(*2) 발행가액 = \$97,257 × ₩1,000/\$ = 97,257,000
(*3) 할인발행차금 = \$2,743 × ₩1,000/\$ = 2,743,000

- 2009년 12월 31일 -

<국채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국채 / 장기 5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1) 66,000,000

국채이자비용^(*3) 7,808,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2) 1,808,000

외환차손^(*4) 10,000,000

(*1) 상환액 = \$55,000(액면상환액 \$50,000 + 액면이자액 \$5,000) × ₩1,200/\$ = 66,000,000
(*2) 국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1,808 × ₩1,000/\$ = 1,808,000
(*3) 국채이자비용 = 액면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 + 국채할인발행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
= \$5,000 × ₩1,200/\$ + 1,808,000
= 7,808,000
(*4) 외환차손 = \$50,000 × (₩1,200/\$ - ₩1,000/\$) = 10,000,000

<외화환산 시>

차)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2) 187,000 대) 국채 / 장기^(*1) 10,000,000

외화부채평균손실^(*3) 9,813,000

(*1) 국채 = \$50,000 × (₩1,200/\$ - ₩1,000/\$) = 10,000,000
(*2) 국채할인발행차금 = \$935 × (₩1,200/\$ - ₩1,000/\$) = 187,000
(*3) 외화부채평균손실 = (\$50,000 - \$935) × (₩1,200/\$ - ₩1,000/\$) = 9,813,000



<유동성대체 시>

차) 국 채 / 장 기 60,000,000 대) 국 채 / 유 동 성 장 기 60,000,000
국 채 활 인 발 행 차 금 / 유 동 성 장 기 (*1) 1,122,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122,000

(*1) 2010년에 실현될 국채할인발행차금을 유동성대체함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금액	
	\$기준	원화기준
국채/유동성장기	50,000	6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935)	(1,122,000)

- 2010년 12월 31일 -

<국채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국채/유동성장기 6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1) 57,750,000
국 채 이 자 비 용(*3) 3,872,000 국 채 활 인 발 행 차 금 / 유 동 성 장 기 (*2) 1,122,000
외 환 차 익(*4) 5,000,000

(*1) 상환액 = \$52,500 × ₩1,100/\$ = 57,750,000

(*2) 국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935 × ₩1,200/\$ = 1,122,000

(*3) 국채이자비용 = 액면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 + 국채할인발행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
= \$2,500 × ₩1,100/\$ + 1,122,000
= 3,872,000

(*4) 외환차익 = \$50,000 × (₩1,200/\$ - ₩1,100/\$) = 5,000,000

적용사례32. (☞ 관련문단 46) 국채의 조기상환 회계처리 - 연 2회 이자지급

1. 배경정보

1. 국채발행조건
발행일: 2009.4.1
액면가액: 100,000,000
액면이자율: 연 5.00%
시장이자율: 연 5.50%
6개월 복리이자: 2.71%(*1)
액면이자: 2,500,000(6개월), 5,000,000(1년)
이자지급일: 3월31일, 9월30일 연 2회
발행일: 2009.4.1
만기: 2014.3.31
기간: 10회 (5년 X 2회)

(*1) 6개월 복리 이자 계산식
 $1+5.5\% = (1+X)^2$
 $X \approx 2.71\%$

2. 국채현재가치(PV)

원금(PV)	76,513,435
이자(PV)	21,641,075
합계	98,154,510
국채할인발행차금	1,845,490

3. 국채조기상환 시 시장가격

	시장이자율(6%)	시장이자율(4%)
연간복리이자율	0.03	0.02
원금	83,961,928	88,899,636
이자	13,562,615	14,012,849
합계	97,524,543	102,912,485

4. 국채상각표

(단위: 원)

기간	유효이자	액면이자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국채가액
2009. 4. 1				98,154,510
2009. 9.30	2,663,121	2,500,000	163,121	98,317,632
2010. 3.31	2,667,547	2,500,000	167,547	98,485,179
2010. 9.30	2,672,093	2,500,000	172,093	98,657,272
2011. 3.31	2,676,762	2,500,000	176,762	98,834,034
2011. 9.30	2,681,558	2,500,000	181,558	99,015,592
2012. 3.31	2,686,484	2,500,000	186,484	99,202,076
2012. 9.30	2,691,544	2,500,000	191,544	99,393,619
2013. 3.31	2,696,741	2,500,000	196,741	99,590,360
2013. 9.30	2,702,079	2,500,000	202,079	99,792,439
2014. 3.31	2,707,561	2,500,000	207,561	100,000,000
합 계	26,845,490	25,000,000	1,845,490	

← 조기상환시점

2. 회계처리

- 2009.4.1. 발행 시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98,154,510 대) 국 채 / 장 기 10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845,490

- 2009.9.30. 이자지급 시 -

차) 국 채 이 자 비 용 2,663,121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5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63,121

- 2009.12.31. 결산 시 -

차) 국 채 이 자 비 용 1,348,430 대) 미지급이자비용/단기 1,263,736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84,694

- 2011.3.31. 조기상환 시 -

<1> 시장이자율이 6%인 경우

차) 국 채 이 자 비 용 1,323,673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500,000
미지급이자비용/단기 1,263,736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87,409
차) 국 채 / 장 기 100,000,000 대)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165,969
한국은행국가예금 97,524,543
채 무 상 환 이 익 1,309,488

<2> 시장이자율이 4%인 경우

차) 국 채 이 자 비 용 1,323,673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500,000
미지급이자비용/단기 1,263,736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87,409
차) 국 채 / 장 기 100,000,000 대)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165,969
채 무 상 환 손 실 4,078,454 한국은행국가예금 102,912,485

적용사례33. (☞ 관련문단 48) 전대차관대여금 및 전대차관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09년 1월 1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OO부처 OO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관 \$10,000을 도입하였다.

금액: \$10,000
액면이자율: 연 5%
이자지급: 12월 31일 (연 1회)

전대차관 만기일: 2010년 12월 31일
환율변동에 관한 자료: 2009년 초 ₩1,000/\$, 2009년 말 ₩1,200/\$, 2010년 말 ₩1,100/\$
관리수수료는 원리금의 0.05% 이다.
2009년 및 2010년까지의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회계처리

일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OO부처 OO회계
2009. 1.1	<차관도입 시> 차)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 10,000,000 대) 해 외 차 입 금 10,000,000 (*) \$10,000 × ₩1,000/\$ = 10,000,000	<전대차관도입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전 대 차 관 10,000,000
2009. 12.31	<이자비용 수령, 지급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600,000 대) 정부내전대차관 이 자 수 익 600,000 차) 해외차입금이자비용 6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600,000 (*) \$10,000 × 5% × ₩1,200/\$ = 600,000 <관리수수료 수령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6,300 대) 수수료수익^(*) 6,300 (*) (\$10,000 + \$500) × 0.05% × ₩1,200/\$ = 6,300	<이자비용 지급 시> 차) 정부내전대차관 이 자 비 용 6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600,000 (*) \$10,000 × 5% × ₩1,200/\$ = 600,000 <관리수수료 지급 시> 차) 지급수수료^(*) 6,3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6,300 (*) (\$10,000 + \$500) × 0.05% × ₩1,200/\$ = 6,300

일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OO부처 OO회계
	<전대차관대여금 회수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6,000,000 대)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 5,000,000 외 환 차 익 1,000,000 (*) \$5,000 × ₩1,200/\$ = 6,000,000 <차관상환 시> 차) 해 외 차 입 금 5,000,000 외 환 차 손 1,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6,000,000 (*) \$5,000 × ₩1,200/\$ = 6,000,000 <외화환산 시> 차)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 1,000,000 외 화 부 채 평 가 손 실^(*) 1,000,000 대) 해 외 차 입 금 1,000,000 외화자산평가이익^(*) 1,000,000 (*) 해외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 \$5,000 × (₩1,200/\$ - ₩1,000/\$) = 1,000,000 (*) 전대차관대여금에 대한 외화평가이익 = \$5,000 × (₩1,200/\$ - ₩1,000/\$) = 1,000,000	<전대차관 상환 시> 차) 전 대 차 관 5,000,000 외 환 차 손 1,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6,000,000 <외화환산 시> 차) 외 화 부 채 평 가 손 실^(*) 1,000,000 대) 전 대 차 관 1,000,000 (*) 전대차관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 \$5,000 × (₩1,200/\$ - ₩1,000/\$) = 1,000,000
2010. 12.31	<이자비용 수령, 지급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275,000 대) 정부내전대차관 이 자 수 익 275,000	<이자비용 지급 시> 차) 정부내전대차관 이 자 비 용 275,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75,000

일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OO부처 OO회계
	차) 해 외 차 입 금 이 자 비 용 275,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75,000 (*1) $\$5,000 \times 5\% \times \text{₩}1,100/\$ = 275,000$	(*1) $\$5,000 \times 5\% \times \text{₩}1,100/\$ = 275,000$
	<관리수수료 수령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2,888 대) 수수료수익 ^(*1) 2,888 (*1) $(\$5,000 + \$250) \times 0.05\% \times \text{₩}1,100/\$ = 2,888$	<관리수수료 지급 시> 차) 지급수수료 ^(*1) 2,888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888 (*1) $(\$5,000 + \$250) \times 0.05\% \times \text{₩}1,100/\$ = 2,888$
	<전대차관대여금 회수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500,000 외 환 차 손 ^(*1) 500,000 대)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 6,000,000 (*1) $\$5,000 \times (\text{₩}1,100/\$ - \text{₩}1,000/\$) = 500,000$	<전대차관상환 시> 차) 전 대 차 관 6,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500,000 외 환 차 익 ^(*1) 500,000 (*1) $\$5,000 \times (\text{₩}1,100/\$ - \text{₩}1,000/\$) = 500,000$
	<차관상환 시> 차) 해 외 차 입 금 6,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500,000 외 환 차 익 ^(*2) 500,000 (*2) $\$5,000 \times (\text{₩}1,100/\$ - \text{₩}1,000/\$) = 500,000$	

적용사례34. (☞ 관련문단 49) 전대차관 원화정산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09년 1월 1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OO부처 OO회계는 IBRD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대차관 \$15,000을 도입하였다.

금액: \$15,000
액면이자율: 연 5%
이자지급: 12월 31일 (연 1회)
전대차관 만기일: 2011년 12월 31일
환율변동에 관한 자료: 2009년 초 ₩1,000/\$, 2009년 말 ₩1,200/\$, 2010년 말 ₩1,000/\$
관리수수료는 원리금의 0.05% 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은 IBRD로부터 2009.10.31 \$기준 상환요청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은 2009.11.30 전대차주인 OO회계에게 상환요청서를 송부하였다. 전대차주에게 송부한 상환요청서에는 2009.11.30 환율을 적용한 상환금액을 상환하도록 요청하였다.
2009.10.31 환율은 ₩1,300/\$이며, 2009.11.30 환율은 ₩1,100/\$이다.

2009년과 2010년의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회계처리

일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OO부처 OO회계
2009. 1. 1	<차관도입 시> 차)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 ^(*1) 15,000,000 대) 해 외 차 입 금 15,000,000 (*1) $\$15,000 \times \text{₩}1,000/\$ = 10,000,000$	<전대차관도입 시>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00,000 대) 전 대 차 관 15,000,000

2009. 10.31	<IBRD로부터 상환요청서 수령 시> 회계처리 없음	회계처리 없음
2009. 11.30	<전대차주에게 납부 고지 시> 회계처리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부터 상환요청서 수령 시> 회계처리 없음
2009. 12.31	<전대차관대여금등 회수 시>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6,333,663 대)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1) 5,000,000 외환차익^(*2) 500,000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3) 825,000 수수료수익^(*4) 8,663 (*1) $\\$5,000 \times \text{W}1,000/\\$ = 5,000,000$ (*2) $\\$5,000 \times (\text{W}1,100/\\$ - \text{W}1,000/\\$) = 500,000$ (*3) $\\$15,000 \times 5\% \times \text{W}1,100/\\$ = 825,000$ (*4) $(\\$15,000 + \\$750) \times \text{W}1,100/\\$ \times 0.05\% = 8,663$ <차관상환 시> 차) 해외차입금^(*1) 5,000,000 외환차손 1,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6,000,000 (*1) $\\$5,000 \times \text{W}1,000/\\$ = 5,000,000$ (*2) $\\$5,000 \times \text{W}1,200/\\$ = 6,000,000$	<전대차관 상환 시> 차) 전대차관^(*1) 5,000,000 외환차손^(*2) 500,000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3) 825,000 지급수수료^(*4) 8,663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6,333,663 (*1) $\\$5,000 \times \text{W}1,000/\\$ = 5,000,000$ (*2) $\\$5,000 \times (\text{W}1,100/\\$ - \text{W}1,000/\\$) = 500,000$ (*3) $\\$15,000 \times 5\% \times \text{W}1,100/\\$ = 825,000$ (*4) $(\\$15,000 + \\$750) \times \text{W}1,100/\\$ \times 0.05\% = 8,663$

<이자지급 시> 차) 해외차입금이자비용 9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900,000 (*1) $\\$15,000 \times 5\% \times \text{W}1,200/\\$ = 900,000$	
<원화정산 시> 차) 미수기타수익 575,788 대) 외환차익^(*1) 500,000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2) 75,000 수수료수익^(*3) 788 (*1) $(\text{W}1,200/\\$ - \text{W}1,100/\\$) \times \\$5,000 = 500,000$ (*2) $(\text{W}1,200/\\$ - \text{W}1,100/\\$) \times \\$15,000 \times 5\% = 75,000$ (*3) $(\text{W}1,200/\\$ - \text{W}1,100/\\$) \times (\\$15,000 + \\$750) \times 0.05\% = 788$	<원화정산 시> 차) 외환차손^(*1) 500,000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2) 75,000 지급수수료^(*3) 788 대) 기타의미지급비용 575,788 (*1) $(\text{W}1,200/\\$ - \text{W}1,100/\\$) \times \\$5,000 = 500,000$ (*2) $(\text{W}1,200/\\$ - \text{W}1,100/\\$) \times \\$15,000 \times 5\% = 75,000$ (*3) $(\text{W}1,200/\\$ - \text{W}1,100/\\$) \times (\\$15,000 + \\$750) \times 0.05\% = 788$
<외화환산 시> 차) 전대차관대여금 2,000,000 외화부채평가손실^(*1) 2,000,000 대) 해외차입금 2,000,000 외화자산평가이익^(*2) 2,000,000 (*1) 해외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 $\\$10,000 \times (\text{W}1,200/\\$ - \text{W}1,000/\\$) = 2,000,000$ (*2) 전대차관대여금에 대한 외화평가이익 = $\\$10,000 \times (\text{W}1,200/\\$ - \text{W}1,000/\\$) = 2,000,000$	<외화환산 시> 차) 외화부채평가손실^(*1) 2,000,000 대) 정부내전대차관 2,000,000 (*1) 전대차관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 $\\$10,000 \times (\text{W}1,200/\\$ - \text{W}1,000/\\$) = 2,000,000$

적용사례35. (☞ 관련문단 50) CPS차관과 일반차관의 차이

1. 개념

OO부처는 IBRD로부터 2009년 \$100,000의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2년간에 걸쳐 \$50,000씩 2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였다.

- 환율 정보 -
- 차입 시: ₩1,000/\$
- 1회차 상환도래 시: ₩1,200/\$
- 2회차 상환도래 시: ₩1,100/\$

① 일반차관

일반차관에 해당할 경우 차관을 도입한 OO부처의 차관액 및 상환액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차관액 = \$100,000 × ₩1,000/\$ = ₩100,000,000
2009년 말 차관 상환액 = \$50,000 × ₩1,200/\$ = ₩60,000,000
2010년 말 차관 상환액 = \$50,000 × ₩1,100/\$ = ₩55,000,000

② CPS차관

CPS차관에 해당할 경우 차관을 도입한 OO부처의 차관액 및 상환액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차관 시 IBRD가 고시한 PUV는 PUV 0.5/\$ 이다.
2009년 말 PUV는 PUV 0.3/\$, 2010년 말 PUV는 PUV 0.4/\$이다.

2009년 차관 시 차관액 \$100,000의 PUV는 \$100,000 × PUV 0.5/\$ = PUV 50,000 이다. 향후 상환액은 2009년 말과 2010년 말 각각 PUV 50,000 × 1/2 = PUV 25,000 씩이다.
이 때 OO부처의 향후 상환액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차관액 = PUV 50,000 × \$2/PUV × ₩1,000/\$ = ₩100,000,000
2009년 말 차관 상환액 = PUV 25,000 × \$3.33/PUV × ₩1,200/\$
= \$83,250 × ₩1,200/\$
= ₩99,900,000

2010년 말 차관 상환액 = PUV 25,000 × \$2.5/PUV × ₩1,100/\$
= \$62,500 × ₩1,100/\$
= ₩68,750,0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S 차관의 경우 PUV에 따라 차관액이 변동하게 됨에 따라 차관통화 기준의 원금이 PUV에 따라 연동하게 된다.

적용사례36. (☞ 관련문단 50) CPS차관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은 IBRD로부터 2009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CPS 차관을 도입하였다.

액면가액: \$100,000
액면이자율: 연 5%
이자지급: 12월 31일 (연 1회)
만기일: 2010년 12월 31일
환율변동에 관한 자료: 2009년 초 ₩1,000/\$, 2009년 말 ₩1,200/\$, 2010년 말 ₩1,100/\$
PUV에 관한 자료: 2009년 초 PUV 0.5/\$, 2009년 말 PUV 0.4/\$, 2010년 말 PUV 0.55/\$
원금상환: 2009년 말 PUV 25,000, 2010년 말 PUV 25,000

2. 회계처리

2009년 및 2010년까지의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입금 원금액 상환표>

	2009.1.1 차입액	2009.12.31 상환액	2010.12.31 상환액
\$기준(PUV기준 금액/ PUV환율)	100,000	62,500	45,455
PUV기준(원금/상환기간)	50,000	25,000	25,000
원화 기준(\$기준금액×원화환율)	100,000,000	75,000,000	50,000,000

<차입금 이자 상환표>

	2009~2010 이자	2009.12.31 상환액	2010.12.31 상환액
\$기준(PUV기준 금액/PUV환율)	8,523	6,250	2,273
PUV기준(PUV기준 원금×5%)	3,750	2,500	1,250
원화 기준(\$기준금액×원화환율)	-	7,500,000	2,500,000

- 2009년 1월 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1} 100,000,000 대) 해외차입금 / 장기 50,000,000
해외차입금 / 단기 50,000,000

- 2009년 12월 31일 -

<차입금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해외차입금 / 단기 5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1} 82,500,000
해외차입금이자비용^{(*)2} 7,500,000
외환차손^{(*)3} 25,000,000

(*)1 상환액 = 원금 + 이자 = 75,000,000 + 7,500,000 = 82,500,000

(*)2 이자비용 = 2009년 원화 상환액

(*)3 외환차손 = \$기준 원금상환액의 환율변동액 + PUV 적용에 따른 원금 변동분
= \$50,000 × (₩1,200 - ₩1,000) + (\$62,500 - \$50,000) × ₩1,200
= 25,000,000

<외화평가 시>

차) 외화부채평가손실^{(*)1} 25,000,000 대) 해외차입금 / 장기 25,000,000

(*)1 차입금 잔액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 \$기준 차입금잔액의 환율변동액 + PUV 적용에 따른 원금 변동분
= \$50,000 × (₩1,200 - ₩1,000) + (\$62,500 - \$50,000) × ₩1,200
= 25,000,000

<유동성대체 시>

차) 해외차입금 / 장기 75,000,000 대) 해외차입금/유동성장기 75,000,000

- 2010년 12월 31일 -

<차입금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해외차입금/유동성장기 75,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1} 52,500,000
해외차입금이자비용^{(*)2} 2,500,000 외환차익^{(*)3} 25,000,000

(*)1 상환액 = 원금 + 이자 = 50,000,000 + 2,500,000 = 52,500,000

(*)2 이자비용 = 20X2년 원화 상환액

(*)3 외환차익 = \$기준 원금상환액의 환율변동액 + PUV 적용에 따른 원금 변동분
= - (\$62,500 × (₩1,100 - ₩1,200) + (\$45,455 - \$62,500) × ₩1,100)
= 25,000,000

적용사례37. (※ 관련문단 50) CPS차관 외화정산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은 IBRD로부터 2009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CPS 차관을 도입하였다.

액면가액: \$150,000

액면이자율: 연 5%

이자지급: 12월 31일 (연 1회)

만기일: 2011년 12월 31일

환율변동에 관한 자료:

2009년초 ₩1,000/\$, 2009년말 ₩1,200/\$, 2010년말 ₩1,100/\$, 2011년말 ₩1,300/\$

PUV에 관한 자료:

2009년초 PUV 0.5/\$, 2009년말 PUV 0.4/\$, 2010년말 PUV 0.55/\$, 2011년말 PUV 0.5/\$ 2009.10.31 PUV 0.45/\$, 2010.10.31 PUV 0.4/\$, 2011.10.31 PUV 0.35/\$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은 IBRD로부터 상환일인 2009.10.31 PUV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상환요청서를 수령하여 상환요청서상의 기재금액을 상환하였다.

2010년 상환 시에도 2009년의 상환 시와 동일하게 상환요청서에 의하여 상환하였다. 다만, 상환요청서에 2009년 외화정산금액이 고려된 금액에 의하여 상환하였다.

2. 회계처리

2009년까지의 회계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입금 원금액 상환표 - 실제 상환금액>

	2009.1.1 차입액	2009.12.31 상환액	2010.12.31 상환액	2011.12.31 상환액
\$기준 ^{(*)1}	150,000	55,556	62,500	71,429
PUV기준 ^{(*)2}	75,000	25,000	25,000	25,000
원화 기준 ^{(*)3}	150,000,000	66,666,667	68,750,000	92,857,143

(*)1 PUV기준 금액 / PUV환율(상환요청서상 환율: 10.31 PUV 적용함)

(*)2 원금 / 상환기간

(*)3 \$기준금액 × 원화환율(상환시점의 환율: 12.31환율)

	2009~2010 이자	2009.12.31 상환액	2010.12.31 상환액	2011.12.31 상환액
\$기준	18,155	8,333	6,250	3,571
PUV기준 ^(*)	7,500	3,750	2,500	1,250
원화 기준	-	10,000,000	6,875,000	4,642,857

	2009.1.1 차입액	2009.12.31 상환액	2010.12.31 상환액	2011.12.31 상환액
\$기준 ^(*1)	150,000	62,500	45,455	50,000
PUV기준 ^(*2)	75,000	25,000	25,000	25,000
원화 기준 ^(*3)	150,000,000	75,000,000	50,000,000	65,000,000

	2009~2011 이자	2009.12.31 상환액	2010.12.31 상환액	2011.12.31 상환액
\$기준	10,000	9,375	4,545	2,500
PUV기준 ^(*)	7,500	3,750	2,500	1,250
원화 기준	-	11,250,000	5,000,000	3,250,000

차) 해외차입금/장기 75,000,000 대) 해외차입금/유동성장기 75,000,000



- 2010년 12월 31일 -

<차입금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해 외 차 입 금 / 단 기 75,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1} 75,625,000
 해외차입금이자비용^{(*)2} 5,000,000 외 환 차 익^{(*)3} 25,000,000
 기 타 의 미 수 금^{(*)4} 1,875,000
 기 타 의 미 수 금^{(*)5} 18,750,000

(*)1 상환액 = 원금 + 이자 = 68,750,000 + 6,875,000 = 75,625,000

(*)2 이자비용 = 2010년 말 시점의 PUV 적용 상환하였어야 할 이자비용

(*)3 외환차손 = \$기준 원금상환액의 환율변동액 + PUV 적용에 따른 원금 변동분
 = \$62,500 × (₩1,200 - ₩1,100) + (\$62,500 - \$45,455) × ₩1,100
 = 25,000,000

(*)4 기타의미수금

=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이자비용 -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
 = 5,000,000 - 6,875,000
 = (-)1,875,000

(*)5 기타의미수금

=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원금상환액 - 실제 지급한 원금상환액
 = 50,000,000 - 68,750,000
 = (-)18,750,000

<외화평가 시>

차) 해 외 차 입 금 / 장 기 25,000,000 대) 외화부채평가이익^{(*)1} 25,000,000

(*)1 차입금 잔액에 대한 외화평가이익

= \$기준 차입금잔액의 환율변동액 + PUV 적용에 따른 원금 변동분
 = \$62,500 × (₩1,200 - ₩1,100) + (\$62,500 - \$45,455) × ₩1,100
 = 25,000,000

<유동성대체 시>

차) 해 외 차 입 금 / 장 기 50,000,000 대) 해외차입금/유동성장기 50,000,000

- 2011년 12월 31일 -

<차입금 및 이자비용 상환 시>

차) 해 외 차 입 금 / 단 기 5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1} 97,500,000
 해외차입금이자비용^{(*)2} 3,250,000
 기 타 의 미 수 금^{(*)3} 1,392,857
 기 타 의 미 수 금^{(*)4} 27,857,143
 외 환 차 손^{(*)5} 15,000,000

(*)1 상환액 = 원금 + 이자 = 92,857,143 + 4,642,857 = 97,500,000

(*)2 이자비용 = 2011년 말 시점의 PUV 적용 상환하였어야 할 이자비용

(*)3 기타의미수금

=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이자비용 -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
 = 3,250,000 - 4,642,857
 = (-)1,392,857

(*)4 기타의미수금

=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원금상환액 - 실제 지급한 원금상환액
 = 65,000,000 - 92,857,143
 = (-)27,857,143

(*)5 외환차손 = \$기준 원금상환액의 환율변동액 + PUV 적용에 따른 원금 변동분
 = \$45,455 × (₩1,300 - ₩1,100) + (\$50,000 - \$45,455) × ₩1,300
 = 15,000,000

적용사례38. (☞ 관련문단 51) 물가연동국채의 회계처리-할인발행, 연2회 이자지급

1. 발행조건 및 지급이자 산출 방식

(1) 연동지수 및 방법: 연동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되, 특정일의 물가지수 계산 시 3개월 전의 CPI를 중점 반영하는 Canadian Model(국제적 기준)을 채택한다.

(2) 만 기: 10년

(3) 원금보장 여부: 물가 하락 시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4) 발행 방법(2007.7.1. 확정)

1) 월 1회(셋째주 수요일) 경쟁입찰

2) 10년 명목국채와 마찬가지로 9월 기준 통합발행

(다만, 2007년 4~12월 및 2008년 1~8월 발행분은 2007년 3월분에 통합)

(5) 2008년에 도입된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원금 가치를 조정하고
이자는 조정된 원금에 표면금리를 곱하여 지급하는 자본 지수연동채권이다.

- 1) 특정시점 원금 가치 = 원금 × 연동기준 물가지수 변동률
- 2) 지급 이자 = 이자지급 시점에서의 원금 가치 × 표면금리

2. 배경정보

1. 국채발행조건

발행일	2009년 4월 1일		
액면가액	100,000,000		
액면이자율	2.75%/year		
시장이자율	3.00%/year		
이자지급	연 2회(3.31과 9.30)		
연간복리이자	1.49%/6 month	$1+3\%=(1+X)^2$	$X \approx 1.49\%$

일자별연동계수

구분	발행일	이자지급일	결산일	결산일	결산일	만기일
일자	2009.4.1.	2009.9.30.	2009.12.31.	2012.12.31.	2013.12.31.	2014.3.31.
연동계수	1	1.01	1.03	1.1	1.4	1.3

2. 국채현재가치 (PV)

원금 (PV)	86,260,878
이자 (PV)	<u>12,687,954</u>
합계	98,948,832
국채할인발행차금	1,051,168

3. 국채상각표

(단위: 원)

기간	유효이자	액면이자	할인발행차금상각액	장부가액
2009. 4. 1.				98,948,832
2009. 9.30.	1,473,265	1,375,000	98,265	99,047,096
2010. 3.31.	1,474,728	1,375,000	99,728	99,146,824
2010. 9.30.	1,476,213	1,375,000	101,213	99,248,037
2011. 3.31.	1,477,720	1,375,000	102,720	99,350,756
2011. 9.30.	1,479,249	1,375,000	104,249	99,455,005
2012. 3.31.	1,480,801	1,375,000	105,801	99,560,806
2012. 9.30.	1,482,376	1,375,000	107,376	99,668,183
2013. 3.31.	1,483,975	1,375,000	108,975	99,777,158
2013. 9.30.	1,485,598	1,375,000	110,598	99,887,756
2014. 3.31.	1,487,243	1,375,000	112,243	100,000,000
합계	14,801,168	13,750,000	1,051,168	

3. 회계처리 (유동성대체 회계처리 생략)

- 2009년 4월1일 발행 시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98,948,832 대) 국채(물가연동국채)/장기 10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1,051,168

- 2009년 9월 30일 이자지급 시 -

차) 국 채 이 자 비 용 1,487,015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388,75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98,265

- 2009년 12월 31일 결산 시 -

차) 국 채 이 자 비 용 766,317 대) 미지급이자비용/단기 715,906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50,411
국 채 물 가 연 동 손 실 3,000,000 국채(물가조정금)/장기 3,000,000



- 2013년 12월31일 결산 시 -

차) 국 채 이 자 비 용	1,029,815	대) 미지급이자비용/단기	973,077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56,738
국 채 물 가 연 동 손 실	30,000,000	국채(물가조정금)/장기	30,000,000

- 2014년 3월31일 결산 시 -

차) 국채(물가조정금)/장기	10,000,000	대) 국 채 물 가 연 동 이 익	10,000,000
차) 국채(물가연동국채)/장기	1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31,787,500
국채(물가조정금)/장기	30,000,000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55,505
미지급이자비용/단기	973,077		
국 채 이 자 비 용	869,928		

적용사례39. (※ 관련문단 52) 변동금리부국채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9년 3월 31일 다음과 같은 변동금리국채를 발행하였다. 변동금리국채는 이자지급일 현재의 CD금리 + 0.25%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변동금리부국채는 발행일자(3월 31일)와 만기일자(3월 31일)가 일치
반드시 1년물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스왑도 반드시 만기 1년은 아님
국채할인발행차금 및 할증발행차금 발생하지 않음
- 발행조건

(1) 액면가액: 100,000,000

(2) 이자율조건

		금리결정일*	2009년3월31일	2009년9월30일
		이자지급일** (현금흐름발생)	2009년9월30일	2010년3월31일
기준금리	CD금리(변동)		5.00%	5.25%

		금리결정일*	2009년3월31일	2009년9월30일
		이자지급일** (현금흐름발생)	2009년9월30일	2010년3월31일
가산금리	고정		0.25%	0.25%
기준+가산금리	변동금리부국채이자율		5.25%	5.50%
이자금액			2,625,000	2,750,000

* 발행 시 제1기 이자 지급이자율 결정, 제1기 이자 지급 시 제2기 지급이자율 결정

** 실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이자지급일은 이자지급일-1일임

(3) 발행조건: 액면발행

(4) 이자지급일: 3월 31일과 9월 30일(6개월마다 지급)

(5) 발행일: 2009. 3.31.

(6) 만기일: 2010. 3.31.

2. 회계처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므로 중요성 관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부채를 계상함

일자	내역	국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2009.3.31	국채발행일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국채/단기* *반드시 1년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100,000,000
2009.9.30	제1기 국채이자지급일	국채이자비용	2,625,000	한국은행국가예금	2,625,000
2009.12.31	국채결산일	국채이자비용	1,390,110	미지급이자비용/단기(*1)	1,390,110
2010.3.31	국채만기및 제2기이자지급	국채이자비용 미지급이자비용/단기(*1) 국채/단기	1,359,890 1,390,110 10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102,750,000

(*1) 국채결산일 미지급이자비용 = 2,750,000 × 92/182 = 1,390,110

* 매 회계연도 말에 국채이자비용과 국채이자수익에 대하여 내부거래 제거를 수행함



5.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205
● 적용범위	2	205
● 용어의 정의	3	205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4-5	206
● 최초 인식	6-27	213
○ 인식의 일반원칙	6	213
○ 인식의 예외사항	7-8	214
○ 취득원가의 측정	9-27	216
● 인식 후 평가	28-67	233
○ 감가상각	28-46	233
○ 재평가	47-63	243
○ 감액	64-67	254
● 제거	68-69	256
● 공시	70-74	259
● 경과조치	75-76	260
● 부칙		261

	【문단번호】	【페이지】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17	
부록 2. 실무해설	1-23	
부록 3. 적용사례	1-30	
부록 4.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IG1-IG21	262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38조의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
- (2)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 (3)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유·무형자산)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유·무형자산)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2)) 사회기반시설은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인 공공적 자본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건물은 그 효용이 사회기반시설 본연의 목적과 연관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관리목적으로 활용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 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 (5) "장부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을 말한다.

III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4. (일반유형자산의 구분)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토지"란 대지, 임야, 전답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말한다)에 등록·관리되는 대상을 말한다.
-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 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 (4) "전비품"이란 「군수품관리법」 상 전비품으로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 (5) "소모성군수품"이란 「군수품관리법」 상 통상품 중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을 말한다.
- (6) "기계장치"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하며, 물품

실무해설2. (※ 관련문단 4) 일반유형자산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무형자산	일반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	전비품
				소모성군수품
			기계장치	고정성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선박및항공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전기통신기기

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고정성기계장치"로 구분한다.

(7) "집기·비품·차량운반구"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선박및항공기"를 말한다.

(8)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 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입목: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다)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 화물품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

(라) 임차개량자산: 임차자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임차인의 부담분에 한한다) 중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부분

(마)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가) 내지 (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일반유형자산

(9)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무형자산	일반 유형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치안유지자산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토지
				건설중인건물
				건설중인구축물
				건설중인전비품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건설중인사무용기기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건설중인운반건설기계및차량
				건설중인전기통신기기
				건설중인치안유지자산
				건설중인입목
				건설중인기타의기타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5.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사회기반시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국도"는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으로서 일반국도를 말한다.
- (2)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말한다.
- (3)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로서 일반철도,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를 말한다.
- (4)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에 따라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시설로서 지정항만을 말한다.
- (5) "댐"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서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다목적댐을 말한다.
- (6)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공항 시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 (7)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8) "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의미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

- 도로법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23. 8. 16.>
- 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20. 1. 29.>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20. 6. 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행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2023. 10. 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말한다.

(9) "국가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어항중 국가어항을 말한다.

(10)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3.>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3. 24.>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실무해설3. (※ 관련문단 5) 사회기반시설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무형 자산	사회기반 시설	국도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고속국도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철도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항만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댐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공항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하천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무형 자산	사회기반 시설	상수도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국가어항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국도/토지
				건설중인국도/건물
				건설중인국도/구축물
				건설중인국도/기타
				건설중인고속국도/토지
				건설중인고속국도/건물
				건설중인고속국도/구축물
				건설중인고속국도/기타
				건설중인철도/토지
				건설중인철도/건물
				건설중인철도/구축물
				건설중인철도/기타
				건설중인항만/토지
				건설중인항만/건물
				건설중인항만/구축물
				건설중인항만/기타

III 최초 인식

II 인식의 일반원칙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 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무형 자산	사회기반 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땅/토지
				건설중인땅/건물
				건설중인땅/구축물
				건설중인땅/기타
				건설중인공항/토지
				건설중인공항/건물
				건설중인공항/구축물
				건설중인공항/기타
				건설중인하천/토지
				건설중인하천/건물
				건설중인하천/구축물
				건설중인하천/기타
				건설중인상수도/토지
				건설중인상수도/건물
				건설중인상수도/구축물
				건설중인상수도/기타
				건설중인국가어항/토지
				건설중인국가어항/건물
				건설중인국가어항/구축물
				건설중인국가어항/기타

실무해설4. (☞ 관련문단 6. (1))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5
적용사례 1

II 인식의 예외사항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취득비"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적용사례 2

적용사례 1. (☞ 관련문단 6. (1)) 소유권이전등기와 자산 인식

1. 상황

A부처는 외국인투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100억원에 체결하였다. A부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개시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유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A부처는 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납부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인식여부 검토

A부처가 매대한 토지가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법적소유권 이전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산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사용을 개시한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6. (2))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무해설6. (☞ 관련문단 7) 유산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한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그 관리주체가 국가인 문화재
- (2)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을 의미하며, 공원시설은 제외
- (3)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과 같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국가인 보호구역 유산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도 청사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산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며,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술품을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예술품은 취득원가(역사적원가)나 기부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

관련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적용사례2. (※ 관련문단 7) 유산자산의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20X1년 1월 1일 AA부처는 유산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100,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때 20X1년 1월 1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20X1년 1월 1일 -

차)	유 산 자 산 취 득 비	100,000,000	대)	국	고	금	100,000,000

8. (국가안보자산)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취득원가의 측정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적용사례 3

10.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취득)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결산시점의 일괄적인 기성평가(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품질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뢰성 있는 기성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대금지급액(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또는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적용사례3. (☞ 관련문단 9~10)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사례

1. 취득원가(취득자산의 공정가액)의 회계처리

일반회계에서 청사부지용 토지를 5억원을 들여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검수 확인한 경우 회계처리(계약 시 1억원 지급 및 자산 인수 후 2주 이내 잔금 결제 조건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선금금(100,000,000원) 지급 시 -

차) 건 설 중 인 토 지	100,000,000	대) 국	고	금	100,000,000

- 검수 후 자산대장 등재 시 -

차) 토	지	500,000,000	대) 건 설 중 인 토 지	100,000,000	
	미 지 급	금	400,000,000	금	400,000,000

- 미지급금 지급 시 -

차) 미 지 급	금	400,000,000	대) 국	고	금	400,000,000

11. (전비품 등의 취득)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비품과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장비 및 물품은 예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적용할 수 있다.

¹³⁸ 관련부록 실무해설 8

2. 취득부대비비용의 회계처리

청사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설비에서 30억원, 실시설계비에서 5천만원, 감리비에서 3천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억원 등 총 31억 8천만원이 집행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시설비 지출 시 -

차) 건 설 중 인 건 물 3,000,000,000 대) 국 고 금 3,000,000,000

- 실시설계비 지출 시 -

차) 건 설 중 인 건 물 50,000,000 대) 국 고 금 50,000,000

- 감리비 지출 시 -

차) 건 설 중 인 건 물 30,000,000 대) 국 고 금 30,000,000

- 시설부대비 지출 시 -

차) 건 설 중 인 건 물 100,000,000 대) 국 고 금 100,000,000

- 공사 완공 시 -

차) 건 물 3,180,000,000 대) 건 설 중 인 건 물 3,180,000,000

※ 목별로 지출결의서가 각각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공사 건과 관련된 지출은 동일한 건설중인건물로 회계처리된 후 최종적으로 건물로 회계처리됨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실무해설8. (¹³⁸ 관련문단 11) 표준단가는 국방 회계처리 지침 중 군수품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다음 회계연도 동안 적용하며, 1년에 한 번씩 재산정한다. 다만, 표준단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기간 종료 전에도 방위사업청의 승인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2. (자가제작을 통한 취득) (1) 자가제작 자산의 취득원가는 투입원가를 기초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2) 자가제작 자산의 경우 제작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에 투입된 원재료, 노무비, 기타 간접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자산 취득원가의 합리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적 중요성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적용사례 4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3)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전환은 세입세출 예산과는 관련 없이 회계실체의 경제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예산외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리전환은 무상관리전환과 유상관리전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3) 관리전환 회계처리 사례

1. 무상관리전환

AA부처는 소유중인 건물을 BB부처로 무상관리전환 처리하였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6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2억원, 재평가이익은 1억원이다. 이에 대하여 AA부처는 해당 건물을 BB부처에 무상관리전환을 실시하였다.

<AA부처 - 무상관리전환하여 주는 부처>

차)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대) 건물	600,000,000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000,000		
정 부 내 자 산 기 부	300,000,000		

<BB부처 - 무상관리전환 받는 부처>

차) 건물	물 (*1) 600,000,000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000,000
		정 부 내 자 산 수 증	300,000,000

(*1) 관리전환받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총액으로 승계

14. (일괄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일괄취득한 자산 중 일부 자산의 공정가액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우선 배분하고, 잔액은 나머지 자산에 배분한다. 다만, 일괄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안분의 경우에는 개별자산별 대응이 가능한 취득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안분을 하고, 대응이 어려운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시 비용화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5

2. 유상관리전환

AA부처는 소유종인 건물을 BB부처로 유상관리전환 처리하였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4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1억원이다. 유상관리전환에 따라 BB부처는 AA부처에 4.5억원의 관리전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AA부처 - 유상관리전환하여 주는 부처>

차)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대) 건물	400,000,000
국고금	450,000,000	일반유형자산	150,000,000
		처분이익	

<BB부처 - 유상관리전환 받는 부처>

차) 건물	(*) 450,000,000	대) 국고금	450,000,000

(*) 관리전환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함

적용사례5. (☞ 관련문단 14) 일괄취득 사례

1. 배경정보

토지와 건물을 5억원에 일괄 매입하였음. 토지의 감정가액은 3억원이고 건물의 감정가액은 3억원이다.(계약 시 1억원 지급 및 자산 인수 후 2주 이내 잔금 결제 조건인 경우)

2. 회계처리

- 선금금(100,000,000원) 지급 시 -

차)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	100,000,000	대) 국고금	100,000,000

- 검수 후 자산대장 등재 시 -

차) 토지	지 ^(*1) 250,000,000	대)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	100,000,000
건물	물 ^(*2) 250,000,000	미지급금	400,000,000

(*1) 토지 취득가액 = 500,000,000(지급총액) × 300,000,000(토지 감정가액/600,000,000(감정가액 총액)) = 250,000,000

(*2) 건물 취득가액 = 500,000,000(지급총액) × 300,000,000(건물 감정가액/600,000,000(감정가액 총액)) = 250,000,000

- 미지급금 지급 시 -

차) 미지급금	금 400,000,000	대) 국고금	400,000,000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6~7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5)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교환의 경우

1. 배경정보

일반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건물(A)	건물(B)	비 고
취득가액	500,000,000	6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450,000,000	
순장부가액	200,000,000	150,000,000	
공정가액	450,000,000	410,000,000	

2. 회계처리

- 교환 자산 등재 시 -
<건물A를 제공하고 건물B를 받는 회계실체>
차) 건 물(B)^(※1) 450,000,000 대) 건 물 (A) 5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A) 300,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2) 250,000,000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2)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건물B를 제공하고 건물A를 받는 회계실체>
차) 건 물(A)^(※1) 410,000,000 대) 건 물 (B) 6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B) 450,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2) 260,000,000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2)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5) 현금이 수반되는 교환의 경우

1. 배경정보

일반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현금을 받는 다음의 조건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건물(A)	건물(B)	비 고
취득가액	500,000,000	6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450,000,000	
순장부가액	200,000,000	150,000,000	
공정가액	450,000,000	410,000,000	
현금수령액	40,000,000	(-)40,000,000	

2. 회계처리

<건물A를 제공하고 건물B를 받는 회계실체>

- 교환 자산 등재 시 -

차) 건물(B)^(*1) 410,000,000 대) 건물(A) 5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A) 300,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2) 250,000,000
 기 타 의 미 수 금 40,000,000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현금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2)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 미수금 회수 시 -

차) 국 고 금 ^(*1) 40,000,000 대) 기 타 의 미 수 금 40,000,000

(*1) 국고금 회계처리 생략

<건물B를 제공하고 건물A를 받는 회계실체>

- 교환 자산 등재 시 -

차) 건물(A)^(*1) 450,000,000 대) 건물(B) 6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A) 450,000,000 기 타 의 미 지 급 금 40,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2) 260,000,000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현금지급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2)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

- 미지급금 지급 시 -

차) 기 타 의 미 지 급 금 40,000,000 대) 국 고 금 ^(*1) 40,000,000

(*1) 국고금 회계처리 생략

16. (무상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다만, 무상 사용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 관련문단 33
관련부록 실무해설 10
적용사례 8~9

17. (기존 건물 철거비용) (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6) 국고귀속 및 환수 등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용사례8. (☞ 관련문단 16) 자산을 기부 받고 일부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1. 배경정보			
AA부처는 공정가액이 2억원인 향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동 향만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1억원으로 평가되었다.			
2. 회계처리			
- 기부채납에 따른 자산 등재 시 -			
차) 향	만 ^(*1) 200,000,000	대) 향 만 사용 수익 권 ^(*2)	100,000,000
		정 부 외 자 산 수 증	100,000,000
(*1) 기부채납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함			
(*2) 사용수익권을 평가하여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함			

적용사례9. (☞ 관련문단 16) 무주부동산을 발굴한 경우

1. 배경정보			
AA부처는 토지(무주부동산)를 발굴하여 자산에 등재하였으며, 토지의 공정가액은 1천만원으로 평가되었다.			
2. 회계처리			
- 무주부동산 발굴에 따른 자산 등재 시 -			
차) 토	지 ^(*1) 10,000,000	대) 잡 이 익	10,000,000
(*1) 발굴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취득등록시점에 발굴자산의 상세한 내역을 기표함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18. (장기연불조건의 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매입대금을 장기에 걸쳐서 지급하고 매입대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매입대금의 현재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이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에 따른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0

적용사례10. (☞ 관련문단 18) 장기연불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 배경정보

공정가액 472,324,803원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 고
20X0. 6.30	100,000,000	선급금
20X1. 1. 1	100,000,000	검수 및 자산 등재
20X1.12.31	100,000,000	
20X2.12.31	100,000,000	
20X3.12.31	100,000,000	

<상환 및 채무가액 변동표>

구 분 \ 일 자	20X1.1.1	20X1.12.31	20X2.12.31	20X3.12.31
①채무총액	-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②현재가치할인차금	-	27,675,197	14,058,957	4,761,905
③채무순액(①-②)	-	272,324,803	185,941,043	95,238,095
④상환금액	-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⑤이자비용(5%)(③×5%)	-	13,616,240	9,297,052	4,761,905
⑥채무순액감(증)(④-⑤)	-	86,383,760	90,702,948	95,238,095
⑦채무순액(③-⑥)	272,324,803	185,941,043	95,238,095	-

(*) 유효이자율(5%)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액과 총 현금유출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임

19.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자산의 반환) 과거에 매각 또는 양여 등에 의하여 처분한 자산을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반환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반환 당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반환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과 반환금액의 차액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1~12

2. 회계처리

- 20X0.6.30 선급금 지급 시-

차) 건 설 중 인 토 지 100,000,000 대) 국 고 금 100,000,000

- 20X1. 1. 1 검수 후 자산대장 등재 시 -

차) 토 지(*1) 472,324,803 대) 건 설 중 인 토 지 100,000,000

기 타 의 미 지 급 금 13,616,240 국 고 금 100,000,000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2) 기 타 의 미 지 급 금 100,000,000

기 타 의 장 기 미 지 급 금 14,058,957 기 타 의 장 기 미 지 급 금 200,000,000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3)

(*1) 국고금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공정가액을 계상함. 지급조건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멸될 현재가치할인차금임

(*3) 취득 후 1년 후에 소멸될 현재가치할인차금임

적용사례11. (☞ 관련문단 19)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매각자산의 반환

1. 배경정보

국가는 민간에 아래의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하였다.

건물 장부가액: 100억원

취득가액: 40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300억원

잔여내용연수 10년

매각 대금: 150억원(공정가액: 170억원)

매각이 아닌 임대인 경우 사용료: 연간 15억원

단서조건: 매각 후 10년간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취소를 할 수 있음

현황: 매각 후 7년 경과한 후에 용도 외로 사용함. 이에 따라 매각철회가 발생함. 철회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60억원임. 매각 취소 시 매각대금에서 매각 후부터 매각취소기간 동안의 사용료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함. 매각 취소 시 취득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액이며 반환금액과의 차액을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함

2. 회계처리

- 매각 시 -

차) 국	고	금	150억원	대) 건	물	400억원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억원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50억원

- 매각 취소로 인한 자산 취득 시 -

차) 건	물	60억원	대) 국	고	금(*)	45억원
			잡	이	익	15억원

(*) 매각대금(150억원) - 사용료 상당액(15억원 × 7년) = 45억원

적용사례12. (☞ 관련문단 19)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양여자산의 반환

1. 배경정보

국가는 민간에 아래의 조건으로 건물을 양여하였다.

양여 건물 장부가액: 100억원(취득가액: 40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300억원, 잔여내용연수 10년, 공정가액: 170억원)

양여가 아닌 임대인 경우 사용료: 연간 15억원

단서조건: 양여 후 10년간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여 취소를 할 수 있음

현황: 양여 후 7년 경과한 후에 용도 외로 사용함. 이에 따라 양여취소가 발생함. 철회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60억원임. 양여취소 시 취득가액은 양여취소 시 자산의 공정가액임

2. 회계처리

- 양여 시 -

차) 정 부 외 자 산 기 부	100억원	대) 건	물	400억원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억원			

- 양여취소로 인한 자산 등재 시 -

차) 건	물 (*)	60억원	대) 잡	이	익	60억원

(*) 양여취소 당시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함

20. (담보권 행사로 인한 취득) 대여금 등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행사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담보권 행사 당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자산의 공정가액과 담보권 설정금액의 차액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3](#)

21. (물납으로 인한 취득) 국세의 물납으로 인해 취득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이 아닌 국세수의 등으로 인식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적용사례 14](#)

적용사례13. (☞ [관련문단 20](#)) 담보권 행사로 인한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국가는 민간에 장기융자금 10억원을 대여하면서 민간이 소유한 건물(공정가액 20억원, 장부가액 15억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간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는 담보권을 행사하였다.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총 20억원이 회수되었는데, 이는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었다. 국가는 20억원 중 국가지분 10억원을 제외하고 차액 10억원은 민간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담보권 행사 시 -

차) 국	고	금	20억원	대) 예	수	금 ^(*1)	10억원
					장	기	용
						자	금
							10억원

(*1)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 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간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함

관련규정

-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문단 10\(물납\)](#)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21](#)) 국세를 물납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국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이전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된다. 국세청이 물납으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취득 시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획재정부 이관 시 "물납이전"으로 처리한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는 물납자산을 이관받을 때 "정부내자산수증"으로 처리하고, 일반유형자산의 상각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2. (공사 지출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완공 후 취득시 취득원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 관련문단 33
관련부록 적용사례 15

적용사례14. (☞ 관련문단 21) 물납으로 인한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대한민국 국민인 A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물납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총상속세 10억원을 토지로 물납하게 되었다. 국세를 물납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은 국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이전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해당 자산을 이전하면서 "물납이전"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서는 "정부내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한다. 상속세관련 물납으로 인한 자산 취득 등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상속세 부과 시 -			
차) 미 수 국 세	10억원	대) 상 속 세 수 익	10억원
- 상속세 물납 시 -			
차) 건설종인기타의유형자산	10억원	대) 미 수 국 세	10억원
- 국유재산 이전 시 -			
<국세청>			
차) 물 납 이 전	10억원	대) 건설종인기타의유형자산	10억원
<기획재정부>			
차) 토 지	10억원	대) 정 부 내 자 산 수 증	10억원

적용사례15. (☞ 관련문단 22) 공사 지출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아래의 조건으로 고속철도 공사를 위탁하였다.

(1) 위탁 조건 및 고속철도 관련 지출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토지매입비	1,000억원	
공사비	3,000억원	
합 계	4,000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국가부담(35%)	1,400억원	공사지출금으로 일부 지출
철도시설공단부담(65%)	2,600억원	차입금(5년, 5%, 균등상환)
합 계	4,000억원	

2. 회계처리

- 공사지출금으로 일부 지급 시 -
차) 선 급 금 1,400억원 대) 국 고 금 1,400억원
- 차입 및 공사금 지출 시 -
회계처리 없음
- 완공 시 -
차) 토 지^(*) 1,000억원 대) 선 급 금 1,400억원
 건 물^(*) 3,000억원 철 도 사 용 수 익 권 2,600억원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 철도의 하부계정임
- 사용수익권 상각 시 -
차) 철 도 사 용 수 익 권^(*) 650억원 대) 정 부 외 자 산 수 증 650억원
(*)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수익권 상각액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음
- ※ 상기 유형자산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23. (출자를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을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 금액을 해당 자산 및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 관련문단 33
관련부록 적용사례 16

적용사례16. (☞ 관련문단 23) 출자를 통한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출자를 통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고속도로 3호 공사를 위탁하였다.

고속도로 관련 지출 내역

과 목	용지비	공사비	합 계
국토교통부	1,0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한국도로공사	-	1,000억원	1,000억원
합 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국가에서 지출한 총 2,000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이며, 공사와 관련한 직접 지출은 없다.

2. 회계처리

- 출자금 지급 시 -

차) 정 부 출 자 금^(*) 2,000억원 대) 국 고 금 2,000억원

(*) 해당 출자금의 경우, 이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건설과 별개의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당해 출자금의 경우 전체 출자금에 포함되어 배당, 감자 및 잔여재산 처분 등의 일반절차에 따름

- 용지비 및 공사비 지출 시 -

회계처리 없음

- 완공 시 -

차) 토 지^(*) 1,000억원 대) 고속국도사용수익권 3,000억원
건 물^(*) 2,000억원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 고속국도의 하부계정임

- 사용수익권 상각 시 -

차) 고속국도사용수익권^(*) 400억원 대) 정 부 외 자 산 수 증 400억원

(*) 해당 금액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의 연계 정보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사용수익권과 관련된 이익총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각함에 따라 해당금액을 동일하게 상각함

※ 상기 사회기반시설은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기지급된 선급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

☞ 관련문단 33
관련부록 적용사례 17

적용사례 17. (☞ 관련문단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댐 공사를 위탁하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사에 재정지원의 차원으로 사업 시작 전에 1,000억원을 출자하였다.

과 목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합 계
토지취득비	1,000억원	500억원	1,500억원
건축비	2,000억원	1,500억원	3,500억원
합 계	3,000억원	2,000억원	5,000억원

한편, 댐이 완공되고 댐사용권을 국가(홍수조절, 관개용수권 등)와 한국수자원공사(생공용수 및 발전용수권 등)를 비교하여 정산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 사용권 비율은 50%, 한국수자원공사 사용권 비율은 5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회계처리

-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 지급 시 -
차) 정 부 출 자 금 (*) 1,000억원 대) 국 고 금 1,000억원
(*) 해당 출자금의 경우, 이는 댐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댐 건설과 별개의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해당 출자금의 경우, 전체 출자금에 포함되어 배당, 감자 및 잔여재산 처분 등의 일반절차에 따름
- 토지관련 국가 부담금 지급 시 -
차) 선 급 금 1,000억원 대) 국 고 금 1,000억원
(*) 실제로 토지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총 1,500억원으로서 50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함. 다만, 댐 완공 시에 국가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임
- 건물관련 국가 부담금 지급 시 -
차) 선 급 금 2,000억원 대) 국 고 금 2,000억원
(*) 실제로 건물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총 3,500억원으로서 1,50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함. 다만, 댐 완공 시에 국가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임

25.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8

- 댐 완공 시 -

차) 토	지 ^(*1)	1,500억원	대) 선	금	금	3,000억원
건	물 ^(*1)	3,500억원	댐	사	용	수
정	부	출	자	금 ^(*2)		500억원

(*1)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 댐의 하부계정임

(*2) 추가 출자금에 대한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음

과목	금액	계산내역
투자금액	3,000억원	토지(1,000억원) + 건물(2,000억원)
사용권	2,500억원	총투자비(5,000억원)*국가사용권비율(50%)
차이금액	500억원	해당차이금액은 현물출자

- 사용수익권 상각 시 -

차) 댐	사	용	수	익	권 ^(*)	50억원	대) 정	부	외	자	산	수	증	50억원

(*) 사용수익기간은 50년으로 정액 상각함

※ 상기 사회기반시설은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당시의 용역장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함

적용사례 18. (☞ 관련문단 25)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국토교통부는 BB공사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항만의 공사를 위탁하였다. 다만, 당해 3,000억원의 금액은 사업 초기에 전액 집행하였다.

2. 회계처리

- 민간위탁 사업비 지급 시 -

차) 선	금	금	3,000억원	대) 국	고	금	3,000억원

-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출 시 -

회계처리 없음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적용사례 19

27. (사용수익권) 국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가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국가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 완공 시 -						
차) 토	지(*1)	1,000억원	대) 선	금	금	3,000억원
건	물(*2)	2,000억원				
(*1)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 항만의 하부계정임						
(*2) BB공사에서 부담한 공사비가 없으므로 사용수익권 계상 없음						

적용사례 19. (☞ 관련문단 26)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1. 회계처리

차) 건	물	*****	대) 국	고	금	*****

실무해설 12. (☞ 관련문단 26) 임차자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임차인의 부담분에 한한다) 중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차개량자산(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다만, 해당 지출이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임차료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선급임차료(선급비용)로 회계처리한다. 임차개량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임차개량자산을 합리적인 내용연수(예: 잔여 임차기간과 임차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며, 선급임차료로 처리한 경우에는 선급임차료를 잔여 임차기간 동안 지급임차료로 처리한다. (해당 규정 및 관련 계정과목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실무해설 13. (☞ 관련문단 27) 사용수익권은 관리운영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수증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실체는 사용수익권의 최초 인식 시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III 인식 후 평가

II 감가상각

28.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수익(또는 성과)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액(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28**)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술품을 제외한 자산은 각 회계실체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사용되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된다.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크게 물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1) 물리적 요인: 자산의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산의 마멸이나 화재와 같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파괴 등을 말한다.
- (2) 경제적 요인: 진부화, 부적합화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말한다. 진부화란 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대체품이 나타남에 따라 현존하는 자산이 구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대의 컴퓨터가 개발되면 전세대의 컴퓨터는 경제적으로 진부화 된다. 한편, 부적합화란 회계실체가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보유중인 자산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회계실체가 위와 같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 감소분을 직접 관찰하여 화폐금액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산의 경제적 효익 감소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수익(또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액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을 위한 과정이며 자산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감가상각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29.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4
적용사례 20

30.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1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29) 정액법이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text{감가상각비} = (\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액}) \div \text{내용연수}$$

적용사례20. (☞ 관련문단 29) 정액법 적용 사례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00원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2. 회계처리

- 20X1년도 기말 결산 시 -

차) 기 계 장 치	2,000 ^(*)	대) 기 계 장 치	2,000
감 가 상 각 비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11,000 - 1,000) / 5 = 2,000
20X2년~20X5년도 매년 감가상각비는 2,000원으로 동일

적용사례21. (☞ 관련문단 30, 40)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 특별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000원으로 도로(국도) 건설을 완성하였으며, 소관부처의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동 도로에 대해 20X1년도에 100원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였다. 한편, 소관부처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속건물(20X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000원,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00원, 정액법 적용)을 소유하고 있다.

31. (전비품 등의 감가상각) 전비품 등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5

32.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서 상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6

2. 회계처리

- 유지관리비 100 발생 시 -

차) 국 도 수 선 유 지 비 100 대)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100

- 20X1년도 기말 결산 시 -

차) 건 물 200^(*) 대) 건 물
감 가 상 각 비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0

(*) (11,000 - 1,000) / 50 = 200

※ 건물은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유형자산에 해당하며, 도로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없음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제4항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31) 전비품 중 모듬장비 및 비소모성 물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법 등 국방부장관이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재고법이란 매각·폐기되는 자산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며, 매 결산 시에 별도의 감가상각 인식은 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실무해설16. (☞ 관련문단 32) 사용수익권 상각 시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순자산변동	재원의조달	기타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상각이익

3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주기적인 대규모 수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한다. 다만, 문단16, 문단22 내지 문단24에 따라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정한 내용연수와 사용수익기간 중 긴 것을 내용연수로 한다.

☞ 관련문단 16, 22~2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

34.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 일반유형자산인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물의 기준내용연수〉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년)
철근콘크리트조	50
철골조	40
석조	40
PC조	40
연외석조	40
철파이프조	40
시멘트블록조	20
시멘트벽돌조	20
목조	20
흙벽돌조	20
돌담조	20
토담조	20
목골몰탈조	20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33) 사회기반시설은 물류·에너지·사람의 이동 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자산으로서 국가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복합적인 시스템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특징상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충분히 상회하는 장기의 내용연수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34)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내용연수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내용연수는 현행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민간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범위(±2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년)
수도, 하수, 지정, 위생, 소화 등	20
축정(정원시설),사장(활터),문	20
포장	20
조명, 통신, 전산장치	10
난방, 냉방, 통풍, 와사장치(가스장치)	10
연통, 자통, 노	10
교량, 전신주, 망루, 승강기 등	20
터널, 궤도, 모노레일, 담	20
전신선, 전화선, 전력선 등	20
원동, 변동, 전동, 작업장치	20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3

35.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 (1) 일반유형자산인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본다. 다만,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2) 일반유형자산 중 국유재산인 선박및항공기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 련 규 정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3. 25.]

〈선박및항공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년)
선박	기선	12
	범선	12
항공기	비행기	12
	헬기	12
	글라이더	12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

36. (전비품 등의 내용연수) 전비품 등의 내용연수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7. (내용연수의 수정)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가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감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2
문단제정근거 5~6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35)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는 조달청장 등이 내용연수를 정할 때,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자치법규의 내구연한, 한국감정원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므로 이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제4항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유·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적용사례22. (☞ 관련문단 37) 내용연수의 수정

(1) 자본적 지출을 통해 내용연수 증가가 있는 경우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00원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에 대해 20X2년도 중 자본적 지출 4,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1년 증가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2. 회계처리

－ 20X1년도 기말 결산 시 －

차) 기 계 장 치	2,000*	대) 기 계 장 치	2,000
감 가 상 각 비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11,000 - 1,000) / 5 = 2,000

- 20X2년도 기말 결산 시 -

차) 기 계 장 치	2,400**	대)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비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400

** $(9,000 + 4,000 - 1,000) / (4+1) = 2,400$

9,000 = 11,000(취득가액) - 2,000(20X1년도 감가상각비)

4,000: 자본적 지출, 1,000: 잔존가액

4 = 5(내용연수) - 1(20X1년)

1: 내용연수 증가분

(2)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00원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에 대해 20X2년도 중 자본적 지출 4,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내용연수 증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 (동 기계장치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2. 회계처리

- 20X1년도 기말 결산 시 -

차) 기 계 장 치	2,000*	대)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비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00

* $(11,000 - 1,000) / 5 = 2,000$

- 20X2년도 기말 결산 시 -

차) 기 계 장 치	3,000**	대)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비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000

** $(9,000 + 4,000 - 1,000) / (4+0) = 3,000$

9,000 = 11,000(취득가액) - 2,000(20X1년도 감가상각비)

4,000: 자본적 지출, 1,000: 잔존가액

4 = 5(내용연수) - 1(20X1년)

문단제정근거5. (☞ [관련문단 37](#)) 국가회계기준의 경우 민간회계기준과 달리 매년 말에 잔존내용연수를 검토할 실익이 없으므로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38. (잔존가액의 결정)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 관련문단 39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관련문단 38

40.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대체)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 관련문단 78

관련부록 적용사례 21

문단제정근거6. (☞ 관련문단 37)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월할상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기초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아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감가상각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2항

41. (사회기반시설 상태평가) (1) 상태평가란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를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등으로, 검사자의 주관적 편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주기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상태평가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계화된 평가등급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의 경우 도로표면의 평활도(표면의 매끄러움의 정도) 등이 상태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상태평가결과란 상태평가기준을 토대로 상태평가한 사회기반시설의 등급화된 결과를 말한다.

(4) 최소유지등급이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말하며, 상태평가기준에서 표시한 등급 중 특정등급 이상 등으로 범위를 제시한다.

(5)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목록 및 상태평가계획, 상태평가기준, 상태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선유지계획 수립과 수선유지비용의 추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관련문단 43**

42.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조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성능 및 상태가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되는 경우

(2) 특정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 **관련문단 46**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7

문단제정근거7. (☞ **관련문단 42~43**)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은 문단42의 요건을 충족하고 문단43의 특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지방정부회계기준서」 제34호 등 외국의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도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을 정한 것이다.

43.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조건) (1) 문단41. (5)의 사회기반시설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사회기반시설 자산목록의 최근정보

(나)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 내용 및 상태평가결과

(다)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소요될 수선유지비의 추정치

(2) (1)의 정보를 산출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문단 41. (5)**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7

44. (상태평가 정책의 수립)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용역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최소유지등급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45. (상태평가의 수행 주기)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상태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6.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대체 중단)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문단 4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체를 중단하고 당해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관련문단 42**

II 재평가

47. (재평가 사유) (1) 재평가기준일 현재 유형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경우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한다.

☞ 관련문단 65

관련부록 실무해설 17

48. (재평가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3)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8

49. (재평가 단위) (1)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자산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할 수 있다.

(3) 여러 개별요소로 구성된 1개의 자산이 개별요소별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할 취득된 경우 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평가된 자산의 평가액은 합산한다.

실무해설17. (☞ 관련문단 47. (2))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도 동일한 재평가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제4항

문단제정근거8. (☞ 관련문단 48)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개정되는 자산은 평가 규정의 상충등을 고려하여 국가회계예규에 따른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집기, 비품 등과 같은 자산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단가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자산의 내용연수가 단기이므로 재평가에 따른 정보제공의 유용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0. (재평가 사유 검토) 재평가 사유에 대한 검토는 재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별로 해당 자산이 포함된 자산분류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고정성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선박및항공기)
- (2) 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9**

51. (재평가기준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기준일은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해당 보고기간 말로 한다.

52. (국유재산 총괄청의 세부사항 규정)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에 관하여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별도의 업무 처리지침에서 다음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1) 일정주기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주기
- (2)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
- (3) 잔존내용연수 추정에 관한 사항
- (4) 물가배수법 적용 시 재조달원가 산정을 위한 물가배수표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0**

문단제정근거9. (☞ **관련문단 50**) 재평가 주기를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자산별로 공정가액 변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액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액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산도 있다. 다만, 재평가 사유 발생 검토는 개별자산별로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문단제정근거10. (☞ **관련문단 52, 54**) 장부상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 시 추정잔존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때, 추정잔존내용연수를 사용하여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분모의 내용연수도 추정잔존내용연수만큼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 예규에서는 분모의 내용연수에 추정잔존내용연수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상각후대체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조달원가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재조달원가는 자본적 지출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최초 취득원가와 같은 금액이므로 상각후대체원가 산정 계산식에서 분모의 내용연수도 취득시점에 정해진 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적용 사례 23의 "상각후대체원가법 회계처리 사례"와 같이 분모의 내용연수는 그대로 두고 분자의 추정잔존내용연수만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53.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54. (상각후대체원가법) 상각후대체원가법이란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ext{상각후대체원가} = \text{재조달원가} \times \frac{\text{잔존내용연수}}{\text{내용연수}}$$

(1) 재조달원가는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현금등가액으로서, 취득 또는 건설에 투입될 원가 추정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에 대한 가정 및 산정방식은 자산 분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관련문단 56. (2), 57. (2), 58. (2)

(2)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중 물가배수법이란 최초 취득원가 및 자본적 지출로 인한 자산 증가내역에 각각 물가배수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begin{array}{c} \text{물가배수법 적용} \\ \text{재조달원가} \end{array} = \text{최초 취득원가} \times \text{물가배수}$$

이 때, 물가배수는 최초 취득연도 대비 재평가기준일까지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치로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국유재산 총괄청이 제공한다.

- (3)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시 잔존내용연수는 장부상 미경과 내용연수(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그 자산의 경과내용연수의 차이를 말한다)를 사용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치를 잔존내용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
- (4)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시 재평가일 현재 전체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금액(취득원가의 5%와 1천원 중 작은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0

적용사례 23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IG1

55. (토지의 대체적 평가방법) 토지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1)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2)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 (3)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재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해당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 (4) (1) 내지 (3)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속한 법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 6. 7.>

정동(「지방자치법」 제3조의 정부기관의 법률행위시 이용되는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최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56. (건물의 대체적 평가방법) 건물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건물은 다음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가) 주택(공동주택 포함)의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하 "공시가격"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주택 외 건물의 재평가금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단54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 및 구조지수 등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 관련문단 54. (1)

관련부록 적용사례 23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사례23. (☞ 관련문단 54, 56) 상각후대체원가법 회계처리 사례

(1) 일반적인 경우

1. 배경정보

1991년 1월초에 2억원에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내용연수는 50년)로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하여 상각후대체원가법으로 평가한다.(면적 1,000㎡,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인 경우 구조지수 100, 용도지수 100, 신축가격기준액 55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1억원임)

2. 회계처리

- 2011년 1월 1일 재평가 시 -

차) 건물	130,000,000*	대) 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23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 건물 증가액 = 330,000,000원(재평가금액)^{주1)} - 200,000,000원(취득원가) = 130,000,000원

주1) 재평가금액 = 550,000,000원^{주2)} × $\frac{50 - 20}{50}$ = 330,000,000원

주2) 재조달원가 = 신축가격기준액×면적×(구조지수/100)×(용도지수/100)
= 550,000원/㎡×1,000㎡×(100/100)×(100/100) = 550,000,000원

※ 재평가에 따른 금액 비교

< 재 평 가 전 >				< 재 평 가 후 >			
건	물	200,000,000		건	물	33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0			

(2) 내용연수 경과자산

1. 배경정보

1960년 건설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내용연수는 50년)로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하여 상각후 대체원가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나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하였다. 현재 건물은 향후 5년간 동일한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적 1,000㎡, 구조지수반영 신축가격기준액 55만원/㎡, 취득원가는 2억원, 감가상각누계액은 2억원임)

2. 회계처리

- 2011년 1월 1일 재평가 시 -

차)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대) 건	물	145,000,000
			자 산 재 평 가 이 익	
			(순 자 산 조 정)	55,000,000*

* 추정잔존내용연수 반영 재평가금액
$$= (550,000\text{원}/\text{㎡} \times 1,000\text{㎡}) \times \frac{(50-50)+5^{\text{주1)}}}{50} = 55,000,000\text{원}$$

주1) 문단 53. (3)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사용함. 이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변하지 않음

57. (구축물의 대체적 평가방법) 구축물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1)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경우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 (2)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단54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 [관련문단 54. \(1\)](#)

- (가) 구축물의 제조달원가는 최근 건설된 유사 구축물의 총 건설원가를 기준단위 물량으로 나눈 단위당 제조달원가에 해당 구축물의 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제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1](#)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IG1](#)

58.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대체적 평가방법)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1)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경우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 재평가에 따른 금액 비교

< 재 평 가 전 >			< 재 평 가 후 >		
건	물	200,000,000	건	물	55,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0)		

문단제정근거 11. (☞ [관련문단 57, 실무적용서 IG1](#)) 구축물의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 시 제조달원가 관련 구체적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특성을 고려한 제조달원가를 별도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는 문단54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재조달원가는 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견적가를 사용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 관련문단 54. (1)

59. (입목의 대체적 평가방법) 입목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60. (재평가 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자산의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이를 제거함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은 문단61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가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 관련문단 61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2

실무해설 18

적용사례 24

적용사례24. (※ 관련문단 60~61) 재평가 회계처리 사례

1. 재평가로 자산금액이 증가한 경우

1-1. 2010년 1월 1일 일반회계에서 1,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1년 1월 1일에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금액이 900,000원인 경우

- 2011년 1월 1일 재평가 시 -

차) 자 산 재 평 가 손 실 (재 정 운 영 순 원 가)	100,000	대) 토	지	100,000

1-2. 2010년 1월 1일 일반회계에서 1,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1년 1월 1일에 900,000원으로 재평가한 이후, 2015년 12월 31일에 1,200,000원으로 재평가한 경우

- 2015년 12월 31일 재평가 시 -

차) 토	지	300,000**	대) 자 산 재 평 가 손 실 환 입 (재 정 운 영 순 원 가)	100,000*
			자 산 재 평 가 이 익 (순 자 산 조 정)	200,000***

* 2011년도에 인식한 재평가손실^{주1)}을 한도로 재평가손실환입을 인식

** 토지증가액: 1,200,000원(재평가액) - 900,000원(장부금액) = 300,000원

*** 300,000원(토지증가액) - 100,000원(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 = 200,000원

주1) 자산재평가손실: 1,000,000원(취득원가) - 900,000원(재평가액) = 100,000원

1-3. 2015년 12월 31일에 1,200,000원으로 재평가한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에 700,000원에 처분한 경우(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은 200,000원임)

- 2017년 12월 31일 처분 시 -

차) 국	고	금	700,000	대) 토	지	1,200,000
일	반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500,000*		
차) 자 산 재 평 가 이 익 (순 자 산 조 정)	200,000**	대) 일 반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200,000**			

* 1,200,000원(재평가금액) - 700,000원(처분금액) = 500,000원(처분손실)

** 기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을 상계처리

2-1. 2010년 1월 1일 일반회계에서 1,000,000원에 취득한 건물은 2011년 1월 1일에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금액이 1,50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
(2011년 1월 1일의 건물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원임)

- 2011년 1월 1일 재평가 시 -

차) 건물	500,000*	대) 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7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건물증가액: 1,500,000원(재평가액) - 1,000,000원(취득원가) = 500,000원
 ** 자산재평가이익: 1,500,000원(재평가액) - 800,000원(장부금액) = 700,000원
 *** 문단59에 따라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2-2. 2011년 1월 1일에 1,500,000원(잔존내용연수 10년)으로 재평가한 건물을 2012년 1월 1일에 1,000,000원에 처분한 경우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은 700,000원임)

- 2011년 12월 31일 감가상각 시 -

차) 건물감가상각비	1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차) 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70,000**	대) 건물감가상각비	70,000

* 1,500,000원(재평가금액) ÷ 10(잔존내용연수) = 150,000원
 ** 감가상각비대체금액 = 700,000원(순자산조정액) ÷ 10(잔존내용연수) = 70,000원

- 2012년 1월 1일 처분 시 -

차) 국고금	1,000,000	대) 건물	1,5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50,000*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실	350,000		
차) 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630,000**	대)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실	350,000
		일반유형자산 처분이익	280,000

* 처분 시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원(최초 순자산조정액) - 70,000원(감가상각비대체금액) = 630,000원(처분 시 순자산조정 잔액)

2. 재평가로 자산금액이 감소한 경우

1-1. 2010년 1월 1일 일반회계에서 1,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1년 1월 1일에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금액이 1,100,000원인 경우

- 2011년 1월 1일 재평가 시 -

차) 토지	100,000	대) 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100,000*

* 토지증가액: 1,100,000원(재평가액) - 1,000,000원(취득원가) = 100,000원

1-2. 2010년 1월 1일 일반회계에서 1,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1년 1월 1일에 1,100,000원으로 재평가한 이후, 2015년 12월 31일에 800,000원으로 재평가한 경우

- 2015년 12월 31일 재평가 시 -

차) 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100,000**	대) 토지	300,000*
자산재평가손실 (재정운영순원가)	200,000		

* 토지감소액: 1,100,000원(기존 재평가액) - 800,000원(현재 재평가액) = 300,000원
 ** 2011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주1)} 금액
 주1) 자산재평가이익 = 1,100,000원(재평가액) - 1,000,000원(취득가액) = 100,000원

2. 2010년 1월 1일 일반회계에서 1,000,000원에 취득한 건물을 2011년 1월 1일에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금액이 50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2011년 1월 1일의 건물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원임)

- 2011년 1월 1일 재평가 시 -

차) 자산재평가손실 (재정운영순원가)	300,000*	대) 건물	5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재평가손실: 800,000원(장부금액^{주1)} - 500,000원(재평가액) = 300,000원
 ** 건물감소액: 1,000,000원(취득가액) - 500,000원(재평가액) = 500,000원
 *** 문단59에 따라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주1) 장부금액: 1,000,000원(취득가액) - 200,000원(감가상각누계액) = 800,000원



61. (재평가손익의 인식 및 측정) (1)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이익"에서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60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2

실무해설 18

적용사례 24

62.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8

문단제정근거12. (☞ 관련문단 60~61) 재평가로 자산금액이 감소된 경우 재평가금액을 해당자산의 회수가능가액으로 보아 그 감소액은 재정운영결과로 인식하고 자산재평가손실 과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등 외국의 자산 재평가 기준과 일관성 있는 방법이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 시장가치의 급락에 의한 자산의 감액 시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다.

실무해설18. (☞ 관련문단 60~62) 자산재평가손익 관련 상세 계정과목

(1) 자산재평가손실 및 자산재평가손실환입의 재정운영표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 비용	자산평가손실	자산재평가손실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실
				사회기반시설 재평가손실
수익	국가운영 수익	자산평가이익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 재평가손실환입

63.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금액을 재평가시점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3](#)

II 감액

64. (감액의 요건) (1)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사용가치란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 [관련문단 65](#)

(2) 자산재평가이익의 순자산변동표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조정항목	자산재평가 이익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	

문단제정근거13. (☞ [관련문단 63](#)) 재평가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된 부분의 비율대로 배부한다. 이는 자산재평가로 인해 실제 투입원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래에 인식할 원가의 합계액이 자산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국가가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 자산재평가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취지이다.

65. (재평가와 감액판단의 순서) 문단47에 따른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을 문단64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후에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 관련문단 47, 6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4

66.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9
적용사례 25~26

문단제정근거14. (☞ 관련문단 65) 재평가대상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의 하락에 의한' 감액사유 발생 시 감액손실과 자산재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적용순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손실을 인식하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상황 및 기타 외부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재평가를 여부를 판단한 후에 물리적인 손상 등에 의한 감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적용사례25. (☞ 관련문단 66) 자산의 일부멸실에 대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토교통부는 소유 중인 댐이 홍수로 인하여 일부멸실되었다.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30억원이다. 멸실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감액손실 인식 시 -				
차) 사회기반시설 감액손실	3,000,000,000	대) 구축물(댐)	3,000,000,000	

적용사례26. (☞ 관련문단 66) 자산의 완전멸실에 대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토교통부는 소유 중인 댐이 홍수로 인하여 완전멸실 되었다.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100억원이다. 멸실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멸실자산 등재 시 -				
차) 자산폐기손실	10,000,000,000	대) 구축물(댐)	10,000,000,000	

67. (감액손실의 환입) 감액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회수가 가능해져 감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0](#)

III 제거

68.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 [관련문단 69](#)
[관련부록 실무해설 21](#)

실무해설19. (☞ [관련문단 66](#)) 감액손실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자산폐기손실	

실무해설20. (☞ [관련문단 67](#)) 감액손실환입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감액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실무해설21. (☞ [관련문단 68](#))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자산대장에서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회계처리한다.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II 취득원가의 측정(문단9 ~ 문단27)을 참고한다.

69. (처분시 회계처리) 문단68에 의한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고,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 관련문단 68
 관련부록 실무해설 22
 적용사례 27

실무해설22. (☞ 관련문단 69) 자산처분손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자산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적용사례27. (☞ 관련문단 69) 일반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사례

1. 감가상각누계액 유무에 따른 처분 회계처리

보유중인 일반유형자산(차량운반구 중 선박및항공기)을 6백만원에 매각하였다. 매각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5백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의 유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자산 매각 시(감가상각누계액이 11백만원인 경우) -

차) 기	타	의	미	수	금	6,000,000	대)	선	박	및	항	공	기	15,000,000
								일	반	유	형	자	산	2,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처	분
													이	익

- 자산 매각 시(감가상각누계액이 없는 경우) -

차) 기	타	의	미	수	금	6,000,000	대)	선	박	및	항	공	기	15,000,000
								일	반	유	형	자	산	9,000,000
								처	분	손	실			

2. 일반유형자산의 연부매각 회계처리

보유중인 일반유형자산(차량운반구 중 선박및항공기)을 6백만원(매각대금 3회에 걸쳐 각 2백만원씩 분할회수)에 매각하였다. 매각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5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11백만원일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1차 징수결의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고려하지 않음)

- 1차 징수결의 시-

차) 기	타	의	미	수	금	2,000,000	대)	선	수	금	2,000,000

- 전액징수결의 선행 시-

차) 기 타 의 미 수 금 4,000,000 대) 선 수 금 4,000,000

- 소유권 이전 시-

차) 선 수 금 6,000,000 대) 선 박 및 항 공 기 15,000,000
선 박 및 항 공 기 11,000,000 일 반 유 형 자 산 2,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처 분 이 익

- 2차 대금회수 -

차) 국 고 금 2,000,000 대) 기 타 의 미 수 금 2,000,000

- 3차 대금회수 -

차) 국 고 금 2,000,000 대) 기 타 의 미 수 금 2,000,000

3. 무상양여로 인한 처분

행정안전부는 보유중인 토지를 서울시에 무상양여하기로 하였다. 양여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이 10억원일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양여자산 대장에서 제각 시 -

차) 정 부 외 자 산 기 부 1,000,000,000 대) 토 지 1,000,000,000

4. 현물출자로 인한 처분

국토교통부는 소유 중인 공항 관련 시설을 현물출자하였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100억원(토지 50억원, 건물 50억원임)이며, 출자로 인해 취득한 출자증권은 150억으로 평가되었다. 현물출자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현물자산 등재 시 -

차) 정 부 출 자 금^(*) 15,000,000,000 대) 토 지^(*) 5,000,000,000
건 물^(*) 5,000,000,000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5,000,000,000

(*) 출자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함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 공항의 하부계정임

5. 멸실로 인한 처분

i) 자산의 완전멸실에 대한 회계처리

- 1차 대금회수 시-

차) 국 고 금 2,000,000 대) 기 타 의 미 수 금 2,000,000

국토교통부는 소유 중인 땅이 홍수로 인하여 완전멸실 되었다.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100억원이다. 멸실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멸실자산 등재 시 -

차) 자 산 폐 기 손 실 10,000,000,000 대) 구 축 물^(*) 10,000,000,000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 땅의 하부계정임

ii) 자산의 일부멸실에 대한 회계처리

국토교통부는 소유 중인 땅이 홍수로 인하여 일부멸실되었다.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30억원이다. 멸실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감액손실 인식 시-

차) 사 회 기 반 시 설 3,000,000,000 대) 구 축 물^(*) 3,000,000,000
감 액 손 실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 땅의 하부계정임

6. 기타 처분

i) 용도폐지로 사회기반시설에서 일반유형자산으로 등재

- 용도폐지 등록 시 -

차) 건 물^(*) 2,000 대) 건 물^(*) 2,000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의 하부계정임

(*) 자산 - 유·무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의 하부계정임

ii) 용도폐지에 따른 총괄청 인계

- 총괄청 인계 시(인계기관) -

차) 정 부 내 자 산 기 부 2,000 대) 건 물^(*) 2,000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의 하부계정임

- 총괄청 인수 시(인수기관) -

차) 건 물^(*) 2,000 대) 정 부 내 자 산 수 증 2,000

(*) 자산 - 유·무형자산 - 사회기반시설의 하부계정임



III 공시

70. (평가 및 감가상각 방법 주석사항)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및 종류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71. (감액 주석사항)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72. (재평가 주석사항)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재평가기준일
 -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참여 여부
 - (3) 해당 자산의 재평가금액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 (4) 재평가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경우 장부가액
 - (5) 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금액과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73.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주석사항) 문단40에 따라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분류기준의 충족여부
 - (2)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또는 수량)
 - (3)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및 작성기관, 상태평가기준의 평가등급
 - (4) 최소유지등급
 - (5)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 (6)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  [관련문단 40](#)
74. (유산자산 주석사항) 유산자산의 종류 및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III 경과조치

75. (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자산의 최초 재평가) 「국가회계법」 최초시행일(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기준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최초 재평가한다. 이 때,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이익은 "적립금및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5~16**
실무해설 23

문단제정근거15. (☞ **관련문단 75**) 최초 재평가 시 2009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제외한 이유는 최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대체적 평가방법 보다는 신뢰성이 높고 공정가액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문단제정근거16. (☞ **관련문단 75**)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최초 재평가에 한하여 재평가이익을 순자산조정이 아닌 "적립금및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최초재평가 이후의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재평가이익을 순자산조정항목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사회기반시설 최초 재평가는 사회기반시설의 최초 인식의 의미가 크므로 미실현손익 성격의 순자산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은 처분이 제한되고 내용연수가 장기이며, 감가상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순자산조정의 "재평가이익"으로 관리할 경우 감가상각이나 처분 등을 통하여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실무해설23. (☞ **관련문단 75**) 구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인식 유예된 사회기반시설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기초순자산이 아닌 당기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최초 인식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변경누적효과'로서 기초순자산에 반영하는 경우 취득원가 등 전기 정보가 필요하나, 실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비교표시 및 기초순자산 반영을 면제한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실무적으로 전기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소급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76.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은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소급적용에 따른 감가상각 효과는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영한다.

(2)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7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자산을 이 지침 시행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로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최초 인식하는 회계연도의 "기타순자산의 증가(적립금 및 잉여금)" 과목으로 인식한다.

[제정일 2011. 01. 01.]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관한 특례)

문단제정근거17. (☞ 관련문단 76. (2)) 기금·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경우 기존에 감가상각을 수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계속 적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관련부록: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가격평가 실무적용서

도입

IG1. (상각후대체원가 산정) 이 실무적용서의 목적은 본 예규 문단54, 57에 따라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원가 등 가격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관련문단 54, 57](#)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1](#)

IG2. (상각후대체원가 산정에 필요한 요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재조달원가
- (2) 자산의 내용연수 및 추정 잔존내용연수

재조달원가의 정의

IG3.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는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현금등가액을 말하며, 최근 건설된 유사구축물의 총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IG4. (사회기반시설 구축물의 재조달원가) 사회기반시설 구축물의 재조달원가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건설된" 공사란 재평가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설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재평가기준일 직전 5년 이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건설원가 등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총괄청이 제시하는 물가배수표를 적용한다.

- (2) "유사 건축물"이란 교량, 도로포장, 댐 본체 등 국유재산 대장관리상 재산종목의 구분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성질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동일한 재산종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도 구조, 형태 등에 따라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유사건축물의 구분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정하도록 한다.
- (3) "충 건설원가"란 재평가 시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당 건축물을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될 현금지출액으로 실제건설원가를 말한다. 실제건설원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한 건설예정원가, 설계단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IG5. (단위당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는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이라 한다)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물가배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text{재조달원가} = \begin{cases} \text{① 단위당 재조달원가} \times \text{기준단위로 표시된 물량} \\ \text{② 취득원가} \times \text{물가배수} \end{cases}$$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의 적용 방법

IG6. (실제건설원가) 단위당 재조달원가는 최근 건설된 유사 건축물의 실제 건설원가를 단위당원가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최근 건설된 실제건설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평균설계단가, 단위당 건설예정원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사례28. (☞ 관련문단 IG6~IG9) 재조달원가법 회계처리 사례

1. 배경정보

1996년초에 건설한 길이 200m, 왕복 6차선(6차선 총폭: 26.5m)인 철근콘크리트 교량을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을 적용하여 상각후대체원가법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 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 내용연수는 50년, 잔존내용연수 35년)

단위당
재조달원가

- ① 실제건설원가 ÷ 건설물량 (면적, 부피 등)
- ② 평균설계단가, 단위당 건설예정원가

☞ 관련부록 적용사례 28

IG7. (단위당 재조달원가의 산정) 단위당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 (1) 유사구축물의 범위를 결정한다.
- (2)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기준단위를 설정한다.
- (3) 총공사비와 기준단위 물량으로 표시된 최근 5년간 건설원가 자료를 입수한다.
- (4) 입수된 건설원가 자료는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총 건설원가로 환산한다.
- (5) 환산된 건설원가를 기준단위로 나누어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산출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8

IG8. (유사구축물의 범위) 유사구축물의 범위는 단위당 재조달원가 산정 수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도로 왕복 2차선과 왕복 8차선의 건설기술력 및 건설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각각 서로 다른 유사구축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사구축물의 범위를 세분할 경우 단위당 재조달원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정보산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특성 및 자산대장의 관리상태에 따라 유사구축물의 구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회기반시설 관리청이 정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자산 분류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8

2. 회계처리

1. 단위당 재조달원가 산정

- (1) 유사 구축물의 범위 선정: 철근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의 각 왕복 차선별 구분
- (2) 기준단위 선정: 차선평 및 연장을 고려하여 면적(㎡)으로 선정
- (3) 최근 5년 이내 교량의 건설원가 취합, 철근콘크리트교 왕복 6차선 확인
- (4)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최근 총 건설원가로 환산
- (5) 환산된 건설원가를 총면적으로 나눠 면적당 원가를 산출

<표1> 철근콘크리트교의 왕복 6차선 교량의 단위당 재조달원가 산정자료 예시

종류	기준단위 물량산정			물가환산 총 건설원가			면적(㎡)당 원가 ^{주1)}
	교량 연장 (m) (A)	차선평 (m) (B)	면적 (㎡) (C=A×B)	준공 연도	총건설원가 (D)	물가 배수 (E)	환산후 총 건설원가 (F=D×E)
A교량	100	26.5	2,650*	2006	100,000,000	1.17	117,000,000**
B교량	20	26.5	530	2007	30,000,000	1.13	33,900,000
합계	120	26.5	3,180		130,000,000		150,900,000

* 면적(㎡) = 100m(교량연장) × 26.5m(차선평) = 2,650㎡

** 환산후 총 건설원가 = 100,000,000(총건설원가) × 1.17(물가배수)
= 117,000,000원

*** 단위당 재조달원가 = 150,900,000 ÷ 3,180 = 47,453원/㎡

주1) 면적(㎡)당 원가 = 환산후 총 건설원가 ÷ 면적(㎡) = 단위당 재조달원가

2. 재조달원가 산정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단위당 재조달원가에 해당 자산의 면적을 곱하여 재조달원가 산정한다.

재조달원가 = 47,453원 (단위당 재조달원가) × 5,300㎡ = 251,500,900원

* 기준단위 물량 = 200m(교량 연장) × 26.5m(차선평) = 5,300㎡

IG9. (통일된 기준단위) 단위당 재조달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단위의 설정이 필요하며 각 사회기반시설별 특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 "식", "조"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면적, 연장, 길이, 부피 등의 실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단위로 표시된 물량으로 변환한 후에 적용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8

IG10. (건설원가 자료)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최근건설원가 자료를 입수할 때, 일부 건설원가 자료가 누락되어 재조달원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사구축물의 범위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건설원가의 차이가 크다면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지역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다.

물가배수법의 적용 방법

IG11. (물가배수법) 최근 건설된 유사 구축물이 없거나 기준단위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9

IG12. (물가배수표) 물가배수법 적용 시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제시하는 물가배수표를 사용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9

적용사례29. (☞ 관련문단 IG11~IG12) 물가배수법 적용 사례

1. 배경정보
2001년초에 건설된 방파제는 단위를 1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원가는 30,000,000원으로 신뢰성을 확인한다.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상각후대체원가법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 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 물가배수 1.13, 내용연수 20년, 잔존내용연수 10년)
2. 산정방식
－ 물가배수법 사용 시 － 재조달원가: 30,000,000원(취득원가) × 1.13(물가배수) = 33,900,000원

상각후대체원가의 산정 방법

IG13. (감가상각분 반영) 사회기반시설 구축물의 상각후대체원가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상각분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상각후대체원가 =

재조달원가 ×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

☞ 관련문단 IG16~IG17

관련부록 적용사례 30

IG14.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예외) 사회기반시설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준용하므로 감가상각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의 단서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을 수 있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0

IG15. (상각후대체원가 산정시 내용연수) 감가상각대상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개별 자산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되 감가상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일 현재 미경과내용연수를 의미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0

IG16. (잔존내용연수의 추정) 문단IG13을 적용 시 재평가일 현재 전체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55년에 건설한 내용연수가 50년인 교량의 경우, 2011년 재평가시점에 전체 내용연수는 경과하였으나 향후 잔존내용연수가 10년으로 추정되면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 시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한다.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금액(취득원가의 5%와 1천원 중 작은 금액)을 재평가가액으로 한다.

☞ 관련문단 IG13

관련부록 적용사례 30

적용사례30. (☞ 관련문단 IG13~IG19) 상각후대체원가 산정 종합사례

(1) 단위당 재조달원가법 적용 시

1. 배경정보

1996년초에 건설한 길이 200m, 왕복 6차선(6차선 총폭: 26.5m)인 철근콘크리트 교량을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을 적용하여 상각후대체원가법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 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 내용연수는 50년, 경과내용연수 15년)

2. 산정방식

1. 단위당 재조달원가 산정
- (1) 유사 구축물의 범위선정: 철근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의 각 왕복 차선별 구분
- (2) 기준 단위 선정: 차선폭 및 연장을 고려하여 면적(㎡)으로 선정
- (3) 최근 5년 이내 교량의 건설원가 취합, 철근콘크리트교 왕복 6차선 확인
- (4)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최근 총 건설원가로 환산
- (5) 환산된 건설원가를 총면적으로 나눠 면적당 원가를 산출

<표1> 철근콘크리트교의 왕복 6차선 교량의 단위당 재조달원가 산정자료 예시

종류	기준단위 물량산정			물가환산 총 건설원가				면적(㎡) 당 원가 ^{주1)}
	교량 연장 (m)	차선폭 (m)	면적 (㎡)	준공 연도	총건설원가	물가 배수	환산후 총 건설원가	
	(A)	(B)	(C=A×B)		(D)	(E)	(F=D×E)	(E=F÷C)
A교량	100	26.5	2,650*	2006	100,000,000	1.17	117,000,000**	44,151
B교량	20	26.5	530	2007	30,000,000	1.13	33,900,000	63,962
합계	120	26.5	3,180		130,000,000		150,900,000	47,453***

* 면적(㎡) = 100m(교량연장) × 26.5m(차선폭) = 2,650㎡

** 환산후 총 건설원가 = 100,000,000(총건설원가) × 1.17(물가배수) = 117,000,000원

*** 단위당 재조달원가 = 150,900,000 ÷ 3,180 = 47,453원/㎡

주1) 면적(㎡)당 원가 = 환산후 총 건설원가 ÷ 면적(㎡) = 단위당 재조달원가

IG17. (취득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잔존내용연수) 문단IG13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회기반시설 관리청이 잔존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취득일자를 추정한다.

☞ 관련문단 IG13
관련부록 적용사례 30

IG18.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잔존내용연수가 같은 것으로 본다. 즉 재조달원가를 상각후대체원가로 본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0

IG19.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의 단서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관리청이 정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0

2. 재조달원가 산정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단위당 재조달원가에 해당 자산의 면적을 곱하여 재조달원가 산정

$$\text{재조달원가} = 47,453\text{원 (단위당 재조달원가)} \times 5,300\text{㎡} = 251,500,900\text{원}$$

$$\star \text{ 기준단위로 표시된 물량} = 200\text{m(교량 연장)} \times 26.5\text{m(차선폭)} = 5,300\text{㎡}$$

3-1. 상각후대체원가 산정 (감가상각하는 사회기반시설인 경우)

① 경과내용연수: 15년

② 미경과내용연수 = 50년(내용연수) - 15년(경과내용연수) = 35년
잔존내용연수는 미경과내용연수와 동일함

$$\text{③ 상각후대체원가} = 251,500,900\text{원(단위당 재조달원가)} \times \frac{35(\text{잔존내용연수})}{50(\text{내용연수})} = 176,050,630\text{원}$$

3-2. 상각후대체원가 산정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인 경우)

① 내용연수 추정하지 아니함

$$\text{② 상각후대체원가} = 251,500,900\text{원(단위당 재조달원가)} \times \frac{1}{1} = 251,500,900\text{원}$$

(2) 물가배수법 적용 시

1. 배경정보

1991년에 건설된 취득원가 30,000,000원인 방파제를 재평가한다. 방파제의 경우 1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단위당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지출서류 등의 확인을 통하여 취득원가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재평가 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 물가배수 1.13, 내용연수 20년, 전체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

2. 회계처리

1. 재조달원가산정

$$\text{재조달원가: } 30,000,000\text{원}(1991\text{년 총공사비}) \times 1.13(\text{물가배수}) = 33,900,000\text{원}$$

2-1. 감가상각하는 사회기반시설인 경우_잔존내용연수 추정 시

전체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이나 향후 용역잠재력을 고려하여 잔존내용연수를 10년으로 추정한 경우

- ① 경과내용연수: 20년
- ② 상각후대체원가 = $33,900,000\text{원} \times \frac{10(\text{추정 잔존내용연수})}{20(\text{내용연수})} = 16,950,000\text{원}$
(제조달원가)

2-2. 감가상각하는 사회기반시설인 경우_ 잔존내용연수 추정하지 아니함
동 시점에 건설된 방파제들이 대부분 교체되는 등 합리적인 잔존내용연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 ① 경과내용연수: 20년
- ② 상각후대체원가 = min (1,000원, 취득원가의 5%)
= min(1,000원, 30,000,000x5%)=1,000원

3.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인 경우

- ① 내용연수 추정하지 아니함
- ② 상각후대체원가 = $33,900,000\text{원}(\text{제조달원가}) \times \frac{1}{1} = 33,900,000\text{원}$

상각후대체원가 산정 근거자료 관리

IG20. (문서화)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적용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물의 경우에는 제조달원가의 산정 등 상각후대체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IG21. (문서화 포함 내용)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 관련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조달원가 산정방법
- (2) 단위당 제조달원가법 적용 시 유사구축물의 범위, 기준단위, 단위당 제조달원가 산정방법 및 기준자료, 산출된 단위당 제조달원가
- (3) 감가상각 대상여부, 내용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6.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271	● 공시	20	279
● 적용범위	2	271	● 경과조치	21	279
● 용어의 정의	3	271	● 부칙		279
● 식별가능성	4	271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	
● 통제	5-6	272	부록 2. 실무해설	1-12	
● 무형자산의 구분	7	272	부록 3. 적용사례	1-4	
● 인식	8-10	273			
● 인식 후 평가	11-17	275			
○ 상각	11-14	275			
○ 감액	15-17	277			
● 제거	18-19	278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무형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다.
 - (2) "화폐성자산"이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
 - (3) "비화폐성자산"이란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I 식별가능성

4. (식별가능성) 자산은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무형자산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광업권	
			기타무형자산	

III 통제

5. (통제) (1)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 (2)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6.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III 무형자산의 구분

7. (무형자산의 구분) 무형자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는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하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하는 외부구입소프트웨어(관련 하드웨어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져있다.
- (2)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 (3) "광업권"이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존재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4) "기타무형자산"이란 (1) 내지 (3)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실무해설 2. (☞관련문단 7. (4)) 기타무형자산으로는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등 민법상 용익물권이 이에 해당되며, 전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III 인식

8.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9. (취득원가의 측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5
적용사례 1~2

실무해설3. (☞ 관련문단 8. (1))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8. (2))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 실무해설5.** (☞ 관련문단 9)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2)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3)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적용사례1. (☞ 관련문단 9) 소프트웨어 취득사례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총 5억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1억원 지급, 구입 시 1억원 지급 및 소프트웨어 인수 후 2주 이내 잔금 결제 조건인 경우(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선금금(1억원) 지급 시 -
차) 선 금 금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 소프트웨어 설치 시 -

차) 외	부	구	입	500,000,000	대) 선	금	금	100,000,000
소	프	트	웨		한	국	은	행
			어		국	가	예	금
					미	지	금	금
								300,000,000

- 미지급금 지급 시 -

차) 미	지	금	금	3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300,000,000

적용사례2. (☞ 관련문단 9) 산업재산권 취득사례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신기술 관련하여 20X1년부터 20X2년까지 개발비로 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개발비는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0X2년 10월에 관련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특허권 획득과정에서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개발비(5억원) 지급 시 -

차) 연	구	개	발	비	5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0,000,000

(★)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10.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3

III 인식 후 평가

II 상각

11. (상각방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며, 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을 그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적용사례 4

- 특허권 취득비용 지급 시 -

차) 산 업 재 산 권 1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

(*)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특허권 취득 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함

적용사례3. (☞ 관련문단 10) 자본적 지출 사례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성능개선을 위해 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차) 내 부 개 발 5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000,000
소 프 트 웨 어

실무해설6. (☞ 관련문단 11) 정액법이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형자산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12. (내용연수)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종류		기준내용연수
광업권		20
산업재산권	상표권	5
	저작권	10
	특허권	7
	실용신안권	5
소프트웨어		5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1) 무형자산 상각사례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는 10,000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0원이다.

2. 회계처리

- 20X1년도 기말 결산 시 -

차) 무형자산상각비 2,000* 대) 소프트웨어 2,000

* (10,000-0) / 5 = 2,000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12. (2)) 합리적인 내용연수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내용연수는 현행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민간회계기준을 근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12. (3))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월할 상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기초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상각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여 상각비를 계산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아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생각한다.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13. (잔존가액) (1)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액이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8**

14.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보유 중이거나 사용된다면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II 감액

15. (감액의 요건) (1) 무형자산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당해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나) 사용가치란 당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16.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무형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17. (감액손실의 환입) 감액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때에는 감액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0

III 제거

18.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 관련문단 19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6) 무형자산감액손실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감액손실	무형자산감액손실
			자산폐기손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7)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감액손실환입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19. (처분시 회계처리) 문단18에 의한 처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재정은 영표의 "무형자산처분이익" 또는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 **관련문단 18**
관련부록 실무해설 11~12

III 공시

20. (주석사항)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무형자산의 평가, 종류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 (2)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사유와 감액명세

III 경과조치

21.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 자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무형자산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19**) 무형자산처분손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처분이익	무형자산처분이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자산처분손실	무형자산처분손실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19**) 무형자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자산대장에서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인식한다.

7.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283	부록 1. 실무해설	1-4	
● 적용범위	2	283	부록 2. 적용사례	1-8	
● 용어의 정의	3	283			
● 기타자산	4-11	286			
● 기타부채	12-14	291			
● 공시	15	293			
● 부칙		293			

III 목 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채권보장부채(「보험 회계처리 지침」을 참조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2) "저장품"이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 등으로, 재고자산의 "기타의저장품"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3)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이 미래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1)~(2)) 재고자산 및 저장품의 종류
(1)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재고자산 및 저장품 종류

구 분	종 류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 잡곡, 기타부산물, 포장재 등
조달특별회계	6대 원자재(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광석, 아연, 니켈), 희귀금속 등 비축물자
우편사업/우체국예금	저장품, 미착자산
경찰병원/국립병원/국립재활원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2) 기금의 재고자산 및 저장품 종류

구 분	종 류
공무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상품, 식재료, 원재료, 저장품, 용지, 미성공사(분양주택), 분양주택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	비축농산물, 농산물 종자, 조성토지

- (4)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 (5)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6) "개별법"이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 (7)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 분	종 류
축산발전기금	생장물 및 정액
수산발전기금	비축재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협동화용 자산,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미성공사(단지)

실무해설2.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관련 상세 계정과목

(1) (☞ 관련문단 3~11) 기타자산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기타자산	재고자산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미착품	
			축산물	
			기타의저장품	
		저장품		
		선급비용	선급이자비용/단기	
			선급이자비용/장기	
			선급임차료/단기	
			선급임차료/장기	
			기타의선급비용/단기	
			기타의선급비용/장기	
		선급금/단기		
		선급금/장기		
		선급법인세		
		부가세대급금		
		기타의기타자산/단기		
		기타의기타자산/장기		

(2) (※ 관련문단 12~14) 기타부채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기타부채	선수수익	선수이자수익/단기	
			선수이자수익/장기	
			선수국세수익/단기	
			선수국세수익/장기	
			기타의선수수익/단기	
			기타의선수수익/장기	
		선수금		
		기타의기타부채/단기		
		기타의기타부채/유동성장기		
		기타의기타부채/장기		

관련규정

-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24)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외부 매입이나 자가제조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단27)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III 기타자산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부 매입이 아닌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제조, 채굴, 채취, 재배, 양식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제조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합계액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를 말한다.
- (2) (1)에서의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란 운임, 보험료, 관세(다만, 환급관세는 제외한다),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등과 같이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검수, 정리, 선별, 이관 등과 같은 내부용역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3)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적용사례 1

5. (재고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 (2) 저가법 적용 시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 (3)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적용사례 2

관련규정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사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적용사례1. (☞ 관련문단 4)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에 따른 평가방법

1. 배경정보

A부처의 20X1년 중 재고자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개)	단위원가(원)	총원가(원)
기초재고 (1. 1)	1,000	10	10,000
매입 (3. 7)	2,000	11	22,000
매입 (6.20)	3,000	12	36,000
매입(12.30)	2,000	13	26,000
판매가능량	8,000		94,000

6. (재화판매원가의 인식) "재고자산"은 판매에 따라 인식되는 재화판매수익에 대응하여 재화판매원가로 비용화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7. (저장품) (1) "저장품"은 문단4 내지 문단6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축하는 정부비축물자는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단위(개)	
판매(2. 3)	500	
판매(4.12)	1,500	
판매(8.25)	2,000	
판매(11.27)	500	
판매수량	4,500	
기말재고(12.31)	3,500	

2. 평가방법

①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

기말재고수량 3,500개	6. 20 매입분	1,500개(@12)	18,000
	12. 30 매입분	2,000개(@13)	26,000
		3,500개	44,000

②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

단위원가: ₩94,000 /8,000개 = ₩11.75

기말재고액: 3,500개 × ₩11.75 = ₩41,125

③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

일자	수입			불출			잔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기이월	1,000	10	10,000	—	—	—	1,000	10	10,000
2.3	—	—	—	500	10	5,000	500	10	5,000
3.7	2,000	11	22,000	—	—	—	2,500	10.8	27,000
4.12	—	—	—	1,500	10.8	16,200	1,000	10.8	10,800
6.20	3,000	12	36,000	—	—	—	4,000	11.7	46,800
8.25	—	—	—	2,000	11.7	23,400	2,000	11.7	23,400
11.27	—	—	—	500	11.7	5,850	1,500	11.7	17,550
12.30	2,000	13	26,000	—	—	—	3,500	12.44	43,550
합계	8,000		94,000	4,500		50,450	3,500		43,550

기말재고액: ₩43,550

8. (선급금) "선급금"이란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관련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3
적용사례 3~4

적용사례2. (☞ 관련문단 5) 재고자산의 평가

1. 배경정보

A부처의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종목별기준을 적용하여 기말 재고자산평가액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액)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취득원가	시가
A 조	a 상품	₩25,000	₩27,500
	aa 상품	40,000	37,800
B 조	b 상품	37,500	38,900
	bb 상품	21,300	15,700

재고자산		취득원가	시가	재고자산평가액	평가손실액
A 조	a 상품	₩25,000	₩27,500	₩25,000	₩ -
	aa 상품	40,000	37,800	37,800	2,200
B 조	b 상품	37,500	38,900	37,500	-
	bb 상품	21,300	15,700	15,700	5,600
합계				₩116,000	₩7,800

2. 회계처리

차) 기 타 자 산 평 가 손 실	7,800	대) 재 고 자 산	7,800

적용사례3. (☞ 관련문단 8) 선급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 일반회계가 원재료를 5억원을 들여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검수 확인한 경우 회계처리(계약 시 1억원 지급 및 자산 인수 후 2주 이내 잔금 결제 조건인 경우이며,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선급금(100,000,000원) 지급 시 -

차) 선 급 금 / 단 기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 검수 후 자산대장 등재 시 -

차) 원 재 료 500,000,000 대) 선 급 금 / 단 기 100,000,000
기타미지급금/단기 400,000,000

적용사례4. (※ 관련문단 8) 장기선급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 일반회계는 원재료를 구매하고자 민간에게 최초에 5억원, 검수 확인한 시점(최초 선급금 지급 후 2년 소요)에 추가적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유동성대체 및 국고금 회계처리 생략)

2. 회계처리

- 선급금(500,000,000원) 지급 시 -

차) 선 급 금 / 장 기 5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00

- 검수 후 자산대장 등재 시 -

차) 원 재 료 1,000,000,000 대) 선 급 금 / 장 기 500,000,000
기타의미지급금/장기 500,000,000

실무해설3. (※ 관련문단 8~9)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재화·용역대 등의 자산의 취득을 위한 선지급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반면에, 선급비용은 비용화되는 성격의 지출의 기간경과에 의한 선지급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인식된다.

9.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였으나, 결산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아 비용화하지 않은 선지급분을 말하며, 선급이자비용, 선급임차료 등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3
적용사례 5~6

적용사례5. (☞ 관련문단 9) 단기선급비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 일반회계는 민간으로부터 20X1년 7월 1일에 토지를 임차하고 1년 임차료에 대하여 20X1년 7월 1일에 100,000원을 지출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7월 1일 선급비용 지출 시 - 차) 토 지 임 차 료 1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 (*) 해당 토지임차료에 대하여는 국고금 유출 시 비용 인식한 후 결산 시 조정함
- 20X1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차) 선 급 임 차 료 / 단 기 50,000 대) 토 지 임 차 료 ^(*) 50,000 (*) 100,000원(토지임차료인식금액) - 100,000원(1년 토지임차료) X 6월/12월 = 50,000원(미경과 토지임차료)
- 20X2년 1월 1일 선급비용에 대한 역분개 시 - 차) 토 지 임 차 료 50,000 대) 선 급 임 차 료 / 단 기 50,000

적용사례6. (☞ 관련문단 9) 장기선급비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 일반회계는 민간으로부터 20X1년 7월 1일에 토지를 임차하고 2년 임차료에 대하여 20X1년 7월 1일에 200,000원을 지출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7월 1일 선급비용 지출 시 - 차) 토 지 임 차 료 2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200,000 (*) 해당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국고금 유출 시 비용 인식한 후 결산 시 조정함

- 20X1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차) 선금임차료/단기 ^(*1)	100,000	대) 토 지 임 차 료	150,000
선금임차료/장기 ^(*2)	50,000		

(*1) 1년 이내에 비용인식이 도래하는 금액을 계상함

(*2) 1년 초과하여 비용인식이 도래하는 금액을 계상함

- 20X2년 1월 1일 선급비용에 대한 역분개 시 -

차) 토 지 임 차 료	100,000	대) 선 급 임 차 료 / 단 기	100,000

- 20X2년 12월 31일 장기선급비용 유동성대체 시 -

차) 선 급 임 차 료 / 단 기	50,000	대) 선 급 임 차 료 / 장 기	50,000

- 20X3년 1월 1일 선급비용에 대한 역분개 시 -

차) 토 지 임 차 료	50,000	대) 선 급 임 차 료 / 단 기	50,000

10.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세"는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11. (부가세대급금) "부가세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III 기타부채

12. (선수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유형자산 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수취하는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4**

실무해설4. (☞ **관련문단 12~13**)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및 자산의 매각 시 급부 제공 이전에 수취한 자금의 선수액을 의미하는 반면 선수수익은 각종 수익의 발생과 관련하여 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취액을 의미한다.

13. (선수수익) 수익 발생시점에 앞서 대금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납 시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계제거한다.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대금 수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발생분을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관련부록 실무해설 2, 4

적용사례 7~8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3) 당해 연도 수익발생분과 관련한 선수수익

1. 배경정보

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1월 1일 국가소유 건물을 1년간 임대하고 1년의 임대료 10,000,000원을 일시에 수납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1월 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기타의선수수익/단기 10,000,000

- 20X1년 12월 31일 -

차) 기타의선수수익/단기 10,000,000 대) 사 용 료 수 익 10,000,000

적용사례8. (※ 관련문단 13)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선수수익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3월 1일 국가소유 건물을 1년간 임대하고 1년의 임대료 10,000,000원을 일시에 수납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3월 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기타의선수수익/단기 10,000,000

- 20X1년 12월 31일 -

차) 기타의선수수익/단기 8,333,333 대) 사 용 료 수 익^(※1) 8,333,333

(※1) 20×1년 수익분 = 10,000,000 × (10/12 (해당월수)) = 8,333,333

- 20X2년 2월 28일 -

차) 기타의선수수익/단기 1,666,667 대) 사 용 료 수 익(*2) 1,666,667

(*2) 20X2년 수익분 = 10,000,000 × (2/12(해당월수)) = 1,666,667

14. (준비금의 적립) 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 보증사업 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업무특성 상 미래 우발손실이 예상되며,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비용을 계상하고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산출기준에 따른 준비금을 "기타의기타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III 공 시

15.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평가방법

(나) 재고자산의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8. 리스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297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
● 적용범위	2	297	부록 2. 실무해설		1-9
● 용어의 정의	3	297	부록 3. 적용사례		1-5
● 리스의 분류	4-5	300			
● 금융리스	6-10	302			
● 운용리스	11	308			
● 리스자산의 반환	12	309			
● 부칙		309			

III 목 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고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 해당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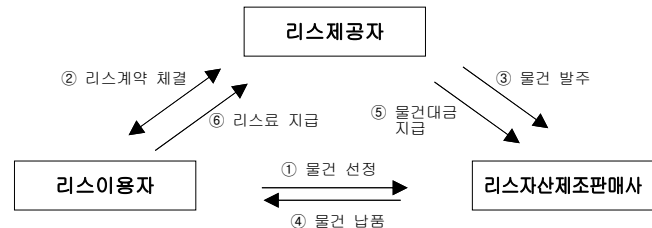
(2) "최소리스료"란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연간리스료, 보증잔존가치 및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내재이자율"이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리스제공자의 할인율을 말한다.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이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을 말한다.

(5)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1)) 리스거래 시 리스이용자는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사용료만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서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컴퓨터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이를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자산 소유에 따르는 진부화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다. 리스거래의 실행절차를 단순화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리스계약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다만,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 (6) "리스기간"이란 (가) 내지 (나)를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 (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
 - (나)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당해 추가기간
- (7) "리스약정일"이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을 말한다.
- (8) "리스기간개시일"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9) "금융리스"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 (10)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 (11) "염가매수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한다.
- (12) "추정잔존가치"란 리스약정일 현재 추정되는 리스기간 종료시점 혹은 경제적 내용연수 완료시점의 리스자산 잔존가치를 말한다.
- (13) "보증잔존가치"란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어떤 경우에도 보증금액은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14) "무보증잔존가치"란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실현이 불확실한 잔존가치로, 추정잔존가치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15) "리스자산 내용연수"란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말한다.

(16) "리스자산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리스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7) "해지불능 리스"란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한다.

(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나)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다)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해당 자산이나 동등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라)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해당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18) "조정리스료"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변동 요소(예: 수익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및 시장이자율)의 미래 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을 말한다.

(19) "리스보증손실"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말한다.

III 리스의 분류

4. (리스의 분류) (1)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리스약정일에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2) 리스는 형식(리스자산의 법적소유권)보다는 실질(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 부담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아래의 요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충족하는 리스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나)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임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다)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라)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마)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 관련부록 실무해설 2~3

적용사례 1

실무해설2. (☞ 관련문단 4) 문단4. (2. (다))의 "상당부분"이라 함은 통상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 이상을 의미한다. 문단4. (2. (라))의 "대부분"이라 함은 통상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을 의미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4) 문단4.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1)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2)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3) 리스이용자가 임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사례1. (☞ 관련문단 4) 리스의 분류 판단 사례

1. 배경정보

A리스제공자가 B부처(이하 "리스이용자")와 기계장치에 대하여 체결한 해지불능 리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일: 20X1.12.31.

- *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000,000원(당해 기계장치는 이동성 기계장치임)
- * 내용연수: 6년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치는 없음
- * 리스약정일: 20X2.1.1., 만료일: 20X5.12.31., 리스기간: 4년
- * 기계장치공정가치: 100,000,000원
- * 리스기간 종료 시 추정잔존가치: 20,000,000원(다만, 실제잔존가치는 13,000,000원으로 판명됨)
- * 보증잔존가치: 20,000,000원
- * 연간리스료: 31,790,000원 (리스료지급방법: 매년 후지급)
- * 소유권 이전약정,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 *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6%
-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2. 리스의 분류

당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하여 통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2)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75% 기준)
- (4)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90%기준)
-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구분	(1)	(2)	(3)	(4)	(5)	결론
해당유무	X	X	X	O(*)	X	금융리스

-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31,790,000*연금현재가계수(16%,4년)+20,000,000원*현가계수(16%,4년)=99,999,984원)≥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90,000,000원)
(4)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분류된다.

5. (리스의 분류 변경) (1) 리스의 분류는 당사자 간 특정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약정일 이후 임의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실행하였다면 리스의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 (2) (1)의 단서에 따라 리스의 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을 잔여리스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 (3)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은 (1)의 단서에 따른 리스계약의 분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II 금융리스

6. (금융리스자산·부채의 최초 인식) (1)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 (2)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최소리스료(*) = 연간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행사가 확실히 되는 영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금융리스자산 = Min[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금융리스부채 = Min[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실무해설 4~6
적용사례 2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6)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장기할부매매거래와 유사하다. 즉, 리스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을 용자하는 대신에 리스제공자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물적금융이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6) 금융리스부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금융리스부채/장기	

7. (최소리스료에 대한 할인율) 리스이용자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

실무해설5. (관련문단 6.(1))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한다.

실무해설6. (관련문단 6.(2))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반영되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부채와 금융리스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6~10, 12)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리스제공자가 B부처(이하 "리스이용자")와 기계장치에 대하여 체결한 해지불능 리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일: 20X1.12.31.
- *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000,000원(당해 기계장치는 이동성 기계장치임)
- * 내용연수: 6년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치는 없음
- * 리스기간개시일: 20X2.1.1., 만료일: 20X5.12.31., 리스기간: 4년
- * 기계장치공정가치: 100,000,000원
- * 리스기간 종료 시 추정잔존가치: 20,000,000원(다만, 실제잔존가치는 13,000,000원으로 판명됨)
- * 보증잔존가치: 20,000,000원
- * 연간리스료: 31,790,000원 (리스료지급방법: 매년 후지급)
- * 소유권 이전약정,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 *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6%
-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8. (재무제표 표시)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적용사례 2

9.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8
적용사례 2~3

실무해설7. (☞ 관련문단 8)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만약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상계하여 금융리스거래가 리스이용자의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리스이용자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의 정도가 과소 인식되어 재무비율이 왜곡된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인식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해설8. (☞ 관련문단 9) 금융리스이자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적용사례3. (☞ 관련문단 9) 리스료가 조정된 경우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적용사례2와 다른 상황은 동일하나 리스기간 중 이자율이 18%로 상승하여 연간리스료가 32,912,958원으로 인상되었다.
2. 회계처리

1. 리스료의 변동금액이 중요한 경우 (단위: 원)

연도(12.31)	리스료	금융리스이자	채권원금회수	미회수채권
				100,000,000 ^(*)
20X2	31,790,000	16,000,000	15,790,000	84,210,000
20X3	31,790,000	13,473,600	18,316,400	65,893,600
20X4	32,912,958	11,860,848	21,052,110	44,841,490
20X5	32,912,958	8,071,468	24,841,490	20,000,000
합계	129,405,916	49,405,916	80,000,000	

(*) 리스자산 및 부채가액 결정 = $\text{Min}(A, B) = 100,000,000\text{원}$

(A)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00,000,000원(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인 16%로 할인한 실제금액은 99,999,984원이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00,000,000원으로 계상함)

(B) 리스물건의 공정가치: 100,000,000원

- 20X3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13,473,6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18,316,400

차) 금융리스부채/장기 21,052,110 대)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21,052,110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 20X4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11,860,848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2,912,958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21,052,110

차) 금융리스부채/장기 44,841,490 대)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44,841,490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 20X5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감가상각 및 리스자산 반환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8,071,468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2,912,958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24,841,490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20,000,000 대) 이동성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차)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20,000,000 대) 이동성기계장치 100,000,000
 이동성기계장치 8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차) 잡손실 7,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00

2. 리스료의 변동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 20X3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13,473,6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18,316,400

- 20X4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10,542,976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21,247,024
 지급수수료등 1,122,958

- 20X5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 시 -

차) 금융리스이자비용 7,143,424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1,790,000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24,646,576
 지급수수료등 1,122,958

※ 기타의 회계처리는 적용사례2와 동일함



10.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 (1)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며,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 (3)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 4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0) 소유권이전조항이 존재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된 경우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적용사례2와 다른 상황은 동일하나 소유권이전조항이 존재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다. 다만,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된다.

2. 회계처리

- 매기 감가상각비 -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16,666,667	대) 이 동 성 기 계 장 치	16,666,66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금 용 리 스 자 산)	

(*) 감가상각비 = (리스자산가액 - 내용연수 종료시점 추정잔존가치)/내용연수
= (100,000,000-0)/6년 = 16,666,667

소유권이전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상각함

- 20X5년 12월 31일 리스기간 종료 시 -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16,666,667	대) 이 동 성 기 계 장 치	16,666,66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금 용 리 스 자 산)	

차) 금 용 리 스 이 자 비 용	7,143,424	대) 현금및현금성 자산	31,790,000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24,646,576		

차) 금 용 리 스 부 채 / 장 기	2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 자산	20,000,000

차) 이 동 성 기 계 장 치	100,000,000	대) 이 동 성 기 계 장 치	100,000,000
		(금 용 리 스 자 산)	

이 동 성 기 계 장 치	66,666,667	이 동 성 기 계 장 치	66,666,66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감 가 상 각 누 계 액	
(금 용 리 스 자 산)			

III 운용리스

11. (운용리스의 리스료 인식)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보증 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적용사례 5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1) 운용리스료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운영비	지급임차료	운용리스료

적용사례5. (☞ 관련문단 11~12)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적용사례2와 다른 상황은 동일하나 금융리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운용리스로 분류되었다.
2. 회계처리
금융리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운용리스로 분류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0X2년 1월 1일 리스기간개시일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어떠한 회계처리도 없음. 다만, 리스료를 선급하는 경우에는 동 선급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
- 매기말 리스료 지급 시 - 차) 운 용 리 스 료 31,790,000 대) 현금및현금성 자산 31,790,000
- 20X5년 12월 31일 리스 자산 반환 시 - 차) 잡 손 실 ^(*) 7,000,000 대) 현금및현금성 자산 7,000,000 (*) 보증잔존가치(20,000,000) - 실제잔존가치(13,000,000) = 7,000,000

III 리스자산의 반환

12. (리스자산의 반환) 운용리스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며, 반환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관련부록 적용사례 2, 5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313	부록 1. 실무해설	1-12	
● 적용범위	2	313	부록 2. 적용사례	1-4	
● 용어의 정의	3	313			
● 인식	4-8	315			
● 측정	9-13	320			
● 충당부채 변제, 변동, 사용	14-16	322			
● 공시	17-20	323			
● 부칙		325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1)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보험충당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3) 보증충당부채(「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4) 리스(「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다만,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예규를 적용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2](#))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국가회계실체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지출액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해당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 상당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3) "우발부채"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 (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 (나)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
- (4) "우발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 (5) "의무발생사건"이란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을 말한다.
- (6) "법적의무"란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 (7) "의제의무"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실무해설2. (☞ **관련문단 3. (7)**) 법적의무는 없으나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 또는 기금에서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III 인 식

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8

적용사례 2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무해설3. (☞ 관련문단 4. (1)) 현재의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해당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전문가의 의견 포함)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4. (1)) 현재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사건(의무발생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에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
- (2)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후 새로운 법규가 그러한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요구하거나 국가회계실체가 그러한 복구 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 (3) 법규가 제·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국가회계실체의 행위(예: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대외공표)에 따라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4) 입법 예고된 법률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5. (충당부채의 구분) 충당부채는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충당부채로 구분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6. (기타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 (1) 소송충당부채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4. (2))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1) 소송 등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말한다.

(2)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록 개별항목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실무해설6. (☞ 관련문단 4. (3)) 의무의 신뢰성 있는 추정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충당부채의 특성상 다른 재정상태표 항목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더 크므로 그에 대한 추정치의 사용은 특히 필수적이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5~6) 충당부채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군인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공무원퇴직수당충당부채	
			군인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 (2)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자산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 (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 (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 (3) 기타의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이외의 기타충당부채로서 복구충당부채를 포함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적용사례 1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기타의기타충당부채	

적용사례1. (☞ 관련문단 6)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충당부채 설정 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회계과목	관리과목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합계	2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0
	퇴직보험예치금	(-)48,000,000
	국민연금전환금	(-)7,000,000

7. (우발부채) (1)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 (2)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대하여 총당부채를 인식한다.
- (4)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A부채는 총당금의 60% 상당을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당기에 퇴직급여추계액은 100,000,000원이다. 한편, 20X2년 중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으로 30,000,000원이 지출되었다.

2. 회계처리

<20X1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차) 퇴직보험예치금 ^(*)	12,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퇴직급여	20,000,000	퇴직급여총당부채	20,000,000

(*) 퇴직급여총당부채 설정액 × 60% = 12,000,000원

<20X2년 기중 퇴직금 지급 시>

차) 퇴직급여총당부채	3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퇴직보험예치금	18,000,000

실무해설8. (☞ 관련문단 4, 7)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 추정가능성 자원 유출가능성	신뢰성있는 추정가능	신뢰성있는 추정불가능
매우 높음	총당부채로 인식(문단4)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문단7)
희박하지 않음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문단7)	
희박함	공시하지 않음	

적용사례2. (☞ 관련문단 4, 7)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사례

(1) 법적 소송

<상황>

AA기업은 주식회사BB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원고와 다투고 있다. '17.12.31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문단 18

관련부록 실무해설 8

적용사례 2

재무제표가 제출되는 시점까지 법률전문가는 기금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18.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금이 법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하였다.

<인식여부 검토>

- 1)'17년 12월 31일에는 현재의 의무가 없으나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므로 소송내용을 주석에 기재함(우발부채로 공시)
- 2)'18년 12월 31일에는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함

(2) 오염된 토지

<상황>

A부처는 미래의 항구 증축에 대비하여 기존 항구 인근에 토지 및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부 농민들이 농업비료 저장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비료가 창고 주변의 토지를 몇 년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으나, A부처는 농민이나 보험회사에 대해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17.12.31 현재 거의 확실하다.

<인식여부 검토>

토지정화를 요구하는 법률 제정으로 인해 오염된 토지복구를 위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화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함

(3) 환불정책

<상황>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A부처는 일반 대중에 대해 초과공급분의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족한 구매에 대한 환불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불정책은 널리 알려져 있다.

8. (우발자산) (1) 우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3) 상황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일어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 관련문단 19 III 측정 9. (최선의 추정치) (1)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2)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적용사례 3	<인식여부 검토> 해당 부채는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환불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총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함 실무해설9. (☞ 관련문단 9) 최선의 추정치: 개별 의무와 관련된 경우 하나의 의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일의 결과가 당해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타 가능한 결과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기타 가능한 결과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보다 대부분 높거나 낮다면 최선의 추정치도 높거나 낮은 금액일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한 주요 설비의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한 차례의 시도로 1,000원의 원가를 들여 수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수선이 필요할 가능성이 유의적이라면 보다 많은 금액을 총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적용사례3. (☞ 관련문단 9) 최선의 추정치: 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 1. 배경정보 A기금은 사립병원에 초음파 스캐너를 제공한다. 구입 후 첫 6개월 이내에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함께 제공한다. 제공한 장

10. (위험과 불확실성) (1)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익 또는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현재가치) (1)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2)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이율이다. 이 할인율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만약, 할인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
12.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0~11

비에 사소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제공한 모든 장비에서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4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실험실의 과거경험 및 미래예상에 따르면 내년도에 제공할 장비 중에서 75%는 전혀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반면, 20%는 사소한 결함, 나머지 5%는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실험실은 보증의무와 관련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할 때 당해 의무전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계산내역

이 경우 수선비용의 기대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75\% \times 0) + (20\% \times 1,000,000) + (5\% \times 4,000,000) = 400,000$$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2)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때 해당 법률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측정한다.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12) 미래에 오염지역을 복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복구비용은 미래의 기술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채 인식금액은 복구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모든 증거를 기초로 하여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의 예측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학습효과나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기대비용 감소도 부채 인식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13. (예상되는 자산처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총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총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III 총당부채 변제, 변동, 사용

14. (총당부채의 변제) (1) 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회계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총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총당부채와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15. (총당부채의 변동) (1) 보고기간 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한다.
- (2) 총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16. (충당부채의 사용) (1)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III 공시

17. (충당부채의 공시)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당기 증감 내용
- (2) 충당부채의 내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3)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 (4) 제3자에 의한 변제 예상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 (5)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을 변동에 따른 효과

☞ 관련부록 적용사례 4

18. (우발부채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3)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 관련문단 7

관련부록 적용사례 4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7~1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공시 사례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 건, 원)

회계실체	○○부가 원고인 경우		○○부가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16	9,580,400,000	10	1,590,000,000
전기말	14	8,741,300,000	12	2,104,200,000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OO부가 원고인 경우					
XX 법원 YY 지원	OO부	홍길동	손해배상청구	500,000,000	1심진행중
XX 법원 YY 지원	OO부	홍길동	손해배상청구	400,000,000	2심진행중 (1심패소)
OO부가 피고인 경우					
XX 법원 FF 지원	재단법인 AAA	OO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00,000,000	2심진행중 (1심패소)
XX 법원 oo 지원	(주)YY	OO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300,000,000	3심진행중 (1,2심패소)

② 담보제공자산
(단위 : 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이유	담보권자	차입금액
건물	1,000,000	500,000	차입금	XX은행 등	400,000

19. (우발자산의 공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우발자산의 내용
- (2) 가능한 경우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 관련문단 8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적용사례 4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19)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압수품 및 몰수품이 있으며, 압수품 및 몰수품의 종류와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구 분 ^(*)	종 류	금 액
압 수 품		
몰 수 품		

(*) 압수품 및 몰수품은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처분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하여 기재한다.

20. (공시예외) (1)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2)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0.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329	● 경과조치	24	346
● 적용범위	2	329	● 부칙		346
● 용어의 정의	3	330	부록 1. 실무해설	1-15	
● 교환수익의 구분	4-10	330	부록 2. 적용사례	1-12	
●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11-22	335			
○ 교환수익의 인식	11-19	335			
○ 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	20-22	343			
● 표시	23	346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교환 수익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교환수익에 적용한다.
 - (1)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부담금과 국가기여금(「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보험료(「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3)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보증료(「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4)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 금액을 한도로 환입하는 금액(자산재평가손실환입)(「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5)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오류 중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및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사항(전기오류수정이익)(「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 (6)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비용 지출금을 반납 받는 금액(과오지급금회수금) 및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비용 지출금을 반납 받는 금액(지출금반납금)(「비용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환수익"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 (2)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3)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4)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III 교환수익의 구분

4. (교환수익의 구분) 교환수익은 국가운영수익에 대응되며,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기타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한다.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4.]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4.]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권"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5.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을 말한다.

-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 (3)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및용역제공수익
 -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 (다)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6. (이자수익) "이자수익"이란 금융상품 예치, 국·공채 등 투자증권 보유, 외부 자금 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실무해설1. (☞ 관련문단 5)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 수익	재화및용역 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환급금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환급금
			기타재화및용역 제공수익	사용료수익
				사용료수익환급금
				수수료수익
				수수료수익환급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환급금

실무해설2. (☞ 관련문단 6) 이자수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 수익	이자수익	금융상품이자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
				정기적금이자수익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투자증권이자수익	국채이자수익
				공채이자수익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 수익	이자수익	투자증권이자수익	지방채이자수익
				회사채이자수익
			대여금이자수익	일반용자금이자수익
				저리용자금이자수익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7. (배당수익) "배당수익"이란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투자증권 보유로 인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실무해설3. ☞ 관련문단 7) 배당수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 수익	배당수익	정부출자기업출자금배당수익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배당수익	
			지분증권배당수익	
			국세물납증권배당수익	
			기타배당수익	

8. (자산처분이익) "자산처분이익"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실무해설4. ☞ 관련문단 8) 자산처분이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처분 이익	투자증권처분이익	
			KIC위탁투자자산처분이익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9. (자산평가이익) "자산평가이익"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10.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 (1) 대손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대손추산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
- (2)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용자보조원가충당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
- (3) 감액손실환입: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환입처리한다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무형자산처분이익	
			기타자산처분이익	

실무해설5. (☞ 관련문단 9) 자산평가이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자산평가이익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 자산재평가손실환입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자산평가이익	
			기타자산평가이익	

실무해설6. (☞ 관련문단 10. (7). (마)) 채무상환이익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교환수익인 반면, 채무면제이익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적인 협상 등을 통해 채무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교환수익이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10) 기타국가운영수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미수국세대손충당금환입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환입
				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환입
				구상채권대손충당금환입
				미수재화및용역수익대손충당금환입

금액

- (4) 충당부채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충당부채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충당부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을 환입하거나,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는 금액
- (5) 기타평가이익: 외화부채, 기타부채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 금액
- (6)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
- (7) 기타수익: (1)~(6)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국가운영수익
- (가)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거래의 실행에 따라 실제 현금수취·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이익
- (나) 구상이익: 손해배상, 변상 혹은 배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장부가액(없는 경우도 존재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차이 금액
- (다) 국채물가연동이익: 물가연동국채 발행시 물가연동지수가 직전회계연도보다 하락하는 경우 물가연동국채의 감소 금액
- (라) 신탁사업이익: 분양형 및 임대형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탁사업수익권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순자산증가액
- (마) 채무상환이익: 국채 등의 채무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차이금액
-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 (바)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환입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감액손실환입	금융상품감액손실환입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정부출자금감액손실환입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충당부채환입	보증충당부채환입
				보험충당부채환입
				소송충당부채환입
				기타충당부채환입
			기타평가이익	외화부채평가이익
				기타부채평가이익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기타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구상이익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

(사) 외환차익: 화폐성 외화자산의 회수와 화폐성 외화부채의 상환 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수취·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아) 법인세환급금: 법인세 납부 대상인 국가회계실체가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는 금액

(자)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III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II 교환수익의 인식

11. (일반원칙)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8~9
적용사례 1~3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 수익	기타국가 운영수익	기타수익	국채물가연동이익
				신탁사업이익
				채무상환이익
				보험차익
				외환차익
				법인세환급금
				잡이익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수익인식차이는 다음과 같다.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취와 지출 시점이 아닌 근원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발생사실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어도 국가의 손익이나 그 밖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발생한 때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현금주의에 의하여 인식할 경우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발생주의 개념 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이 발생한다.

AA부처는 20X1년 10월 31일 임대차계약에 의해 1년분의 임대료 10,000,000원을 일괄 수취하였다.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

현금 수취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20X1년에 10,000,000원의 임대료수익이 귀속된다.

<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 >
발생주의에 따라 20X1년에는 $10,000,000 \times 2/12$ (해당월수 11월~12월) = 1,666,667원을 인식하고 20X2년에는 $10,000,000 \times 10/12$ (해당월수 1월~10월) = 8,333,333원을 인식한다.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인식한다.

- ① 측정요건: 수익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수익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 ② 가득요건: 수익창출 활동을 위한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적용사례1. (☞ 관련문단 11) 수익 발생시점과 대금 수납시점이 동일한 경우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 10,000,000원과 이자수익 1,000,000원을 계약상의 상환일인 20X1년 12월 31일 수취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12월 3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1,000,000 대)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단기 10,000,000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1,000,000
※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과 대금 수납시점이 동일한 경우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11)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교환수익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2월 1일 AA부처 일반회계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1년간 구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구독료를 구독기간이 완료되는 20X2년 1월 말에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2월 1일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12월 31일 -

차)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1,000,000 대) 수 수 료 수 익^(*1) 11,000,000

(*1) 당해연도 수익분 = $12,000,000 \times (11/12 \text{ (해당월수)}) = 11,000,000$

- 20X2년 1월 31일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2,000,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1,000,000

수 수 료 수 익^(*2) 1,000,000

(*2) 당해연도 수익분 = $12,000,000 \times (1/12 \text{ (해당월수)}) = 1,000,000$

※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미수납되는 경우에는 미수채권으로 처리한다. 이때, 수익의 발생시점 또는 회계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수되는 시점에 수납액과 미수채권을 상계처리하게 된다.

적용사례3. (☞ 관련문단 11) 수익 발생시점에 앞선 시점에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3월 1일 국가소유 건물을 1년간 임대하고 1년의 임대료 6,000,000원을 일시에 수납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3월 1일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6,000,000 대) 기 타 의 선 수 수 익 6,000,000

- 20X1년 12월 31일 -

차) 기 타 의 선 수 수 익 5,000,000 대) 사 용 료 수 익^(*1) 5,000,000

(*1) 당해연도 수익분 = $6,000,000 \times (10/12 \text{ (해당월수)}) = 5,000,000$

- 20X2년 2월 28일 -

차) 기 타 의 선 수 수 익 1,000,000 대) 사 용 료 수 익^(*2) 1,000,000

(*2) 20X2년 수익분 = $6,000,000 \times (2/12 \text{ (해당월수)}) = 1,000,000$

12.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국가회계실체가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재화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나므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0

13.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2) 재화판매수익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잡곡·기타부산물 판매수입
- (2)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 사업수입
- (3) 복권기금의 복권사업수입
- (4) 간행물, 영상물 판매수입과 행정용품 판매수입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13) 용역제공수익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사업수입
- (2)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의 수탁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 (3)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 사업 관련수입(예: 내자구매대행수익)
- (4)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 사업 관련수입(예: 외자구매대행수익)
- (5)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 사업수입(예: 시설계약대행수익)
- (6) 병원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입
- (7) 교도소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입
- (8) 입학금과 수업료: 국립학교 입학금, 수업료, 강의와 교육수익을 포함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14.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 (1)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용역제공거래를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제공된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3) 계약기간의 경과 또는 용역대가 수령정도를 통해 작업진행정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진행률은 다음 (가) 내지 (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총예상작업량(시간) 대비 실제작업량(시간)의 비율

(나)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다)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1) 총추정원가: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계한 금액

2)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를 누적한 금액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적용사례 4

- (1) 전기통신 수탁사업수입
- (2)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 (3) 항공과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예: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 (4) 토지·건물 대여수입
- (5)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 (6)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20X2년 1월 1일 ~ 5일 입장료수익: 30,000,000

- 20X1년 12월 31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사용료수익^(*) 10,000,000
(*) 20X1년 귀속분

- 20X2년 1월 5일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 대) 사용료수익^(*) 30,000,000
(*) 20X2년 귀속분

16. (수수료수익) 수수료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고시수수료 등의 경우 기간단위의 계약이 아니라 1회성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사용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검사수수료 등의 경우 계약에 따라 기간단위 또는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17.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손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5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16) 수수료수익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와 기타수수료
- (2) 고시수수료
- (3) 청원경찰수수료
- (4) 조달특별회계의 나라장터운영수입

적용사례5. (☞ 관련문단 17) 이자수익의 인식 예시

1. 배경정보

OO기금은 20X1년 1월 1일 여유자금 100,000,000원을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2년간 예치하였다. 연 이자율이 8%라고 가정할 때 20X1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다만,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2. 회계처리

- 20X1년 12월 31일 -

차)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0 대) 정기예금이자수익^(*) 8,000,000
(*) $100,000,000 \times 8\% \times 12/12 = 8,000,000$

18.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주식배당액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6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8) 배당수익의 인식 예시 AA부처는 B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BB회사는 20X2년 3월 31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20X1년 12월 31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투자처를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 경우, AA부처의 배당수익의 수익인식시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 및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인 20X2년 3월 31일이 된다.
19. (보험차익)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4 적용사례 7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19)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기타의미수금"을 계상한다.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9) 보험차익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취득가액 1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1억원)이 20X1년 중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다. 화재 후 건물의 회수가능가액은 5억원으로 추정되며 지급가능한 보험금은 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 회계처리 - 화재발생 후 건물 일부 멸실 시 - 차) 기 타 의 미 수 금 400,000,000 대) 건 물 400,000,000 - 보험금 확정 시 - 차) 기 타 의 미 수 금 200,000,000 대) 보 험 차 익 200,000,000 화재로 인하여 AA부처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은 4억원이며 보험금으로 인하여 6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므로 2억원의 보험차익이 계상된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다 회수될 보험금이 적은 경우에는 재해손실로 처리한다.

II 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0.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수입금환급금은 해당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5
적용사례 8

21.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과오납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9

(2)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0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20) 수입금환급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오납반환금과는 차이가 있다.

적용사례8. (☞ 관련문단 20) 교환수익의 수입금환급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초 수수료수익 1,000,000원을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나, 이후 20X1년 말 법률변경에 따라 수수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20X1년 초 수익 발생 시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	대) 수 수 료 수 익	1,000,000
- 환급금 지급 결정 시 -			
차) 수 수 료 수 익 환 급 금	300,000	대) 기 타 의 미 지 급 비 용	300,000
(수 수 료 수 익 차 감)			
- 환급금 지급 시 -			
차) 기 타 의 미 지 급 비 용	3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300,000

적용사례 9. (※ 관련문단 21. (2))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반환금 회계처리**1. 수익 발생과 동시에 수납이 완료되어 수익으로 인식된 경우**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4월분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4월 30일에 수취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20X1년 말 시점에서 오류로 300,000원을 추가 수취한 것을 인지하고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 20X1년 4월 수익 발생 시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 대) 사용료수익 1,000,000

- 과오납금의 반환 지급 결정 시 -

차) 사용료수익 30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 과오납금의 반환 시 -

차)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 수익발생과 동시에 수납이 완료되어 수익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수익을 차감하고,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반환결정 시 '기타의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실제 지급 시 상계제거한다.

2.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수납이 미리 이루어진 경우

조달청 OO특별회계는 20X1년 초 행정용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8,000,000원으로 계약체결)하고 실제 납품일인 20X1년 3월 31일 이전인 20X1년 2월 1일에 대금 10,000,000원을 수납받았다. 20X1년 3월 1일 대금액이 오류로 2,000,000원 추가 납입된 것을 확인, 20X1년 3월 31일 2,000,000원을 반환하며 재화를 인도하였다.(환급금 지급결정 및 지급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며,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 계약 체결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2월 1일 대금 수취 시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기타의선수수익 10,000,000

- 20X1년 3월 31일 반환 및 재화 인도 시 -

차) 기타의선수수익 1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0
재화판매수익 8,000,000

※ 과오납반환이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수납이 미리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하였을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단순히 선수수익을 반환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적용사례 10. (※ 관련문단 21. (2)) 전기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반환금 회계처리**1. 수익 발생과 동시에 수납이 완료되어 수익으로 인식된 경우**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4월분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4월 30일에 수취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20X2년 2월 1일 시점에서 오류로 300,000원을 추가 수취한 것을 인지하고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 20X1년 4월 수익 발생 시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 대) 사용료수익 1,000,000

- 20X2년 2월 1일 과오납금의 반환 지급결정 시 -

차) 전기과오납금반환금 300,000 대)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 과오납금의 반환 시 -

차) 기타의미지급비용 3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 전기 선수수익발생 후 수익인식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하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반환결정 시 '기타의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 후 실제지급 시 상계제거한다.

2.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수납이 미리 이루어진 경우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10월 31일 행정용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8,000,000원으로 계약체결)하고 실제 납품일인 20X2년 3월 1일 이전인 20X1년 11월 15일에 대금 10,000,000원을 수납받았다. 20X2년 3월 1일 납품한 후 3월 31일 대금액이 오류로 2,000,000원 추가납입된 것을 확인, 20X2년 3월 31일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환급금 지급결정 및 지급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며,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 계약 체결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11월 15일 대금 수취 시 -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기타의선수수익 10,000,000

- 20X2년 3월 1일 재화 인도 시 -

차) 기타의선수수익 8,000,000 대) 재화판매수익 8,000,000

- 20X2년 3월 31일 대금 반환 시 -

차) 기타의선수수익 2,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0

※ 전기에 대금을 수납받았으나 기간미경과로 선수수익으로 남아 있는 수익의 반환은 선수수익을 반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22. (징수결의착오정정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1

(2)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2

적용사례11. (☞ 관련문단 22. (1))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착오정정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초 행정용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8,000,000원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서상의 납품일인 20X1년 3월 31일 물품을 납품완료하였다. 20X1년 4월 15일 수익이 1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오류정정을 하였으며, 대금은 그 이후인 20X1년 4월 30일에 수납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계약 체결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3월 31일 물품인도 시(수익인식시점) -			
차)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0,000,000	대) 재 화 판 매 수 익	10,000,000
- 20X1년 4월 15일 오류발견 시 -			
차) 재 화 판 매 수 익	2,000,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2,000,000
- 20X1년 4월 30일 대금 수납 시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8,000,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8,000,000

적용사례12. (☞ 관련문단 22. (2)) 전기에 발생한 징수결의착오정정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10월 31일 행정용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8,000,000원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서상의 납품일인 20X1년 11월 30일 물품을 납품완료하였다. 20X2년 1월 15일 수익이 1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오류정정을 하였으며, 대금은 그 이후인 20X2년 1월 20일에 수납하였다. (국고금 회계처리는 생략함)			
2. 회계처리			
- 계약 체결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11월 30일 물품 인도 시 -			
차)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0,000,000	대) 재 화 판 매 수 익	10,000,000
- 20X2년 1월 15일 오류 발견 시 -			
차)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2,000,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2,000,000
- 20X2년 1월 20일 대금 수납 시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8,000,000	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8,000,000

III 표시

23. (교환수익의 표시) 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1)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국가운영수익' 항목으로 표시한다.
-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프로그램수익' 또는 '비배분수익'으로 표시한다.
-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다음의 평가이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조정 항목으로 표시한다.
 - (가) 투자증권평가이익
 - (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이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 (다) 자산재평가이익

III 경과조치

24.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적용) 이 예규 문단20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입금환급금부터 적용한다.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1.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349	● 이전수익의 회계처리	15-27	360
● 적용범위	2	349	○ 이전수익의 인식	15-22	360
● 용어의 정의	3	349	○ 이전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	23-25	364
● 비교환수익의 구분	4-7	350	○ 이전수익에 대한 가산금	26	365
● 비교환수익의 인식	8	354	○ 이전수익의 표시	27	366
● 국세수익의 회계처리	9-14	354	● 경과조치	28	367
○ 국세수익의 인식	9-10	354	● 부칙		367
○ 국세환급금	11	359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8	
○ 국세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	12-13	359	부록 2. 실무해설	1-17	
○ 국세수익의 표시	14	359	부록 3. 적용사례	1-17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에 적용한다.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수익(「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수익(「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3)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보전금(「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4) 국고금 수납과 지출에 따른 국고이전수입, 국고수입, 국고금회계전입금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5)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부여한 사용수익권을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발생하는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비교환수익"이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

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 (2) "출연금"이란 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는 민간으로부터 정상 원조의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금전을 말하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의 출연금을 제외한다.
- (3)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5)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6)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I 비교환수익의 구분

4. (비교환수익의 구분) 비교환수익은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으로 구분한다.

- (1) "국세수익"이란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 (2) "이전수익"이란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을 말하며,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기타이전수익으로 구분한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3)) 국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상속세가 유일하다.

관련규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이란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국가회계실체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 관련문단 16
 관련부록 실무해설 2~3

실무해설2. (☞ 관련문단 5) 부담금은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1) 수익자부담금이란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있다.
- (2) 원인자부담금이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소음부담금 등이 있다.
- (3) 조세성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법정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배출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이 있다.

한편, 예산과목상 예치성부담금은 해당사업의 복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예치하고 복구완료 후 반환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인 "기타의예수금"으로 반영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5) 부담금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1) 재정운영표 표시 부담금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이전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환급금	

(2) 순자산변동표 표시 부담금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변동	이전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환급금	

6. (제재금수익) (1) "제재금수익"이란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켜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변상금수익: 법령과 계약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나) 위약금수익: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다) 가산금수익: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
(라) 벌금수익: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및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징계부가금 등
(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법령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의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등
(2) "제재금수익" 중 벌금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벌금 및 과료: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벌금: 5만원 이상, 과료: 5만원 미만)
(나) 범칙금: 「도로교통법」·「경범죄 처벌법」 등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다)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전벌
(라)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벌
(마)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벌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실무해설4. (※ 관련문단 6) 제재금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1) 재정운영표 표시 제재금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이전수익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과태료수익
				과태료수익환급금
				과징금수익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가금수익
				징계부가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환급금			

(2) 순자산변동표 표시 제재금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이전수익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과태료수익				
과태료수익환급금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이전수익	제재금수익	별금수익	과징금수익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가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	징계부가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환급금

7. (기타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이란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전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부내전입금: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 정부내전입금은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국가회계실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나)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다)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라) 기금전입금: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마) 국고금회계전입금: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문단15 및 문단17에 따른 수익

(바)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관서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수입과 주세수입을 각각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2) 자산수증이익: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관리 전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자로부터

실무해설5. (※ 관련문단 7) 기타이전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1) 재정운영표 표시 기타이전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자산수증이익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채무면제이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2) 순자산변동표 표시 이전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국고금회계전입금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터 현금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기부채납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이익

(3) 채무면제이익: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4) 기타의기타이전수익: (1) 내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이전수익

☞ 관련부록 실무해설 5

III 비교환수익의 인식

8. (일반원칙)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

III 국세수익의 회계처리

II 국세수익의 인식

9. (국세수익의 인식기준) 국세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1)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2) 국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고지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국가가 고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채무면제이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제2항

실무해설6. (☞ 관련문단 9) 국세수익의 경우 계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상이한 것이 아니라 세금의 부과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상이하므로 계정별 회계처리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부과 방식에 따른 회계처리를 제시하도록 한다. 국세는 납세의무의 확정방법에 따라 신고납부제도과 부과과세제도로 나누어진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면 그 신고한 내용대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이 있다.

부과과세제도는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 납세신고의 절차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채("선수국세수익")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실무해설 8
적용사례 2~4

- (3)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

- (4) 중간예납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 (5)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상기 (1), (2)에 따라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명목가액)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3**
실무해설 10~12
적용사례 5~6

없으며, 단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효과만 있다. 부과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위 두 가지 방법 이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이 간단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액이 이에 해당한다.

-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1)**) 연도말 시점 기준의 법인세 납부 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연도말의 법인세 납부액은 별개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은 자진신고하는 때,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9. (2)**) 세법상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도달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이는 부과고지 시 국가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의무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달시점을 확정시점으로 한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의 관점에서는 고지 시 국가는 이미 권리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 또한 확정되므로 고지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실무해설8. (☞ **관련문단 9. (2)**)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부과고지 전에 세금을 수취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진신고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이 아니므로 수취한 세금을 "선수국세수익"으로 처리한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9. (3)) 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하는 시점이 되어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금액을 신고·납부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실무해설9. (☞ 관련문단 9. (4)) 세법상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중간예납기간+2월"에 세액이 확정되나, 중간예납 또한 신고납부세액이므로 자진 신고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9. (5))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상 확정된 납세의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일 뿐이므로 연부연납을 허가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과고지하는 시점에 이미 납부 총액에 대하여 채권이 확정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9. (5))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9. (5))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대하여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9~13) 국세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1) 재정운영표 표시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제재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2) 국세징수활동표 표시 국세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국세징수	국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국세환급금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국세환급금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국세환급금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국세환급금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국세환급금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국세환급금	
		주세수익	주세수익	
			주세수익국세환급금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국세환급금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국세환급금	
		관세수익	관세수익	
			관세수익국세환급금	

10. (물납) 국세를 물납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과 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아닌 문단9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금액을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9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적용사례 7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국세 징수	국세 수익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국세환급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국세 환급금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국세환급금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국세환급금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국세환급금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국세환급금	

(3) 순자산변동표 표시 이전수익의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이전수익	제재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10) 국세청이 물납 받은 부동산 또는 증권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은 물납 받은 부동산과 증권을 "건설회사기타의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다가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때 "물납이전"으로 처리한다. 기획재정부는 물납 받은 부동산과 증권을 이관 받을 때 "정부내자산수증"으로 처리하면서, 물납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 등 그 성질에 따라 인식하고, 물납 증권의 경우 "국세물납증권"으로 인식한다.

|| 국세환급금

11.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 (2) 국세환급금(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국세와 관련된 환급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국세수익에서 차감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
적용사례 8

|| 국세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

12. (국세에 대한 가산세) (1)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한 때 본세에 포함하여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13. (국세에 대한 가산금)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문단17. (3)에 따라 "가산금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17. (3)

|| 국세수익의 표시

14. (국세수익의 표시) (1)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세수익"을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하고,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세수익"을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11) 국세환급금은 전기오류수정에 의한 반환금의 경우에도 국세징수활동표에 당해 연도의 국세징수에 대한 수익발생과 현금수취, 환급금 발생과 지급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는 "환급금"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재정은영표나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 국세징수활동표에 반영한다.

문단제정근거5. (☞ 관련문단 14)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 수입원으로 징수기관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각 중앙관서와 회계·기금에 예산배정 된다. 각 중앙관서와 회계·기금은 국세수익 등을 재원으로

- (2)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을 국가 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5
실무해설 14

로 하여 예산배정을 받은 후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관서 결산의 관점에는 국세수익에 대해 징수기관의 수익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국세징수활동표를 작성하여 부과 및 징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14) 국세청 등이 징수한 국세수익을 국고금회계로 이전하는 경우 국세징수활동표의 '처분'항목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때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미수채권은 국고금회계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한 수익만을 국고금회계로 이전한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관점에서는 국세수익은 국가재정의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각 중앙관서의 경우와 같이 예산배정의 절차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운영표에 "국세수익"으로 표시한다.

III 이전수익의 회계처리

II 이전수익의 인식

- 15.** (이전수익의 인식기준) 이전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 16.**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은 고지할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5

17. (제재금수익) 일반적으로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변상금수익: 고지하는 때
- (2) 위약금수익: 고지하는 때
- (3) 가산금수익: 납부기한 종료 후 고지하는 때

☞ 관련문단 13, 26

☞ 관련부록 적용사례 9

(4) 벌금수익

- (가) 벌금 및 과료: 납부하는 때
- (나) 범칙금: 납부하는 때
- (다) 과태료: 고지하는 때, 다만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 (라) 과징금: 고지하는 때
- (마) 징계부가금: 고지하는 때
- (5) 몰수금및추징금수익: 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품이 처분된 때

☞ 관련부록 적용사례 10

18. (정부내전입금) 정부내전입금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고지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2)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은 실제 세수입이 수납되는 시점에 수납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6

문단제정근거6. (☞ 관련문단 18.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에서 모두 징수결의 됨에 따라 중복으로 계상된다. 중복 계상되는 세입실적을 세입결산서에는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 계상분에 대해 강제 조정을 통해 차감처리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세입에만 포함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특별세수입의 경우 국세청의 징수결의 및 징수 후 국고로 이전되므로 국세징수활동표에서 국세수익과 국고이전지출로 회계처리가 종료된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징수 결의, 지방자치단체 징수와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납 후 징수결의를 거쳐 국고로 이전되므로 일반적인 특별세수입과 상이한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수납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농특세이전지출(타회계이전)로 처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로 이전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특세이전수입(무상이전수입)과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여 국고금회계로 이관시키게 된다. 주세이전수입도 농특세이전수입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19.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을 제외한 자산수증이익은 청구권이 확정되는 자산 수취 시점에 다음의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1) 정부내자산수증: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무상관리전환 등으로 이관 받는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
- (2) 정부외자산수증: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공정가액
- (3) 정부외기부금: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

☞ 관련부록 적용사례 11~12

20.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실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확정된 시점이란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3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19)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2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할 때 인식한다.

21. (납입자본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가 「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납입자본의증감"에 반영한다.

22. (출연금) (1)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정부내전입금"으로 분류하고,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정부외기부금"으로 분류한다.

(2)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그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지출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7

(가)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 재원을 소진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정부내전입금"으로 처리한다.

- 1)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관련 기금)
- 2) 관리, 운영비 등에 충당
- 3)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충당

☞ 관련부록 적용사례 14

(나)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다음과 같이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하여 그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

관련규정

- 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단제정근거7. (☞ 관련문단 22) 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각 기금의 설치근거법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금이 수행하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된다. 각 기금은 보증, 융자, 보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출에 조성된 재원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재원이 소진될 수도 있으나, 원본을 유지할 수도 있다.

문단제정근거8. (☞ 관련문단 22. (2))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 는 각 기금의 업무 특성에 따른 재원의 유지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출연금은 기금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기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기금의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특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기금의 업무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재정적 지원을 일괄적으로 수익 또는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할 경우 기금의 성과가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금이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데 이를 모두 수익에 반영할 경우 재정운영결과에서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기금의 성과가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되는 조정항목인 "출연금의증가"로 처리한다.

- 1)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 2) 자산매입 (부실채권, 증권 등의 매입) 또는 융자금의 재원
- 3)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 4) 차입금과 이자 상환의 재원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8
적용사례 15

II 이전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3.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전수익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이전수익에서 차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6

24.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전수익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실무해설16. (☞ 관련문단 23~25) 이전수익의 수입금의 환급, 과오납금의 반환 및 징수결의착오정정 회계처리는 교환수익의 수입금의 환급, 과오납금의 반환 및 징수결의착오정정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이전수익에서 차감한다.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6

25. (징수결의착오정정) (1)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이전수익에서 차감한다.

(나)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6

II 이전수익에 대한 가산금

26. (이전수익에 대한 가산금) 이전수익에 대한 가산금은 문단17. (3)에 따라 "가산금수익"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9

II 이전수익의 표시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7. (이전수익의 표시) (1)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작성 시 이전수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한다.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에 각각 표시한다.

(2)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의 이전수익을 재무제표별로 통합하여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에 각각 표시한다.

(3)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의 이전수익을 통합하여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에 각각 표시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7

적용사례 16~17

관련규정

•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1. 3. 8.>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8.>

실무해설17. (☞ 관련문단 27)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을 상계하여 제거하고,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과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을 상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에 계상되어 있는 비교환수익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대체분개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III 경과조치

28.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회계처리 적용) 이 예규 문단23의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입금의 환급부터 적용한다.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적용사례1. (☞ 관련문단 8)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수익인식시점 차이

1. 배경정보

A부처는 B기업과 ООО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X1.7.1 ~ 20X2.6.30이며, 금액은 10,000,000원이다. 계약서상 A부처는 매 3개월 단위로 10월 1일 3,000,000원, 1월 1일 3,000,000원, 20X2년 3월 1일 2,000,000원, 6월 1일 2,000,000원을 4차에 걸쳐서 청구할 수 있다. 이 수익이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와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교환수익일 경우>
교환수익일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경과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즉, $10,000,000 \times 6/12(\text{해당월수}) = 5,000,000$ 원이 20X1년의 수익으로 인식되며, 20X2년의 수익은 $10,000,000 \times 6/12(\text{해당월수}) = 5,000,000$ 원이 된다.

<비교환수익일 경우>
비교환수익일 경우 계약에 의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인 10월 1일에 3,000,000원의 수익이 인식되어 20X1년에는 3,000,000원의 수익이 인식되며, 20X2년에는 7,000,000원이 인식된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9. (2))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ОО씨는 20X1년 5월 31일자로 기한이 마감되는 소득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회계처리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5,000,000 대) 소 득 세 수 익 5,000,000
(국세징수활동표) (국세징수활동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5,000,000

적용사례3. (☞ 관련문단 9. (2)) 원천징수, 중간예납과 연도말 법인세액 인식

1. 배경정보

A법인이 20X1년 7월 중간예납세액을 50 납부, 원천징수세액 10, 20X1년 연도말 현재 세무조정결과 20X1년의 총부담세액은 110 이었으나,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잔액인 50을 20X2년 1월 신고하였다.

2. 세액의 수익인식시점 및 금액

이러한 경우 각각의 세액의 수익인식시점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귀속시기	수익인식시점	금액
원천징수세액	20X1년	원천징수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10
중간예납세액	20X1년	자진신고하는 때(20X1년 7월)	50
연도말법인세액	20X2년	자진신고하는 때(20X2년 1월)	50

적용사례4. (☞ 관련문단 9. (2)) 국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의 회계처리

1. 수익인식시점이 납부시점보다 앞선 경우

- 신고 시 -
회계처리 없음

- 고지한 때 -
차) 미 수 국 세 **** 대) ○ ○ 세 수 익 ****
(국세징수활동표) (국세징수활동표)



- 납부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대) 미 수 국 세 ****

2. 수익인식시점이 납부시정보다 늦은 경우

- 신고납부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대) 선 수 국 세 수 익 ****

- 고지한 때 -

차) 선 수 국 세 수 익 **** 대) ○ ○ 세 수 익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적용사례5. (☞ 관련문단 9. (5)) 국세의 분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사업자는 20X2년 2월 15일 20X1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납부세액은 30,000,000로 그 중 50%인 15,000,000원을 20X2년 3월 15일에 납부, 잔여세액에 대하여 분납신청을 하였다. A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20X2년 5월 15일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

2. 회계처리

- 20X2년 2월 15일 신고 시 -

차) 미 수 국 세 30,000,000 대) 법 인 세 수 익 30,000,000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20X2년 3월 15일 납부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국 세 징 수 활 동 표) 15,000,000 대) 미 수 국 세 15,000,000

- 20X2년 3월 15일 분납신청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2년 5월 15일 분납세액 납부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5,000,000 대) 미 수 국 세 15,000,000
(국 세 징 수 활 동 표)

적용사례6. (☞ 관련문단 9. (5)) 국세의 연부연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씨는 20X2년 2월 15일 상속세 5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A씨는 법정 신고기한 내인 20X2년 3월 31일 3년간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세액의 1/4 인 12,5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승인하고 20x2년 5월 31일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였다. A씨는 연부연납에 의해 향후 3년간 매년 3월 31일 12,500,000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해당하는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0X2년 2월 15일 신고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2년 3월 31일 납부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2,500,000 대) 선 수 국 세 수 익 12,500,000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20X2년 3월 31일 연부연납 신청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2년 5월 31일 부과지 시 -

차) 선 수 국 세 수 익 12,500,000 대) 상 속 세 수 익 50,000,000
(국 세 징 수 활 동 표)
미 수 국 세^(*) 12,500,000
장 기 미 수 국 세^(*) 25,000,000

(*1) 20X2년 5월 31일 기준 1년 이내 납부하여야 할 국세			
(*2) 20X2년 5월 31일 기준 1년 후 납부세액			
- 20X2년 12월 31일 유동성대체 -			
회계처리 없음			
- 20X3년 3월 31일 연부연납세액 징수 시 -			
국 고 이 전 지 출	12,500,000	대) 미 수 국 세	12,500,000
차)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20X3년 12월 31일 유동성대체 -			
차) 미 수 국 세(*1)	12,500,000	대) 장기미수국세	12,500,000
(*1) 20X4년 3월 31일 연부연납세액으로 기말 현재 1년 이내 회수하여야 하므로 미수국세로 유동성대체함			
- 20X4년 3월 31일 연부연납세액 징수 시 -			
국 고 이 전 지 출	12,500,000	대) 미 수 국 세	12,500,000
차)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20X4년 12월 31일 유동성대체 -			
차) 미 수 국 세(*1)	12,500,000	대) 장기미수국세	12,500,000
(*1) 20X5년 3월 31일 연부연납세액으로 기말 현재 1년 이내 회수하여야 하므로 미수국세로 유동성대체함			
- 20X5년 3월 31일 연부연납세액 징수 시 -			
국 고 이 전 지 출	12,500,000	대) 미 수 국 세	12,500,000
차) (국 세 징 수 활 동 표)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0) 국세의 물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씨는 20X2년 2월 15일 상속세 1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A씨는 법정신고기한 내인 20X2년 3월 31일 70,000,000원의 세금은 3년에 걸쳐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보유하고 있는 건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연부연납세액 중 1/4인 17,500,000원을 20X2년 3월 31일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을 승인하고 20X2년 5월 31일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였다. A씨는 연부연납에 의해 향후 3년간 매년 3월 31일 17,500,000원씩 납부하여야 하며, 20X2년 5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물납하였다. 관할세무서는 20X2년 9월 30일 물납된 건물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였고, 기획재정부는 11월 30일 물납자산의 경매를 통하여 50,000,000원을 수취하여 30,000,000원의 미수국세를 회수하였다.			
2. 회계처리			
- 20X2년 3월 31일 납부 시(국세청) -			
국 고 이 전 지 출	17,500,000	대) 선 수 국 세 수 익	17,500,000
차) (국 세 징 수 활 동 표)			
- 20X2년 5월 31일 부과지 시(국세청) -			
선 수 국 세 수 익	17,500,000	대) 상 속 세 수 익	100,000,000
차) (국 세 징 수 활 동 표)			
미 수 국 세 / 단 기 (* 1) 17,500,000			
미 수 국 세 / 장 기 (* 2) 35,000,000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30,000,000			
(*1) 20X2년 5월 31일 기준 1년 이내 납부하여야 할 국세			
(*2) 20X2년 5월 31일 기준 1년 후 납부 세액			

- 20X2년 9월 30일 물납자산의 이관 시(국세청) -
차) 물 납 이 전 30,000,000 대)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30,000,000
- 20X2년 9월 30일 물납자산의 이관 시(기획재정부) -
차) 건 물 30,000,000 대) 정 부 내 자 산 수 증 30,000,000
- 20X2년 11월 30일 경매처분 시(기획재정부)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50,000,000 대) 건 물 30,000,000
일반유형 자산처분이익 20,000,000
- 20X2년 12월 31일 유동성대체 및 감가상각 -
회계처리 없음
- 20X3년 3월 31일 연부연납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7,500,000 대) 미 수 국 세 / 단 기 17,500,000
(국세징수활동표)
- 20X3년 12월 31일 유동성대체 -
차) 미 수 국 세 / 단 기 17,500,000 대) 미 수 국 세 / 장 기 17,500,000
- 20X4년 3월 31일 연부연납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7,500,000 대) 미 수 국 세 / 단 기 17,500,000
(국세징수활동표)
- 20X4년 12월 31일 유동성대체 -
차) 미 수 국 세 / 단 기 17,500,000 대) 미 수 국 세 / 장 기 17,500,000
- 20X5년 3월 31일 연부연납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7,500,000 대) 미 수 국 세 / 단 기 17,500,000
(국세징수활동표)

적용사례8. (☞ 관련문단 11) 국세환급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법인은 과오납한 법인세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2. 회계처리

- 국세환급금 지급결정 시 -

차) 국세수익-국세환급금 1,000,000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1,000,000
(국세징수활동표)

- 환급금 지급 시 -

차) 기 타 의 미 지 급 금 1,000,000 대) 국고이전지출-국세환급금 1,000,000
(국세징수활동표)

적용사례9. (☞ 관련문단 17. (3), 26) 가산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는 20X1년 9월 30일에 부과고지 방식에 의하여 9월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담금수익 10,000,000원을 징수결의 하였다. 이 때,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추가될 가산금 1,000,000원이 함께 표시되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다. 납부기한은 20X1년 10월 31일이었다. 납부기한 종료 후 가산결의 하였다.

2. 회계처리

실제로 납부기한 경과 후인 20X1년 11월 30일에 가산금과 함께 부담금수익이 납부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0X1년 9월 30일 부과고지 시 -

차) 미 수 부 담 금 수 익 10,000,000	대) 부 담 금 수 익 10,000,000
- 20X1년 10월 31일 납부기한 경과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11월 30일 수납 시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1,000,000	대) 가 산 금 수 익 1,000,000
미 수 부 담 금 수 익 10,000,000	

적용사례10. (☞ 관련문단 17. (5)) 물수금및추징금수익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는 20X1년도 11월말에 자기앞수표 1,000만원(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 물수품 1건 물수하여 물수물품은 500만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물수물품은 20X2년도 1월에 400만원에 공매처분 되었다.	
2. 회계처리	
- 물수시점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	대) 물수금및추징금수익 10,000,000
- 20X1년도말 - 회계처리는 없으며, 주석으로 물수물품 500만원 기재	
- 20X1년 물수물품 공매 시 -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4,000,000	대) 물수금및추징금수익 4,000,000

적용사례11. (☞ 관련문단 19. (1))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는 소유중인 건물을 BB부처로 무상관리전환 처리하였다. 건물의 장부가액은 6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2억원, 재평가이익은 1억원이다. 이에 대하여 AA부처는 해당 건물을 BB부처에 무상관리전환을 실시하였다.	
2. 회계처리	
<AA부처 - 무상관리전환하여 주는 부처>	
차)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0,000,000	대) 건 물 600,000,000
건 물 재 평 가 이 익 100,000,000	
정 부 내 자 산 기 부 300,000,000	
<BB부처 - 무상관리전환 받는 부처>	
차) 건 물(*) 600,000,000	대) 정 부 내 자 산 수 증 3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0,000,000
	건 물 재 평 가 이 익 100,000,000
(*) 관리전환받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총액으로 승계	

적용사례12. (☞ 관련문단 19. (2)) 정부외자산수증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는 BB공사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기부채납 시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억원으로 가정한다.	
2. 회계처리	
- 기부채납 시 -	
차) 건 물 100억원	대) 정 부 외 자 산 수 증 100억원

적용사례13. (※ 관련문단 20)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는 100,000,000원의 국내단기차입금 원금 및 10,000,000원의 이자에 대하여 채권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원금 80,000,000원과 이자비용 5,000,000으로 채무를 일부 면제받기로 20X1년 12월 1일 합의하였으며, 20X2년 4월 1일 지급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합의 시 -				
차) 국 내 차 입 금 / 단 기	100,000,000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85,000,000	
국 내 차입금 이자비용	10,000,000	채 무 면 제 이 익	25,000,000	
- 지급 시 -				
차) 기 타 의 미 지 급 금	85,000,000	대) 한국은행국고예금	85,000,000	

적용사례14. (※ 관련문단 22. (2). (가)) 출연금 회계처리(재정운영표의 정부내 전입금 항목)

1. 배경정보	
20X1년 4월 1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75백만원을 출연했다. 출연금은 일시에 수령되었다.	
2.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차) 기 금 전 출 금	75,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 75,000,000
(*) 국고금회계는 적용하지 않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5,000,000 대) 일 반 회 계 전 입 금 ^(*) 75,000,000
(*) 기타이전수익의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에 표시됨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채당금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채당금지급 및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용도로 지출되며, 임금채불예방 등 임금채권보장 사업과 기금의 운용, 관리를 목적으로 지출된다. 따라서 재원의 주된 용도가 관리, 운영비 충당으로 재정운영표의 '정부내전입금' 항목으로 처리한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하여 기업도산으로 미지급된 임금(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국가는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이를 회수함

적용사례15. (※ 관련문단 22. (2). (나)) 출연금 회계처리(순자산변동표의 기타 순자산의증감 항목)

1. 배경정보	
20X1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회계는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에 38억원을 출연했다. 출연금은 기금 한국은행수입계좌로 수령했다. (국고금회계는 적용하지 않음)	
2. 회계처리	
<국방부 일반회계>	
차) 기 금 전 출 금	3,8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800,000,000
<군인복지기금>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3,800,000,000 대) 출 연 금 의 증 가 ^(*) 3,800,000,000
(*) "기타순자산의 증감" 계정과목으로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반영하며 적립금 및 잉여금의 증가에 표시함	
※ 군인복지기금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며 복지시설 유지 관리, 군인에 대한 대부, 복지시설의 신설과 증설 등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사용되며 자본화취득을 목적으로 지출되므로 기금의 주된 용도를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로 보아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 항목으로 처리한다.	

적용사례16. (☞ 관련문단 27. (1)) 부담금 회계처리(재정운영표 부담금수의 항목)

1. 배경정보	
XX은행은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인 20X1년 4월 10일에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3에 따라 매년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의 0.1%인 30억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했다. 동 납부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법정부담금으로 20X1년 4월 10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20X1년 4월 10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0	대) 부담금수익 3,000,000,000 (재 정 운 영 표)

적용사례17. (☞ 관련문단 27. (1)) 부담금 회계처리(재정운영표 부담금수의 항목)

1. 배경정보	
XX은행은 20X1년 5월 결산 종료후 익월말인 20X1년 6월 30일에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3항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전월인 5월말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0.225%±차등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동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의 법정출연금으로 20X1년 4월 10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20X1년 4월 10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0,000	대) 부담금수익 1,500,000,000 (재 정 운 영 표)

12. 비용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377	부록 1. 실무해설	1-17	
● 적용범위	2	377	부록 2. 적용사례	1-10	
● 용어의 정의	3	378			
● 비용의 구분	4-14	378			
● 비용의 회계처리	15-21	389			
● 표시	22	397			
● 부칙		398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모든 비용에 적용한다.
 - (1)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 및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국고금 수납과 지출에 따른 국고이전지출, 세출예산지출액, 국고금회계전출금(「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3) 유·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4) 보험비용, 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용자보조비용 등 보험, 연금과 용자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였거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보험 회계처리지침」, 「연금 회계처리지침」, 「용자 회계처리지침」, 「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5)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오류 중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및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사항(전기오류수정손실)(「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 (2) "재원의 이전"이란 순자산의 감소효과를 발생하거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한다.
- (3) "이전비용"이란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 (4) "국가운영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III 비용의 구분

4. (비용의 구분) 비용은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된다.

- (1) 이전비용은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및 지방교부금 등으로 구분한다.
- (2) 국가운영비용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자산평가손실 등으로 구분한다.

5. (국고보조사업비) (1) "국고보조사업비"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 국고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자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 자치단체, 해외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연사업비) (1) "출연사업비"란 법령에 의해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공공기관, 민간 또는 해외에 지급한 출연금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2) 출연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사업출연비, 연구개발출연비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7. (지방교부금) "지방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8. (기타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이란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전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5) 국고보조사업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이전비용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공공기관	
			국고보조사업비/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비/민간	
			국고보조사업비/해외	

실무해설2. (☞ 관련문단 6) 출연사업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이전비용	출연사업비	일반사업출연비	일반사업출연비/공공기관
				일반사업출연비/민간
				일반사업출연비/해외
			연구개발출연비	연구개발출연비/공공기관
				연구개발출연비/민간
				연구개발출연비/해외

실무해설3. (☞ 관련문단 7) 지방교부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이전비용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규정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 4

- (1) 용자보조비용: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른 비용
- (2) 보전비: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3) 사회보장지원금: 보훈유공자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등 민간에 지급하는 지원금
- (4) 원가보상비: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등
- (5) 사립학교교용부담금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 (6) 건강보험재정부담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지원금
- (7) 구호및교정비: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
- (8) 국제부담금: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 (9) 이차보전비용: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
- (10) 정부외자산기부: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현금 외의 자산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비용
- (11)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환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 (12) 정부내전출금: 국가회계실체에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실무해설4. (☞ **관련문단 8**) 보전비는 손실보상비, 재해복구지원비, 포상금, 배상비, 기타보전비로 구분된다. 이때 손실보상비는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와 현업관서에서 적법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를 포함한다.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에 대한 보험급여
- [본조신설 2023. 6. 13.]
 [법률 제19445호(2023. 6. 13.)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실무해설5. (☞ **관련문단 8**) 구호및교정비는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을 말한다. 이 때, 주·부식비는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정비, 주·부식 취사용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이고, 피복비는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의 구입비,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를 포함한다.

순자산의 감소. 정부내전출금은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국가회계 실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나)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다)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라) 기금전출금: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금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13) 기타의기타이전비용: (1) 내지 (12)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이전비용

☞ 관련부록 실무해설 4~6

실무해설6. (☞ 관련문단 8, 18) 기타이전비용 상세 계정과목

(1) 재정운영표 기타이전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용자보조비용	
			보전비	손실보상비
				재해복구지원비
				포상금
				배상비
				기타보전비
			사회보장지원금	보훈유공자지원금
				장학금및학자금
				기타사회보장지원금
			원가보상비	공공기관원가보상비
				기타민간원가보상비
			사립학교고용 부담금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건강보험재정부담비	
			구호및교정비	
			국제부담금	
			이차보전비용	
			정부외자산기부	
			정부내자산기부	
			정부내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기타의기타이전비용	

9.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재화및용역제공원가"란 재화판매로 인하여 판매·소모된 재고자산의 원가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 재화판매원가와 용역제공원가를 말한다.
- (1) 재화판매원가: 재화판매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재고자산의 원가
- (2) 용역제공원가: 용역제공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용역제공의 원가
-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10. (인건비) "인건비"란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하며,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 (1) 급여: 정액급여, 상여금, 수당 등
- (2)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외 직원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급여. 퇴직급여의 일반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2) 순자산변동표 표시 기타이전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재원의 이전	기타이전비용	정부내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가부	
			기타의기타이전비용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재화및용역 제공원가	재화판매원가	
			용역제공원가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0) 인건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인건비	급여	정액급여
				상여금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보수
				연가보상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 퇴직급여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 * - (전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 - 당기 중 실제 퇴직금 지급액)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은 당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을 말하며, 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전직원(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8~10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0)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액급여

(가)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기타직보수)

(나) 법관 및 검사의 봉급

(2) 상여금: 성과상여금

(3) 수당

(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나) 정액수당: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다) 기타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등

(4) 연가보상비

(5) 기타직보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로 다음을 포함

(가)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

(나) 사법연수원생 보수

(다) 시보공무원이 될 자 보수

(라) 청원경찰 보수

(마) 청원산림보호직 보수

(바)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보수

(사)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보수

(아) 공익법무관 보수

(자)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보수

(차) 외교관후보자 보수

(카) 수습직원 보수

(타) 대체역 보수

11. (이자비용) "이자비용"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공채, 국내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국채이자비용, 공채이자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 (파) 각종 위원회 상근직
- (6) 상용임금:
 - (가) 무기계약직 및 상사·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
 - (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라)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원에 대한 보수
- (7)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
- (8) 기타보수
 - (가) 교수보직경비: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
 - (나) 월정액여비: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 (다) 월정직책급: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인식에 따른 연금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연금비용(공무원·연금)으로 표시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0**)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인식하며, 자세한 설명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참조한다.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11**) 이자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이자비용	국채이자비용	
			공채이자비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이자비용	차입금이자비용	국내차입금이자비용
				해외차입금이자비용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재정증권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청약저축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BTL임대료이자비용
				기타의기타이자비용

12. (운영비) "운영비"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12](#)) 운영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제세
				수도광열비
				지급보험료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지급임차료	안보비
				토지임차료
				건물임차료
				운용리스료

	비용	국가운영비용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지급임차료
					유류비
				교육훈련비	내부교육비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피복비
					급식비
				고용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국민연금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13. (자산평가손실) "자산평가손실"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 및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비용	국가운영비용	자산평가손실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재평가손실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외화평가손실	
			기타자산평가손실	

14.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이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국가운영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자산처분손실: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 금액
- (2) 수선유지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구분
- (3) 자산폐기손실: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전액매실, 전액손망실,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
- (4) 대손상각비: 미수채권, 대여금 등 자산의 전기 대손추산액에서 당기에 계산된 대손추산액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계정
- (5) 감액손실: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 (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7) 외주용역비: 국가사업의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비용과 전산 소프트웨어개발 소요경비, 전력화사업 연구위탁비, 청사, 시설 등의 유지관리 용역비 및 기타용역비
- (8) 기타평가손실: 외화부채 및 기타부채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
- (9) 기타비용: (1)~(8)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국가운영비용

☞ 관련부록 실무해설 14

적용사례1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14) 기타국가운영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자산처분손실	투자증권처분손실 KIC위탁자산처분손실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 기타자산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건물수선유지비 건축물수선유지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전비품수선유지비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국도수선유지비 고속국도수선유지비 철도수선유지비 항만수선유지비 댐수선유지비 공항수선유지비 하천수선유지비 상수도수선유지비 국가어항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자산폐기손실
				전대차관대여금대손상각비 일반용자금대손상각비 구상채권대손상각비 미수재화및용역수익대손상각비 미수제재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부담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연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이자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증수익대손상각비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기타수익대손상각비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 비용	대손상각비	기타의미수금대손상각비
			감액손실	금융상품감액손실
				투자증권감액손실
				정부출자금감액손실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
				기타자산감액손실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용역비
				정책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외주용역비	관리용역비
				위탁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기타용역비
			기타평가손실	외화부채평가손실
				기타부채평가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과오납금반환금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기타비용	소송충당부채전입
				기타충당부채전입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
				외환차손
				채무상환손실
				파생상품거래손실
				국채물가연동손실
				유산자산취득비
				관리토지취득비
				법인세비용
				재해손실
				신탁사업손실
				잡손실

III 비용의 회계처리

1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5~16
적용사례 2~6

-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5
적용사례 2

적용사례1. (☞ 관련문단 14) 정부외자산기부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가는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장부가액 100억(취득가액: 40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300억원)인 건물을 민간에 양여하였다. 이 때 양여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양여시점>

차) 정 부 외 자 산 기 부	100억	대) 건 물	400억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00억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15) 일반적인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인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

- (1)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 (2)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 이는 비용의 인식이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효익의 사용'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1)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재화판매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재화판매원가"를 들 수 있다.
 - (2)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인건비" 등을 들 수 있다.

- (3)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일반 유형자산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들 수 있다.

실무해설16. (☞ [관련문단 15. \(1\)](#))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원을 이전하는 비교환거래의 특성 상 지출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절차나 사건이 필요하다. 만약 국가회계실체에게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면 국가회계실체의 미래행위와 지출의무가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아직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국가회계실체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

- (1) 국가회계실체가 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함
- (2) 국가회계실체의 거래 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함

국가회계실체가 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출 여부를 번복하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이 국가회계실체의 의무이행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15](#)) 비용 회계처리

1. 회계처리

- 1) 대금 지급시점과 비용 발생시점이 동일한 경우
- 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10월 31일에 행정목적으로 운송운역을 제공받고 동시에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국고금회계는 생략한다.

- 20X1년 10월 31일 지출 시 -

차) 지 급 수 수 료 3,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

2) 대금 지급시점이 비용 발생시점 이후인 경우

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10월 31일에 행정목적으로 공고 및 광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계약에 의하여 20X1년 11월 15일에 해당 금액인 3,000,000원을 지출 하였다. 국고금회계는 생략한다.

- 20X1년 10월 31일 비용 발생 시 -

차) 광 고 선 전 비 3,000,000 대) 미 지 급 금 3,000,000

- 20X1년 11월 15일 지출 시 -

차) 미 지 급 금 3,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

3) 대금 지급시점이 비용 발생시점 이전인 경우

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10월 31일에 행정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20X1년 7월 1일에 총 계약금액의 30%인 3,000,000원을 지급 하고 용역제공 완료일인 20X1년 10월 31일에 잔금 70%인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국고금회계는 생략한다.

- 20X1년 7월 1일 선급금 지급 시 -

차) 선 급 금 3,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

- 20X1년 10월 31일 비용 발생 시 -

차) 일 반 연 구 용 역 비 10,000,000 대) 선 급 금 3,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7,000,000

4)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A부처 OO기금은 20X1년 12월 31일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10,000,000원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0X1년 12월 31일 감가상각 시 -

차) 건 물 감 가 상 각 비 10,000,000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적용사례3. (※ 관련문단 15. (1)) 보조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 일반회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AA가 20X1년 1월 1일에 신청한 보조금 3,000,000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20X1년 2월 1일에 전액 교부결정하였다. (주)AA는 보조금 신청 당시 해당 보조금의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2. 회계처리

- 20X1년 1월 1일 교부신청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2월 1일 교부결정 시 -
차) 국고보조사업비/민간 3,000,000 대) 미 지 급 금 3,000,000
-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수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심의한 뒤에 이루어지는 지출승인 과정이며, 법령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의 경우 교부결정 시 지출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5. (1)) 배상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 일반회계는 AA씨가 20X1년 5월 1일에 신청한 배상금 5,000,000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20X1년 7월 31일에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내역을 AA씨에게 송달하였다. AA씨는 20X1년 8월 1일에 해당 결정에 대해 동의하고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회계처리

- 20X1년 5월 1일 지급신청 시 -
회계처리 없음

- 20X1년 7월 31일 지급결정 시 -

회계처리 없음

※ 배상금 등 보전금의 지급결정은 수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심의한 뒤에 이루어지나 해당 결정내역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 및 지급청구 이전에는 지급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하기 어려운 지출승인 과정으로 볼 수 없음

-20X1년 8월 1일 지급청구 시 -

차) 배	상	비	5,000,000	대) 미	지	급	금	5,000,000

적용사례5. (☞ 관련문단 15, (1)) 출연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는 연구기반구축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20X1년 1월 1일에 주관기관인 (주)AA와 3,000,000원 규모의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X1년 1월 31일에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2. 회계처리

- 20X1년 1월 1일 협약 체결 시 -

차) 일반사업출연비/민간	3,000,000	대) 미	지	급	금	3,000,000

※ 출연금 협약체결은 국가회계실체의 지출승인 과정에 해당하며, 출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평가를 통해 수급 조건이 충족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협약체결 시점에서 지출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음

- 20X1년 1월 31일 출연금 지급 시 -

차) 미	지	급	금	3,0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0

16. (재화판매원가의 산출)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17. (급여 등의 비용인식) 급여 등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 처리 한다. 즉,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경과에 따라 급여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한다.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5, (1)) 부담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방부 일반회계는 20X1년 12월 1일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르면 20X2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말에 각각 1,000,000원, 2,000,000원의 방위비를 미국 측에 지급하여야 한다. (협정과 관련된 별도의 수급조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회계처리

- 20X1년 12월 1일 협약 체결 시 -

차) 국 제 부 담 금 3,000,000 대) 미 지 금 금 3,000,000

※ 국가회계실체가 협정체결을 통해 지출을 승인하였으며, 협정상 별도의 수급조건이 없으므로 협정체결 시점에서 지출의무가 확정됨

- 20X2년 12월 31일 1차연도 분 지급 시 -

차) 미 지 금 금 1,000,000 대) 국 고 수 입 1,000,000

- 20X3년 12월 31일 2차연도 분 지급 시 -

차) 미 지 금 금 2,000,000 대) 국 고 수 입 2,000,000

18. (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적용사례 7

19. (기금에 대한 출연금) 국가회계실체가 기금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기타이전비용" 계정과목으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이전'에 반영한다.
 - (2)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다른 기금인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정부내전출금"으로 처리한다.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8) 정부내자산기부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부처는 소유중인 건물을 BB부처로 무상관리전환 처리하였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2억원, 재평가이익은 1억원이다.

2. 회계처리

<AA부처 - 무상관리전환하여 주는 부처>

차)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대) 건	물	600,000,000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000,000			
정 부 내 자 산 기 부	300,000,000			

<BB부처 - 무상관리전환 받는 부처>

차) 건	물 ^(*1)	600,000,000	대) 정 부 내 자 산 수 증	3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000,000

(*1) 관리전환받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총액으로 승계

20. (당기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8

21.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 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 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7
적용사례 9~10

적용사례8. (☞ 관련문단 20) 당기 지출금의 반납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3월 1일에 지출한 인쇄비 3,000,000원 중 300,000원을 같은 해 10월 31일에 반납받았다.									
2. 회계처리									
- 20X1년 3월 1일 인쇄비 지출 시 -									
차) 인	쇄	비	3,0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0	
- 20X1년 10월 31일 인쇄비 반납 시 -									
차) 국	고	수	입	300,000	대) 인	쇄	비	300,000	

실무해설17. (☞ 관련문단 21) 비용 지출금의 반납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과오지급금회수금	
			지출금반납금	

적용사례9. (☞ 관련문단 21)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1)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3월 1일에 지출한 인쇄비 3,000,000원 중 과오로 초과지급한 300,000원을 20X2년 10월 31일에 반납 받았다.									
2. 회계처리									
- 20X1년 3월 1일 인쇄비 지출 시 -									
차) 인	쇄	비	3,0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0	
- 20X2년 10월 31일 인쇄비 반납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300,000	대) 과 오 지 급 금 회 수 금				300,000	

III 표시

22. (비용의 표시) (1)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는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에서는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3) (2)에도 불구하고 이전비용 중 정부내기부금, 정부내전출금 및 기타의기타이전비용은 재원의 이전으로 보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하며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기금은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한다.

적용사례10. (※ 관련문단 21)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2)

1. 배경정보

AA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3월 1일에 보조사업자 (주)BB에 대해 보조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20X2년 3월 31일에 해당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에 따라 300,000원을 반납받았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회계처리

- 20X1년 3월 1일 보조금 교부 시 -

차) 국고보조사업비/민간 3,0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0

- 20X2년 3월 31일 보조금 반납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300,000 대) 지 출 금 반 납 금 300,000

III 부칙

-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3.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40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35-39	431
● 적용범위	2	401	● 공시	40-45	434
● 용어의 정의	3	401	● 부칙		442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4-34	403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22	
○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5	403	부록 2. 실무해설	1-13	
○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6	410	부록 3. 적용사례	1-5	
○ 보험수리적 가정의 요소 및 기본원칙 ...	7-16	412			
○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17-24	417			
● 1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18-19	418			
● 2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	20-21	418			
● 3단계: 연금충당부채 산정	22-24	419			
○ 연금비용의 구성 및 인식	25-30	420			
○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31-33	425			
○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	34	430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44조, 제55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금사업"이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퇴직,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연금가입자"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에 가입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와 「군인연금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이하 "군인"이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국민연금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연금수급자와 연금미수급자를 포함한다.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2) 이 예규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4대 연금이며, 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 연금지급의무와 관련된 충당부채 인식여부를 달리 하였다.

관 련 규 정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군인연금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3) "연금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4) "연금미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5) "연금기금"이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회계실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말한다.
- (6)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 (7)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8) "보험수리적 가정"이란 할인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퇴직률, 승진율, 사망률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
- (9) "퇴직수당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 (10) "퇴직수당충당부채"란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2023. 3. 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군인연금법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부담금·보전금·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III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II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1)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의 급여 중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을 추가로 포함한다.

공무원연금 제28조(급여)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군인연금 제7조(급여의 종류)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1. 퇴직급여		1. 퇴직급여	
(1) 퇴직연금	○	(1) 퇴직연금	○
(2) 퇴직연금일시금	○	(2) 퇴직연금일시금	○
(3)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3)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4) 퇴직일시금	○	(4) 퇴직일시금	○
2. 퇴직유족급여		2. 퇴직유족급여	
(1) 퇴직유족연금	○	(1) 퇴직유족연금	○
(2)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2)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3)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3)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4)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4)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5) 퇴직유족일시금	○	(5) 퇴직유족일시금	○
3. 비공무상 장해급여		3. 재해보상적·부조적 급여*	
(1) 비공무상 장해연금	X	(1) 상이연금*	○
(2)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X	(2) 상이유족연금*	○
4. 퇴직수당	X	4. 퇴직수당	X

*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급여)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4) 연금제도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크게 적립 방식(Funded Scheme)과 부과방식(Unfunded Scheme, Pay-as-you-go Scheme이라고도 함)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인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원조달방식은 고려되지 않으며, 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Scheme)인지 아니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Scheme)인지의 여부만 고려된다.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4) 확정급여형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연금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중요 개념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금지급 충당 목적 자산의 투자운용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금 규모가 변동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연금지급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한다.

(2)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상 급여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계급여(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도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포함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4
실무해설 1, 3

관련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 가. 퇴직유족연금
 -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 비공무상 장애급여
 - 가. 비공무상 장애연금
 - 나.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 퇴직수당
- 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퇴직급여
 - 가. 퇴역연금
 - 나. 퇴역연금일시금
 -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 가. 퇴역유족연금
 -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수당
-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무상요양비
 - 장애급여
 -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 나. 장애보상금

5.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및 수당)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요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의 공무상요양비,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은 재해보상적 급여 또는 부조적 급여 성격으로 보아 이 예규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및 장해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의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공무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와는 별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장해연금

3. 재해유족급여
 - 가. 상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연금
 -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
 - 1) 군인사망조위금
 - 2) 가족사망조위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실무해설1. (☞ 관련문단 4~5, 17, 34)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부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군인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공무원퇴직수당충당부채	
			군인퇴직수당충당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연금미지급금/단기
				연금미지급금/장기
				퇴직수당미지급금/단기
				퇴직수당미지급금/장기

수급자가 사망한 때 받게 되는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의 비공무상 장애급여도 재해보상적 급여 성격으로 판단하여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3) 「공무원연금법」 제28조의 퇴직수당 및 「군인연금법」 제7조의 퇴직수당은 재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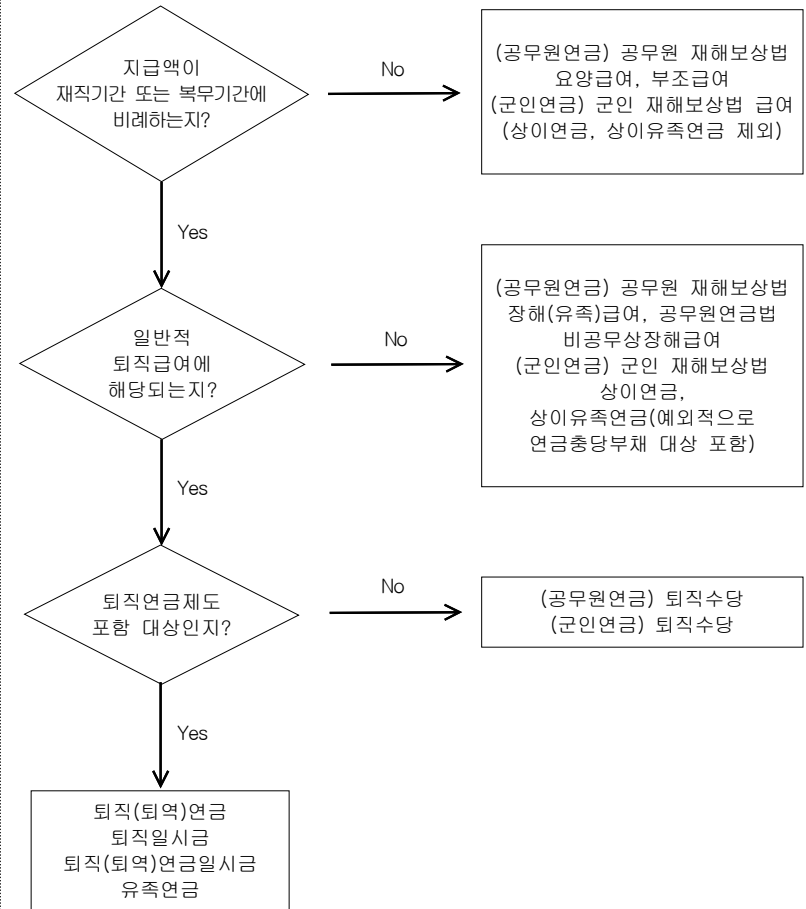
☞ 관련문단 3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11
실무해설 1

관 련 규 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급여
 -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 나. 심리상담비
 - 3. 장애급여
 - 가. 장애연금
 - 나. 장애일시금
 - 4. 간병급여
 - 5. 재해유족급여
 - 가. 장애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6.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4~5)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은 다양한 유형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급여가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별표에서는 관련 연금법에 규정된 각 급여 중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을 문단제정근거5부터 10까지에 걸쳐 설명하였다.

<별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각 급여의 연금충당부채 포함 여부 결정은 다음과 같다.



문단제정근거5. (☞ 관련문단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제2절의 요양급여, 제7절의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및 이와 성격이 같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제2절의 공무상요양비, 제4절의 장애보상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9조의 사망보상금, 제6절의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후불 성격 임금이 아니므로 연금충당부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단제정근거6. (☞ 관련문단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제4절의 장해급여와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4절의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상태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제3절의 상이연금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군인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의 상이유족연금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즉, 장해급여, 비공무상장해급여와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은 급여 발생 사유가 장애의 발생이므로 퇴직을 급여 발생 사유로 하는 퇴직연금이나 퇴역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경우 장해급여는 퇴직연금과 구분된 별도 계정에서 지급되고 있어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문단제정근거7. (☞ 관련문단 5, 34)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5절의 퇴직수당 및 「군인연금법」 제3장 제4절의 퇴직수당은 공무원 또는 군인의 퇴직을 원인으로 하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후불 성격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은 각각의 연금제도와 재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과 별도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수당은 연금충당부채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문단제정근거8. (☞ 관련문단 5) 연금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된다. 퇴직일시금도 후불임금 성격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금이 아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은 그 속성상 퇴직연금(퇴역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측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연금(퇴역연금)과 다른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문단제정근거9. (☞ 관련문단 5)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군인 퇴역연금의 수급권을 얻은 경우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금이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퇴역연금)의 수급권 획득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퇴역연금)과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문단제정근거10. (☞ 관련문단 5)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군인 퇴역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 본인의 사망후에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수급권이 이전될 수 있다. 결국 수급권자 본인의 수급권 상속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문단제정근거11. (☞ 관련문단 5)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의 근로자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퇴역)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인이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연금지급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이 예규에서 규정하였다.

Ⅱ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6.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은 급여/근무연수 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ost Method)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 (1) 예측단위적립방식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근무기간 혹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의 보수상승과 미래 재직기간을 고려한 예측급여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과거와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 (3) 연금비용인 당기근무원가의 경우 앞서 산정한 연금충당부채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연금비용을 구성하는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정방법은 '연금비용의 구성 및 인식(문단25~30)'을 참조하도록 한다.

☞ 관련문단 25~30

- (4) 다만, 기간귀속을 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장의 재직기간 및 「군인연금법」 제2장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따른 기간,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관련문단 26, 34

관련부록 적용사례 1

관련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월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생략)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 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공무원연금법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군인연금법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적용사례1. (☞ 관련문단 6. (4), 20. (2))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비율에 대한 사례

1. 가정

전체 추정근무기간 5년 중 미래 근무기간은 2년이고 이전 근무기간은 3년이다.
매년 연금지급률이 미래 근무기간이 1%이고 이전 근무기간이 2%일 때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감안 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한 연금총당부채 귀속비율은?

2. 계산방법 및 결과

방법1)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귀속비율= $3/(3+2)=3/5=60\%$
방법2)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감안시 귀속비율= $3/(3+1)=3/4=75\%$

연금지급률을 감안한다면, 미래 근무기간 2년에 연금지급률이 1%(과거 근무기간에 비해 연금지급률이 50% 감소)이므로 실제 귀속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과거근무기간 3년과 연금지급률을 감안한 미래근무기간1년을 더하여 귀속비율을 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한 연금총당부채 귀속비율은 75%이다.(방법2)

Ⅱ 보험수리적 가정의 요소 및 기본원칙

7. (연금총당부채의 측정원칙) (1) 연금총당부채는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2) (1)에 따른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험수리적 추정치 사용
 - (나) 신뢰성 있는 경험치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 추세 고려
 - (다) 보험수리적 가정들 상호간에 일관성 유지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금기금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금기금에 공통으로 적용할 할인율 등 재무적 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금기금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시한 할인율 이외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그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문단 34

8. (보험수리적 가정의 기본원칙)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적의 가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보험수리적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않을 때에는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관련문단 34

9. (보험수리적 가정의 구성요소)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공무원연금 인구통계적 가정
 - (가) 퇴직률
 - (나)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사망률
 - (다) 각종 연금선택률(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조기연금선택률 등)
 - (라) 유족연금승계율
 - (마) 승진을 등

(2) 군인연금 인구통계적 가정

(가) 전역률

(나) 연금(퇴역/상이/유족)수급자와 현직 군인의 사망률

(다) 각종 연금선택률(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선택률,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선택률, 퇴역연금 등)

(라) 각종 유족전환율(일반사망/순직 전역자, 퇴역연금 수급 중 사망자, 유족연금 수급 중 사망자 등)

(마) 진급률

(3) 재무적 가정

(가) 할인율

(나) 임금상승률

(다) 물가상승률

☞ 관련문단 34

- 10.** (보험계리인의 참여)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적격성 있는 보험계리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는 등의 형태로 보험계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회계연도 종료 전에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회계연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할인율의 변동 등)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 관련문단 34

- 11.** (인구통계적 가정) 인구통계적 가정은 연금사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행태 변수들에 대한 최적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각 연금사업의 과거 경험률 통계자료에 기초하되 예상되는 장래 추세를 더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1) 경험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되 과거 위험수준의 변화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험통계의 변화, 연금사업 전체의 변화 또는 국민 일반통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사망률은 각 연금사업가입자와 그 유족의 고유한 사망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3) 승진율 및 진급률은 공무원 및 군인의 고유한 승진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4) 퇴직률 및 전역률은 공무원 및 군인의 고유한 퇴직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관련문단 34

12. (할인율) (1)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의 선택은 이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사업간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

- (2) 할인율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위험 및 연금기금 고유의 신용위험은 반영하지는 않는다.

☞ 관련문단 17. (5)

- (3) 할인율에는 연금급여의 예상지급시기와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고,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없는 경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예상지

실무해설2. (☞ 관련문단 12. (3)) 보간법: x축-y축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를 일직선으로 이은 후에 두 점 사이의 찾는 값이 그 선상에 있다고 보는 방법

급시기까지 보간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을 할인율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4) 다만, 연금급여의 예상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만기를 갖는 채권시장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연금의 예상지급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감안한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할인율은 연금사업 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할인율과 충분히 호환을 이루어야 한다.

☞ 관련문단 34

13. (할인율을 제외한 재무적 가정) 할인율을 제외한 재무적 가정은 연금이 지급될 기간에 대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하여야 하며, 특히 물가상승률과는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서로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과 재무적 가정 요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기간의 특정 물가상승률에 좌우되는 모든 가정들은 서로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야 한다.

☞ 관련문단 34

14. (물가상승률의 추정) 물가상승률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 (1) 연금기금이 운영하는 연금사업간 적용값과 일치해야 하며,
- (2) 재정상태표일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추세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문단 34

15. (임금상승률의 추정) 임금상승률의 경우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하며 연금기금이 운영하는 연금

사업 내 적용값과 호환을 이루어야 한다.

☞ 관련문단 34

16. (재무적 가정 적용방식) 할인율을 포함한 모든 재무적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플레이션효과만큼 조정된 실질기준에 의한 재무적 가정이 명목기준보다 신뢰성이 있을 경우 실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관련문단 34

Ⅱ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17.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사항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가)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 (나) 연금미수급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 (2) (1). (나)의 연금추정지급액은 연금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 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3) (1). (나)의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은 연금가입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4) (3)의 전체추정근무기간이란 연금가입자가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2)의 장래 추정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 (5) (1)의 현재가치는 문단12. (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관련문단 12. (2)

관련부록 실무해설 1

적용사례 5

| 1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18.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또는 그룹별 예상퇴직시점과 장래 추정보수를 반영하여 관련 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산식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예상 퇴직시점까지 근무하여도 퇴직(퇴역)연금 수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각종 연금선택율을 반영하여 일시금급여와 연금급여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연금급여를 예상퇴직시점으로 할인하며, 일시금급여의 연금추정지급액도 예상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5

19. (연금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개인별 또는 그룹별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연금급여를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5

| 2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20.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상퇴직시점별로 산출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해 근무기간비율 또는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 (2) (1)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이란 전체추정근무기간과 이미 근무한 기간(관련 연금법에 따른 소급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른 매년 연금

지급률의 수준,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에 적용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관련문단 34

관련부록 적용사례 1, 5

21. (연금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귀속이 불필요하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5

| 3단계: 연금충당부채 산정

22.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와 동 연금사업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5

23.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을 과거 근무기간비율 혹은 과거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로 배분한 값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계산한다. 이 때 연금충당부채를 일시금급여와 연금급여로 구분하고 연금급여를 다시 퇴직급여, 유족급여, 연계급여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관련문단 34

관련부록 적용사례 5

24.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5

II 연금비용의 구성 및 인식

25. (연금비용의 구성) (1)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2) (1)에 따른 연금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당기근무원가: 회계연도 중 연금가입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나) 이자원가: 직전 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다) 과거근무원가: 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증감액

(라)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이하 "보험수리적 손익"이라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text{당기연금비용} = \text{당기근무원가} + \text{이자원가} \pm \text{과거근무원가}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

☞ 관련문단 6. (3), 3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2
실무해설 3
적용사례 5

실무해설3. (☞ 관련문단 4, 25)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 금액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 금액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은 회계기간 동안 인식한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및 보험수리적 손익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

연금급여 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중 문단4에서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으로 포함한 급여(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이 되는 연계연금급여 포함)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의 급여 중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에 대해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말한다.

$$\begin{aligned} \cdot \text{당기 연금비용} &= \text{기말 연금충당부채} - \text{기초 연금충당부채} + \text{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 \cdot \text{당기 연금비용} &= \text{당기근무원가} + \text{이자원가} \pm \text{과거근무원가}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 \end{aligned}$$

문단제정근거12. (☞ 관련문단 25) 연금비용은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및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구성된다.

26. (당기근무원가의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개인별 혹은 그룹별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일 현재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간귀속을 할 때 연금충당부채의 기간귀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3장의 재직기간 및 「군인연금법」 제2장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따른 기간,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관련문단 6, (3)~(4), 3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3
 적용사례 5

27. (이자원가의 산정) 이자원가는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용되었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관련문단 6, (3), 3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4
 적용사례 5

28. (과거근무원가의 산정)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연금법 개정에 따라 과거근무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 때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인식 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인식하는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연금충당부채에서 포함하지 않으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관련문단 6, (3), 3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5
 적용사례 5

문단제정근거13. (☞ 관련문단 26) 당기근무원가는 공무원의 재직 또는 군인의 복무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분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재정운영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제정근거14. (☞ 관련문단 27) 이자원가는 기간경과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연금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부분에 해당되므로 당기근무원가와 같이 재정운영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제정근거15. (☞ 관련문단 28) 과거근무원가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과거기간에 대응되는 연금지급액에 변동하여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감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변동시키는 것이므로 재정운영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9.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정) (1) 보험수리적 손익은 연금충당부채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정과 실제의 차이(예: 공무원 및 군인의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실적값이 가정과 다른 경우)
- (나)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예: 할인율, 공무원 및 군인의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이 수정되는 경우)
- (2) 보험수리적 손익은 아래 산식과 같이 연금충당부채 변동액에서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를 가감하여 산출한다.

보험수리적 손익

= 기말 연금충당부채 - 기초 연금충당부채 +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과거근무원가

☞ 관련문단 6, (3), 34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6
실무해설 4
적용사례 2, 5

문단제정근거16. (☞ 관련문단 29) 보험수리적 손익은 연금충당부채의 산정에 필요한 가정과 실제치의 차이 또는 가정변화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액이다.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보다는 연금충당부채 인식의 기술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순자산변동표에 적립금및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29) 보험수리적 손익의 회계처리 사례

1. 배경정보			
각 회계연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및 연금비용의 산출사례를 위하여 아래 ①~⑥단계에 대한 산출은 종료되었다고 가정			
	20X1	20X2	20X3
① 기초 연금충당부채	1,000	1,141	1,197
③ 이자원가	100	103	96
④ 당기근무원가	130	140	150
⑤ 과거근무원가	-	80	-
⑥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150)	(180)	(190)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61	(87)	42
② 기말 연금충당부채	1,141	1,197	1,295

2. 회계처리

* 20x1 년도 연금비용 및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출과정

① 연금비용:
기말 연금충당부채-기초 연금충당부채+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 1,141-1,000+150=291

② 보험수리적 손익:

연금비용-(이자원가+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291-(100+130+0)=61

③ 회계처리

차) 연 금 비 용 (이 자 원 가)	100	대) 연 금 총 당 부 채	100
차) 연 금 비 용 (당 기 근 무 원 가)	130	대) 연 금 총 당 부 채	130
차) 연 금 비 용 (보험수리적 손실)	61	대) 연 금 총 당 부 채	61

* 20x2 년도 연금비용 및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출과정

① 연금비용:

기말 연금총당부채-기초 연금총당부채+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 1,197-1,141+180=236

② 보험수리적 손익:

연금비용-(이자원가+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236-(103+140+80)=△87

③ 회계처리

차) 연 금 비 용 (이 자 원 가)	103	대) 연 금 총 당 부 채	103
차) 연 금 비 용 (당 기 근 무 원 가)	140	대) 연 금 총 당 부 채	140
차) 연 금 비 용 (과 거 근 무 원 가)	80	대) 연 금 총 당 부 채	80
차) 연 금 총 당 부 채	87	대) 연 금 비 용 (보험수리적 이익)	87

* 20x3 년도 연금비용 및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출과정

① 연금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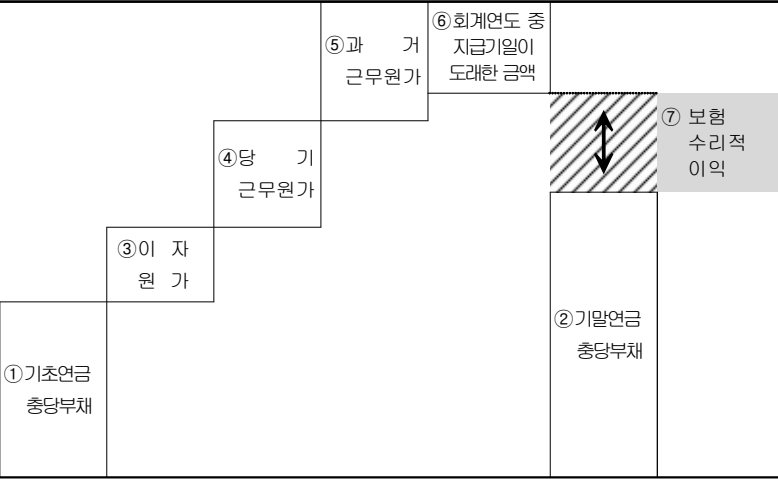
기말 연금총당부채-기초 연금총당부채+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 1,295-1,197+190=288

② 보험수리적 손익:
연금비용-(이자원가+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288-(96+150+0)=42

③ 회계처리

차) 연금비용 (이자원가)	96	대) 연금총당부채	96
차) 연금비용 (당기근무원가)	150	대) 연금총당부채	150
차) 연금비용 (보험수리적 손실)	42	대) 연금총당부채	42

실무해설4. (☞ 관련문단 29) 보험수리적 이익 산출사례



30. (연금비용의 인식)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국가운영비용'으로 인식하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또한 보험수리적 손익은 순자산변동표에 적립금및잉여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6. (3), 34
 관련부록 실무해설 5
 적용사례 5

실무해설5. (☞ 관련문단 30)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 비용	연금비용 (공무원·군인)	공무원연금비용	
			군인연금비용	
			퇴직수당비용	공무원퇴직수당비용 군인퇴직수당비용
			기타연금비용	공무원기타연금비용 군인기타연금비용
순자산 변동	조정항목	보험수리적 손익	연금 보험수리적손익	공무원연금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연금보험수리적손실
				군인연금보험수리적이익 군인연금보험수리적손실
			퇴직수당 보험수리적손익	공무원퇴직수당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실
				군인퇴직수당보험수리적이익 군인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실

Ⅱ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31. (연금수익의 구성) (1) 연금수익은 연금기금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1)에 따른 연금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고용주부담금: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나) 피고용자기여금: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다)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32. (연금수익의 인식) (1) 연금은 매달 부과고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부과고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 수익으로 자산 계상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 발생 등에 따라 부과고지시에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 (2)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기여금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국가운영수익'으로 인식하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보전금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이전수익',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실무해설6. (☞ 관련문단 32, 37, 38)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관련 수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연금수익 (공무원·군인)	공무원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군인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이전수익	사회보험수익	국민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사학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기타이전수익	정부내전입금	국가기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순자산 변동	재원의조달	기타이전수입	정부내전입금	기금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실체인 국가가 연금 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은 항목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국가운영비용'의 '고용부담금'으로 인식하고,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프로그램충원금'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 일괄 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의기타이전비용"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의기타이전수익"으로 인식한다.
- (2) 피고용자기여금: 급여 지급 시 예수한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하고, 연금기금에 납부할 때 "예수금"에서 차감한다.
- (3) 보전금: 지급 시 순자산변동표의 "정부내전출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적용사례 3~4

연금의 납부대상자 및 부담자는 다음의 표와 같다.

종류	구분	납부대상자	부담자
연금	공무원연금	정규직공무원	본인, 국가
	군인연금	군인	본인, 국가
	사학연금 ^{(*)1}	사립학교교직원	본인, 학교법인, 국가
	국민연금	상기 외 국민 ^{(*)2}	본인, 사용자 ^{(*)3}

(*)1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자는 사용자(국가 포함) 및 본인이 부담하나,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는 본인, 학교법인 및 국가가 부담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대상자는 제외됨. 다만, 비정규직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 대상 외의 자는 포함됨

(*)3 비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사용주는 국가를 의미함

실무해설 7. (☞ 관련문단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예수금	기타예수금/단기
				기타예수금/유동성장기
				기타예수금/장기
비용	국가운영비용	운영비	고용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순자산변동	재원의조달	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재원의이전	기타이전비용	기타의기타이전비용	
			정부내전출금	기금전출금

적용사례3. (※ 관련문단 33) 공무원연금 관련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부담비를 각 부처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각 부처의 공무원연금비용을 '전출금'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한다. 인사혁신처가 타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의 기타이전비용"으로 처리하고 타중앙관서는 "기타의기타이전수익"로 처리한다.

전부처의 공무원 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금부담액	인사혁신처 공무원 해당분	고용주부담금	20,000
		피고용자기여금 (인건비 20,000에 포함)	10,000
	타부처 공무원 해당분	고용주부담금	200,000
		피고용자기여금 (인건비 200,000에 포함)	100,000
	계		330,000
	국가보전금(인사혁신처)		150,000
	총계		480,000

위 공무원연금부담액 480,000원을 전액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하였다.

2. 회계처리

위와 같은 경우 인사혁신처와 타부처 그리고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시점	인사혁신처 및 타부처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 비용 지급시 (고용주 부담금)	<인사혁신처> 차) 고 용 부 담 금 20,000 기타의기타이전비용 2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20,000	- 고용주부담금 부과지 시 - 차) 미 수 연 금 수 익 220,000 대) 공무원연금수익- 고용주부담금 220,000
	<타부처> 차) 고 용 부 담 금 200,000 대) 기타의기타이전수익 200,000	- 고용주부담금 납부 시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220,000 대) 미수연금수익 220,000

시점	인사혁신처 및 타부처	공무원연금기금
인건비 지급 및 공무원연금비 납부 (피고용자 기여금)	<인사혁신처> 차) 인건비 ^(※1) 20,000 기타의기타이전비용 ^(※2) 2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20,000	- 피고용자기여금 부과지 시 - 차) 미수연금수익 110,000 대) 공무원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110,000
	<타부처> 차) 인건비 200,000 대) 기타의기타이전수익 200,000	- 피고용자기여금 납부 시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 대) 미수연금수익 110,000
	(*1) 인사혁신처 인건비 20,000에는 피고용자기여금 10,000이 포함 (*2) 타중앙관서 인건비 200,000에는 피고용자기여금 100,000이 포함	
공무원연금 보전금 지급 시	<공무원연금 보전지급부처 - 인사혁신처> 차) 정부내전출금- 기금전출금 15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5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 대)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150,000
결산조정 (국가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분개>	
	차) 공무원연금수익 220,000 - 고용주부담금	대) 고 용 부 담 금 220,000
	차) 정 부 내 전 입 금 150,000 - 일반회계전입금	대) 정 부 내 전 출 금 150,000 - 기금전출금
	차) 기타의기타이전수익 400,000	대) 기타의기타이전비용 400,000



적용사례4. (※ 관련문단 33) 군인연금 관련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건비를 비롯한 연금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한 인건비 및 고용주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의기타이전비용"으로 처리하고 방위사업청은 "기타의기타이전수익"으로 처리한다. 군인연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전부처의 군인 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금부담액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해당분	고용주부담금	20,000
		피고용자기여금	10,000 (인건비 20,000)
	국방부 소속 군인 해당분	고용주부담금	200,000
		피고용자기여금	100,000 (인건비 200,000)
	계		330,000
	국가보전금(국방부)		150,000
	총계		480,000

위 군인연금부담액 480,000원을 전액 국방부에서 군인연금기금에 지급하였으며,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건비 또한 국방부에서 지급하였다.

2. 회계처리

위와 같은 경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군인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시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 비용 지급시 (고용주 부담금)	<국방부>	- 고용주부담금 부과지 시 -
	차) 고용부담금 200,000	차) 미수연금수익 220,000
	기타의기타이전비용 20,000	대) 군인연금수익- 22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20,000	고용주부담금
	<방위사업청>	- 고용주부담금 납부 시 -
	차) 고용부담금 2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220,000
	대) 기타의기타이전수익 20,000	대) 미수연금수익 220,000

시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군인연금기금
인건비 지급 및 군인연금비 납부 (피고용자 기여금)	<국방부>	- 피고용자기여금 부과지 시 -
	차) 인건비 200,000	차) 미수연금수익 110,000
	기타의기타이전비용 20,000	대) 군인연금수익- 11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220,000	피고용자기여금
군인연금 보전금 지급 시	<방위사업청>	- 피고용자기여금 납부 시 -
	차) 인건비 2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10,000
	대) 기타의기타이전수익 20,000	대) 미수연금수익 110,000
	<군인연금 보전지급부처 -국방부>	
	차) 정부내전출금- 150,000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
	기금전출금	대) 정부내전입금- 15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50,000	일반회계전입금
결산조정 (국가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분개>	
	차) 공무원연금수익 220,000	대) 고용부담금 220,000
	-고용주부담금	
	차) 정부내전입금 150,000	대) 정부내전출금 150,000
	-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전출금
	차) 기타의기타이전수익 40,000	대) 기타의기타이전비용 40,000

II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34.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의 퇴직수당 및 「군인연금법」 제7조의 퇴직수당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2) 퇴직수당추정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및 「군인연금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3)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퇴직수당추정지급액은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수당추정지급액에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4) 퇴직수당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5) (1)~(4)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산정방식, 보험수리적 가정의 요소 및 기본원칙, 인식 및 측정, 퇴직수당비용의 구성 및 인식과 관련된 사항은 문단6~16, 문단20, 문단23 및 문단25~30을 준용한다.

☞ 관련문단 5, (3), 6~16, 20, 23, 25~30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7

실무해설 1

관련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재직기간} \times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군인연금법 제37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복부기간} \times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III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35. (연금부채의 인식)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2) (1)의 환급금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연금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말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7~21
실무해설 8

문단제정근거17. (☞ 관련문단 35)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통칭 사회보험 또는 사회연금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정부 고유의 제도이므로 민간 회계기준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 예규에서 연금충당부채 인식여부를 규정하였다.

문단제정근거18. (☞ 관련문단 35, 39) 미국 연방정부회계기준인 SFFAS 17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사회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의무는 비교환거래이므로 장래 추정지급액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단제정근거19. (☞ 관련문단 35, 39) 정부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각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과 별도로 문단을 추가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와 관련된 부채인식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의무는 정책공약과 같은 총체적 의무 또는 미이행 계약 성격의 의무이며, 국민 개개인과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따른 장래 추정지급액은 부채로 인식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단제정근거20. (☞ 관련문단 35) 이와 같이 주요국의 정부는 사회보장 의무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주요 논거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연금지급의무는 국민 개개인과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의무와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36. (사회보험비용의 측정) (1) 사회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 (2) "사회보험비용"은 재정은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8~9
37. (사회보험수익의 구성) (1) 사학연금수익 및 국민연금수익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1)에 따른 사회보험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가) 고용주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사용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문단제정근거21. (☞ 관련문단 35) 주요국 정부가 사회보장 의무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지만 그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기재정추계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실무해설8. (☞ 관련문단 35~36)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관련 부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연금미지급금/단기
				연금미지급금/장기
				퇴직수당미지급금/단기
				퇴직수당미지급금/장기

실무해설9. (☞ 관련문단 36)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관련 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이전비용	사회보험비용	국민연금비용	
			사학연금비용	
			사학퇴직수당비용	

- (나) 국가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다) 피고용자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라)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38. (사회보험수익의 인식) (1) 사학연금수익과 국민연금수익은 부과고지 시점에 인식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고지 시점에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 (2)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피고용자기여금, 보전금은 성질별 재정은 영표의 경우 '이전수익',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2
실무해설 6

39. (퇴직수당미지급금의 인식 및 사학퇴직수당비용의 측정) (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퇴직수당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 (2) 사학퇴직수당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8~19

문단제정근거22. (☞ 관련문단 38)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기여금은 매달 부과고지에 의해 징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과고지 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III 공시

40. (연금기금의 주석사항) 연금기금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의 성격과 회계기간에 연금사업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연금사업의 주요 현황
- (2) 연금기금 운용에 따른 금융자산 수익률 및 투자자산 현황
- (3) 연금가입자, 퇴직자 및 수급자 등 추이
- (4)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

☞ 관련부록 실무해설 10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40, 43) 연금기금 주석 공시(연금보고서 요약) 예시

(1)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연금사업에 대한 개요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근거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소관 중앙관서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리·운영주체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설치일	1960. 1. 1.	1960. 1. 1.	1975. 1. 1.	1988. 1. 1.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복무군인	사립학교법, 초·중등 교육법 상 교직원	18~60세 국민 및 거주외국인
재직자(가입자)				
연금수급자				
재정 현황 (억원)	수입			
	지출			
	규모			
재원조달방식				
비용부담방식				
회계처리	퇴직연금으로서 연금충당부채 산정		사회보장제도로서 총당부채 산정대상 아님	

(2) 기금운용에 따른 금융자산 수익률과 기금 투자자산 현황

1) 기금운용에 따른 금융자산 수익률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2) 기금 투자자산 현황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계				
금융투자				
채권				
주식				
대체				
기타				
연금사업				
대여학자금				
연금대부				
주택시설 등				
기타				

(3) 연금기금의 가입자, 퇴직자 및 연금수급자 추이

1) 가입자 추이

구 분	20X5년	20X4년	20X3년	20X2년	20X1년
공무원연금					
재직자(명)					
연금수급자(명)					
수급자비율(%)					
군인연금					
재직자(명)					
연금수급자(명)					
수급자비율(%)					
사학연금					
재직자(명)					
연금수급자(명)					
수급자비율(%)					
국민연금					
가입자(명)					
연금수급자(명)					
수급자비율(%)					

2) 퇴직자 추이

구 분		20X5년	20X4년	20X3년	20X2년	20X1년
공무원연금	퇴직자(명)					
	연금선택률(%)					
군인연금	퇴직자(명)					
	연금선택률(%)					
사학연금	퇴직자(명)					
	연금선택률(%)					

3) 연금수급자 추이

(단위 : 명)

구 분		급여 종류			
공무원연금	합계	퇴직연금	유족연금	-	-
군인연금	합계	퇴역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분할연금
사학연금	합계	퇴직연금	유족연금	연계연금	장해연금
국민연금	합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

41. (연금충당부채 주석사항)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연금기금은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을 가능한 한 다음 각각의 변동원인별로 회계기간 중의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가) 당기근무원가
- (나) 이자원가
- (다) 보험수리적 손익
- (라) 연금지급액
- (마) 과거근무원가

(2) 연금수익 및 연금비용을 각각의 원인별로 회계기간 중의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가) 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보전금
- (나) 연금비용: 연금비용, 보험수리적손익, 기타연금비용

(3)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내역을 그 산정을 위해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과 함께 공시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할인율
- (나) 물가상승률
- (다) 임금상승률
- (라) 기타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42.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주석사항) 공무원연금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이 공무원퇴직수당 및 군인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공시하는 주석사항은 문단41.(1)을 준용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41, 42)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주석공시 예시

1. 연금충당부채

(1)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 작성 예시

(단위: 억원)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잔액(A)						
당기근무원가(B)						
이자원가(C)						
과거근무원가(D)						
연금비용 소계 (E=B+C+D)						
보험수리적손익(F)						
연금충당부채 설정액 (G=E+F)						
연금 지급액(H)						
기말잔액(I=A+G-H)						

(2) 연금수익 및 연금비용의 내역 작성 예시

연금수익 명세서

구 분		당 기	전 기	(단위: 억원)	
				증감	
				금액	증감률
공무원연금수익	소 계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군인연금수익	소 계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보전금	소계				
	공무원				
	군인				

연금비용 명세서

구 분		당 기	전 기	(단위: 억원)	
				증감	
				금액	증감률
공무원연금비용					
군인연금비용					
보험수리적손익	소계				
	공무원				
	군인				
기타연금비용	소계				
	공무원				
	군인				

(3) 주요보험수리적 가정 작성 예시

(단위: %)

구분	당기	전기
할인율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 퇴직수당충당부채

(1) 퇴직수당충당부채의 변동내역 작성 예시

(단위: 억원)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잔액(A)						
당기근무원가(B)						
이자원가(C)						
과거근무원가(D)						
퇴직수당비용 소계(E=B+C+D)						
보험수리적손익(F)						
퇴직수당충당부채 설정액(G=E+F)						
퇴직수당 지급액(H)						
기말잔액(I=A+G-H)						

43. (연금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1) 연금기금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단44 및 문단45에 따른 연금보고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2)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1)의 연금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 관련문단 44~45
관련부록 실무해설 10
44.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열거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별도항목으로 하여 연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 (1) 연금사업의 개요: 사업연혁, 급여의 구성과 내용, 재원조달방식과 비용 부담방식, 인원과 재정 현황, 관리감독체제, 향후 연금사업에 영향을 줄 이슈 등
- (2) 기금의 조성과 운용사항: 기금투자관리방법, 기금운용성과, 보유중인

(2) 퇴직수당비용의 내역 작성 예시

(단위: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증감	
				금액	증감률
	소 계				
퇴직수당비용	공무원퇴직수당비용				
	군인퇴직수당비용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44)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연금보고서 작성예시

- 목차
1. 연금사업의 개요(Pension in general)
- 1) 연금사업 연혁
 - 2) 연금사업 현황(인원과 재정 현황)
 - 3) 연금사업의 급여구성과 내용
 - 4) 재원조달방식과 비용부담방식
 - 5) 감독관리체계(관리기관의 주요사업)
 - 6) 연금사업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슈

투자자산구성에 대한 내역 등

- (3) 주요통계: 가입자 추이, 퇴직자 추이, 연금수급자 추이, 종류별 급여 추이, 기금 추이 등
- (4)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방법과 결과: 보험계리기관의 감사보고서(선택),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결과와 그에 대한 설명,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연금충당부채 평가 관련 기타 주요사항 등

☞ **관련문단 43**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보고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1) 연금사업의 개요: 사업연혁, 급여의 구성과 내용, 재원조달방식과 비용 부담방식, 인원과 재정 현황, 관리감독체계, 향후 연금사업에 영향을 줄 이슈 등
- (2) 기금의 구성과 운용사항: 기금투자관리방법, 기금운용성과, 보유중인 투자자산구성에 대한 내역 등
- (3) 주요통계: 가입자 추이, 퇴직자 추이(사학연금만 해당한다), 연금수급자 추이, 종류별 급여 추이, 기금 추이 등
- (4) 장기재정추계의 결과: 장기재정추계 방법,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장기재정추계의 전망결과(수입, 지출, 재정수지, 기금

소부록

2. 연금사업의 기금운용(Fund Management Section)

- 1) 기금의 구성과 운용 현황
- 2) 기금운용체계
- 3) 기금투자관리
- 4) 기금운용성과

소부록(기금 관련 재무제표 등)

3.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 평가(Actuarial Section)

- 1) 보험계리기관의 감사보고서(선택)
- 2)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 3)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 4)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결과와 그에 대한 설명
- 5)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 6)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 7) 연금충당부채 평가 관련 기타 주요사항

소부록(보험수리적 가정의 세부 적용내역, 연금충당부채의 세부 산정결과 등)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연금보고서 작성예시

목차

1. 연금사업의 개요(Pension in general)

- 1) 연금사업 연혁
- 2) 연금사업 현황(인원과 재정 현황)
- 3) 연금사업의 급여구성 내용
- 4) 재원조달방식과 비용부담방식
- 5) 감독관리체계(관리기관의 주요사업)
- 6) 연금사업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슈

소부록

2. 연금사업의 기금운용(Fund Management Section)

- 1) 기금의 구성과 운용 현황
- 2) 기금운용체계

적립금, 부양률, 기금적립배율 등 주요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장기재정추계 관련 기타 주요 사항 등

☞ [관련문단 43](#)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 3) 기금투자관리
4) 기금운용성과
소부록(기금 관련 재무제표 등)
3. 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Financial Projection Section)
1) 장기재정추계 방법
2)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3) 장기재정추계의 전망결과(수입, 지출, 재정수지, 기금적립금, 부양률, 기금
적립배율 등 주요 재정지표 등)와 그에 대한 설명
4)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5) 장기재정추계 관련 기타 주요사항
소부록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⑧ 회계처리

차) 연금비용 (당기근무원가) 408 대) 연금충당부채 408

차) 연금비용 (이자원가) 37 대) 연금충당부채 37

㉓ 3년 근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 및 연금비용 측정과 2013년 회계처리

1단계: 예상퇴직시점에 연금추정지급액 산정((1)과 동일)

2016년말 첫 연금지급액 = $10,000 \times 1.07^4 \times 1\% \times 5\text{년} = 655$

2015년말 시점 연금추정지급액 = $596 + 569 + 543 + 518 + 494 = 2,720$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년말 연금급여액 기준	655	688	722	758	796
2015년말 시점으로 할인(할인율=10%)	596	569	543	518	494

2단계: 2013년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귀속분으로 배분
 연금추정지급액/(근무원수비율 혹은 근무연수에 상응한 비율) = $2,720 \times (3/5) = 1,632$
 (연금지급률이 일정하므로 근무연수비율과 근무연수에 상응한 비율이 동일함)

3단계: 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산출 및 회계처리

① 기말연금충당부채 = 1,632를 2013년도 말로 할인한 값 = $1,632 \times 1/(1.1)^2 = 1,349$

② 당기근무원가 = $1,349 \times (1/3) = 450$

③ 기초연금충당부채 = 817

④ 이자원가 = 기초연금충당부채*할인율 = $817 \times (0.10) = 82$

⑤ 과거근무원가 = 0, 보험수리적 손익 = 0

⑥ 연금급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0

⑦ 기말 연금충당부채 = 기초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보험수리적 손익
 = $817 + 450 + 82 + 0 = 1,349$

⑧ 회계처리

차) 연금비용 (당기근무원가) 450 대) 연금충당부채 450

차) 연금비용 (이자원가) 82 대) 연금충당부채 82

㉔ 4년 근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 및 연금비용 측정과 2014년 회계처리

1단계: 예상퇴직시점에 연금추정지급액 산정((1)과 동일)

2016년말 첫 연금지급액 = $10,000 \times 1.07^4 \times 1\% \times 5\text{년} = 655$

2015년말 시점 연금추정지급액 = $596 + 569 + 543 + 518 + 494 = 2,720$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년말 연금급여액 기준	655	688	722	758	796
2015년말 시점으로 할인(할인율=10%)	596	569	543	518	494

2단계: 2014년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귀속분으로 배분
 연금추정지급액/(근무원수비율 혹은 근무연수에 상응한 비율) = $2,720 \times (4/5) = 2,176$
 (연금지급률이 일정하므로 근무연수비율과 근무연수에 상응한 비율이 동일함)

3단계: 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산출 및 회계처리

① 기말연금충당부채 = 2,176을 2014년도 말로 할인한 값 = $2,176 \times 1/(1.1)^1 = 1,978$

② 당기근무원가 = $1,978 \times (1/4) = 494$

③ 기초연금충당부채 = 1,349

④ 이자원가 = 기초연금충당부채*할인율 = $1,349 \times (0.10) = 135$

⑤ 과거근무원가 = 0, 보험수리적 손익 = 0

⑥ 연금급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0

⑦ 기말 연금충당부채 = 기초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보험수리적 손익
 = $1,349 + 494 + 135 + 0 = 1,978$

⑧ 회계처리

차) 연금비용 (당기근무원가) 494 대) 연금충당부채 494

차) 연금비용 (이자원가) 135 대) 연금충당부채 135



⑤ 5년 근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 및 연금비용 측정과 2015년 회계처리

1단계: 예상퇴직시점에 연금추정지급액 산정((1)과 동일)

2016년말 첫 연금지급액=10,000*1.07⁴*1%*5년=655

2015년말 시점 연금추정지급액=596+569+543+518+494 = 2,720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년말 연금급여액 기준	655	688	722	758	796
2015년말 시점으로 할인(할인율=10%)	596	569	543	518	494

2단계: 2015년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귀속분으로 배분

연금추정지급액/(근무연수비용 혹은 근무연수에 상응한 비율)=2,720*(5/5)=2,720

(연금지급률이 일정하므로 근무연수비용과 근무연수에 상응한 비율이 동일함)

3단계: 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 산출 및 회계처리

① 기말연금충당부채 = 2,720을 2015년도 말로 할인한 값 = $2,720 \times 1 / (1.1)^0 = 2,720$

② 당기근무원가 = $2,720 \times (1/5) = 544$

③ 기초연금충당부채 = 1,978

④ 이자원가 = 기초 연금충당부채*할인율 = $1,978 \times (0.10) = 198$

⑤ 과거근무원가 = 0, 보험수리적 손익 = 0

⑥ 연금급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0

⑦ 기말 연금충당부채 = 기초연금충당부채+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보험수리적 손익
= $1,978 + 544 + 198 + 0 = 2,720$

⑧ 회계처리

차) 연 금 비 용 (당 기 근 무 원 가)	544	대) 연 금 충 당 부 채	544

차) 연 금 비 용 (이 자 원 가)	198	대) 연 금 충 당 부 채	198

14.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449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2	
● 적용범위	2	449	부록 2. 실무해설	1-9	
● 용어의 정의	3	449	부록 3. 적용사례	1-2	
● 보험사업	4-10	450			
○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4-5	450			
○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6-7	453			
○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8-10	454			
● 사회보험사업	11-15	456			
○ 사회보험부채의 인식 및 평가	11-12	456			
○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13	458			
○ 사회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14-15	458			
● 공시	16	459			
● 부칙		459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44조의2, 제55조 등에 따라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의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2) "사회보험사업"이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3) "보험계약"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말한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1)) 보험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 무역보험,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한다.

실무해설2. (☞ 관련문단 3. (2)) 사회보험사업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포함하며, 사회보험의 납부대상자 및 부담자는 다음의 표와 같다.

종류	구분	납부대상자	부담자
사회보험	산재보험	정규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외 국민 ¹⁾	본인, 사용자
	고용보험		

1) 다만, 비정규직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 대상 외의 자는 포함됨

- (4)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 (5) "보험계약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 (7) "구상채권"이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채권을 말한다.
- (8)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란 기말시점에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의 총보험료 중에서 당기말 현재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III 보험사업

II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4.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험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실무해설3. (☞ 관련문단 3. (8))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계상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인 보험료 지급의무는 즉시 이루어지지만 보험자의 위험부담의무는 즉시 이행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비로소 해당 의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충당부채)

실무해설4. (☞ 관련문단 4~5, 9~11, 15) 보험사업 및 사회보험사업 관련 부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사회보험 미지급금/단기
				사회보험 미지급금/장기
				보험미지급금/단기
				보험미지급금/장기
	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기타부채	사회보험부채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채권보장부채	
		기타의기타부채/장기		

- 5.**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1)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2)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1)의 보험금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가 아닌 "기타의기타부채/장기"로 표시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실무해설 4~6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5)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 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금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산출하고 부채로 적립하여 보험료 등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수지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기금의 담보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발생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부채 적립액이라는 의미에서 적립금과 준비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5)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회계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급준비금: 당기말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이 통지되었거나 보험금지급이 청구된 건 중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보험금에 관한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 중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과 이의신청 유효기간 이내의 면책금액 및 당기말 발생하였으나 발생통지 또는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사고건에 대해 지급될 추정 보험금을 포함
- (2) 비상위험준비금: 거액의 보험사고 및 환변동보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기의 경과보험료에 예정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 (3) 보험료적립금: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재정상태표일 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
-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이자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 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7) 재보험료적립금: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 수재부분에 대해 적립하는 금액
- (8) 보증준비금: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
- (9)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기말시점에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의 총보험료 중에서 당기말 현재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

실무해설6. (☞ [관련문단 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는 총당 부채에 대해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불확정 부채로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적립금과 준비금은 현재 발생 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로 한정하며 연금과 같이 지급이 약정되어 있으나 지출금액이 확실하지 않아 추계에 따라 계상하는 부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적립금과 준비금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 계원칙과 기금의 설치근거법령 등에 따라 적립금과 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한다.

Ⅱ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6. (구상채권의 인식)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 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인식한다.

☞ [관련문단 13](#)

7. (구상채권의 평가) 구상채권에 대한 구상채권대손충당금 설정시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한다.

☞ [관련문단 13](#)

II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8. (보험수익의 인식) "보험수익"은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을 의미한다. "보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8

9. (보험비용의 인식 및 측정) (1) "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2) (1)의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보험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7~8
적용사례 1

1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관련 비용의 인식) "기타의기타부채/장기"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그 환입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8
적용사례 1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관련 적립금과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전입"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그 환입액을 "책임준비금전입"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책임준비금전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험충당부채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적용사례1. (☞ 관련문단 9~10) 보험사업 수행기금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우역보험기금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경과보험료적립금 2,000,000원, 지급준비금은 5,000,000원, 비상위험준비금은 3,000,000원이었다.
기중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음 각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i) 20X2년 말 시점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2,500,000원, 지급준비금은 8,500,000원, 비상위험준비금은 5,000,000원으로 평가된 경우
- ii) 20X2년 말 시점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500,000원, 지급준비금은 3,500,000원, 비상위험준비금은 1,000,000원으로 평가된 경우

2. 회계처리

- i) 의 경우 20X2년 12월 31일 -

차) 보 험 비 용 500,000 대) 기 타 의 기 타 부 채 / 장 기 500,0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

차) 보 험 비 용 3,500,000 대) 보 험 총 당 부 채 3,500,000
(보험책임준비금전입)

차) 보 험 비 용 2,000,000 대) 보 험 총 당 부 채 2,000,000
(보험책임준비금전입)

- ii) 의 경우 20X2년 12월 31일 -

차) 기 타 의 기 타 부 채 / 장 기 1,500,000 대) 기 타 부 채 환 입 1,500,0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

차) 보 험 총 당 부 채 1,500,000 대) 총 당 부 채 환 입 1,500,000
(보험총당부채환입)

차) 보 험 총 당 부 채 2,000,000 대) 총 당 부 채 환 입 2,000,000
(보험총당부채환입)

실무해설8. (☞ 관련문단 8~10, 14~15) 보험사업 및 사회보험사업 관련 수익·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이전비용	사회보험비용	산재보험비용	
			고용보험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 비용	보험비용	보험비용
				보험책임준비금전입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 수익	보험수익	보험수익
				보험수익환급금
			충당부채환입	보험충당부채환입
			기타부채환입	사회보험부채환입
	이전수익	사회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산재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환급금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산재보험수익환급금

III 사회보험사업

II 사회보험부채의 인식 및 평가

11. (사회보험부채의 인식) (1)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사회보험부채"로 인식한다. 기금의 설치근거법이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준비금 적립과 관련한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과 동일하게 준비금을 "사회보험부채"로 계상한다.

☞ 관련문단 12, 15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
실무해설 4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11. (1)) 기금이 수행하는 사회보험사업은 광의의 보험사업에 해당되므로 회계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며 적립대상 및 적립기준은 사회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법에 따르도록 한다.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사회보험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12. (사회보험부채의 평가) 문단11. (1)에 따른 사회보험부채는 향후 1년간의 사회보험지급액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써 매년 말 전년도 지급 결정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

☞ 관련문단 11. (1)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다음 연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 12. 31.]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II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13.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는 문단6~7을 준용한다.

☞ 관련문단 6~7

II 사회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14. (사회보험수익의 인식) "사회보험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며, 부과 고지 시점에 인식한다.

- (1) 피고용자기여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 (2) 고용주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 관련부록 실무해설 8
적용사례 2

15. (사회보험비용의 인식 및 측정) (1) "사회보험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문단11. (1)에 따른 "사회보험부채"의 증가액
-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 (2)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문단11. (1)에 따른 "사회보험부채" 증가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사회보험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11. (1)
관련부록 실무해설 4, 8~9
적용사례 2

적용사례2. (☞ 관련문단 14~15) 사회보험사업 수행기금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고용주는 매달 피고용자로부터 부담분 5만원을 원천징수하여, 고용주부담분 5만원을 합한 10만원을 사회보험사업 수행기금에 익월 10일에 납부한다.

2. 회계처리

사회보험사업 수행기금은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사회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00 대) 사회보험수익 100,000

① 전기말 현재 준비금은 200,000원이며, 당기말 현재 준비금은 300,000원이다.

차) 이 전 비 용 100,000 대) 사 회 보 험 부 채 100,000
(사 회 보 험 비 용)

② 전기말 현재 준비금은 200,000원이며, 당기말 현재 준비금은 100,000원이다.

차) 사 회 보 험 부 채 100,000 대) 기 타 부 채 환 입 100,000
(사 회 보 험 부 채 환 입)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5)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비용"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그 환입액을 "사회보험비용"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사회보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기타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III 공시

16. (주석사항) (1)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나)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다) 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라)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마)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바)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2)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나) 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다) 보험종류별 사회보험수익 및 사회보험비용

(라)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마) 사회보험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바) 사회보험부채 산정 내역

(사) 법정준비금 산정 내역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5. 보증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463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
● 적용범위	2	463	부록 2. 실무해설		1-4
● 용어의 정의	3	463	부록 3. 적용사례		1
●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4-5	463			
●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6-7	465			
● 보증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8-9	465			
● 공시	10	467			
● 경과조치	11	467			
● 부칙		467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49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구상채권"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III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4.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관련문단 11](#)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실무해설1. (☞ [관련문단 4](#))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준비금과 미래 손실 예상액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위변제준비금, 재보증보전준비금 및 보전금지급준비금

보증업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증사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준비금으로 신용보증사업의 세부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과거 5개년간 경험률에 의한 보증사고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준비금 및 재보증준비금을 산출한다.

(2)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준비금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에 따라 발생가능한 손실추정액으로 보증자산 유동화전문회사의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손실액을 추정하여 적립한다.

또한, 상기 준비금은 재무제표상 "기타장기충당부채"에 포함한다.

실무해설2. (☞ 관련문단 4~5, 9) 보증충당부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기타의기타충당부채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5)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 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증계약에 대한 보증 변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금이 미래에 발생

5.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1)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을 및 예상 손실을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 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 관련문단 11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실무해설 2

III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6. (구상채권의 인식)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구상채권으로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III 보증수익 · 비용의 인식 및 측정

8. (보증수익의 인식) (1)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말한다.
- (2) "보증수익"은 보증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할 수 있는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금을 산출하고 부채로 적립하여 보증수수료 등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수지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기금의 담보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발생한 보증 변제금 등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부채 적립액이라는 의미에서 준비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 증감액으로 측정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보증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4

적용사례 1

적용사례1. (☞ 관련문단 9) 신용보증사업 수행기금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a기금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보증충당부채는 2,000,000원이었다. 기중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음 각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20X2년 말 시점의 보증충당부채가 2,500,000원으로 평가된 경우>

차) 기타국가운영비용 500,000 대) 보 증 충 당 부 채 500,000

(보 증 비 용)

<20X2년 말 시점의 보증충당부채가 500,000원으로 평가된 경우>

차) 보 증 충 당 부 채 1,500,000 대) 기 타 국 가 운 영 수 익 1,500,000

(보증충당부채환입)

실무해설3. (☞ 관련문단 9)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 "보증비용"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그 환입액을 "보증비용"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보증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8~9) 보증수익·보증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보증비용	보증충당부채전입
				보증보조비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보증수익	보증수익
				보증수익환급금
			충당부채환입	보증충당부채환입

III 공시

10. (주석사항)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
- (2)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 (3)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 (4)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 (5) 보증 종류 별 지급보증 금액
- (6) 보증수익과 보증비용

III 경과조치

11. (보증충당부채 인식 및 평가의 적용대상) 문단4~5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터 적용한다.

☞ 관련문단 4~5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6. 융자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471	● 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16	487
● 적용범위	2	471	● 이자수익의 인식	17	488
● 용어의 정의	3	471	● 재무제표 표시	18	488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4	472	● 공시	19	489
●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 계산	5-6	472	● 특례	20	489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및 평가	7-10	474	● 경과조치	21	489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7-8	474	● 부칙		490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9-10	479			
● 저리융자금의 조정	11-13	482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5	
● 제거(저리융자금의 매각 및 대손)	14-15	486	부록 2. 실무해설	1-5	
○ 저리융자금의 매각	14	486	부록 3. 적용사례	1-5	
○ 저리융자금의 대손	15	486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용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용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용자금"이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한다.
 - (2) "저리용자금"이란 용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한 용자금을 말한다.
 - (3)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이란 저리용자금의 원금과 저리용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말한다.
 - (4) "회수가능액"이란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시점에 저리용자금 원리금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말한다.

III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4.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 실행 시점에 저리융자금의 차감 항목으로 인식하고, 이를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 (2) (1)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 실행 당시 저리융자금의 원금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산출한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 (가) 융자 실행일 현재 저리융자금의 순현금유입액을 추정
- (나) (가)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

☞ 관련문단 5, 7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I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 계산

5. (순현금유입액 추정 시 고려사항) (1) 문단4에 따른 순현금유입액은 저리융자금 위험유형을 반영하여 저리융자금 종류별로 추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저리융자금의 원리금
- (나)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
- (다) 기타 저리융자금 관련 직접 비용
- (2) (1)의 (나)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과거 저리융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 (나) 저리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 (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 (라) 저리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 관련문단 4, 9

실무해설1. (☞ 관련문단 4, 10, 14~17) 융자금 관련 수익·비용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이자수익	대여금이자수익	일반융자금이자수익
				저리융자금이자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비용	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융자보조비용	

6. (유효이자율 적용) (1)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저리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 국채이자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은 저리용자금 실행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저리용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없는 경우 저리용자금의 만기와 가장 근접한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 조달한 재원이 조달이자율이 없는 출연금 등 정부 예산인 경우에도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라) 동일한 종류의 저리용자금에 대해서도 개별 저리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저리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4

(2)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6. (1)) 문단6에서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 조달한 재원이 조달이자율이 없는 출연금 등 정부예산인 경우에도 국채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용자사업을 위해 이러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았더라면 정부 전채수준에서 국채 발행이 재원조달액만큼 감소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채이자율을 유효이자율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6. (1))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용자를 실행한 경우 이에 따른 보조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이 예규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저리용자금/단기"에 대해서도 계산의 실익을 이유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6. (1))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용자사업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할 할인율은 용자실행 당시의 용자사업 고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이어야 한다.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6. (1)) 다만,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회계기간 중 수많은 용자를 실행하는 경우 개별 용자 건에 대하여 그 용자실행일의 유효이자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국채의 유통수익률이 아닌 자체 조달이자율을 별도로 계산하여 유효이자율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특정기간의 가중평균한 유효이자율을 그 기간 동안에 실행된 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III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및 평가

II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7.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문단4에 따라 인식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 관련문단 4

관련부록 적용사례 1

8.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 산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은 다음 순서로 산출한다.

(1) 직전 회계연도말 저리융자금 장부가액에 저리융자금 실행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유효이자금액을 산정

(2) 저리융자금 원금에 표면이자율을 곱해 명목이자액을 산정

(3) (1)에서 산정한 유효 이자금액과 (2)에서 산정한 명목 이자금액의 차이를 산정

☞ 관련부록 적용사례 1

적용사례1. (☞ 관련문단 7~8) 저리융자금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융자사업의 기본가정

- 20X1년도 말에 국가회계실체는 융자프로그램으로 총 원금 10,000천원의 저리융자금을 실행하였다.
- 이 저리융자금은 하나의 유사한 위험유형 군(群)으로서 융자조건은 만기 5년, 표면 이자율 4%이다.
- 융자계약에 의하면 상환조건은 5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다.
- 저리융자금이 지급된 회계기간에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국채의 평균이자율은 6%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20X4년부터 20X6년도까지 원리금의 30%로 추정된다.

1. 융자계약에 의하면 5년 동안 매년도 말에 2,246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 표 1에서 연간 지급액은 (a)열에 표시되어 있다. (b)열의 금액은 각 회계기간의 기초잔액(이전 회계기간의 기말잔액)에 표시이율 4%를 곱한 금액과 동일하다. (c)열의 금액은 원금 상환액인데 (a)열의 금액에서 (b)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d)열의 금액은 각 회계기간의 기말 원금잔액인데 이 금액은 기초잔액에서 (c)열에 나타난 그 기간의 원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

표1: 상환 스케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연간지급액(a)	이자(b)	원금(c)	기말 대출잔액(d)
20X1				10,000
20X2	2,246	400	1,846	8,154
20X3	2,246	326	1,920	6,234
20X4	2,246	249	1,997	4,237
20X5	2,246	169	2,077	2,160
20X6	2,246	86	2,160	-

2. 매년 수령해야 할 저리융자금의 원리금은 2,246천원이며 20X4년부터 20X6년까지 3년간 원리금의 30%인 674천원이 채무불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X1 회계연도 기준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는 7,858천원이다.

표2: 20X1회계연도 말에 할인된 추정 현금흐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원금 및 이자	채무불이행 손실	순현금유입액
20X1	-	-	-
20X2	2,246	-	2,246
20X3	2,246	-	2,246
20X4	2,246	(674)	1,572
20X5	2,246	(674)	1,572
20X6	2,246	(674)	1,572
PV(6% 이자율)	9,461	(1,603)	7,858

3. 채무불이행손실은 20X4년부터 20X6년까지 3년간 원리금의 30%로 예상되며, 채무불이행손실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면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채무불이행 손실 구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원금채무불이행손실 ^(*1)	이자채무불이행손실 ^(*2)	합계
20X1	-	-	-
20X2	-	-	-
20X3	-	-	-
20X4	599	75	674
20X5	623	51	674
20X6	648	26	674

(*1) '표1: 상환스케줄 원금금액' * 30%

(*2) '표1: 상환스케줄 이자금액' * 30%

4. 20X2회계연도의 유효 이자금액은 7,858천원의 장부가액에 이자율 6%를 곱한 471천원이고, 이 기간 동안의 명목 이자액은 20X2회계연도의 기초잔액인 원금 10,000천원에 표면이자율 4%를 곱한 400천원이다. 20X2회계연도에 상각할 금액은 유효이자 471천원에서 명목이자 400천원을 차감한 71천원이며, 상각액은 이자수익의 증가항목으로 인식한다.

표4: 연도별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표

(단위: 천원)

회계연도	현재가치	유효이자 ^(*3)	명목이자 ^(*1)	총당금상각 ^(*4)	원금상환계획 ^(*2)
20X1	7,858				
20X2	6,083	471	400	71	1,846
20X3	4,202	365	326	39	1,920
20X4	2,882	252	174	78	1,398
20X5	1,483	173	118	55	1,454
20X6	-	89	60	29	1,512

(*1) '표1: 상환스케줄 이자금액' - '표3: 연도별채무불이행손실구분 이자채무불이행손실'

(*2) '표1: 상환스케줄 원금금액' - '표3: 연도별채무불이행손실구분 원금채무불이행손실'

(*3) '표2: 순현금유입액'의 회계연도별 현재가치*유효이자율(국채 평균이자율)

(*4) (*3)유효이자-(*1)명목이자

2. 회계처리

5. 20X1년 말부터 연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20X1년 말>

- 용자금 지급 시 -

차) 저 리 용 자 금 10,000 대) 국 고 금 10,000

- 용자보조원가총당금 평가 시 -

차) 용 자 보 조 비 용 2,142 대) 용자보조원가총당금^(*1) 2,142

(*1) 보유 중인 저리용자금의 원금은 10,000천원이기 때문에 보유 중인 저리용자금의 원금과 그 현재가치의 차액 2,142천원은 용자보조원가총당금으로 인식한다.

6.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융자보조비용 구성내역 (단위: 천원)

이자보조비용(*)	539
채무불이행비용	1,603
기타보조비용	-
총 융자보조비용	2,142

(*) 이자보조비용 계상 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기말대출잔액	기회이자비용 ^(*1)	이자수입 ^(*2)	이자보조비용 ((*)-(*)2)
20X1	10,000	-	-	
20X2	8,154	600	400	200
20X3	6,234	489	326	163
20X4	4,237	374	249	125
20X5	2,160	254	169	85
20X6	-	130	86	44
PV(6% 이자율)				539

(*)1 전기말 대출잔액 * 6%(국채이자율)

(*)2 전기말 대출잔액 * 4%(표면이자율)

표6: 융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저리융자금의 원금	10,000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7,858)
융자보조원가총당금	2,142

7. 저리융자금 회계처리 후 20X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7: 20X1년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저리융자금	10,000
융자보조원가총당금	(2,142)
순 저리융자금	7,858

<20X2년 말>

-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 시 -

차) 융자보조원가총당금^{(*)1} 71 대) 저리융자금이자수익 71

(*)1 표4의 20X2년 총당금상각 금액이며,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상각액은 이자수익의 증가로 인식함

- 저리융자금 원리금 수령 시 -

차) 국 고 금 2,246 대) 저리융자금이자수익^{(*)2} 400

저리융자금^{(*)3} 1,846

(*)2 표4의 20X2년 명목이자 금액임

(*)3 표4의 20X2년 원금상환계획 금액임

8. 융자금 회계처리 후 20X2년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8: 20X2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저리융자금	8,154
융자보조원가총당금	(2,071)
순 저리융자금	6,083



<20X3년 말>

-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 시 -

차) 용자보조원가총당금^(*1) 39 대) 지리용자금이자수익 39
(*1) 표4의 20X3년 총당금 상각금액임

- 지리용자금 원리금 수령 시 -

차) 국 고 금 2,246 대) 지리용자금이자수익^(*2) 326
지리용자금^(*3) 1,920
(*2) 표4의 20X3년 명목이자 금액임
(*3) 표4의 20X3년 원금상환계획 금액임

9. 지리용자금 회계처리 후 20X3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9: 20X3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지리용자금	6,234
용자보조원가총당금	(2,032)
순 지리용자금	4,202

<20X4년 말>

-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 시 -

차) 용자보조원가총당금^(*1) 78 대) 지리용자금이자수익 78
(*1) 표4의 20X4년 총당금 상각금액임

- 지리용자금 원리금 수령 시 -

차) 국 고 금 1,572 대) 지리용자금이자수익^(*2) 174
지리용자금^(*3) 1,398
(*2) 표4의 20X4년 명목이자 금액임
(*3) 표4의 20X4년 원금상환계획 금액임

10. 지리용자금 회계처리 후 20X4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10: 20X4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지리용자금	4,836
용자보조원가총당금	(1,954)
순 지리용자금	2,882

<20X5년 말>

-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 시 -

차) 용자보조원가총당금^(*1) 55 대) 지리용자금이자수익 55
(*1) 표4의 20X5년 총당금 상각금액임

- 지리용자금 원리금 수령 시 -

차) 국 고 금 1,572 대) 지리용자금이자수익^(*2) 118
지리용자금^(*3) 1,454
(*2) 표4의 20X5년 명목이자 금액임
(*3) 표4의 20X5년 원금상환계획 금액임

11. 지리용자금 회계처리 후 20X5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11: 20X5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지리용자금	3,382
용자보조원가총당금	(1,899)
순 지리용자금	1,483

Ⅱ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9.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1)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1)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문단5. (2)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최초 추정의 기준에 더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가) 저리용자금의 조기상환

(나) 채무불이행

(다) 채납 및 회수

(라) 기타 현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관련문단 5, 10, 13

10.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 측정) (1) 문단9에 따른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은 다음의 순서로 산출한다.

(가) 평가 시점에 변경된 저리용자금 순현금유입액을 재추정

(나) (가)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저리용자금 실행 시 사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

(다)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저리용자금 원금에서 당 회계연도 현금회수액을 차감하고, (나)에서 구한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

(라) 변경전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에서 (다)의 금액을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산출

(2) (1)에 따른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당기의 "용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용자보조비용"에서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감소액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그 차액을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 관련문단 9, 13

관련부록 실무해설 1

적용사례 2

적용사례2. (☞ 관련문단 10)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용자사업의 가정

- 처리용자금에 대한 기본가정은 적용사례1과 동일하다.
- 20X2년 말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다.
 - 1) 채무불이행이 20X4회계연도 대신에 20X3회계연도부터 발생할 것이며,
 - 2) 유입될 현금흐름의 30%대신 60%가 20X3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을 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처리용자금의 상환스케줄은 표1과 같다.

표1: 상환 스케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연간지급액(a)	이자(b)	원금(c)	기말 대출잔액(d)
20X1				10,000
20X2	2,246	400	1,846	8,154
20X3	2,246	326	1,920	6,234
20X4	2,246	249	1,997	4,237
20X5	2,246	169	2,077	2,160
20X6	2,246	86	2,160	-

2. 매년 수령해야 할 처리용자금 원리금은 2,246천원이나 20X3년부터 20X6년까지 4년간 원리금의 60%가 채무불이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X2년 말 기준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는 3,113천원이다.

표2: 20X2회계연도 말 재추정 할인 현금흐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원금 및 이자	채무불이행 손실	순 현금유입액
20X3	2,246	(1,348)	898
20X4	2,246	(1,348)	898
20X5	2,246	(1,348)	898
20X6	2,246	(1,348)	898
PV(6% 이자율)	7,783	(4,670)	3,113

3. 20X4년부터 20X6년까지 3년간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손실 금액 및 원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손실이 각각 발생함을 가정하며, 이에 따른 각각의 채무불이행 손실금액을 산정하면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채무불이행 손실 구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원금채무불이행손실 ^(*1)	이자채무불이행손실 ^(*2)	합계
20X2	-	-	-
20X3	1,152	196	1,348
20X4	1,199	149	1,348
20X5	1,247	101	1,348
20X6	1,296	52	1,348

(*1) '표1: 상환스케줄 원금금액' * 60%
(*2) '표1: 상환스케줄 이자금액' * 60%

4. 20X3년의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연도별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표 (단위: 천원)

회계연도	현재가치	유효이자	명목이자 ^(*1)	충당금상각	원금상환계획 ^(*2)
20X2	3,113	-	-	-	-
20X3	2,402	187	130	57	768
20X4	1,647	144	100	44	799
20X5	847	99	68	31	831
20X6	-	51	34	17	864

(*1) '표1: 상환스케줄 이자금액' - '표3: 연도별채무불이행손실구분 이자채무불이행손실'
(*2) '표1: 상환스케줄 원금금액' - '표3: 연도별채무불이행손실구분 원금채무불이행손실'

5. 재평가된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20X3회계연도의 유효 이자금액은 3,113천원의 장부가액에 이자율 6%를 곱한 187천원이고, 이 기간 동안의 명목 이자액은 20X3 회계연도 기초잔액인 원금 8,154천원에 표면이자율 4%를 곱한 326천원에서 채무불이행손실액 196천원을 차감한 130천원이다. 20X3회계연도에 상각할 금액은 유효이자 187천원에서 명목이자 130천원을 차감한 57천원이다.



2. 회계처리

6. 20X2년 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20X2년 말>

-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 시 -

차) 융자보조원가충당금^(*) 71 대) 처리융자금이자수익 71

(*1) 변경전의 20X1년 기준의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표를 적용함

- 융자금 및 이자수익 회수 시 -

차) 국 고 금 2,246 대) 처리용자금이자수익^(*1) 400

저 리 용 자 금^(*1) 1,846

(*1) 변경전의 20X1년 기준의 상환스케줄을 적용함

-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재평가 시 -

차) 용 자 보 조 비 용^(※1) 2,970 대) 용자보조원가총당금 2,970

(※1) 보유 중인 저리융자금의 원금은 20X2년의 회수액 1,846천원을 고려할 때 8,154천원 (=10,000천원 - 1,846천원) 이다. 저리융자금 원금 8,154천원에서 20X2회계연도말 추정 현금흐름인 3,113천원을 차감한 금액인 5,041천원이 20X2년 말 기준으로 재평가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평가 전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인 2,071천원에서 2,970천원(=5,041천원 - 2,071천원)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증액분은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표5: 20X2년 말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설정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20X2년 말 자리용자금 원금	8,154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113)
20X2년 용자보조원가충당금(to-be)	5,041
재평가 전 용자보조원가충당금	(2,071)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추가 설정액	2,970

7. 저리융자금 회계처리 후 20X2회계연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6: 20X2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저리용자금	8,154
융자보조원가충당금	(5,041)
순 저리용자금	3,113

III 저리융자금의 조정

11. (저리융자금의 조정) 국가의 정책목적 변경이나 채무자의 상황 변경에 따라 저리융자금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저리 융자금의 조정은 국가회계실체가 새로운 입법조치나 행정조치를 통해 현재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저리융자금의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원리금의 지급유예
- (2)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면제
- (3) 이자율의 조정
- (4) 만기연장 등

☞ 관련문단 12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적용사례 3

12. (저리융자금 조정 후 평가방법) 문단11에 따른 저리융자금의 조정 후 장 부가액은 융자조건 변경을 반영한 저리융자금의 순현금흐름을 최초 저 리융자금 실행 시에 적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관련문단 11
 관련부록 적용사례 3

13. (저리융자금 조정 시 회계처리) 저리융자금 조정 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산출과 "융자보조비용"의 인식은 문단9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시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문단 9, 10
 관련부록 적용사례 3

실무해설2. (☞ 관련문단 11) 저리융자금의 조정이라 함은 새로운 입법조치 나 행정조치를 통해 현재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저리융자금의 현재가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원리금의 지급유예,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면제, 이자율의 조정, 만기연장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저리융자금의 조정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에 수행하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와 구분하여 규정한다.

적용사례3. (☞ 관련문단 11~13) 저리융자금 조정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 저리융자금에 대한 기본가정은 적용사례1과 동일하다.
- 20X2년 말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다.
 - 1) 20X2년 말 원금 8,154천원의 70%인 5,708천원을 면제함
 - 2) 20X2년 말 원금 30%인 2,446천원은 만기를 1년 연장하여 20X3년부터 5년에 걸쳐 상환함
 - 3) 표시 이자율은 4%로 동일하고, 조건 변경 후 지급해야 할 연간 원금과 이자는 549천원임
 - 4) 조정된 저리융자금의 예정 현금유입의 20%는 채무불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1: 조정된 융자금의 상황 스케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지급액	이자	원금	기말 저리융자금 잔액
20X2				2,446
20X3	549	97	452	1,994
20X4	549	79	470	1,524
20X5	549	61	488	1,036
20X6	549	41	508	528
20X7	549	21	528	-

1. 이 사례에서 원래의 할인율은 6%이다.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수정된 조건과 할인율 6% 하에서 추정 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는 1,850천원이다.

표2: 20X2회계연도 말 채추정 할인 현금흐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원금 및 이자	채무불이행 손실	순현금유입액
20X3	549	(110)	439
20X4	549	(110)	439
20X5	549	(110)	439
20X6	549	(110)	439
20X7	549	(110)	439
PV(6% 이자율)	2,313	(463)	1,850

2.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손실 금액 및 원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손실이 각각에 대하여 20%가 발생함을 가정하며, 이에 따른 각각의 채무불이행손실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이자 및 원금 채무불이행손실 금액 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이자 채무불이행손실 ^(*1)	원금 채무불이행손실 ^(*2)	채무불이행손실 계
20X2	-	-	-
20X3	20	90	110
20X4	16	94	110
20X5	12	98	110
20X6	8	102	110
20X7	4	106	110

(*1) '표1: 조정된 융자금의 상환 스케줄'의 이자 * 20%

(*2) '표1: 조정된 융자금의 상환 스케줄'의 원금 * 20%

3. 보유 중인 처리융자금의 원금은 20X2년의 회수액 1,846천원 및 입법조치에 의한 융자금 상환면제액 5,708천원을 고려할 때 2,446천원(10,000천원 - 1,846천원 - 5,708천원)이다. 처리융자금 원금 2,446천원에서 20X2회계연도 말 추정 현금흐름인 1,850천원을 차감한 금액인 596천원이 20X2년 말 기준으로 재평가한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평가 전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596천원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이 증액분은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설정액 계산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설정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처리융자금의 원금	2,446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850)
20X2년 융자보조원가총당금(to-be)	596
재평가 전 융자보조원가총당금	(0)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 설정액	596

4. 채무불이행의 재평가에 따라 변경된 추정 현금흐름에 의한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의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

표5: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표 (단위: 천원)

회계연도	현재가치	유효이자	명목이자 ^(*1)	총당금 상각	원금회수액 ^(*2)
20X2	1,850	-	-	-	-
20X3	1,522	111	77	34	362
20X4	1,174	91	63	28	376
20X5	805	70	49	21	390
20X6	414	48	33	15	406
20X7	-	25	17	8	422

(*1) '표1: 상환스케줄상 이자' - '표3: 이자 및 원금 채무불이행손실 금액 내역 상 이자채무불이행손실'

(*2) '표1: 상환스케줄상 원금' - '표3: 이자 및 원금 채무불이행손실 금액 내역 상 원금채무불이행손실'

5. 20X3년의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의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평가된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20X3회계연도의 유효 이자금액은 1,850천원의 장부가액에 이자율 6%를 곱한 111천원이고, 이 기간 동안의 명목 이자액은 원금 2,446천원에 표면이자율 4%를 곱한 97천원에서 채무불이행손실액 20천원을 차감한 77천원이다. 20X3회계연도에 상각할 금액은 유효이자 111천원에서 명목이자 77천원을 차감한 34천원이다.



2. 회계처리

6. 20X1년 말부터 연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20X1년 말>

- 지리용자금 지급 시 -

차) 지 리 용 자 금 10,000 대) 국 고 금 10,000

- 융자보조원가총당금 평가 시 -

차) 융 자 보 조 비 용 2,142 대) 융자보조원가총당금^(*) 2,142

(*) 보유 중인 지리용자금의 원금은 10,000천원이기 때문에 보유 중인 지리용자금의 원금과 그 현재가치의 차액은 1,642천원이다. 이 금액에 수수료 수취액 500천원을 합한 금액인 2,142천원은 융자보조원가 총당금으로 인식한다.

7. 지리용자금 회계처리 후 20X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6: 20X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지리용자금	10,000
융자보조원가총당금	(2,142)
순 지리용자금	7,858

<20X2년 말>

-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 시 -

차) 융 자 보 조 원 가 총 당 금 ^(*) 71 대) 지 리 용 자 금 이 자 수 익 71

(*) 변경전의 20X1년 기준의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상각표 적용함

- 지리용자금 및 이자수익 회수 시 -

차) 국 고 금 2,246 대) 지리용자금이자수익^(*) 400
지 리 용 자 금^(*) 1,846

(*) 변경전의 20X1년 기준의 상환스케줄 적용함

- 지리용자금 재조정 시 -

차) 융자보조원가총당금^(*) 2,071 대) 지 리 용 자 금^(*) 5,708
융 자 보 조 비 용^(*) 3,637

(*) 20X2년 말 지리용자금과 관련한 입법조치 전 지리용자금의 원금은 10,000천원에서 20X2년의 회수액인 1,846천원을 차감한 8,154천원이며 입법조치로 인한 지리용자금 원금의 감소액은 5,708천원이다.

(*) 지리용자금 재조정전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잔액(2,142 - 71 = 2,071)

(*) 입법조치로 인한 지리용자금 원금 금액을 차감시키고 융자보조원가총당금에서 차감한다. 이때,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재평가 시 -

차) 융 자 보 조 비 용 596 대) 융자보조원가총당금 596

8. 재평가 시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융자보조비용 구성내역 (단위: 천원)

이자보조비용(*)	132
채무불이행손실	464
총 융자보조비용	596

(*) 이자보조비용 계상 내역 (단위: 천원)

회계연도	기말대출잔액	기회이자비용 ^(*)	이자수입 ^(*)	이자보조비용 ((*)-(*)2))
20X2	2,446	-	-	
20X3	1,994	147	98	49
20X4	1,524	120	80	40
20X5	1,036	91	61	30
20X6	528	62	41	21
20X7	-	32	21	11
PV(6% 이자율)				132

(*) 전기말 대출잔액 * 6%(국채이자율)

(*) 전기말 대출잔액 * 4%(표면이자율)



9. 보유 중인 저리용자금의 원금은 20X2년의 회수액 1,846천원 및 입법조치에 의한 저리용자금 상환면제액 5,708천원을 고려할 때 2,446천원이다. 저리용자금 원금 2,446천원에서 20X2회계연도말 추정 현금흐름인 1,850천원을 차감한 금액인 596천원이 20X2년 말 기준으로 재평가한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평가 전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596천원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이 증액분은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설정액 계산내역은 표7과 같다.

표8: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설정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저리용자금의 원금	2,446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850)
20X2년 융자보조원가총당금(to-be)	596
재평가 전 융자보조원가총당금	(0)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추가 설정액	596

10. 저리용자금 회계처리 후 20X2회계연도 말 재정상태표의 자산의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표9: 20X2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단위: 천원)

자 산	금액
저리용자금	2,446
융자보조원가총당금	(596)
순 저리용자금	1,850

III 제거(저리융자금의 매각 및 대손)

II 저리융자금의 매각

14. (저리융자금의 매각) (1) 저리융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매각된 저리융자금의 장부가액에서 순매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순매각액은 매각액에서 수수료 등 매각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 (2) (1)에 따른 융자금의 매각손실이나 매각이익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빼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매각이익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 ☞ [관련부록 적용사례 4](#)
- (3) 매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저리융자금 매각의 경우 매수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정손실의 현재가치를 매각이 발생한 시점에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 저리융자금의 대손

15. (저리융자금의 대손) 저리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저리융자금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잔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 이 경우 저리융자금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적용사례 5](#)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4. \(2\)](#)) 저리융자금 매각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적용사례3에서 20X6회계연도 말 현재 저리융자금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20X6회계연도 말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저리융자금	912
융자보조원가충당금	(498)
순 저리융자금	414

2. 회계처리

20X7년도 초에 상기 저리융자금 전액을 100천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융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498	대) 저 리 융 자 금	912
국 고 금	100		
융 자 보 조 비 용	314		

적용사례5. (☞ [관련문단 15](#)) 저리융자금 대손발생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적용사례3에서 20X6회계연도 말 현재 저리융자금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II 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16. (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1) 저리용자금의 담보권 행사로 특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전된 특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되, 현재가치 평가는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5

- (2) 담보권 행사자산은 자산의 성격 및 형태 등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표시한다.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특정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3자가 합법적인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추정된 청구권의 현재가치는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3) 담보권 행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저리용자금의 장부가액에서 담보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

표1: 20X6회계연도 말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용자금	912
용자보조원가충당금	(498)
순 용자금	414

2. 회계처리

20X7년도 초에 저리용자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용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498	대) 저 리 용 자 금	912
용 자 보 조 비 용	414		

문단제정근거5. (☞ 관련문단 16. (1)) 담보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담보권을 행사하게 된 용자사업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취득 시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공정가액은 취득 시 활성시장에서 측정 가능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공정가액이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 취득 시점의 고유위험과 시간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로 미래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빼며 "용자보조비용"에서 처분이익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I 이자수익의 인식

17. (이자수익의 인식) 저리용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원금이나 이자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III 재무제표 표시

18. (저리용자금의 표시) 저리용자금에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순액은 대여금에 포함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4

실무해설3. (☞ 관련문단 18) 저리용자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대여금	저리용자금	저리용자금/단기
				저리용자금/장기
				용자보조원가충당금/단기
				용자보조원가충당금/장기

실무해설4. (☞ 관련문단 18) 용자보조원가충당금 표시

장·단기저리용자금에서 장·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순액은 저리용자금으로 대여금에 포함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자 산		금액
I. 자산		xxxx
금융자산		xxxx
대여금		xxxx

III 공시

19. (주석사항) 용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용자사업의 개요
 - (2) 적용이자율, 사업기간 및 용자조건
 - (3) 당기 및 전기 저리용자금 지원액
 - (4) 당기 및 전기 저리용자금 회수액
 - (5) 당기 및 전기 재정상태표일 현재 저리용자금 잔액
 - (6)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용자보조비용
 -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III 특례

20. (적용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용자사업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예규와 다른 회계처리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III 경과조치

21.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저리용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저리용자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5

실무해설5. (☞ 관련문단 21)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용자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구 「용자회계준칙」을 적용하였다.

「용자회계준칙」 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용자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제정일 2012. 12. 14.]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7.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493	부록 1. 실무해설	1-9	
● 적용범위	2	493	부록 2. 적용사례	1-2	
● 용어의 정의	3	493			
●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회계처리	4-7	496			
○ 인식	4-5	496			
○ 인식 후 평가	6-7	497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8-11	498			
○ 인식	8-9	498			
○ 인식 후 평가	10-11	499			
● 공시	12	502			
● 부칙		502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1) 감가상각과 감액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금의 현재가치평가(「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학교, 병원 등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1))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의 공공기능과 민간의 자본 및 기술을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주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제공하고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공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꼭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물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

(2)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 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3)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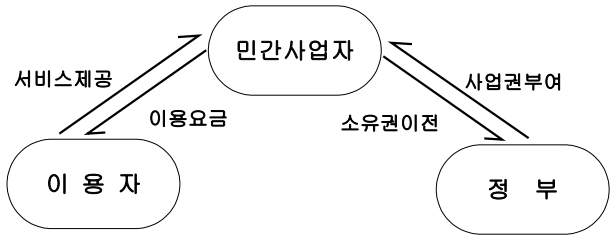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5

을 통해 비용 대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최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본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 특히 후술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국가회계실체가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지니므로 민자투자사업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무한정 민자투자사업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실무해설2. (☞ 관련문단 3. (2)) 민간사업자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용수익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회계실체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3. (3))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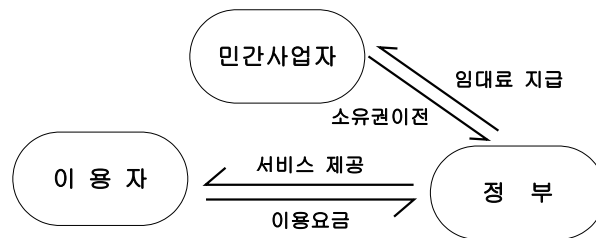


- (4)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란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협약된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국가회계실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차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5

- (5)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3. (4))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운영체계



실무해설5. (☞ 관련문단 3. (3)~(4))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 철도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 즉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시설비·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시행되고, 수익성은 떨어지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병원, 군 막사, 박물관 및 과학관, 하수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최종사용자의 사용료를 기반으로 하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국가회계실체의 시설임대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해당 시설 수요 변동에 따른 수익 변화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위험을 국가회계실체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국가회계실체가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한다.

〈BTO/BTL 방식 비교〉			
구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소유권	준공 시	국가회계실체	국가회계실체
	운영기간 종료 후	국가회계실체	국가회계실체
관 리 운 영 권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대 상 시 설 성 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도로, 철도, 항만 등)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학교, 박물관, 군인아파트 등)
투 자 비 회 수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국가의 시설임대료
사 업 리 스 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사 용 료 산 정		총사업비 기준(고시·협약체결시점 가격)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가 변동분을 별도 반영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	총민간투자비 기준(시설의 준공 시점 가격) 임대료 산정 후, 균등 분할하여 지급 임대료는 국가회계실체가 지급
재 정 지 원		건설기간 중 건설분담금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 (정부고시사업에 한함) 용지보상비 등	- - (계약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토지 무상 제공 등

III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회계처리

II 인식

4. (인식조건)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2)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인 "사용수익권"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

5. (취득원가)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민간투자비 총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2)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최초 인식 시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

II 인식 후 평가

6. (감가상각)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 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이 자산 내용연수 보다 긴 경우에는 사용수익권 제공기간 동안 감가상각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

적용사례1. (☞ 관련문단 4~7)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자산취득 시 회계처리 사례

1. 배경정보

20x1년 XX부처는 다음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물(내용연수 20년)을 취득하였다.
임대기간: 10년
기대수익률: 5.5%
총민간투자비: 100억원
부속사업순이익: 5억원/년
부속사업운영비용: 3억원/년

총 민간투자비는 100억원이며, XX부처는 사업시행자에게 향후 10년간 사용수익권을 인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단위: 억원)

2. 회계처리

- 준공 후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 -			
차) 건	물	100 대) 건 물 사 용 수 익 권	100
- 시설임대료 지급 시 및 부속사업수익 및 운영비용 정산 시 -			
해당 사항 없음			
- 감가상각시 -			
차) 건 물 감 가 상 각 비	5 대)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
차) 건 물 사 용 수 익 권	10 대) 사 용 수 익 권 상 각 이 익		10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는 경제적 실질이 자산을 기부 받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민간이 직접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회수하므로 부속 사업수익 및 운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
※ 건물 이외의 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포함)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

7.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며 이를 "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적용사례 1

III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II 인식

8. (인식조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적용사례 2

9. (취득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BTL임대료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과 민간투자비의 차액은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 관련문단 11
관련부록 실무해설 8~9
적용사례 2

관련규정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28(감가상각), 문단 32(사용수익권의 상각)

실무해설6. (☞ 관련문단 7) 사용수익권의 상각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순자산변동	재원의조달	기타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실무해설7. (☞ 관련문단 8) 국가회계실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한 관리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아, 장기연불조건으로 시설물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정부지급금을 구성하는 시설임대료(민간투자비에 해당)와 운영비 중 임대료에 대해서만 명목가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운영비는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실무해설8. (☞ 관련문단 9) 시설임대료는 자산 취득 시점에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반해 운영비는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는 자산의 취득시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약에 의해 해당 시설을 준공하고 기부채납하는 때에 국가의 지급의무가 성립하여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반면,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의 대가로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국가의 지급의무가 성립하므로 자산의 취득시점에는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II 인식 후 평가

10. (감가상각)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2

실무해설9. (☞ 관련문단 9) 임대형 민자사업(BTL)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BTL임대료미지급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금/장기
				BTL임대료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비용	국가운영비용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BTL임대료이자비용

관련규정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28(감가상각)

적용사례2. (※ 관련문단 8~11) 임대형 민간사업(BTL) 방식으로 자산취득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XX부처는 다음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물(내용연수 20년)을 취득하였다.
임대기간: 10년
연도별임대료지급방식: 매년 동일한 금액
기대수익률: 5.5%
총민간투자비: 100억원
부속사업순이익: 5억원/년
부속사업운영비용: 3억원/년

사용수익권을 인정하고 동 건물을 다시 임차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지급하여 연간 지급해야할 시설임대료는 13.27억원인 경우 임대형 민간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BTL임대료미지급금 등에 대한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2. 회계처리

- 준공후 -

차) 건물	물 ^(*1)	100	대) BTL임대료미지급금/장기 ^(*2)	132.7
	BTL임대료미지급금	32.7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1) 건물사용수익권은 형식적 요건일 뿐 경제적 실질은 임대료 명칭으로 장기연불 조건으로 건물을 취득한 거래로 간주함. 건물의 취득가액 100억원은 총 민간 투자비로서 연간 지급해야할 시설임대료 13.27억원의 현재가치와 동일함

(*2) 10년 동안 지급해야 할 연간 시설임대료 13.27억원의 명목가치임

- 시설임대료 지급 시 -

차) BTL임대료미지급금/장기	13.27	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27
BTL임대료이자비용 (*3)	5.5	BTL임대료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5.5

- 부속사업수익 및 운영비용 정산 시 -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5 대) 사용료수익 5

차) 운영비 3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3

- 감가상각 시 -

차) 건물감가상각비 5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5

※ 건물 이외의 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포함)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표

(단위: 억원)

년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4)	부채상환액	장부가액 ^(*5)
			100.00
20X1	5.50	13.27	92.23
20X2	5.07	13.27	84.04
20X3	4.62	13.27	75.39
20X4	4.15	13.27	66.27
20X5	3.65	13.27	56.65
20X6	3.12	13.27	46.50
20X7	2.56	13.27	35.79
20X8	1.97	13.27	24.49
20X9	1.35	13.27	12.58
20Y0	0.69	13.27	-

(*4)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전년도말 장부가액에 기대수익율(5.5%)를 곱하여 계산함

(*5) 장부가액은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의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최초발생액에서 부채상환에 따른 감소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함

관련규정

•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39(차입부채의 인식 후 평가)

11.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문단9에 따른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상각(환입)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관련문단 9
관련부록 적용사례 2

III 공시

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 주요 현황
- (2) 최소비용보전 협약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등의 주요 내용
- (3) (2)에 따른 최근 3개년 간 지급액
-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8.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505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2	
● 적용범위	2	506	부록 2. 실무해설	1-3	
● 용어의 정의	3	507	부록 3. 적용사례	1-2	
● 위탁자의 준공 전 회계처리	4-8	508			
○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	4-7	508			
○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	8	511			
● 위탁자의 준공 후 회계처리	9-10	511			
● 공시	11	513			
● 부칙		513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 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관련규정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1)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그 사용목적 등에 의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 (1) 행정재산: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고용자의 주거용, 공공용 목적 등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법령 또는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관련규정

-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분양·관리의 방법은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실무해설2. (☞ 관련문단 2) 이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개발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 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함
- (2) 위탁자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위탁개발자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개발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함
- (3) 처분, 임대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개발·관리 등에 따른 보수, 개발비용, 금융비용을 지급받음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탁자"란 「국유재산법」 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2) "수탁자"란 「국유재산법」 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3) "위탁개발사업"이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위탁개발사업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위탁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다.
- (5) "위탁개발자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9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으로 수탁자가 개발하고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자산을 말한다.
- (6) "개발원금"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개발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건설총액으로 개발보수 산정기준 금액을 말한다.
- (7) "개발비용"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8) "금융비용"이란 수탁자가 개발비용 재원 조달을 위해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말한다.

관련규정

-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8. 6. 26.>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6.>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9) "위탁보수"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과 관리업무수행, 재무부담 등에 대해 위탁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개발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포함한다.

(가) 개발보수: 개발원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위탁개발업무 수행 대가

(나) 관리보수: 위탁개발자산 임대(분양)와 관리 대가

(다) 성과보수: 위탁개발자산 개발비용회수기간 단축 등으로 제공하는 대가

(10) "준공전 위험"이란 정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준공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준공전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III 위탁자의 준공 전 회계처리

II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4. (건설중인자산의 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건설중인자산과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
실무해설 3
적용사례 1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6. 토지이용계획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4. 1.>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3. (10)**) 준공전 위험이란 정상적인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거래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업수행과정 중에서 환율 상승, 이자율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보다 상승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이러한 공사원가 증가분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위탁자가 준공전 위험을 대부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하자 등으로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어 수탁자가 관련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사업 수행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준공전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4**)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회계실체인 위탁자 위주로 예규를 마련하였다. 수탁자의 회계처리는 수탁자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수탁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는 준공 전까지 발생한 개발비용, 금융비용, 개발보수는 채권으로 계상하고 준공시점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준공시점에 채권으로 계상한다.

5. (금융비용) 위탁개발자산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발생한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적용사례 1

6. (현재가치 평가) 미지급금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 관련문단 8
관련부록 실무해설 3
적용사례 1

7.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 위탁개발자산은 준공시점에서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

적용사례1. (☞ 관련문단 4~7)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위탁자)는 경기도 xx시에 위치한 국유지의 위탁개발 및 개발재산의 임대·관리 업무를 B기관(수탁자)에 위탁한다. 위탁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준공전 위험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위탁개발계획 주요 내용>
- 개발내용: 공공청사와 근린시설 등 복합용도 건물로 재건축
 - 위탁기간: 준공 익일로부터 15년
 - 개발비용: 20억원(개발비용은 전액 차입금으로 조달)
 - 차입이자율: 연 5%(이자비용은 전액 차입금으로 조달)
 - 개발보수: 개발원금의 5%(위탁기간 개시 후 1년 이내 지급)
 - 관리보수: 50억원(건물취득원가+공시지가)의 0.5%(위탁기간 내 매년 지급)
 - 준공예정일: 20x2.12.31.
 - 내용연수: 50년

2. 회계처리

(1) 20x1년 당기 발생한 개발비용은 10억원, 금융비용은 0.5억원인 경우 20x1년 위탁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수탁자의 차입금 조달>
위탁자 회계처리 없음

<수탁자의 개발비용 지출>

차) 건 설 중 인 건 물	10억원	대) 기타의미지급금/장기	10억원

<수탁자의 금융비용 지출>

차) 기타의기타이자비용	0.5억원	대) 기타의미지급금/장기	0.5억원

<개발보수 인식>

차) 건 설 중 인 건 물 0.525억원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 장 기 0.525억원*

* 20x1년에 발생한 개발보수만큼 건설중인건물과 부채 인식

개발보수: (10억원+0.5억원)(개발원금=개발비용+금융비용) × 5%(약정보수율) = 0.525억원

(2) 20x2년말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당기 발생한 개발비용은 10억원, 금융비용은 1억원 인 경우 20x2년 위탁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수탁자의 개발비용 지출>

차) 건 설 중 인 건 물 10억원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 장 기 10억원

<수탁자의 금융비용 지출>

차) 기 타 의 기 타 이 자 비 용 1억원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 장 기 1억원

<개발보수 인식>

차) 건 설 중 인 건 물 0.55억원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 장 기 0.55억원*

* 당기 개발보수 인식: (10억원+1억원)(당기개발원금) × 5%(약정보수율) = 0.55억원

<건물 준공 시 건설중인건물 대체>

차) 건 물 21.075억원 대) 건 설 중 인 건 물 21.075억원*

* 건물 대체금액: 20억원(개발비용) + 0.525억원(20x1년 개발보수) + 0.55억원(20x2년 개발보수) = 21.075억원

(3) 임대수익은 총 5억원이며, 위탁개발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물관리비(관리용역비)는 0.5억원, 개발보수는 1.075억원, 관리보수(지급수수료)는 0.25억원이다. 20x3년 이후 발생하는 임대수익, 건물관리비, 관리보수는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x3년 위탁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임대수익은 위탁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관리용역비, 개발보수, 관리보수, 금융비용, 개발비용 및 국고 귀속 순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함)

<기중 임대수익 및 건물관리비용 발생>

회계처리 없음(매년 정산시점에 일괄하여 회계처리)

<준공 후 금융비용 인식>

차) 기 타 의 기 타 이 자 비 용 1.075억원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 장 기 1.075억원*

* 금융비용: (20억원+1.5억원)(총 차입금=개발비용+금융비용) × 5%(차입이자율) = 1.075억원

<위탁사무 정산>

차) 관 리 용 역 비 0.5억원 대) 사 용 료 수 익 * 5억원

기타의미지급금/장기(개발보수) 1.075억원

지 급 수 수 료 (관 리 보 수) 0.25억원

기타의미지급금/장기(금융비용) 2.575억원

기타의미지급금/장기(개발비용) 0.6억원

* 사용료수익은 관리용역비, 개발보수, 관리보수, 금융비용, 개발비용 순으로 상계한다고 가정함

<건물 감가상각>

차) 건 물 감 가 상 각 비 0.4215억원*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0.4215억원

* 감가상각비: 21.075억원(건물) ÷ 50년(내용연수) = 0.4215억원

(4) (3)의 정보와 동일하며 개발원금 및 금융비용 상환을 완료한 경우 위탁사무 정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탁사무 정산 회계처리>

차) 관 리 용 역 비 0.5억원 대) 사 용 료 수 익 5억원

지 급 수 수 료 0.25억원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4.25억원



8. (준공시점의 자산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시점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는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개발비용(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과 개발보수로 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문단6에 따라 평가한다.

III 위탁자의 준공 후 회계처리

9. (위탁보수와 위탁개발자산 관리·처분비용)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위탁개발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정기간 위탁하며, 그 대가로 수탁자의 관리·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인식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등은 "지급수수료"로 인식한다.

10. (위탁개발자산 관련 수익·비용 상계)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단9에서 정한 비용과 미지급된 개발원금 등은 위탁개발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 재원으로 하여 위탁개발사업계획에 약정된 순서대로 상계한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8~10)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

배경정보는 사례1과 같다.

(1) 20x1년: 회계처리 없음

- (2) 20x2년 회계처리

차) 건 물 22.575억원* 대) 기타의미지급금/장기 22.575억원

* 건물 취득가액: 20억원(개발비용) + 1.075억원(개발보수) + 1.5억원(금융비용)
= 22.575억원

- (3) 20x3년 회계처리

<기중 임대수익 및 건물관리비용 발생>

회계처리 없음(정산시점에 일괄하여 회계처리)

<전공 후 금융비용 인식>

* 금융비용 : (20억원+1.5억원)(총 차입금= 개발비용+금융비용) × 5%(차입이자율)
= 1.075억원

<위탁사무 정산>

차) 관 리 용 역 비	0.5억원	대) 사 용 료 수 익*	5억원
기타의미지급금/장기(개발보수)	1.075억원		
지 급 수 수 료 (관 리 보 수)	0.25억원		
기타의미지급금/장기(금융비용)	2.575억원		
기타의미지급금/장기(개발비용)	0.6억원		

* 사용료수익은 관리용역비, 개발보수, 관리보수, 금융비용, 개발비용 순으로 상계한다고 가정함

<건물 감가상각>

차) 건 물 감 가 상 각 비 0.4515억원*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0.4515억원

* 감가상각비: 22.575억원(건물) ÷ 50년(내용연수) = 0.4515억원

(4) (3)의 정보와 동일하며 개발원금 및 금융비용 상환을 완료한 경우 위탁사무 정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위탁사무 정산 회계처리>

차) 관 리 용 역 비 0.5억원 대) 사 용 료 수 익 5억원
지 급 수 수 료 0.25억원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4.25억원

실무해설3. (☞ 관련문단 4~6, 9)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상세 계정과목

(1) 건설중인자산과 기타의미지급금/장기 (☞ 관련문단 4~6)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건물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금/장기

(2) 위탁보수와 위탁개발자산 관리·처분비용 (☞ 관련문단 9)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외주용역비	관리용역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III 공시

11.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주석사항) 위탁자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준공여부
- (2) 수탁자의 명칭
- (3) 사업의 명칭
- (4) 개발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 (5) 개발원금(개발비용과 금융비용)
- (6) 위탁기간과 위탁보수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19.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517
● 적용범위	2	517
● 용어의 정의	3	517
● 일반사항	4-9	518
● 원가의 계산 절차	10-28	520
○ 비용과 수익의 집계	11-12	521
○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13-15	524
○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16-23	525
● 행정운영성 경비와 직접원가의 구분	16-19	525
●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	20-22	526
○ 간접원가 배부	23-24	529
○ 재정운영순원가 산출	25-28	530
● 부칙		531

	【문단번호】	【페이지】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
부록 2. 실무해설		1-17
부록 3. 적용사례		1-4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31조 등에 따라 원가계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거나 내부관리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재정운영표의 표시와 구조에 대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가"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 (3) "원가 집계 대상"이란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 (4)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III 일반사항

4. (원가계산의 목적) (1)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자나 예산편성 관계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 (2)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의 회수 정도와 사업의 운영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사업관리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3)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5.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1)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 (3)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 (4) 국가회계실체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6. (국가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의 적용) (1)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행정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나) 사업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7. (원가시스템의 구축)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운영순원가의 산출과 내부관리 목적의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8. (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9.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1)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실무해설1. (☞ 관련문단 7) 원가계산을 통해 내부관리 및 재정운영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법 제5조(회계연도)

실무해설2. (☞ 관련문단 9. (1)) 사업예산의 편성단위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프로그램 예산체계 하에서 세출(또는 지출)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9. (2)) 재정운영표 작성을 위한 원가 집계 대상은 프로그램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여부 평가, 원가 회수를 파악을 통한 사업성과 측정 등 국가회계실체가 통제나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측정이 필요한 단위로 원가집계대상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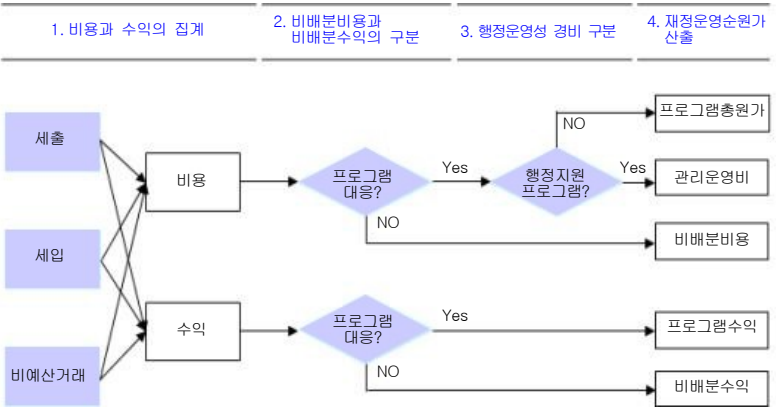
III 원가의 계산 절차

10. (원가의 계산 절차) 원가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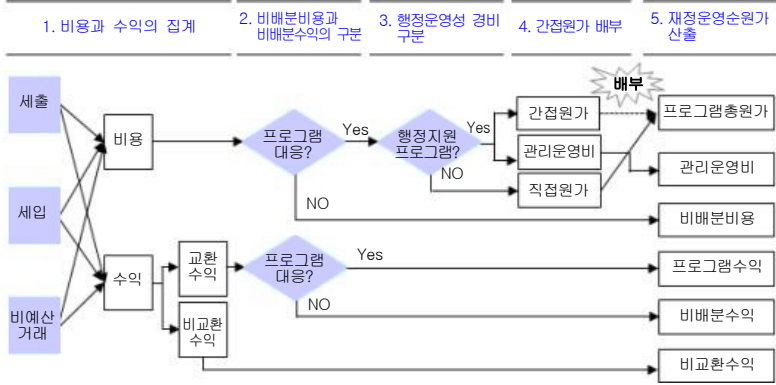
- (1) 비용과 수익의 집계
- (2)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 (3)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 (4) 간접원가 배부
- (5) 재정운영순원가 산출

☞ 관련부록 실무해설 4~5, 17
적용사례 4

실무해설4. (☞ 관련문단 10) 행정형회계 원가계산절차



실무해설5. (☞ 관련문단 10) 사업형회계 원가계산절차



II 비용과 수익의 집계

11. (비용과 수익의 집계) (1)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는 예산과목을 계정과목과 대응시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으로 변환되며, 이 중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수익과 비용이 원가계산의 대상이다. 다만, 비용 중 정부내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등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되는 기타이전비용은 원가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가계산을 위한 수익과 비용은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세출 예산의 집행시 해당 프로그램 정보가 계정과목에 의한 회계처리 시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나) 현재 장/관/항/목의 체계로 구성된 세입은 수익의 프로그램별 집계를 위해서 수입 징수결의 시 세입 처리의 최하위 단위(목)로 프로그램과 대응시켜야 한다.

(다) 세출 또는 세입 예산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거래는 관련 자산·부채의 프로그램별 귀속에 따라 대응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대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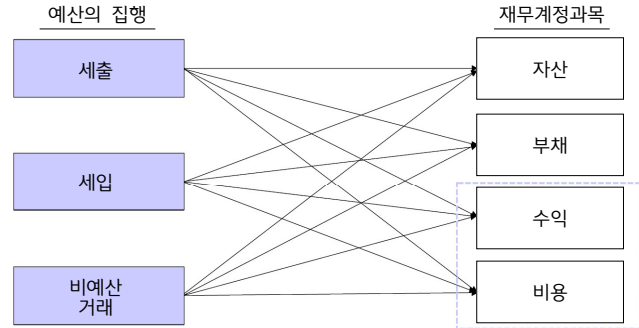
☞ 관련부록 실무해설 6~7

적용사례 1

관련규정

• 비용 회계처리지침 문단8(기타이전비용)

실무해설6. (☞ 관련문단 11) 원가계산의 대상



실무해설7. (☞ 관련문단 11) 세입목의 프로그램 대응 예시

소관	세입목	해당 프로그램
조달특별회계	내자구매사업수입	물자 및 시설조달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국판매수익	양곡수급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	우체국보험내실화
양곡관리특별회계	부산물기타판매수입료	양곡수급관리
조달특별회계	비축물자사업수입	원자재 비축관리
국립중앙과학관	시설계약사업수입	국립중앙과학관운영
조달특별회계	외자구매사업수입	물자 및 시설조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사업수입	우편사업경쟁력강화
공무원연금기금	자치단체연금부담금	시설운영사업
양곡관리특별회계	잡곡판매수익	양곡수급관리
농지관리기금	재고자산매각대	농업생산기반확충
각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각 책임운영기관의 프로그램

* 상기 예시는 세입목별 프로그램 대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소관별 세입목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대응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1)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가)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나)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행정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하고, 사업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8

적용사례1. (☞ 관련문단 11) 비용과 수익의 집계 예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 비예산 거래의 발생 시 재무계정과목으로 변환되며,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프로그램별로 집계한다.

구분	예산 목명	재무계정과목	비고	원가계산 대상	프로그램 대응	구분
세출	융자금/기타 민간융자금	일반융자금	자산	X	-	-
	운영비/시험연구비	선급금	자산	X	-	-
	운영비/시험연구비	유류비	비용	O	철도 안전 및 운영	프로그램총원가
	인건비/보수	정액급여	비용	O	종합행정지원프로그램	관리운영비
세입	토지대여료	사용료수익	수익	O	-	비배분수익
	항공항만수입	사용료수익	수익	O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프로그램수익
비예산	-	자산평가손실	비용	O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프로그램총원가
	-	자산평가손실	비용	O	-	비배분비용

* 상기 예시는 비용과 수익의 집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예산과 계정과목과의 대응과 프로그램 대응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12. (1)) 현재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프로그램별로 대응이 어려워므로 프로그램수익의 별도 표시를 유예한다.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2. (2)) 다음의 계정과목은 비교환수익으로 구분 집계된다.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세수익	국세수익		
		미수국세 대손상각비		
		미수국세 대손충당금환입		
	이전수익	사회보험수익	국민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사학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2)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 수입, 병원수입 등을 포함한다)
- (나) 공무원연금수익 및 군인연금수익
- (다) 보험수익 및 보증수익
- (라)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이전수익	사회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보험수익환급금
			산재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산재보험수익환급금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환급금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과태료수익
				과태료수익환급금
				과징금수익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가금수익
				징계부가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
				환급금
		기타이전수익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정부외기부금
				정부외자산수증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정부내자산수증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환급금

Ⅱ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13. (비배분비용)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14. (비배분수익) 교환수익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0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충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충원가 혹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1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3)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4)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15.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지만 코드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다.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예시

구분	프로그램
내부거래지출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간거래(예탁금), 회계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예탁금),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계정간거래(전출금), 계정간거래(예탁금),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보전지출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

II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I 행정운영성 경비와 직접원가의 구분

16. (행정운영성 경비) 행정운영성 경비는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을 말하며, 행정지원프로그램은 조직의 기능수행과 행정지원 목적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별도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17.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행정형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 (2) 사업형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16) 특정 부서나 프로그램이 아닌 기관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은 7000~9000번대 코드를 사용하여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별도 편성하고 있으나, 3000~3900번대 코드 등 실질적으로 기관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본다.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17, 19) 비배분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행정운영성 경비와 직접원가로 구분한다.

- (1) 행정형회계는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행정운영성 경비)을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하고, 프로그램에 집계된 직접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한다.

비배분비용을 제외한 비용	행정운영성 경비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직접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2) 사업형회계는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행정운영성 경비)을 프로그램과 관련 여부에 따라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로 구분하고,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직접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한다.

비배분비용을 제외한 비용	행정운영성 경비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경비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경비	: 간접원가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직접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18. (직접원가) (1) 직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직접 소요된 원가를 말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

(나) 특정 사업의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재화및용역 제공원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

(2)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19. (직접원가의 구분) 행정지원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원가에 해당하여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

20.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21. (간접원가) (1)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국가회계실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국가회계실체 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국가회계실체 간 간접원가"라 한다)로 구분된다.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21**) 국가회계실체 내 간접원가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동일한 국가회계실체 내의 타 프로그램이 가지는 경우, 효익을 제공받은 프로그램이 원가가 발생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간접원가를 의미한다.

(2) 간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과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4~15

22.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절차) 사업형회계의 원가결산담당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정운영성 경비를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로 구분한다.

- (1) 행정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단위사업별로 비용을 집계한다.
- (2) 단위사업별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간접원가로 구분하고,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없이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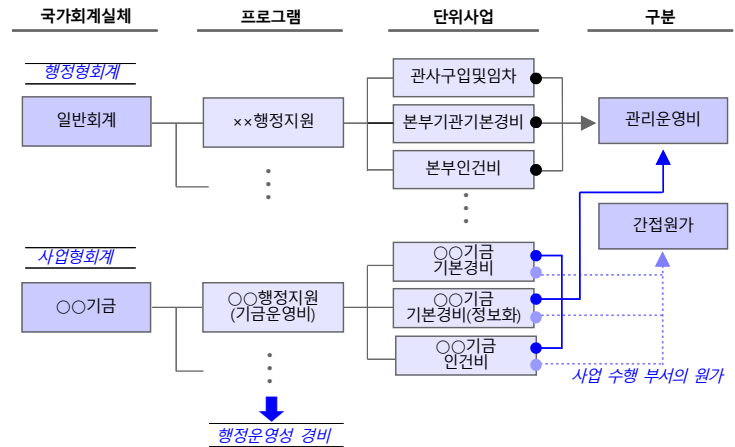
(3) 하나의 단위사업이 프로그램 수행 및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모두 관련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부율을 적용하여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를 구분한다.

- (가) 인원수 비율
- (나) 직접원가 비율
- (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비율

☞ 관련부록 적용사례 2~3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21) 국가회계실체 간 간접원가는 특정 국가회계실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국가회계실체에서 가지는 경우, 효익을 제공받은 국가회계실체가 원가가 발생한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배부받은 간접원가를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에서 집행되는 공무원연금 고용주부담금,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 및 군인연금 고용주부담금, 보건복지부가 집행한 건강보험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국가회계실체 간 간접원가는 회계처리를 통하여 해당 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배부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실무해설16. (☞ 관련문단 22, (2))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의 구분 예시



적용사례2. (☞ 관련문단 22. (3)) 인원수 비율을 적용하여 간접원가와 관리 운영비를 구분

인원수 비율을 적용하여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투입 인력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음

(1)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12명인 경우 12명/26명의 비율을 적용하여 간접원가를 구분함

(2)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고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14명인 경우에는 14명/26명의 비율을 적용하여 관리운영비를 구분함

〈프로그램 별 투입인력 현황표 예시〉

XX국/실					(단위: 명)
구분	OO사업부	XX사업부	기획조정실	총무팀	합계
프로그램 A	3	2	-	-	5
프로그램 B	1	4	-	-	5
프로그램 C	2	-	-	-	2
공통	2	1	5	6	14
합계(명)	8	7	5	6	26

적용사례3. (☞ 관련문단 22. (3)) 사업별 집계금액 비율의 집계

사업별 집계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프로그램의 단위사업별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 금액을 이용함

사업구분	집계액(A)	간접원가 배부액 산정(B)	원가합계(A+B)
단위사업 A	100원(간접원가)	$3,000 \times (100\text{원}/300\text{원})=1,000\text{원}$	1,100원
단위사업 B	200원(관리운영비)	$3,000 \times (200\text{원}/300\text{원})=2,000\text{원}$	2,200원
단위사업 C	3,000원(공통)	-3,000원	-

II 간접원가 배부

23. (간접원가 배부절차) (1) 원가결산담당자가 간접원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선택한다.
- (2) 간접원가를 배부받을 프로그램을 정한다.
- (3) 간접원가 배부 산식에 의해 배부액을 산정하여 해당 프로그램별로 배부한다. 다만, 배부의 편의를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그룹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간접원가의 배부 산식〉

- ▶ 배부액 = 배부할 금액 X 배부율
- ▶ 배부율 = 해당 프로그램의 배부기준/프로그램별 배부기준의 총합계

24. (간접원가 배부기준)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적용이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한 것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 (4) 생산품의 수량
 -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II 재정운영순원가 산출

25.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의 구분에 따라 계산을 달리한다.

- (1) 행정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국가회계실체에서 배부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국가회계실체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원가 ± 국가회계실체 간 간접원가

- (2) 사업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국가회계실체에서 배부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 또는 국가회계실체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원가 ± 국가회계실체 간·국가회계실체 내 간접원가

26.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27. (프로그램순원가) (1)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 (2)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투입한 원가로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8. (재정운영순원가) (1)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begin{aligned} \blacktriangleright \text{재정운영순원가} &= \text{프로그램순원가} + \text{관리운영비} + \text{비배분비용} \\ &\quad - \text{비배분수익} \end{aligned}$$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적용사례4. (※ 관련문단 10) 원가계산 종합예시

다음 예시는 원가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달특별회계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조달특별회계의 실적 및 프로그램의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Step1] 비용과 수익의 집계

조달특별회계의 비용과 수익이 다음과 같이 집계됨

1) 비용

- ① 원가는 프로그램별로 집계하나, 사업형회계의 행정운영성 경비는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 구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집계함^(※1)
- ② 자산 취득 시 관련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대응시킴
 - ‘물자 및 시설조달’ 프로그램으로 대응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프로그램총원가로 집계됨^(※2)
 -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자산처분손실은 비배분비용으로 집계됨^(※3)

※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

세출		재무계정과목	금액	비고
프로그램/단위사업	목			
물자 및 시설조달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34,040,000	프로그램총원가
	-	감가상각비 ^(※2)	1,050,000	프로그램총원가
원자재 비축 관리	운영비	지급수수료	165,000	프로그램총원가
전자조달운영	인건비	인건비	15,520,000	프로그램총원가
-	-	감가상각비 ^(※3)	250,000	비배분비용
	-	자산처분손실 ^(※3)	121,000	비배분비용
조달 행정 지원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확충	인건비	1,619,000	행정운영성 경비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여비	810,000	
	기본경비	인쇄비	10,054,000	
	부산비축기지 이전	건설비	144,000	
	서울청사 어린이집 운영	민간이전	외주용역비	
	인건비	인건비	48,679,000	
	조달전문교육 운영	운영비	외주용역비	
계			113,154,000	

2) 수익

- ① 수입 징수결의 시 세입목별로 관련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대응시킴
- ② 위약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므로 비교환수익으로 구분

세입(목)	재무계정과목	금액	관련 프로그램	비고
내자구매사업수입	재화및용역제공수익	76,700,000	물자 및 시설조달	프로그램수익
비축물자사업수입	재화및용역제공수익	8,100,000	원자재 비축관리	프로그램수익
토지대여료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90,000	-	비배분수익
위약금	제재금수익	840,800	-	비교환수익
계		87,030,800		

(2) [Step2]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의 구분

특정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항목은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

목 명칭	재무계정과목	금액	비고
-	감가상각비	250,000	비배분비용
-	자산처분손실	121,000	비배분비용
토지대여료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90,000	비배분수익

(3) [Step3]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1) [Step3-1] 단위사업별로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 구분

행정지원프로그램에 집계된 비용(행정운영성 경비)을 단위사업별로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

※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간접원가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우: 관리운영비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된 경우: 공통

프로그램	단위사업	금액	구분
조달행정지원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확충	1,619,000	간접원가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810,000	간접원가
	기본경비	10,054,000	공통 [Step3-2]
	부산비축기지 이전	144,000	간접원가
	서울청사 어린이집 운영	179,000	관리운영비
	인건비	48,679,000	공통 [Step3-2]
	조달전문교육 운영	523,000	간접원가
	계	62,008,000	



2) [Step3~2] 단위사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인원수 비율로 배부

- ①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 성격이 모두 포함된 단위사업은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있는
인원수와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수의 비율로 배부
조달특별회계의 프로그램별 투입인력 현황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

<조달특별회계의 프로그램별 투입인력 현황표>

(단위:명)

구분	시설총괄과	원자재비축과	정보관리과	경영지원팀	합계
물자및시설조달	7	-	-	-	7
원자재비축관리	-	6	-	-	6
전자조달운영	-	-	5	-	5
공통	-	3	5	4	12
합계(명)	7	9	10	4	30

※ 프로그램 관련 인원수(물자 및 시설조달, 원자재비축관리, 전자조달운영): 18명
프로그램 무관 인원수(공통): 12명

- ②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 성격이 모두 포함된 기본경비와 인건비 단위사업을 인원수
비율로 배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사업	금액	배부대상	배부기준 (인원수)	배부율	배부액
기본경비	10,054,000	간접원가	18	60%	6,032,400
		관리운영비	12	40%	4,021,600
인건비	48,679,000	간접원가	18	60%	29,207,400
		관리운영비	12	40%	19,471,600
계	58,733,000				58,733,000

(4) [Step4] 부서내 간접원가 배부

[Step3]에서 간접원가로 구분된 금액은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배부

부서내 간접원가 (단위사업)	금액	배부대상 프로그램	배부기준	배부기준액	배부율	배부액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확충	1,619,000	물자 및 시설조달	직접원가	34,040,000	69%	1,112,001
		전자조달운영		15,520,000	31%	506,999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810,000	물자 및 시설조달	직접원가	34,040,000	69%	556,344
		전자조달운영		15,520,000	31%	253,656
부산비축기지 이전	144,000	원자재 비축관리	-	-	100%	144,000
조달전문 교육 운영	523,000	물자 및 시설조달	인원수	7	58%	305,083
		전자조달운영		5	42%	217,917
소계(a)	3,096,000					3,096,000
공통	기본경비 6,032,400	물자 및 시설조달	인원수	7	39%	2,345,933
		원자재 비축 관리		6	33%	2,010,800
		전자조달운영		5	28%	1,675,667
	인건비 29,207,400	물자 및 시설조달	인원수	7	39%	11,358,433
		원자재 비축 관리		6	33%	9,735,800
		전자조달운영		5	28%	8,113,167
소계(b)	35,239,800	-	-	-	-	35,239,800
총계(a+b)	38,335,800	-	-	-	-	38,335,800

단위사업별 직접원가 및 간접원가 배부된 총원가 금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배부전총원가 (A)	부서내 간접원가 배부액(B)	배부후총원가 (C=A+B)
물자 및 시설조달	35,090,000	15,677,794	50,767,794
원자재 비축 관리	165,000	11,890,600	12,055,600
전자조달운영	15,520,000	10,767,406	26,287,406
계	50,775,000	38,335,800	89,110,800

(5) [Step5]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작성

- ① [Step4]에 의한 부서내 간접원가 배부액을 당초 집계된 프로그램별 원가에 가산하여 프로그램별 총원가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재정운영표를 작성

구분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89,110,800	84,800,000	4,310,800
물자 및 시설조달	50,767,794	76,700,000	(-)25,932,206
원자재 비축 관리	12,055,600	8,100,000	3,955,600
전자조달운영	26,287,406	-	26,287,406
II. 관리운영비			23,672,200
인건비			19,471,600
경비(*1)			4,200,600
- 외주용역비			179,000
- 인쇄비			4,021,600
III. 비배분비용(*2)			371,000
감가상각비			250,000
자산처분손실			121,000
IV. 비배분수익			1,390,000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90,00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6,964,000
VI. 비교환수익 등			840,800
제재금수익			840,800
VII. 재정운영결과(V-VI)			26,123,200

(*1) '경비' 금액은 [Step 3-1]에서 구분된 서울청사 어린이집 운영경비 179,000원과 [Step 3-2]에서 구분된 기본경비 4,021,600원의 합계임

(*2) 비배분비용은 [Step1]에서 집계된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자산처분손실의 합계임

실무해설17. (※ 관련문단 10) 예산제계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흐름

예 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구분	예산 단위		원가의 구분
세출	프로그램(가)	단위사업(가)-1	직접원가
		단위사업(가)-2	
	프로그램(나)	단위사업(나)-1	직접원가
		단위사업(나)-2	
		단위사업(나)-3	
	행정지원 프로그램(다) (행정형)	단위사업(인건비)	관리운영비
		단위사업(운영경비)	
	행정지원 프로그램(라) (사업형)	단위사업(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관련: 간접원가)
		단위사업(운영경비)	
세입	(A)목: (가)에 대응됨		프로그램수익
	(B)목: (나)에 대응됨		프로그램수익
	(C)목: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음		비배분수익

①

①

②

③

④

1.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가): 프로그램총원가 - 수익

· 프로그램(나): 프로그램총원가 - 수익

2. 관리운영비

3. 비배분비용

4. 비배분수익

5. 재정운영순원가(1+2+3-4)

6. 비교환수익

7. 재정운영결과(5-6)

①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

② 행정형 행정운영성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사업형 행정운영성 경비는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

③ 사업형회계의 간접원가는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원가 집계 대상에 배부

④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수익은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

20.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539
● 적용범위	2	539
● 용어의 정의	3	539
● 국고금과 국고금회계	4-6	540
●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7-21	542
○ 국고금의 수납	7-8	542
○ 국고금의 지출	9-10	545
○ 수입금의 반환	11-13	549
○ 국고금의 운용	14-17	555
○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8	562
○ 상호예탁반환	19-21	563
● 부칙		565

	【문단번호】	【페이지】
부록 1. 실무해설		1-14
부록 2. 적용사례		1-16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고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및 국고금회계의 국가 재무제표 반영 등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고금"이란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산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4.]
-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5(현금및현금성자산)

- (2) "국고금회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과 다른 별도의 회계로서 국고로 납입되어 관리되는 수입, 예산의 배정에 따른 지출 및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등 국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나의 회계에서 모아 회계처리하기 위한 자금관리 회계를 말한다.
- (3) "기타특별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를 말한다.

III 국고금과 국고금회계

4. (국고금의 분류) 국고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한국은행국가예금: 한국은행에 납입 또는 예탁한 국고금
- (2)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고은행에 납입 또는 예치한 국고금
- (3) 삭 제 <2015.12.31.>
- (4) 국고예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지급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금
- (5)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취득한 운용자산(한국은행국가예금은 제외한다)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 (6) 기타국고금: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금 등의 보유액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

실무해설1. (☞ 관련문단 4) 국고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5. (국고금회계의 적용범위 및 결산) (1) 국고금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 적용하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고 국고금회계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금회계 내 일반회계 계정에서 처리하고,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 국고금회계 내 중앙관서별 특별회계 계정에서 처리한다.
- (2)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3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문단 14(국고금회계의 통합)

실무해설2. (☞ 관련문단 5~6)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 국고통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을 기획재정부의 국고 계정에 납입 후 예산배정을 통해 지출 재원을 마련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경우 국고금회계를 통해 국고계정에 납입되고, 국고계정에서 지출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반면, 세입·세출예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의 국고금과, 자금운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국고금은 국고금회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6. (국고금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국고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3

III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II 국고금의 수납

7. (국세수익의 수납) (1) 국세수익(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국세는 제외한다)을 수납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

실무해설3. (☞ 관련문단 5~6) 국가회계실체별 재무제표상 국고금 표시 여부 등

구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회계 적용 여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상 국고금 표시여부
			국고금	통합관리 여부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15개 ^(*1)	○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	×	○
	기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	×	×	○
		우편사업특별회계	○	○	×	○
		조달특별회계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	○	×	○
기금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	×	×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	×	×	×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조성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특허청

실무해설4. (☞ 관련문단 7~8) 국고금 수납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국세징수	처분	국고이전지출
		타회계이전

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2) 국세수익 중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세입이 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을 수납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회계이전"으로 처리하고,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순자산변동표에 "정부내전입금"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며,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5
적용사례 1~2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순자산변동	재원의조달	국고이전수입
	재원의이전	국고이전지출

적용사례1. (☞ 관련문단 7) 국세 수납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씨는 20X8년 5월 31일자로 기한이 마감되는 소득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회계처리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국세징수활동표)	5,000,000	대) 소 득 세 수 익 (국세징수활동표)	5,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5,000,000

적용사례2. (☞ 관련문단 7.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회계처리(지방자치단체 징수분)

1. 배경정보			
농어촌특별세	징수결의	1,000	수납 800
<기획재정부>	징수결의	1,000	수납 800 미수납 200
<농림축산식품부>	수납후징수결의	800	수납 800
2. 회계처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 징수결의 시 -			

차) 미 수 국 세 (재 정 상 태 표)	1,000 대)	국 세 수 익 (국 세 징 수 활 동 표)	1,000

- 수납 시 -

차) 농 특 세 이 전 지 출 (국 세 징 수 활 동 표)	800 대)	미 수 국 세 (재 정 상 태 표)	800

- 결산 시 -

차) 미 수 국 세 의 증 감 (국 세 징 수 활 동 표)	200 대)	국 세 수 익 조 정 (재 정 상 태 표)	200

※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징수하여 국고금 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를 거치게 되므로 국고이전지출 대신에 별도로 농특세이전지출을 사용함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

- 수납 후 징수결의 시 -

차) 국 고 이 전 지 출 ^(*)	800 대)	농 특 세 이 전 수 입 ^(*)	800

(*) 국고이전지출 회계처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순자산변동표에 반영됨

실무해설5. (☞ [관련문단 7. \(2\)](#)) 농어촌특별세수익, 주세수익의 경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이지만 국세청에서 그 징수업무를 수행하므로 국세청의 국세징수활동표에 해당 국세수익을 반영할 때 기타특별회계의 순자변동표에 "정부내전입금" 중 "농특세이전수입" 또는 "주세이전수입"을 반영한다.

8. (국세 이외의 수입금의 수납)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부담금 등의 수납, 자산처분, 차입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재무제표에 관련 수익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적용사례 3

II 국고금의 지출

9. (세출예산지출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7**
적용사례 4~5

적용사례3. (☞ 관련문단 8) 국세 이외의 수입금의 수납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대법원 일반회계는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100만원의 임대료를 수납하였다.			
2. 회계처리			
<대법원 - 일반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000,000	대) 사 용 료 수 익	1,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1,000,000

실무해설6. (☞ 관련문단 9~10) 국고금 지출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순자산변동	재원의조달	국고수입
	재원의이전	세출예산지출액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연간 예산배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득한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월별자금계획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실제 자금의 집행은 개별 지출관의 요구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한국은행 본점의 국고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무제표에는 연간 예산배정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한 자금 배정 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지출) 시 회계처리한다.

적용사례4. (☞ 관련문단 9)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지출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Case 1>

OO부처 일반회계에서 연구비 1천만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였다.

<Case 2>

OO부처 일반회계에서 정부산하기관에 장기로 1억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였다.

2. 회계처리

<Case 1>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1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OO부처 일반회계>

차) 연 구 개 발 비 10,000,000 대) 국 고 수 입 10,000,000

<Case 2>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100,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0

<OO부처 일반회계>

차) 일 반 용 자 금 / 장 기 100,000,000 대) 국 고 수 입 100,000,000

적용사례5. (☞ 관련문단 9)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지출 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3월 1일에 OO부처 OO특별회계에서 임대료수익 10,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20X1년 5월 1일 OO부처 OO특별회계에서 정부산하기관에 장기로 5,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내에서 집행하였다.

10. (관서운영경비)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국고예금"을 증가시킨다.
-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국고금회계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고수입"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2. 회계처리

- 20X1년 3월 1일 수입 발생 시 -

<OO부처 OO특별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0,000,000 대) 사 용 료 수 익 10,000,000

<국고금회계 - OO특별회계 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10,000,000

- 20X1년 3월 1일 특별회계 귀속 수익의 예산 배정 시 -
해당사항 없음

- 20X1년 5월 1일 예산 내 집행 시 -

<국고금회계 - OO특별회계 계정>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5,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OO부처 OO특별회계>

차) 일 반 용 자 금 / 장 기 5,000,000 대) 국 고 수 입 5,000,000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0)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남은 잔액을 국고금회계로 반납하게 되므로, 기말시점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에서는 "국고예금"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고금 끝수 계산'에 따라 "국고예금"의 잔액이 나타날 수 있다.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0) 관서운영경비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3월 1일 OO부처 일반회계에서 직원의 해외출장비로 여비를 관서운영경비 규정에 따라 100만원을 선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직원은 해외출장 후인 20X1년 5월 1일 사후정산을 위하여 여비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 후 남은 잔액인 20만원을 반납하였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8
적용사례 6

2. 회계처리

- 20X1년 3월 1일 국고금회계로부터 관서운영경비 교부 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1,0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

<OO부처 일반회계>
차) 국 고 예 금 1,000,000 대) 국 고 수 입 1,000,000
- 20X1년 3월 1일 관서운영경비 지급 시 -
<OO부처 일반회계>
차) 국 외 여 비 1,000,000 대) 국 고 예 금 1,000,000
- 20X1년 5월 1일 관서운영경비 잔액 반납 시 -
<OO부처 일반회계>
차) 국 고 예 금 200,000 대) 국 외 여 비 200,000
차) 국 고 수 입 200,000 대) 국 고 예 금 2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 대) 세 출 예 산 지 출 액 200,000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 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 [전문개정 2012. 12. 27.]

수입금의 반환

11.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1~13) 수입금의 반환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전기과오납금반환금	

(2)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해당 국세 수익에 대한 "국세환급금"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적용사례 7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환급금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환급금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	사용료수익환급금
				수수료수익환급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환급금
		기타국가운영수익	보증수익	보증수익환급금
			보험수익	보험수익환급금
	이전수익	사회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환급금
			산재보험수익	산재보험수익환급금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환급금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과태료수익환급금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가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환급금
		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국세징수	국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국세환급금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국세환급금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국세 징수	국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국세환급금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국세환급금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국세환급금	
		재평가세수익	재평가세수익국세환급금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국세환급금	
		주세수익	주세수익국세환급금	
		전화세수익	전화세수익국세환급금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국세환급금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국세환급금	
		관세수익	관세수익국세환급금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국세환급금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국세환급금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국세환급금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국세환급금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 국세환급금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국세환급금	
		토지초과이득세수익	토지초과이득세수익 국세환급금	
		지방교육양여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 국세환급금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국세환급금	

12.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과와 수납 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1) 국세환급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국세청은 OO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 100만원을 환급하였다.

2. 회계처리

- 환급금 지급 결정 시 -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국 세 수 익 - 1,000,000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1,000,000
 법인세수익국세환급금

- 환급금 지급 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국 고 이 전 수 입 1,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

<국세청 - 일반회계>

차) 기 타 의 미 지 급 금 1,000,000 대) 국 고 이 전 지 출 1,000,000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총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2)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국고 수입", "세출예산지출액"이 상계제거되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 특별회계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전기과오납반환금" 잔액으로 남게 된다.

것을 말한다.

(2)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가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수익을 차감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8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전기과오납반환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11
적용사례 9

실무해설11. (☞ 관련문단 12) 문단12의 회계처리하는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 잔액이 세계잉여금으로 '국고금회계'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4.]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적용사례8. (☞ 관련문단 12, (2), (가))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의 과오납반환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초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이후 20X1년말 시정에서 오류로 300,000원을 추가 수취한 것을 인지하고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회계처리

- 과오납반환금 지급 결정 시 -

<OO부처 일반회계>

차) 사 용 료 수 익	300,000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300,000

13.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관련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 과오납반환금 지급 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국 고 이 전 수 입	3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OO부처 일반회계>

차) 기 타 의 미 지 급 금	300,000	대) 국 고 이 전 지 출	300,000

적용사례9. (※ 관련문단 12. (2). (나)) 전년도 발생한 수입의 과오납반환금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 OO특별회계는 20X1년 초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이후 20X2년 초 시점에서 오류로 300,000원을 추가 수취한 것을 인지하고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중요한 오류수정이 아닌 것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

2. 회계처리

- 20X2년 과오납반환금 지급 결정 시 -

<OO부처 OO특별회계>

차) 전기과오납금반환금	300,000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300,000

- 과오납반환금 지급 시 -

<국고금회계 - OO특별회계 계정>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300,000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

<OO부처 OO특별회계>

차) 기 타 의 미 지 급 금	3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4.]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 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 수익에 대한 "환급금"으로 인식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9**
적용사례 10

Ⅱ 국고금의 운용

14. (국고금운용계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국고금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2**

적용사례 10. (☞ **관련문단 13**) 수입금 환급 회계처리

1. 배경정보

OO부처 일반회계는 20X1년 초 임대료수익 1,000,000원을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나, 이후 20X1년말 시점에 법률변경에 의거하여 임대료수익 3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회계처리

- 환급금 지급 결정 시 -

<OO부처 일반회계>

차) 사용료수익환급금	300,000	대) 기 타 의 미 지 급 금	300,000

- 환급금 지급 시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세 출 예 산 지 출 액	3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300,000

<OO부처 일반회계>

차) 기 타 의 미 지 급 금	300,000	대) 국 고 수 입	300,000

실무해설 12. (☞ **관련문단 14**)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하여 국고금을 운용할 수 있다. 국고금 여유자금의 운용, 상호예탁 등 국고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회계 내부 계정간 자금의 흐름이 발생하며, 국고금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에서는 국고금운용계정 회계처리를 통해 이러한 자금의 이동을 관리하고 있다.

관 련 규 정

-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15.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의 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쳐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증권의 매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예탁계정으로 국고금을 이체할 때 국고금회계는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예탁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내예수금"으로 처리한다.

(2) 국고금예탁계정에서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국고금을 이체할 때 국고금예탁계정은 "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고금회계전입금"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
적용사례 11~12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1. 4. 4.]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15, 17) 국고금 운용 및 회수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변동	재원의조달	기타이전수익	정부내전입금	국고금회계전입금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재원의이전	기타이전비용	정부내전출금	국고금회계전출금
			기타의기타이전비용	
자산	금융자산	대여금	정부내예탁금/단기	
부채	차입부채	차입금	정부내차입금	정부내예수금/단기

적용사례 11. (※ 관련문단 15~17)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3월 1일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국고금회계 일반회계 계정에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100,000,000원을 대체하였다. 국고금운용계정에 대체한 100,000,000원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30,000,000원은 국채유통시장 지원금으로 지출하고, 40,000,000원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말 현재 국고금 여유자금운용금액 중 30,000,000원이 남아있다.

20X1년 12월 말까지 RP에 대하여 이자수익이 80만원 발생하였다.(미수이자수익발생)
20X2년 중 RP를 매도하여 이자수익 8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 및 이자 40,800,000원을 회수하였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20X1년 3월 1일 국고금의 국고금운용계정 대체 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국 고 금 회 계 전 출 금	1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대) 정 부 내 예 수 금	100,000,000
차) 정 부 내 예 탁 금	1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대) 국 고 금 회 계 전 입 금	100,000,000

3. 20X1년 3월 1일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 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및 국고금예탁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일 반 용 자 금	3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0,000,000
기 타 의 금 융 상 품	40,000,000		

16. (운용시 회계처리) (1) 국고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증권" 등으로 구분하여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고금세부운용계정 내 운용자산(한국은행국가예금은 제외한다)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4. 20X1년 12월 말 수익 발생 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대)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5. 20X2년 회수 시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800,000	대)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40,000,000	대) 기 타 의 금 융 상 품	40,000,000
차) 국 고 금 회 계 전 출 금	4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4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40,000,000	대) 정 부 내 예 탁 금	40,000,000
차) 정 부 내 예 수 금	4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40,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40,000,000	대) 국 고 금 회 계 전 입 금	40,000,000

적용사례12. (☞ 관련문단 15~17)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자산 평가 등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3월 1일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국고금회계 일반회계 계정에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100,000,000원을 대체하였다. 국고금운용계정에 대체한 100,000,000원을 기

(2) 국고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자수익, 처분손익 등), "투자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1~13

확재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30,000,000원은 주식을 매입하는데 지출하고, 40,000,000원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말 현재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금액 중 30,000,000원이 남아 있다.

20X1년 12월 말까지 RP에 대하여 이자수익이 80만원 발생하였으며, (미수이자수익 발생) 매입 주식의 공정가액은 40,000,000원이 되었다. 20X2년 중 RP를 매도하여 이자수익 8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 및 이자 40,80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주식을 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20X1년 3월 1일 국고금운용계정 대체 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국 고 금 회 계 전 출 금 1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대) 정 부 내 예 수 금 100,000,000
정 부 내 예 탁 금 100,000,000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대) 국 고 금 회 계 전 입 금 100,000,000

3. 20X1년 3월 1일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 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및 국고금예탁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지 분 증 권 - 주 식 3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0,000,000
기 타 의 금 융 상 품 40,000,000

4. 20X1년 12월 말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대)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지 분 증 권 - 주 식	10,000,000	투 자 증 권 평 가 이 익	10,000,000
5. 20X2년 회수 시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0,000,000	대) 지 분 증 권 - 주 식	30,000,000
		기 타 의 금 융 상 품	4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20,800,000	대)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800,000
투 자 증 권 평 가 이 익	10,000,000	지 분 증 권 - 주 식 (*)	10,000,000
		투 자 증 권 처 분 이 익	20,000,000
(*) 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증가분			
6. 세부운용계정에서 일반회계 계정으로 상환 시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국 고 금 회 계 전 출 금	7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0,000,00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0,000,000	대) 정 부 내 예 탁 금	70,000,000
정 부 내 예 수 금	70,000,000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0,000,0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70,000,000	대) 국 고 금 회 계 전 입 금	70,000,000

적용사례 13. (※ 관련문단 16)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대체 회계처리			
1. 배경정보(금융상품 운용 거래)			
A부처 일반회계에서 100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발생하여 국고금회계의 A부처 일반회계의 자금 중 50을 국고금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운용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는 50을 가입하였으며, 기중 50%를 30(이자수익 5포함)에 회수하여 모두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 남아있는 상태이다. 남은 50%의 기말시점 평가액은 30(미수이자 발생)이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수익인식 및 단기금융상품 가입			
<A부처 일반회계>			
차) 국 고 이 전 지 출	100	대) 부 담 금 수 익	100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	대) 국 고 이 전 수 입	100
차) 국 고 금 회 계 전 출 금	5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	대) 정 부 내 예 수 금	50
차) 정 부 내 예 탁 금	5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	대) 국 고 금 회 계 전 입 금	50
차) 금 융 상 품	5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0
3. 단기금융상품 회수 시			
<국고금회계 - 국고금세부운용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25	대) 금 융 상 품	25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5	대) 금 융 상 품 이 자 수 익	5

17. (국고금의 회수) 국고금 운용 후 원금은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입금되고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쳐 국고금회계로 반환된다.

- (1)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국고금예탁계정으로 원금을 반환할 때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예탁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내예탁금"을 감소시킨다.
- (2) 국고금예탁계정에서 국고금회계로 원금을 반환할 때 국고금예탁계정은 "정부내예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고금회계전입금"으로 처리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3~14
적용사례 11~12

4. 기말

<국고금회계 -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차)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5	대) 금 융 상 품 이 자 수 익	5

5.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

- 내부거래제거 -

차) 정 부 내 예 수 금	50	대) 국 고 금 회 계 전 출 금	50
국 고 금 회 계 전 입 금	50	정 부 내 예 탁 금	50
국 고 이 전 수 입	100	국 고 이 전 지 출	100

-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대체 -

차)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25	대) 금 융 상 품	25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17)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수익금은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입금되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 국고금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에 사용된다.

관 련 규 정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II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8.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국고금회계 내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계의 계정에서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인식한다.
- (2)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국고금회계의 계정에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 (3)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해당 회계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 내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인식한 계정에서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다만,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 또는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타의기타이전수익"으로 처리하고,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는 "기타의기타이전비용"으로 처리하고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4

적용사례 14. (☞ 관련문단 18)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지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1년 3월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에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였다. 20X1년 12월 말 OO특별회계는 발생이자 10,000,000원을 포함하여 1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차입 시 회계처리 및 상환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회계처리를 제시하도록 한다.

2. 20X1년 3월 차입 시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 대) 국 내 차 입 금 / 단 기 100,000,000

3.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계정>

차) 국 내 차 입 금 / 단 기 1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10,000,000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

4.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지급한 경우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회계처리 없음

<국고금회계 - 기획재정부 OO특별회계 계정>

차) 국 내 차 입 금 / 단 기 100,000,000 대) 기 타 의 기 타 이 전 수 익 100,000,000

차) 기타의 기타이전비용	1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10,000,000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		

II 상호예탁반환

19. (상호예탁반환) 상호예탁반환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회계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있는 회계에 세입·세출외로 예탁하고 반환받는 거래로서 '국고금회계 계정간 상호예탁반환'과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상호예탁반환'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국고금회계 외 계정은 기업특별회계 계정(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계정을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을 의미한다.

관련규정

- 국고금 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1조(자금의 조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20. (국고금회계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국고금회계 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국고금예탁계정은 국고금회계에 대해 하나의 계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치지 않고 국고금회계 계정간 예탁거래와 예수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5

21.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국고금예탁계정을 경유하여 상호예탁반환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예탁계정간, 국고금예탁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예탁거래와 예수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관련부록 적용사례 16

적용사례15. (☞ 관련문단 20) 국고금회계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일반회계 계정에서 A특별회계 계정(국고금회계 내 계정)으로 상호예탁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예탁 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정 부 내 예 탁 금	***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국고금회계 - A특별회계 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수 금		***
3. 반환 시				
<국고금회계 - A특별회계 계정>				
차) 정 부 내 예 수 금	***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대) 정 부 내 예 탁 금		***

적용사례16. (☞ 관련문단 21)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일반회계 계정에서 A특별회계 계정(국고금회계 외 계정)으로 상호예탁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장·단기를 고려하지 않음)				
2. 예탁 시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정 부 내 예 탁 금	***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	대) 정부내예수금	***
차) 정부내예탁금	***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

<A특별회계>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	대) 정부내예수금	***

3. 반환 시

<A특별회계>

차) 정부내예수금	***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

<국고금회계 - 국고금예탁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	대) 정부내예탁금	***
차) 정부내예수금	***	대) 한국은행국가예금	***

<국고금회계 - 일반회계 계정>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	대) 정부내예탁금	***

21.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569
● 적용범위	2	570
● 용어의 정의	3	570
● 세입·세출외거래의 구분	4-6	570
●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7-9	573
● 공시	10	577
● 경과조치	11	578
● 부칙		578

	【문단번호】	【페이지】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
부록 2. 실무해설		1-7
부록 3. 적용사례		1-6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1)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기업 예산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외거래는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세입·세출외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세입·세출외자산은 개별법의 결산보고서에 일부 항목만 포함되거나 또는 예산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재무결산에는 포함되는 등 결산보고의 일관성이 미비하였다.

- 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대출금과 부동산 등 일부 항목만 「국유재산법」 등 개별법의 현재액보고서에 포함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취득한 유형자산과 세입관련 채권은 개별법의 현재액보고서에 포함되며, 예금의 운용에 따른 증권 등은 미포함
 - ※ 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고객 예금의 입금과 출금을 각각 자산·부채의 증가와 감소로 회계처리하였음
 - ③ 회전자금의 경우는 세입·세출결산(예산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재무제표(재무결산)에는 포함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라 세입·세출외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세출외 자산·부채의 재무제표 반영방안을 제시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세입·세출외 자산의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관련법령	개별법 상 현재액보고서 반영여부	세입·세출 결산서 반영여부
우체국보험 적립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	△	x
우체국예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2	△	x
특별회계 회전자금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	x	x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등	x	x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세출외거래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외거래"란 세입예산 또는 세출예산으로 설정된 바 없이 이루어 지는 현금 등의 수수거래로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등 각종 법 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2) "세입·세출외 자산·부채"란 세입·세출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를 말한다. III 세입·세출외거래의 구분 4. (세입·세출외거래의 구분) 세입·세출외거래는 세입·세출예산외거래와 기타세입·세출외거래로 구분한다. 5.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란 그 성격 상 국가에 귀속되는 거래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 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는 거래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대차관: 국고(國庫)에 직접 수납되지 않는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이 차관선으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입금을 전대차주에게 대여하는 차관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1)) 국가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재원이 될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이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세입과 세출이라고 하는데,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의미하며, 세출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입·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법령에 규정 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2) 현물출자: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민간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
- (3) 국고금 운용: 자금의 운용을 위해 빈번한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고금회계의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거래

6.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란 「정부기업예산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전자금,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적립금, 정부보관금 등의 거래를 말한다.

- (1) 회전자금: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금
- (2)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
- (3) 우체국보험적립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적립금
- (4)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등으로 구분

☞ 관련부록 실무해설2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관련규정

-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3. (생략)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실무해설2. (☞ 관련문단 6. (4)) 정부보관금 항목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 목	정의
공탁금	• 채무자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맡기는 금전 • 「공탁법」에 따른 공탁 절차상 공탁하는 금전 및 법령상 명시적으로 「공탁법」을 준용하여 공탁하는 금전 * 「도로교통법」상 차량 매각처분 후 공탁,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강제처리 후 공탁,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매각 또는 폐차 후 잔액 공탁
보증금	• 행정사무의 진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거나 사무이행을 보증·보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전

항 목	정의										
보증금	• 금전을 받아두지 않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운영상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징수하는 금전 •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관세법」상 담보, 산지관리복구비, 농지복구비 등 국공유재산 복구비 선예치금										
압수·압류금	• 「법무·세무 행정상 압수된 금전 또는 압수물·압류재산 환가대금 • 압수·압류 자체가 사무의 목적인 경우로서 압수·압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금전 • *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 압수현금 및 압수물 환가대금,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 • *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무원 급여가압류, 국세환급금 가압류 등										
권리자 미상금	• 권리자의 신원 또는 거소 불명, 지급 거부·포기, 요구 부재, 배분에 대한 이의 발생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금전 • 법정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공고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못한 보증금, 압수·압류금 등의 금전 • * 「일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상 거소 불명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포상금,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체납정리계좌불명액, 배분에 이의가 있어 배분 유보된 금액 • * 배분기일이 지난 체납자배분금 또는 매각취소결정 후 30일 경과된 계약보증금,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상 14일간의 반환 공고가 완료된 환가대금										
기타 보관금	• 위 네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국가 소유가 아닌 현금으로 현실에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금전 • * 영치금, 가납 벌과금 등										
일시 보유금	• 사무처리 절차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금 계좌에서 처리하는 아래 유형의 금전 <table><tr><th>종류</th><th>예시</th></tr><tr><td>①물수금</td><td>「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상 물수품 환가대금, 도박물수금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td></tr><tr><td>②납입금</td><td>퇴직자에게 과지급된 급여 및 복지포인트 환수금,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송달료, 지체상금, 환원연동을 위한 해외금전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td></tr><tr><td>③소액현금</td><td>국고금 끝수 누적액, 보관금 계좌 예금이자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td></tr><tr><td>④미지급금</td><td>배분 전 급여 등 권리자에게 곧 지급될 금전, 보험료·소득세 등 기타 회계주체에 귀속될 급여공제금, 국제기구 분담금 해외송금용 금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재계약·신규계약에 따라 지급 예정인 관사임차료</td></tr></table>	종류	예시	①물수금	「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상 물수품 환가대금, 도박물수금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	②납입금	퇴직자에게 과지급된 급여 및 복지포인트 환수금,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송달료, 지체상금, 환원연동을 위한 해외금전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	③소액현금	국고금 끝수 누적액, 보관금 계좌 예금이자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	④미지급금	배분 전 급여 등 권리자에게 곧 지급될 금전, 보험료·소득세 등 기타 회계주체에 귀속될 급여공제금, 국제기구 분담금 해외송금용 금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재계약·신규계약에 따라 지급 예정인 관사임차료
종류	예시										
①물수금	「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상 물수품 환가대금, 도박물수금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										
②납입금	퇴직자에게 과지급된 급여 및 복지포인트 환수금,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송달료, 지체상금, 환원연동을 위한 해외금전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										
③소액현금	국고금 끝수 누적액, 보관금 계좌 예금이자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										
④미지급금	배분 전 급여 등 권리자에게 곧 지급될 금전, 보험료·소득세 등 기타 회계주체에 귀속될 급여공제금, 국제기구 분담금 해외송금용 금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재계약·신규계약에 따라 지급 예정인 관사임차료										

III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7. (일반원칙) 세입·세출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 자산·부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8.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전대차관의 경우 실제 자금은 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에게 직접 이전되어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실질에 따라 차입시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처리한다.
- ☞ 관련부록 적용사례 1
- (2)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해당 재산의 감소와 정부출자금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한다.
- ☞ 관련부록 적용사례 2
- (3) 국고금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자산의 취득 등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며, 국고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적용사례1. (☞ 관련문단 8. (1)) 전대차관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9년 1월 1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부처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대차관 \$10,000을 도입하였다. (20X9년 초 환율: ₩1,000/\$) 20X9년 도입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20X9. 1. 1.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부처 ○○회계	
<차관도입 시>		<전대차관도입 시>	
차) 전대차관대여금 ^(*)	10,000,000	차)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대) 해외차입금	10,000,000	대) 전대차관 ^(*)	10,000,000
(*) \$10,000*₩1,000/\$=10,000,000		(*) 장·단기 고려하지 않음	

적용사례2. (☞ 관련문단 8. (2)) 현물출자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20X9년 1월 1일 ○○부처 ○○회계는 보유하는 건물(장부가액: 1억원)을 xx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증권(공정가액: 1.5억원)을 취득하였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차) 투자증권-지분증권	150,000,000	대) 건물	100,000,000
		일반유형자산차분이익	50,000,000

9.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회전자금
- (가) 회전자금은 해당 회계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므로 재정상태표의 자산으로 반영한다.
- (나) 회전자금은 특별회계 내에서 구분경리하고, 잔액은 특별회계에 "기타금융자산"으로 반영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3**
적용사례 3
- (2) 우체국예금
- (가)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고객 예금의 입금, 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 (나) 우체국예금은 예탁받은 예금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며, 입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수부채"의 증가로 처리하고, 출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입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 ☞ **관련부록 실무해설 5**
적용사례 4
- (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3) 우체국보험적립금
- (가) 우체국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중 적립금 조성에 충당되는 순보험료 등과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환급금 등은 세입과 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은 세입·세출외 자산·

실무해설3. (☞ **관련문단 9. (1)**)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외에 별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금은 현재까지는 조달특별회계에만 회전자금을 두어 이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조달사업의 운영에 따라 수요기관의 물품구매요청에 따른 공급업체 대지급과 비축물자의 구매 등을 위해 일정규모의 운영자금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용사례3. (☞ **관련문단 9. (1)**) 회전자금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에 100억원을 불입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차) 기타의기타금융자산 10,000,000,000 대) 한 국 은 행 국 가 예 금 10,000,000,000

- 관 련 규 정**
- 정부기업예산법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 5. 차입금
 - 6. 전년도 이월금
 -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인·촉 등에 필요한 사업비
 -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 [전문개정 2010. 4. 12.]

부채가 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6**

- (나) 우체국보험적립금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납부와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각각 "보험수익"과 "이자수익" 등으로 인식하고, 보험금과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보험비용"과 "보험충당부채"를 계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7**
적용사례 5

- (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정부보관금(일시보유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

(5) 압수품과 몰수품

압수품과 몰수품 중 화폐성자산은 물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자산은 처분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9. (2). (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체국예금사업의 예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 따른 이익(예대마진) 등으로 구성되고, 세출은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결산수행이 이루어진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9. (2). (나)**) 각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각각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성과 이외에도 기업형 사업을 수행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의 성과를 보여준다. 예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사업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 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거래가 국가에 귀속되는 자산·부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예탁 받은 예금자산과 부채를 표시함으로써 예금 고객 유치 성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객 예금의 입금과 출금을 자산·부채의 증가와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

적용사례4. (☞ **관련문단 9. (2). (나)**) 우체국예금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우체국예금의 예금가입자가 1억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한 후 연말에 5천만원을 출금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고객 입금 시 -

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0,000	대) 예 수 금	100,000,000

- 고객 출금 시 -

차) 예 수 금	50,000,000	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0,000,000

관련규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 (이하 "보험사업"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
 [전문개정 2009. 1. 30.]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 ③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실무해설6. (☞ 관련문단 9. (3). (가)) 우체국보험의 경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체국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가보험료 등을 세입으로 하며,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등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3). (나)) 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체국보험 특별회계의 사업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 특별회계의 보험적립금과 관련된 거래를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표시함으로써 보험료수입과 적립금의 운용실적, 보험금과 배당금의 지급을 위해 적립된 부채의 규모의 정도를 제공한다.

III 공시

10. (주석사항) 세입·세출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회전자금 총액과 세부내역
- (2) 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내역
- (3) 압수품과 몰수품 내역

적용사례5. (☞ 관련문단 9. (3). (나))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우체국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50억원을 징수하여 순보험료(40억원)는 전액 국채를 취득하여 이자수익 2억원 발생하였다.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출하고, 기말에 책임준비금 30억원 전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국채는 단기보유 목적임)

2. 회계처리

- 보험료 징수 시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00 대) 보 험 수 익 5,000,000,000

- 국채 취득 시 -

차) 채무증권-국채/단기 4,0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00

- 이자수익 발생 시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0 대) 이 자 수 익 200,000,000

- 사업비지출 시 -

차) ○ ○ 비 용 1,0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 책임준비금 전입 시 -

차) 보 험 비 용 3,000,000,000 대) 보 험 충 당 부 채 3,000,000,000

III 경과조치

11.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재정법」 부칙(법률 제12161호, 2014.1.1.) 제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 관련부록 적용사례 6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법률 제12161호, 2014. 1. 1.) 부칙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1)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1. 배경정보

○○부처 ××기금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 기술료 1억원을 받아 연구개발용도로 지출하였다. 이 경우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 수익발생 시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대)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사 용 료 수 익 100,000,000
- 비용지출 시 -	
차) 연 구 개 발 비 100,000,000	대)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100,000,000

22.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581	부록1. 실무해설		1-4
● 적용범위	2	581	부록2. 적용사례		1-2
● 용어의 정의	3	581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4-7	582			
● 전기오류수정	8-9	587			
● 공시	10-11	588			
● 부칙		589			

III 목 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계정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 (2)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계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손, 재고자산의 진부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3\)](#))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화,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각종 충당부채의 평가 등이 있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1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III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4. (회계정책 변경 요건)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1)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2)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회계정책 변경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1)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
- (2)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 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2**
적용사례 1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실무해설2. (☞ **관련문단 6**) 회계변경누적효과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기초순자산	회계변경누적효과	회계변경누적이익	
			회계변경누적손실	

적용사례1. (☞ **관련문단 6**) 회계변경누적효과의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는 일반회계에서 행정목적으로 20X1.1.1에 고정성기계장치를 100,000,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없음,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20X1년, 20X2년, 20X3년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였으나 20X4년 결산 시에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A부처는 20X3년 이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인식하고, 20X4년 회계처리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아래는 정액법 및 정률법으로 각각 상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이다.

(단위: 원)

구분	정액법(0.2)			정률법(0.451)		
	감가상각비	누계액	순장부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순장부가액
20X1년	20,000,000	20,000,000	80,000,000	45,100,000	45,100,000	54,900,000
20X2년	20,000,000	40,000,000	60,000,000	24,759,900	69,859,900	30,140,100
20X3년	20,000,000	60,000,000	40,000,000	13,593,185	83,453,085	16,546,915
20X4년	20,000,000	80,000,000	20,000,000	7,462,659	90,915,744	9,084,256
합계	80,000,000			90,915,744		

2. 회계처리

- 20X4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차) 회계변경누적효과^(*) 23,453,085 대)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3,453,085

(*) 83,453,085원(20X3년 정률법 누계액)-60,000,000원(20X3년 정액법 누계액)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비 7,462,659 대)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7,462,659

- 20X4년 12월 31일 -

<비교표시되는 전기(20X3년) 조정분개>

차) 회계변경누적효과^(*) 29,859,900 대)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9,859,900

(*) 69,859,900원(20X2년 정률법 누계액) - 40,000,000원(20X2년 정액법 누계액)

차)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6,406,815 대) 기계장치감가상각비^(*) 6,406,815

(*) 13,593,185원(20X3년 정률법 감가상각비) - 20,000,000원(20X3년 정액법 감가상각비)

3. 재무제표 표시

재정상태표			
당기: 20X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2년 12월 31일 현재			
○○부처			(단위: 원)
	20X3	20X2	
자산			
II. 유·무형자산	40,000,000	60,000,000	
1. 일반유형자산	40,000,000	60,000,000	
자산 계	40,000,000	60,000,000	
부채			
부채 계	XXX	XXX	

순자산		
I. 기본순자산	XXX	XXX
II. 적립금 및 잉여금	40,000,000	60,000,000
III.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 계	<u>40,000,000</u>	<u>60,000,000</u>
부채와순자산 계	<u>40,000,000</u>	<u>60,000,000</u>

재정상태표
 당기: 20X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3년 12월 31일 현재

○○부처			(단위: 원)
	20X4	20X3	
자산			
II. 유·무형자산	9,084,256	16,546,915	
1. 일반유형자산	9,084,256	16,546,915	
자산 계	<u>9,084,256</u>	<u>16,546,915</u>	
부채			
부채 계	<u>XXX</u>	<u>XXX</u>	
순자산			
I. 기본순자산	XXX	XXX	
II. 적립금 및 잉여금	9,084,256	16,546,915	
III.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 계	<u>9,084,256</u>	<u>16,546,915</u>	
부채와순자산 계	<u>9,084,256</u>	<u>16,546,915</u>	

7. (회계추정의 변경시 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기간에 적용한다.
- (1)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 (2)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4년 1월 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3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부처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20X3년 기초순자산	XXX	30,140,100	XXX	30,140,100
1. 보고금액		60,000,000		60,000,000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29,859,900)		(29,859,900)
II. 재정운영결과		13,593,185 ^(*)		13,593,185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XXX	XXX	XXX	XXX
IV.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V. 20X3년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XXX	16,546,915	XXX	16,546,915
VI. 20X4년기초순자산	XXX	16,546,915	XXX	16,546,915
1. 보고금액		40,000,000		40,000,000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23,453,085)		(23,453,085)
VII. 재정운영결과		7,462,659		7,462,659
VIII. 재원의조달및이전	XXX	XXX	XXX	XXX
IX.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X. 20X4년기말순자산 (VI - VII + VIII + IX)	XXX	9,084,256	XXX	9,084,256

(*) 20,000,000원(20X3년 기 인식한 정액법 감가상각비) - 6,406,815원(20X3년 조정분개)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III 전기오류수정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 관련문단 11
관련부록 실무해설 3
적용사례 2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실무해설3. (☞ 관련문단 8) 순자산변동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기초순자산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8)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

1. 배경정보

A부처는 일반회계에서 행정목적으로 20X1.1.1에 건물을 100,000,000원(내용연수: 40년, 잔존가액 없음,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20X1년, 20X2년, 20X3년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을 20X4년 결산에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A부처는 20X4년 오류수정을 수행한 후 20X4년 감가상각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계처리

- 20X4년 12월 31일 재정상태표일 결산 시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	7,500,000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7,500,000
^{(*)1} 20X1년부터 20X3년 간 감가상각비: 100,000,000원 / 40년 * 3년 = 7,500,000원			
차) 건물감가상각비 ^{(*)2}	2,500,000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2} 20X4년 감가상각비: 100,000,000원 / 40년 = 2,500,000원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 관련부록 실무해설 4

III 공시

10. (회계정책의 변경시 주식 사항)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유

3. 재무제표 표시

위 예시에서 오류발견 전 전기(20X3년)말 순자산가액을 1,000,000,000원(기본순자산 500,000,000과 적립금및잉여금 500,000,000 으로 구성)으로 가정할 경우 20X4년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오류로 인한 영향은 적립금및잉여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500,000,000	492,500,000	-	992,500,000
1. 보고금액	500,000,000	500,000,000	-	1,000,000,000
2. 전기오류수정손익	-	(7,500,000)	-	(7,500,000)
3. 회계변경누적효과	-	-	-	-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실무해설4. (☞ 관련문단 9) 재정운영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 (2)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방법
- (3)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시기

10의2. (회계추정의 변경시 주석 사항)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1.** (전기오류수정의 주석 사항) 전기오류수정의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문단8에 따른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에 추가한다.
-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관련문단 8](#)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관련규정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23.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문단번호】	【페이지】		【문단번호】	【페이지】
● 목적	1	593	부록 1. 문단제정근거	1-4	
● 적용범위	2	593	부록 2. 실무해설	1-2	
● 용어의 정의	3	593	부록 3. 적용사례	1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4-6	594			
●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	7-12	597			
● 공시	13	601			
● 부칙		601			

III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에 적용한다.

III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 (2) "중앙관서"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3) "정부조직개편"이란 「헌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결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직무가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 (4) "폐지"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5) "신설"이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 (6) "직무"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열거된 각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사무를 말한다.
 - (7) "이관"이란 직무조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간 자산·부채의 관할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8) "정부조직개편일"이란 제·개정된 「헌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시행일을 말한다.
- (9)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개편일 전 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10)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정부조직개편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11)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III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4.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1) 국가회계실체는 정부조직개편일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되는 기금의 경우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을 정부조직개편일로 본다.

- (2) (1)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실무해설 1

적용사례 1

5. (순자산의 이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관하는(받는) 순자산은 다음에 따라 이관 대상 자산·부채에 대응시키고, 다음과 같이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한다.

- (1) 이관 대상 자산·부채의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시킨다.

문단제정근거1. (☞ **관련문단 4, 9~11**) 정부조직개편으로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되는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별도의 예산 이체 절차가 없어, 해당 기금의 재정집행 자료가 소관 중앙관서 변경 전후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였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4**)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되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때, 총액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은 취득이나 처분과 같은 거래가 아닌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일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5**) 정부조직개편 시 자산·부채의 이관으로 인한 순자산변동은 재정상태표의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각각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부조직개편은 국가통합관점에서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는 법령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의 포괄적 승계로 보아 순자산 내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 기본순자산은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기본순자산에 문단6에 따라 산정된 안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 적립금및잉여금은 이관 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1)과 (2)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 **관련문단 6**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2
실무해설 2
적용사례 1

- 6.** (안분비율의 산정) 문단5에 따른 안분비율은 다음 (1)을 (2)로 나누어 산정한다.
- (1) 이관 대상 순자산: 이관 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문단 5. (1)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2) 순자산 총액: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에서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자산·부채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 조정 총액을 차감한 금액
- 다만,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직전 회계연도말 순자산 총액을 사용할 수 있다.

☞ **관련문단 5**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3
적용사례 1

실무해설2. (☞ **관련문단 5**)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순자산 변동	기초순자산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가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감소	
	조정항목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가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감소	

- 문단제정근거3.** (☞ **관련문단 6**) 기본순자산 이관을 위한 안분비율 산정 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 처리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금액을 각각 분자와 분모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은 기본순자산 이관 비율이 직접 귀속되는 순자산항목의 크기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용사례1. (예 관련문단 4~6) 정부조직개편 시 순자산 안분 및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AA중앙관서 일반회계로부터 BB중앙관서의 일반회계로의 자산·부채 이관이 있었으며, 정부조직 개편 후 AA중앙관서 및 BB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다.

- * 정부조직 개편일: 20X3년 3월 23일
- * 이관하는 중앙관서: AA중앙관서(일반회계만 존재)
- * 이관받는 중앙관서: BB중앙관서(일반회계만 존재)

AA중앙관서의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각각 2,000, 500, 1,500 이며, 이 중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300, 적립금및잉여금 400, 순자산조정 800 (전액 자산재평가이익 80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BB중앙관서로 이관되는 자산·부채, 순자산 금액은 각각 건물 1,200(취득가액 1,100, 감가상각누계액 150, 자산재평가이익 250을 가감한 순액), 미지급금 450, 순자산 750 이며, 이관되는 자산의 평가로 발생한 순자산조정은 자산재평가이익 250 이다.

2. 이관 대상 순자산 안분

이 경우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를 위한 순자산 750의 안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관 대상 자산 및 부채에 직접 대응시키는 순자산 금액: 250 (자산재평가이익)

② 기본순자산 금액 확정: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의 기본순자산 × 안분비율* = 300 × 71.4% = 214.3

* 안분비율 =
$$\frac{(1,200 - 450) - 250}{1,500 - 800} = 71.4\%$$

③ 적립금 및 잉여금 금액 확정: 750 - ① - ②
= 750 - 250 - 214.3
= 285.7

3. 회계처리

<AA중앙관서 일반회계>

차) 미 지 금 금 450	대) 건 물 1,350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0	
일 반 유 형 자 산 재 평 가 이 익 250	
정 부 조 직 개 편 등 에 따 른 순 자 산 감 소 (기 본 순 자 산) 214.3	
정 부 조 직 개 편 등 에 따 른 순 자 산 감 소 (적 립 금 및 잉 여 금) 285.7	

<BB중앙관서 일반회계>

차) 건 물 1,350	대) 미 지 금 금 450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0	
일 반 유 형 자 산 재 평 가 이 익 250	
정 부 조 직 개 편 등 에 따 른 순 자 산 증 가 (기 본 순 자 산) 214.3	
정 부 조 직 개 편 등 에 따 른 순 자 산 증 가 (적 립 금 및 잉 여 금) 285.7	

4. 각 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 표시 (예시)

<AA중앙관서>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IV. 조정항목	(214.3)	(285.7)	(250)
1. ...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214.3)	(285.7)	(250)
기말순자산	XXX	XXX	XXX



III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

7. (결산의 수행 유형)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의 유형에 따라 수행한다.

- (1)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있고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 (가)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 (나)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 (2)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 (가)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 (나)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 (3)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 (4)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

<BB중앙관서>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III. 재원의 조달및 이전		XXX	
IV. 조정항목	214.3	285.7	250
1. ...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214.3	285.7	250
기말순자산	XXX	XXX	XXX

문단제정근거4. (☞ 관련문단 7~12)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조직개편일 기준의 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판단한 이유는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국가회계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결산보고서 작성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이 바뀌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과거 결산 사례를 보았을 때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세입·세출결산서를 별도로 보고하였으며, 예산의 소관 변경, 자금 배정의 변경 등의 국가재정 관련 업무 변경이 수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결산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8.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국가회계실체는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

9.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국가회계실체는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조직개편일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3)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정부조직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1)의 단서 및 (3)에 따라 작성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관련문단 12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4

10.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중앙관서가 변경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2) 정부조직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지 않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4

11.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정부조직개편 이전부터 그 중앙관서에 속해 있던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2) 정부조직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4) (2)의 국가회계실체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

다)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4)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가회계실체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정부조직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1, 4

12.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및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의 이관이 없거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의 이관이 없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1)과 (2)에 불구하고 자산·부채의 이관 없이 중앙관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문단9를 준용하여 결산을 수행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관련문단 9

관련부록 문단제정근거 4

III 공시

13. (주석사항)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개요: 관련 법령, 정부조직개편일, 직무범위 변동 등
-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가 이관하는(받는) 자산·부채
- (3) 이관하는(받는) 자산·부채에 대응되는 순자산의 구성내역
- (4) 이관받은 사업(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정부조직개편일 전일, 정부조직개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충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 (5)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 (6)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된 경우 기금의 정부조직개편일을 1월 1일로 보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III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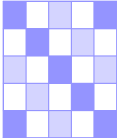
계정과목 해설서

계정과목 해설서는 국가회계편람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계정과목의 정의 및 세부설명과 유의점을 서술한 것으로 참고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는 국가회계예규 내 포함된 적용사례, 실무해설 및 문단제정근거와 달리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속력을 갖지 않음을 밝힙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 제1장 개 요	607
● 제2장 자 산	611
● 제3장 부 채	655
● 제4장 순자산	675
● 제5장 수 익	687
○ 제1절 국세수익	691
○ 제2절 이전수익	695
○ 제3절 국가운영수익	705
● 제6장 비 용	723
○ 제1절 이전비용	727
○ 제2절 국가운영비용	737
● 제7장 국세징수	763



제 1 장 개 요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다.

2. 발생주의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기록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 구매 시 거래를 기록하지만,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는 외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된다.

3. 복식부기

복식부기란 거래 발생 시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기록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는 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결과 자산(자동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록하게 되지만, 단식부기는 현금 지출만을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복식부기는 자산을 명칭별로 분류하고 기록하므로 자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의 경우에는 자산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 한 현금출납기록을 일일이 파악하여 자산현황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재정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며, 재정상태표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다.

재정운영표는 일정기간의 수익, 비용의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며, 프로그램별, 성질별 및 분야별 원가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하다.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외 주석으로 공시되는 국세징수활동표가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국세징수활동을 하는 부처인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만 작성한다.

5. 재무계정과목 체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재무계정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정과목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의 5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는 회계과목(Level Ⅲ)까지 공시되고, 회계처리는 주로 관리과목(Level Ⅳ) 또는 세부관리과목(Level Ⅴ)으로 이루어진다.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등 대분류	금융자산 등 중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회계과목	현금및현금등가물 등 관리과목	현금 등 세부관리과목

대분류(Level Ⅰ)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을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이전수익과 국가운영수익), 비용, 순자산변동 및 국세징수 7가지로 세부 구분한다.

6. 계정과목해설서 활용방법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는 예산과목에 대하여 세목과 세부·세세부항목이 연계되어(Mapping) 재무계정과목이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된 또는 생성될 재무계정과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 해설서를 통하여 해당 계정과목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각 계정과목의 정의 및 세부설명을 담고 있으며, 유의점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설명 및 해설부분에 언급되는 법령 등을 추가하여 해설서의 이해를 돕게 했다.

제 2 장 자 산

I.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	615
II.	금		용			상		품	...	618
III.	투		자			증		권	...	619
IV.	정		부		출		자	금	...	624
V.	대				여			금	...	625
VI.	미		수			채		권	...	628
VII.	기	타	금	용		자		산	...	632
VIII.	일	반	유	형		자		산	...	635
IX.	사	회	기	반		시		설	...	639
X.	무		형		자			산	...	647
XI.	유		산		자			산	...	649
XII.	기		타		자			산	...	652

1. 자산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2. 자산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자산의 평가기준

자산평가란 자산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즉 재정상태표에 보고될 자산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화폐가치를 부여할

때 어떠한 측정속성 또는 평가기준에 의하는가에 따라 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자산의 측정속성에는 역사적원가(취득원가), 현행원가(현행유입가치, 현행유출가치), 현재가치 등이 있다.

역사적원가는 과거에 자산을 취득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원가는 측정대상인 자산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의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 지급하게 될 금액(현행유입가치) 또는 측정대상인 자산을 현재의 시장에서 매각할 경우에 수취하게 될 금액(현행유출가치)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현재가치는 측정대상 자산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 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4. 자산의 구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각각의 회계과목에 대한 관리과목, 세부 관리과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한다.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설 명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금융자산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사회기반시설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
기타자산	재고자산, 저장품, 선급비용, 선급금/단기, 선급금/장기, 선급법인세, 부가세대금금, 기타의기타자산/단기, 기타의기타자산/장기	금융자산 및 유·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5. 국가자산의 개별법상 분류체계

국가회계기준상의 자산과 관련된 개별법에는 크게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이 있다.

① 「국유재산법」 상의 구분

- (1)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이 해당된다.
- (2) 행정재산: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국가 고유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보존하는 자산이다.
 - ①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②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사회기반시설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 ③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④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유산자산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② 「물품관리법」 상의 구분

- (1)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은 국유재산 이외의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2) 「물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법 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는 물품은 정부미술품 정부미화물품,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동식물 등 특수물품 등이 해당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상의 구분

- (1) 「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정의한다.
- (2)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채권은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등이 해당된다.

④ 개별법 자산분류체계와 국가회계 계정과목 분류 비교

(1) 「국유재산법」과 국가회계 비교

「국유재산법」	국가회계 계정과목
토지	토지
건물	건물
공작물	구축물
기계기구	고정성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선박및항공기
임목죽	기타일반유형자산(임목)
증권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무체재산	무형자산 등
(해당 없음)	건설중인자산

(2) 「물품관리법」과 국가회계 비교

「물품관리법」	국가회계 계정과목
전기통신기기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및공작기계	이동성기계장치
산업기계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물리시험및측정기기	
의료및화학분석기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잡기기	
(해당 없음)	건설중인자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과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금은 통화(지폐나 주화 등)와 통화대용증권을 말한다. 통화대용증권은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 기일도래 공사채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등을 의미한다.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 등의 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한다.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증권 및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회계과목은 보유 국가회계실체의 유형에 따라 현금및현금등가물과 국고금으로 구분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국고금을 제외한 자산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하 "민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여유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화대용증권 및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증권 및 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현금및현금등가물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 ① 현금: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시재액 등
- ② 보통예금: 예입과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예금거래의 대상, 금액, 기간 등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가입 및 해지, 거래가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 ③ 당좌예금: 금전의 수불이 빈번하거나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은행에 맡기기 위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요구불 예금으로, 현금출납을 은행이 대행하므로 사용자에게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
- ④ 기타현금성자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금성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 3개월 이내 조건을 충족한 수익증권, 금융상품 등을 포함

(2) 국고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그 운용실태와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등가물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국고금은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으로 분류된다.

- ① 한국은행국가예금: 한국은행에 납입 또는 예탁한 국고금
- ②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고은행에 납입 또는 예치한 국고금
- ③ 국고예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금
- ④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취득한 운용자산(한국은행국가예금은 제외)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중앙관서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가 재무제표에 포함됨
- ⑤ 기타국고금: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보유액으로 금 등을 포함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분류 시 유의사항

- (1) 타인발행차용증서, 수입인지, 부도어음, 부도수표 등은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중 차입담보계약,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특정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만기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국고금의 경우,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금으로 분류한다.

② 기타현금성자산의 인식요건

- (1) MMF(Money Market Fund)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준가격이 공시되는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MMF를 포함)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며 기타현금성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 ①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②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③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 (2) 현금성자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3개월 이내 만기 또는 상환일은 재정상태표일 현재기준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제외)에서 국고금여유자금운용으로 취득하는 현금성자산(예: MMF 등)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작성 시 '국고금-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으로 대체한다.

③ 외화자산의 평가

외화자산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성 외화자산과 이를 제외한 비화폐성 외화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폐성 외화자산에는 현금및현금등가물, 미수채권, 금융상품 등이 존재한다.

화폐성 외화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며,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외화자산평가손실' 및 '외화자산평가이익' 계정을 사용하여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며,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의 구분(조정항목 또는 재정운영결과)에 따라 동일하게 인식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 관련법령

「국고금 관리법 및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

하계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입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시행령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고예금은 그 출납 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II. 금융상품

1. 금융상품 정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서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금융상품	정기예금/단기	-
		정기예금/장기	-
		정기적금/단기	-
		정기적금/장기	-
		기타의금융상품/단기	-
		기타의금융상품/장기	-

① 금융상품

- (1) 정기예금
일정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금융기관은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예금이다.
- (2) 정기적금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일정이율의 이자와 함께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이다.
- (3) 기타의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구좌 또는 자산관리계좌(CMA),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 특정금전신탁, (지역발전)예탁금, CDM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금융상품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취득 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의 금융상품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더라도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로 포함될 경우 단기의 금융상품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② 금융상품 외화평가

외화금융상품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므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잔액으로 한다.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외화자산평가손실' 및 '외화자산평가이익'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Ⅲ. 투자증권

1. 투자증권 정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서 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투자증권의 회계과목 내에서는 그 형태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국세물납증권으로 구분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투자증권	지분증권	주식/단기
			주식/장기
			기타지분증권/단기
			기타지분증권/장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투자증권	채무증권	국채/단기
			국채/장기
			공채/단기
			공채/장기
			지방채/단기
			지방채/장기
			회사채/단기
			회사채/장기
		국세물납증권	주식/국세물납증권단기
			주식/국세물납증권장기
			기타지분증권/ 국세물납증권단기
			기타지분증권/ 국세물납증권장기
			국채/국세물납증권단기
			국채/국세물납증권장기
			공채/국세물납증권단기
			공채/국세물납증권장기
			지방채/국세물납증권단기
			지방채/국세물납증권장기
			회사채/국세물납증권단기
			회사채/국세물납증권장기

① 투자증권

(1) 지분증권

국가회계실체가 자금운용목적에 의해 당해 투자증권의 소유가 필요하여 취득한 투자증권으로 지분증권은 주식과 기타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 ① 주식: 자본을 구성하며 주주의 권리를 표명하는 지분증권
- ② 기타지분증권: 주식 및 국세물납증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으로,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출자증권,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지분증권 등을 포함

(2) 채무증권

국가회계실체가 자금운용목적에 의해 당해 투자증권의 소유가 필요하여 취득한 투자증권 중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투자증권을 의미한다.

채무증권은 다음과 같이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로 구분한다.

- ①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국채법」 제5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음
- ② 공채: 국채, 지방채 및 회사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중소기업창업및진흥채권 등이 있음
- ③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채무증권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지분증권 등을 포함
- ④ 회사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권

(3) 국세물납증권

국세물납증권은 국세 물납을 통해 취득한 투자증권을 말하며, 국세청은 물납 받은 증권을 "건설증인가타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다가 기획

재정부로 이관한다. 기획재정부는 물납 받은 증권을 이관 받을 때 "국세물납증권"으로 인식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투자증권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도래 또는 처분예정시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 후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취득시점의 잔여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거나 처분예정시기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장기의 투자증권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더라도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 또는 처분예정시기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동 투자증권을 단기의 투자증권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② 취득원가의 측정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국세물납증권은 국세를 물납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과 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아닌 국세수의 인식기준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취득일 이후의 평가

- (1)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국세물납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조정에 반영되는 조정항목인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 (3) 공정가액이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국세물납증권의 시장가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증가로 하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금액을 적용한다.

- ① 재정상태표일과 해당 투자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증가
- ② 재정상태표일과 해당 투자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증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한 금액

④ 감액손실의 인식 및 환입

- (1)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감액손실 금액은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2) 감액한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3) 투자증권 중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국세물납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을 중지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이후 감액손실이 환입되어 그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 인식되었을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상각후취득원가)까지 회복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4.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중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후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22. 12. 31.>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황과 이차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

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4. 11.>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5. 28., 2015. 5. 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공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8. 4.]

[법률 제13283호(2015. 5. 13.)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IV. 정부출자금

1. 정부출자금 정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정부출자금은 법령·정책적 목적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출자금의 회계과목 내에서는 그 출자 대상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출자금과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으로 구분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금융자산	정부출자금	정부출자기업출자금	-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	-

① 정부출자금

- (1) 정부출자기업출자금
출자 대상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부출자금을 말한다.
- (2)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
출자 대상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정부출자금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감액손실의 인식 및 환입

- (1) 정부출자금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감액손실 금액은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2) 감액한 정부출자금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상 당기수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분증권과 정부출자금

- (1) 지분증권의 취득은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나, 정부출자금의 취득은 자금운용이 아닌 법령·정책적 목적으로 한다.
- (2)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3)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4.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 10. 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1. 주식회사 에스알
3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V. 대여금

1. 대여금 정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서 대여금이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이다. 자금의 대여 목적 등에 따라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 전대차관대여금 및 정부내예탁금으로 구분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정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대여금	일반용자금	일반용자금/단기
			일반용자금/장기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단기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장기
			일반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일반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저리용자금	저리용자금/단기
			저리용자금/장기
			용자보조원가충당금/단기
			용자보조원가충당금/장기
		전대차관대여금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단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장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단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장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단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장기
		정부내예탁금/단기	-
		정부내예탁금/장기	-

① 대여금

(1) 저리 및 일반 용자금

용자금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한다.

① 저리용자금: 용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한 용자금

② 일반용자금: 저리용자금 외의 용자금

(2) 전대차관대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외국환은행 등 차관선으로부터 도입한 전대차관(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을 다시 대여한 자금이다.

①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 해외에서 도입한 전대차관을 다른 국가회계실체에 다시 대여한 자금

②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 해외에서 도입한 전대차관을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분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대여한 자금

(3) 정부내예탁금

국가회계실체가 타 국가회계실체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정부내예탁금은 타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타이전비용'과는 별도의 항목이며, 이는 유·무상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개념적으로 정부내예탁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일반회계 예탁금: 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특별회계 예탁금: 일반회계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가 특정 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금 예탁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에서 특정 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② 대여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여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을 의미한다. 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여금의 차감계정으로 한다.

③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1) 용자금의 대손충당금

① 용자보조원가충당금: 국가회계실체가 용자 실행 시점에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실행(용자사업)한 저리용자금의 원금과 저리용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이다. 이때, 저리용자금의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수취할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저리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 국가회계실체가 용자 실행 시점에 유효이자율 이상의 이자율로 실행(용자사업 이외)한 용자금 중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이다.

(2)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에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 중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이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대여금의 장·단기의 구분은 회수기일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또는 1년 후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최초 발생 시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 하는 경우와 분할상환·약정이 있는 장기의 대여금 계정과목 중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단기의 대여금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② 대여금의 외화평가

기준통화가 외화인 대여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때, 기준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 관련법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 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 국채 발행 수입
 7.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 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보증채무 이행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전문개정 2011. 4. 8.]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
3. 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예탁금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용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 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국·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용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 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②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용자 대상 사업에 대한 용자
2.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 용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전문개정 2011. 4. 8.]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전문개정 2011. 4. 8.]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3. 16.>

[전문개정 1988. 12. 13.]

제3조(전대계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제4조(전대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

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84. 8. 1., 1988. 12. 13., 1995. 12. 30., 1998. 11. 5., 2018. 11. 26.>

「국고금 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입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VI. 미수채권

1. 미수채권 정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수채권의 회계과목 내에서는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
 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국세	미수국세/단기
			미수국세/장기
			미수국세대손충당금/단기
			미수국세대손충당금/장기
			국세수익조정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장기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사회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부담금수익	미수부담금수익/단기
			미수부담금수익/장기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부담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부담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단기
			미수제재금수익/장기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제재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제재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장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연금수익	미수연금수익/단기
			미수연금수익/장기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연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연금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이자수익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단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장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단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장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단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장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험수익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
			미수기타이자수익/장기
			미수기타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기타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험수익/단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보험수익	미수보험수익/장기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보증수익	미수보증수익/단기
			미수보증수익/장기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증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보증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수기타수익	미수기타수익/단기
			미수기타수익/장기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기타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미수기타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의미수금	기타의미수금/단기
			기타의미수금/장기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단기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장기
			기타의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① 미수채권

(1) 미수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국세징수의 국세수익)

- (2) 미수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사회보험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이전수익의 사회보험수익)
- (3) 미수부담금수익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이전수익의 부담금수익)
- (4) 미수제재금수익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벌금, 몰수금및추징금 등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이전수익의 제재금수익)
- (5)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면허료 및 수수료, 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입 및 공업용수 사용료, 실습수입(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등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으로 용역제공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 국가운영수익의 재화및용역제공수익)
- (6) 미수연금수익
공무원연금수익, 군인연금수익, 사학연금수익과 국민연금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국가운영수익의 연금수익(공무원·군인), 이전수익의 사회보험수익)
- (7) 미수이자수익
금융상품, 채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산정한 기간 경과분 미수수익 및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취하지 못한 이자수익 금액을 말한다.
(☞ 국가운영수익의 이자수익)
①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② 미수대여금이자수익: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③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④ 미수기타이자수익: ① ~ ③ 외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8) 미수보험수익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국가운영수익-기타국가운영수익의 보험수익)

(9) 미수보증수익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국가운영수익-기타국가운영수익의 보증수익)

(10) 미수기타수익

법인세환급금, 신탁사업이익 등 기타수익에 대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 국가운영수익의 기타수익)

(11) 기타의미수금

일반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을 비롯하여 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채권 중 미수한 금액을 말한다.

② 미수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

미수채권 계정과목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을 의미한다. 미수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은 미수채권 계정과목의 차감계정으로 한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장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장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을 현재가치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고 하며, 당해 채권의 명목가액의 차감계정으로 한다. 이때 할인율로는 그 거래에 내재된 이자율 즉,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한다.

③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채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의미한다.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의 차감계정으로 한다.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즉,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같은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충당금법'을 따른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미수채권 내 미수금 및 미수수익 관련 계정의 구분

일반유형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미수된 금액은 기타의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기타수익과 관련하여 미수된 금액은 기간경과분에 대한 수익 인식분을 포함하여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유동성 대체

- (1) 미수채권은 회수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 회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단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회수기일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장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해당 장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의 회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대체를 통하여 단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 (2)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가 가능하여 장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에서 단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으로 유동성 대체된 금액과 관련된 장기의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은 단기의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으로 유동성 대체한다.
- (3) 유동성 대체하는 장기의 미수채권 계정과목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또한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단기의 미수채권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현재가치평가

현재가치평가는 거래발생 시 또는 계약조건 변경 시에 한하여 적용하며, 현재가치로 평가한 이후 유효이자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에 상각한다.

④ 대손충당금 평가방법

- (1) 대손충당금은 기말 결산시점에 기말 채권잔액 중 기간경과분석,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분석, 과거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예상액을 추산

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추가로 설정하고, 반대로 결산전 대손충당금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액을 환입한다.

- (2)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연령분석법: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률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 ※ 채권잔액비례법: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
- ※ 대손실적률법: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률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VII. 기타금융자산

1. 기타금융자산 정의

금융자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및 미수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으로서 KIC위탁운용자산, 파생상품자산, 조달사업회전자금, 구상채권, 지급보증금, 신탁사업수익권, 투자회원권, 대지급금 등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KIC위탁운용자산	-
		파생상품자산/단기	-
		파생상품자산/장기	-
		조달사업회전자금	-
		구상채권	구상채권/단기
			구상채권/장기
			구상채권대손충당금/단기
			구상채권대손충당금/장기
			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지급보증금	임차보증금-국유/단기
			임차보증금-국유/장기
			임차보증금-채권/단기
			임차보증금-채권/장기
			임차보증금-일반/단기
			임차보증금-일반/장기
			전신전화가입권
			기타지급보증금/단기
			기타지급보증금/장기
		신탁사업수익권	-
		투자회원권	-
		대지급금/단기	-
		대지급금/장기	-
		기타의기타금융자산/단기	-
		기타의기타금융자산/장기	-

① 기타금융자산

(1) KIC위탁운용자산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말한다.

(2) 파생상품자산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지수 등과 같은 특정대상과 당해 특정대상을 적용하여 계약상의 공정가격 및 현금흐름액(또는 교환가액)을 고정하기 위한 화폐금액, 주식수 등과 같은 특정단위를 가지는 금융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자산(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또는 부채(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로 인식한다.

(3) 조달사업회전자금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조달특별회계가 사업 운영을 위해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구상채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구채권을 말한다. 주로 보증회계와 보험회계에서 발생한다. 보증회계의 구상채권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하며, 보험회계의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채권을 말한다.

① 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구상채권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② 구상채권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5) 지급보증금

임대차 계약, 일상적인 상거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거래 상대방 또는 공탁소 등에 예치하는 담보 성격의 지급액을 말하며, 세부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차보증금: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 계정과목을 사용함
- ② 전신전화가입권: 가입한 전신 및 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③ 기타지급보증금: 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급보증금으로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등을 말함
- (6) 신탁사업수익권
부동산 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설정한 수익권을 말한다.
- (7) 투자회원권
사용 및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원제 체육·휴양시설 등의 회원권을 말한다.
- (8) 대지급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3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9) 기타의기타금융자산
(1)~(8)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금융자산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파생상품의 평가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며,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②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기타금융자산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 또는 회수기일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또는 1년 후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장기의 기타금융자산 계정과목은 단기의 기타금융자산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③ 전신전화가입권 계정분류

전신전화가입권의 경우 보증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증금으로 자산 처리하고 기타 비용으로 지급하는 전신전화가입가설료는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한다.

④ 기타금융자산의 외화평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기타금융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기타금융자산은 공정가액을 측정한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자산은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 관련법령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후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II. 일반유형자산

1. 일반유형자산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 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일반

유형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다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3항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은 일반유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
		토지사용수익권	-
		건물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건물사용수익권	-
		구축물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구축물사용수익권	-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	전비품
			전비품감가상각누계액
			소모성군수품
		기계장치	고정성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고정성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이동성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사용수익권	고정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이동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선박및항공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선박및항공기감가상각누계액
			운반건설기계및차량감가상각누계액
			전기통신기기감가상각누계액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사무용기기사용수익권
			사무용집기사용수익권
			선박및항공기사용수익권
			운반건설기계및차량사용수익권
			전기통신기기사용수익권
		기타일반유형자산	치안유지자산
			임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치안유지자산감가상각누계액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토지
			건설중인건물
			건설중인건축물
			건설중인전비품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무용기기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건설중인운반건설기계및차량
			건설중인전기통신기기
			건설중인치안유지자산
			건설중인임목
			건설중인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① 토지

대지·임야·전답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 및 관리되는 대상을 말한다.

② 건물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임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
설물을 말한다.

④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

「군수품관리법」상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
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하며, 전비품과 소모성군수
품으로 분류한다. 소모성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 중 1년 이
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을 말한다.

⑤ 기계장치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한다.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와 고정성기계장치로 분류한다.

(1) 이동성기계장치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로서 「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고정성기계장치

기계장치 중 이동성기계장치를 제외한 고정되어 있는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⑥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집기·비품·차량운반구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선박및항공기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기기

전화기, 팩스 및 통신망 단자 등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2) 사무용기기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등 사무목적으로 보유중인 기기를 말한다.

(3)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및 책장 등 사무목적으로 보유중인 집기를 말한다.

(4)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차량운반구로서 승용차 등 차량 및 크레인 등 건설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선박및항공기

행정서비스 제공목적으로 보유중인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⑦ 기타일반유형자산

(1) 치안유지자산

경찰청, 법무부 등이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2) 입목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보유중인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4) 임차개량자산

임차자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임차인의 부담분에 한한다) 중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부분을 말한다.(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5)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①~⑥까지 설명한 일반유형자산과 ⑦ (1)~(4)까지의 치안유지자산,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임차개량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일반유형자산을 말한다.

⑧ 감가상각누계액

일반유형자산 중 상각대상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계산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말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한다.

⑨ 사용수익권

일반유형자산(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 제외)을 계약에 의해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은 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하며, 상각금액은 '자산수증이익·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인식한다. 사용수익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을 들 수 있다.

10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1 금융리스 형태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리스는 취득형태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므로 자산 및 부채를 계상한다.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 ①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임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 용연수의 상당부분(75%)을 차지하는 경우
-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경우
-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2 소액자산, 소모성 물품의 취득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건당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4.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 <중략>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
 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IX. 사회기반시설

1. 사회기반시설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
 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국도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국도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토지사용수익권
		국도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토지
		고속국도	토지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고속국도	건물
			건축물
			기타
		고속국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고속국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철도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철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철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항만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항만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항만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댐	토지
			건물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댐	구축물
			기타
		댐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댐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구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공항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공항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공항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구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하천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하천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하천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구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상수도	토지
			건물
			구축물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상수도	기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상수도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토지사용수익권
		상수도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구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국가어항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국가어항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국가어항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구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민국도/토지
			건설중민국도/건물
			건설중민국도/구축물
			건설중민국도/기타
			건설중인고속국도/토지
			건설중인고속국도/건물
			건설중인고속국도/구축물
			건설중인고속국도/기타
			건설중인철도/토지
			건설중인철도/건물
			건설중인철도/구축물
			건설중인철도/기타
			건설중인항만/토지
			건설중인항만/건물
			건설중인항만/구축물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항만/기타
			건설중인댐/토지
			건설중인댐/건물
			건설중인댐/구축물
			건설중인댐/기타
			건설중인공항/토지
			건설중인공항/건물
			건설중인공항/구축물
			건설중인공항/기타
			건설중인하천/토지
			건설중인하천/건물
			건설중인하천/구축물
			건설중인하천/기타
			건설중인상수도/토지
			건설중인상수도/건물
			건설중인상수도/구축물
			건설중인상수도/기타
			건설중인국가어항/토지
			건설중인국가어항/건물
			건설중인국가어항/구축물
			건설중인국가어항/기타

① 국도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중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② 고속국도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③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제로서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를 말한다.

철도자산은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이 중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시설자산과 기타자산이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이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선로, 역시설, 교량, 전차선, 궤도, 노반, 통신시설,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열차제어설비 등이 철도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④ 항만

「항만법」 제2조에 따라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시설로서 지정항만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항만구역 안팎의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의 외곽시설 및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의 계류시설 등이 항만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⑤ 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농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라 다목적댐만이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에 해당하며 다목적댐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을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댐 본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이 댐 구축물에 해당한다.

⑥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공항시설 및 부속도지를 말한다.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 안팎의 시설로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선로, 포장, 유도등, 진입등, 레이더시스템, 전방향표지시설, 전술항행표지시설, 활공각시설, 항공관제통신시설 등이 공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⑦ 하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제방(호안 포함), 수문(통문 및 암거), 보 등이 하천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⑧ 상수도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일반수도 중 광역상수도가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취수보·침사지·흡수정 등의 취수시설, 관로 등의 송수시설, 착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여과지 등의 정수시설, 조정조·농축조 등의 배출수시설이 상수도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⑨ 국가어항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어항 중 국가어항을 말한다. 국가어항이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의미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방파제·방사제·파
제제·방조제·도류제·수문·갑문·호안·둑·돌제·홍벽 등의 외곽시설, 안벽·물
양장·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 등의 계류시설, 항
로·정박지·선화장 등의 수역시설 등이 국가어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10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이란 사회기반시설 중 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시점
부터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표시하는 과목으로서 사회기반시설
의 차감계정으로 한다.

11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이란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은 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으로 하며,
상각금액은 '자산수증이익·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인식한다. 사용수익
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을 들 수 있다.

12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
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1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 관련 유의사항

(1) 사회기반시설 포함 여부 결정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식대
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① 도로

정부청사 내의 도로, 임도는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② 항만

항계 내의 등대뿐만 아니라 항계 외의 등대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
된다.

③ 공항

민·군 공동 사용 비행장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되므로,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공항의 경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의 건물은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되며, 활주로·계류장 등의 시설은 국가
에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의
인식대상에서 제외된다.

(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건물은 그 효용이 사회기반시설 본연의 목적과
연관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관리목적으로 활용되는 건
물의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4. 관련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1. 6. 7., 2011. 9. 16., 2012. 2. 1., 2012. 12. 18., 2013. 1. 23., 2013. 7. 30., 2014. 1. 7., 2014. 1. 14., 2014. 1. 28., 2014. 6. 3., 2015. 8. 28., 2016. 1. 27., 2016. 3. 2., 2016. 3. 29., 2016. 5. 29., 2017. 1. 17., 2017. 3. 21., 2018. 3. 13., 2020. 3. 31.>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 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

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23. 8. 16.>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20. 1. 29.>

「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행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1. 운영자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 시설자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2023. 10. 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중략>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海안보호 독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입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 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여항편역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 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위탁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원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빈·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항만배후단지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3.>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8. 14., 2020. 12. 31., 2023. 8. 8.>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으로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라. 삭제 <2018. 8. 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2020. 12. 31.>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20. 12. 31.>

⑦ 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6. 9.>

⑧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모(淤)·수로터널·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3. 24.>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 1) 철도·도로·다리·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 2)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 3) 어선 건조장·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

- 4)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 6) 하역기계, 제빙(製氷)·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
- 7)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평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11) 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찜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X. 무형자산

1. 무형자산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국가회계실체 등이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
		광업권	-
		기타무형자산	-

① 소프트웨어

-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한다.

②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③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존재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기타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광업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국가의

행정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등 민법상 용익물권이 이에 해당되며, 전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소프트웨어 구입시 분류기준

범용소프트웨어(예: MS Office, 한글 등)와 전용소프트웨어(예: 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내부개발소프트웨어가 아닌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② 연구개발비 지출 시 회계처리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 국가운영비용-기타국가운영비용의 연구개발비)

- (1)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③ 소액자산의 취득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건당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4.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중물
3. 「정부기업에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XI. 유산자산

1. 유산자산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비용	유산자산취득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관리토지취득비
			-

① 기타비용

(1) 유산자산취득비

문화유산 등 유산자산을 최초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2) 관리토지취득비

보존재산인 관리토지¹⁾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②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을 취득한 이후 관리 및 수선 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표시한다.

1) 「국방 회계처리지침」 등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토지 등은 관리토지의 항목으로 별도 구분하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유산자산의 종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유산자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문화재로서 그 관리주체가 국가인 문화재를 의미한다.

※ 국유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한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2)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을 의미한다. 다만, 공원시설은 제외한다.

(3)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과 같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국가인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② 유산자산 재무제표 표시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며, 그 종류와 현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유산자산 인식 예외사항

(1)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이 공용으로 행정활동에 사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청사)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유산자

산이 아닌 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유산자산인 건물을 행정업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의 건물로 분류한다.

(2)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내의 진입도로, 주차장, 사무실 등 부수시설은 행정활동에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일반유형자산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인식한다. 또한 국립공원내 관리사무소의 유지보수비와 같이 유산자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주변시설의 관리·수선비용은 일반유형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인식한다.

(3)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산 중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타일반유형자산의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4.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공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2023. 3. 21., 2023. 8. 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중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시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1. 23.>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6. 10.>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XII. 기타자산

1. 기타자산 정의

자산 중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이외의 각종 기타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저장품, 선급비용, 선급금 등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기타자산	재고자산	상품	-
		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부재료	-
		미착품	-
		축산물	-
		기타의저장품	-
	저장품	-	-
	선급비용	선급이자비용/단기	-
		선급이자비용/장기	-
		선급임차료/단기	-
		선급임차료/장기	-
		기타의선급비용/단기	-
		기타의선급비용/장기	-
	선급금/단기	-	-
	선급금/장기	-	-
	선급법인세	-	-
	부가세대급금	-	-
	기타의기타자산/단기	-	-
	기타의기타자산/장기	-	-

① 재고자산

판매목적의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미착품, 축산물 및 기타의 저장품으로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등
-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 (3) 재공품: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과정에 있는 미완성품 등
- (4) 원재료: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재료 및 매입부품 등
- (5) 부재료: 제조 과정에서 필수되는 부수 재료 등
- (6) 미착품: 매입하였으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운송 중에 있는 상품, 원재료 및 부재료 등
- (7) 축산물: 축산업의 생산물로 가축의 가공품 및 공업원료 등을 포함
- (8) 기타의저장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 등에서 발생하는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모품, 소모성 공기구비품, 수선용부품 등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인 "저장품"은 포함되지 않음

② 저장품

양곡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 등으로, 재고자산의 "기타의저장품"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③ 선급비용

제공받을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하였으나 용역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용화하지 아니한 선지급분을 말하며, 선급이자비용, 선급임차료 및 기타의선급비용으로 관리한다.

- (1) 선급이자비용: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등에 대한 이자의 선지급분 중 기간미경과분
- (2) 선급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입차료의 선지급분 중 기간미경과분

- (3) 기타의선급비용: 보험료, 광고료,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등의 선지급분 중 기간미경과분

④ 선급금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자산의 취득 또는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선급법인세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⑥ 부가세대급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다른 채권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정산할 때까지 기록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⑦ 기타의기타자산

기타자산 중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기타자산의 장·단기의 구분은 자산 또는 비용으로 대체되는 시점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또는 1년 후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자산 또는 비용으로 대체되는 장기의 기타자산 계정과목은 단기의 기타자산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②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③ 재고자산의 매입 부대비용

재고자산 구입에 따른 매입부대비용 중 운임, 보험료, 관세(환급관세가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등과 같이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키나 검수, 정리, 선별, 이관 등과 같은 내부용역비용은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선급비용, 선급금 구분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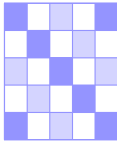
선급금은 일상적인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국방물자 등을 포함하는 자산의 구입을 위하여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반면, 선급비용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금액 중 해당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아니하여 비용으로 계상

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선급비용은 기간경과에 따라 1년 이내에 비용화된다.

- ① 자산의 매입을 위한 대금 선급 시 → '선급금'
- ② 자산의 위탁관리비용을 1년치 선급 시 → '선급비용'

⑤ 기타자산의 외화평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은 공정가액을 측정한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자산은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 3 장 부 채



I. 차	입	부	채 ...	658
II. 충	당	부	채 ...	668
III. 기	타	부	채 ...	672

1. 부채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2. 부채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하면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 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채의 만기에 상환될 현금액(현재가치계산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평가한다.

국채의 평가는 발행가액에서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한다.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할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연금 회계처리지침」과 「보험 회계처리지침」)으로 평가한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용자금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하며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4. 부채의 구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각각의 회계과목에 대한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한다.

종분류(Ⅱ)	회계과목(Ⅲ)	설 명
차입부채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차입부채 등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
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충당부채 등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기타부채	사회보험부채, 선수수익, 선수금 및 기타의기타부채 등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

I. 차입부채

1. 차입부채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차입부채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차입부채	국채	국채/단기	-
		국채/유동성장기	-
		국채/장기	-
		재정증권	-
		국채할인발행차금/단기	-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
		국채할증발행차금/단기	-
		국채할증발행차금/유동성장기	-
		국채할증발행차금/장기	-
		자기국채/단기	-
		자기국채/유동성장기	-
		자기국채/장기	-
	차입금	국내차입금	국내차입금/단기
			국내차입금/유동성장기
			국내차입금/장기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차입부채	차입금	국내차입금	국내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국내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정부내차입금	전대차관/단기
			전대차관/유동성장기
			전대차관/장기
			정부내예수금/단기
			정부내예수금/유동성장기
			정부내예수금/장기
		해외차입금	해외차입금/단기
			해외차입금/유동성장기
			해외차입금/장기
			해외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해외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국고채무부담 행위액	국고채무부담행위액/단기	-
		국고채무부담행위액/장기	-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
	기타차입부채	공채	공채/단기
			공채/유동성장기
			공채/장기
			공채할인발행차금/단기
			공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공채할인발행차금/장기
			공채할증발행차금/단기
			공채할증발행차금/유동성장기
			공채할증발행차금/장기
			자기공채/단기
			자기공채/유동성장기
			자기공채/장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BTL임대료미지급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금/장기
			BTL임대료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사회보험미지급금/단기
			사회보험미지급금/장기
			보험미지급금/단기
			보험미지급금/장기
			보증미지급금/단기
			보증미지급금/장기
			연금미지급금/단기
			연금미지급금/장기
			퇴직수당미지급금/단기
			퇴직수당미지급금/장기
			기타의미지급금/단기
			기타의미지급금/장기
			기타의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비용/단기
			미지급이자비용/장기
			미지급법인세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기타의미지급비용/장기
			기타의미지급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지급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부가세예수금
			임대보증금/단기
			임대보증금/장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예수금	기타의예수금/단기
			기타의예수금/유동성장기
			기타의예수금/장기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단기
			파생상품부채/장기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
		금융리스부채/장기	-
		기타의기타차입부채/단기	-
		기타의기타차입부채/ 유동성장기	-
		기타의기타차입부채/장기	-

2-1. 국채

① 국채

국채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각각 지방채와 특수채로 분류하여 국채에서는 제외시킨다. 국채는 「국채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보되는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세부 발행계획에 따라 국채를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 1년 내의 할인채로 발행된다.

③ 국채할인발행차금

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인발행차금은 국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국채이자비용에 가산한다.

④ 국채할증발행차금

국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국채할증발행차금은 국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국채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⑤ 자기국채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채의 차감계정인 자기국채로 처리한다.

<특수한 국채>

- (1) **물가연동국고채**(Inflation-Linked Korean Treasury Bond)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 원금을 재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즉, 채권 보유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이자와 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채를 말한다.
- (2) **Strips채권**(원금이자분리채권)이란 원본과 이권 부분을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채권으로 원본 부분을 구입한 투자자는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액면대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입가격과 액면의 차이를 이자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권 부분도 이자지불 금액을 할인해 매매되며 이자 지불 시기가 상환기에 해당하는 제로 쿠폰채가 된다.
- (3) **변동금리부국채**란 이자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국채로서 기준금리(예: CD, Libor 등)에 일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매기 지급이자가 변동하게 되는 국채를 말한다.

2-2. 차입금

① 국내차입금

(1) 국내차입금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의미한다.

(2) 국내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국내차입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의미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② 정부내차입금

(1) 전대차관

타 국가회계실체가 도입한 차관을 전대한 것

(2) 정부내예수금

정부내 거래로서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받는 일시적인 보관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예수금

③ 해외차입금

(1) 해외차입금

해외차입금은 해외공공기관, 해외금융기관 등 해외로부터 차입된 외화표시 또는 원화표시 차입금을 의미한다.

(2) 해외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해외차입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의미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2-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①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된 부분 중 그 대가가 미지급된 금액

② 국고채무부담행위액현재가치할인차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의미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2-4. 기타차입부채

① 공채

(1) 공채

공채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중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2) 공채할인발행차금

공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공채할인발행차금은 공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공채이자비용에 가산한다.

(3) 공채할증발행차금

공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공채할증발행차금은 공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

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공채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4) 자기공채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공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채의 차감계정인 자기공채로 처리한다.

② 미지급금

(1) BTL임대료미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명목가액

(2)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BTL임대료미지급금 계정과목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을 의미한다.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은 BTL임대료미지급금 계정과목의 차감계정으로 한다.

(3) 사회보험미지급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지급 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4) 보험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농어업재해재보험, 무역보험 등)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5) 보증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증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액 중 보증과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6) 연금미지급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7) 퇴직수당미지급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퇴직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원인행위의 발생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8) 기타의미지급금

위 미지급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미지급금으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매입하였으나 미지급된 금액

(9) 기타의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의미지급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의미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③ 미지급비용

(1) 미지급이자비용

국·공채 또는 국내외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부채(매출경과료 포함)

(2) 미지급법인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결산시에 당해 회계연도의 납부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차감한 잔액 또는 과거의 법인세에 대한 추가경정결정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납부 상태인 법인세 등을 말한다.

(3) 기타의미지급비용

이자비용 이외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비용

(4) 기타의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의미지급비용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을 의미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④ 예수금

(1) 주택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주택청약저축을 운영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해당 저축과 관련하여 저축가입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예수금(주택청약저축)으로 인식한다.

(2) 부가세예수금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징수하는 부가세액

(3)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완료시 회수하는 금액

(4) 기타의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부가세예수금, 임대보증금 외의 예수금 중 소득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 건강보호예수금 등

⑤ 파생상품부채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지수 등과 같은 특정대상과 당해 특정대상을 적용하여 계약상의 공정가격 및 현금흐름액(또는 교환가액)을 고정하기 위한 화폐금액, 주식수 등과 같은 특정단위를 가지는 차입부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의무를 말한다.

<파생상품부채>

- (1) 선물환: 외국환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 (2) 채권선도거래: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채권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 (3) 이자율스왑: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⑥ 금융리스부채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⑦ 기타의기타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중 위 ①~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장·단기 구분 및 유동성 대체

- (1) 차입부채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 또는 지급기일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또는 1년 후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2) 최초 차입 및 부채 발생 당시에는 장기의 차입부채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정상태표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의 차입부채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유동성장기 및 단기의 차입부채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② 외화표시 국채(공채)의 평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외화표시 국채(공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외화로 평가한 후 결산 시에 외화 환산을 실시한다. 이때, 외화표시 국채(공채)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재정상태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이자비용은 실제 상환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을 적용한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 국채(공채)의 최초 측정

국채(공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한다.

④ 자기국채(공채) 회계처리

국채(공채)를 발행한 기관이 자기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국채(공채)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을 발행한 중앙관서가 그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은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함으로써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시킨다.

예를 들면, 국가가 A부와 B부로 구성되며 A부 소관 a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B부 소관의 b기금이 보유할 경우 A부 혹은 B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자기국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통합(A+B) 재무제표에서는 자기국채에 해당하게 되어 국채총액에서 자기국채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한다.

⑤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액은 국채의 액면가액에 표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각 연도에 인식할 이자비용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의 차이만큼 할인(할증)액을 상각(환입)한다.

시장금리에 따라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채의 시장이자율과 발행가액 및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채권시장에서 자동으로 결정된다.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효이자율은 해당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발행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따라서 각 연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연도 이자비용 = 기초장부가액(액면가액±할인(할증)발행차금) × 유효이자율

⑥ 국·공채 발행 시 부대비용의 처리

국·공채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비, 수수료 등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국·공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⑦ 국내차입금 분류

- (1) 국내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을 국내차입금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국내차입금으로 분류한다.
- (2) 외화로 표시되는 차입금의 유동성외화장기부채는 장기부채에서 환산한 후에 유동성부채로 대체한다.

⑧ 정부내예수금의 분류

- (1) 정부내 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으로 1년 이내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은 '정부내차입금-정부내예수금/단기'로 처리하고 1년 후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은 '정부내차입금-정부내예수금/장기'로 분류한다.
- (2) 최초 차입 당시에는 '정부내예수금/장기'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부내예수금/장기'는 '정부내예수금/단기'가 아닌 '정부내예수금/유동성장기'로 대체한다.
- (3) 타회계/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우 '정부내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타회계 또는 기금에 빌려주는 경우 '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a기금에서 b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 a기금 재무제표 작성 시 '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하며, b기금 재무제표에는 '정부내차입금-정부내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국가통합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어 '정부내차입금-정부내예수금'과 '정부내예탁금'을 상계한다.
- (4) '정부내예수금'은 타회계/기금으로부터 받았으나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이며, '정부내전입금'은 동일하게 타회계/기금으로부터 받았으나,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9 해외차입금의 분류

- (1) 해외차입금은 해외공공기관, 해외금융기관 등 해외로부터 차입된 외화 표시 또는 원화표시 차입금을 의미한다. 해외차입금의 경우에도 국내 차입금과 동일하게 유동성분류, 외화평가, 기중 차입한 경우 기말 결산 시 미지급비용 인식 등의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2) 해외차입금(차관)의 분류



- ① CPS(Currency Pooling System)차관: 차관액을 차관통화에 대한 환율변화에 연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차관선에서 차관원금을 PUV(Pool Unit Value)로 고정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차관
- ② 일반차관: CPS차관이 아닌 차관으로 차관통화의 환율변화에 따라 차관원금이 변동하는 차관
- ③ 전대차관
 - 전대차관은 정부가 차관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체결한 전대계약에 따라 전대차주에게 전대할 조건으로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으로 일반차관 및 CPS차관 모두 전대차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해서만 전대차관이 발생한다.
 - 전대차관의 경우 차관선으로부터 직접 전대차주에게 자금을 집행하나 실질적으로는 계약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이 차관

선에 대하여 1차적 의무를 지게 되어, 전대차주로부터의 자금회수 및 차관선에 대한 상환을 수행하게 된다.

- ④ 비전대차관: 차관 중 전대차관이 아닌 차관

10 '국고채무부담행위액/장기'의 인식

'국고채무부담행위액/장기'의 경우 향후 수년간에 걸쳐 실제 상환예정시점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는 전체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식한다.

11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

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된 미지급액 및 사회보험, 연금 및 보험사업에서 발생한 미지급액은 미지급금으로 분류하며,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인한 부채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다만,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경과한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대체한다.

12 미지급비용의 인식

지급입차료, 이자비용, 임금 및 상여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였지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지급상태인 비용은 미지급비용 및 재정운영표상 비용으로 인식한다. 미지급비용의 금액은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하거나 임의로 계상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추정하여야 한다. 미지급비용 중 지급기일이 1년 후인 금액은 장기의 미지급비용 계정과목으로 계상한다.

13 선수금과 예수금의 구분

선수금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며 물품의 인도 또는 공사의 완성 등을 조건으로 수취하는 것이나 예수금은 일상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며 향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다.

14 파생상품부채의 평가

- (1)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 (2)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15 금융리스부채의 회계처리

- (1) 금융리스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을 융자하는 대신에 리스회사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물적 금융이다. 리스제공자는 취득금액에 이자 및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리스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회수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는 없으며 리스물건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2)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계상한다.

(☞ 일반유형자산)

- (3) 리스이용자는 최소리스료를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 (4)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16 외화부채 환산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공정가액을 측정한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부채는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4. 관련법령

「국채법」

-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4. 1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들,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전문개정 2011. 4. 4.]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4. 30.>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 4. 30.>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의 금융회사들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補填)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자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30.>
[전문개정 2009. 1. 30.]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 1. 23.>

II. 총당부채

1. 총당부채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총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총당부채, 퇴직수당총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충당부채를 말한다.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총당부채	연금총당부채	공무원연금총당부채	-
		군인연금총당부채	-
	퇴직수당총당부채	공무원퇴직수당총당부채	-
		군인퇴직수당총당부채	-
	보증충당부채	-	-
	보험충당부채	-	-
	기타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기타의기타충당부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2-1. 연금총당부채

① 공무원연금총당부채

공무원연금총당부채는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연금미수급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군인연금충당부채

군인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연금미수급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2. 퇴직수당충당부채

① 공무원퇴직수당충당부채

공무원퇴직수당충당부채는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② 군인퇴직수당충당부채

군인퇴직수당충당부채는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3. 보증충당부채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

2-4. 보험충당부채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5. 기타충당부채

① 소송충당부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퇴직보험예치금

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다. 재정상태표일의 잔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계상한다.

(3) 국민연금전환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다.

(4) 퇴직연금운용자산

국가회계실체가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자산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다.

③ 기타의기타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중 소송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이외의 금액으로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상한다. 예로는 복구충당부채 등이 있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충당부채 인식

(1) 충당부채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
- ②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②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산출 및 재무제표 표시

- (1)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한다.
- (2)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매 결산기말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출하여, 설정전 충당금잔액과 비교하여 비용 및 부채로 계상한다.
- (3)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계약직·임시직·예술단원 등에 대해 산출한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당기에 설정될 퇴직급여의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퇴직급여 =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전기말 퇴직금 추계액 - 당기 중 실제퇴직금 지급액)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평균급여^{*1} × 근속연수^{*2}

* 1 평균급여 = ① + ② + ③

* 2 근속연수: 결산 월 기준 근속연수

① 결산 월 직전 3개월 지급급여 / 3

② 결산 월 직전 1년 지급 상여금 / 12

③ 결산 월 기준 적치 수당 / 12

- (5) 실제 퇴직금의 지급시점에는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우선 상계하고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퇴직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액만큼 퇴직급여를 인식한다.
- (6) 명예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 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 (7)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3)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 ①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급여를 부채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도 인식함
 - ②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른 효과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③ 연금미지급금의 인식

- (1)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연금사업에는 공무원, 군인, 사학 및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다.
-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중 실제 지급원인이 발생하여 지급이 확정된 부채는 '연금충당부채'를 '연금미지급금'으로 대체하며 장단기 여부에 따라 '연금미지급금/장기' 및 '연금미지급금/단기'로 인식한다.
- (3)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하며 장단기 여부에 따라 '연금미지급금/장기' 및 '연금미지급금/단기'로 인식한다.

④ 보증 및 보험충당부채 인식 대상

- (1)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보증사업에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등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증사업이 포함된다.

- (2) 보험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보험사업에는 농업업재해재보험, 무역보험, 우체국보험 등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이 포함된다.
- (3) 사회보험사업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며, 「보험 회계처리 지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준비금을 '사회보험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기타부채

1. 기타부채 정의

기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사회보험부채,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기타부채	사회보험부채	고용보험부채	-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
		임금채권보장부채	-
	선수수익	선수이자수익/단기	-
		선수이자수익/장기	-
		선수국세수익/단기	-
		기타의선수수익/단기	-
		선수국세수익/장기	-
		기타의선수수익/장기	-
	선수금	-	-
	기타의기타부채/단기	-	-
	기타의기타부채/유동성장기	-	-
	기타의기타부채/장기	-	-

2-1. 사회보험부채

① 고용보험부채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적용하는 여유자금을 말하며, 사업별로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을, 실업급여는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적립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전년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적립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부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2-2. 선수수익

① 선수이자수익

금융상품 및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금액으로서 차기에 귀속될 수익

② 선수국세수익

국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와 관련하여 국가가 고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인식하는 수익

③ 기타의선수수익

이자수익을 제외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임대료, 수수료 등) 중 차기에 귀속될 수익

2-3. 선수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선수취액 또는 유형자산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선수취액을 말한다.

2-4. 기타의기타부채

기타부채 중 위 사회보험부채, 선수수익 및 선수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유동성 대체

최초 부채 발생 당시에는 장기의 기타부채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의 기타부채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단기 및 유동성장기의 기타부채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② 선수수익의 장·단기 구분 및 인식

용역 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대금을 수령하고 이후의 기간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선수한 금액은 선수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선수

수익 중 용역제공 시점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인 부분은 장기의 선수수익 계정과목으로 계상한다.

결산시점에 인식한 선수수익은 용역의 제공시점 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선수수익은 부채에 포함되지만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며, 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수익으로 실현된다.

③ 선수금과 선수수익의 구분

선수금은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수금을 의미하는 반면 선수수익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비롯한 각종 수익의 발생과 관련한 선수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수수익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대체된다.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선수한 금액이라도 수익과 관련된 선수액의 경우 선수수익으로 분류한다.

④ 선수금과 예수금의 구분

선수금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며 물품의 인도 또는 공사의 완성 등을 조건으로 수취하는 것이나 예수금은 일상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며 향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다.

4.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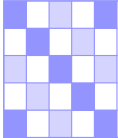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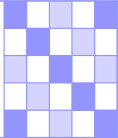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 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다음 연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 4 장 순 자 산



I.	기	초	순	자	산	...	677
II.	재	원	의	조	달	...	679
III.	재	원	의	이	전	...	682
IV.	조	정	항	목	...	683	

1. 순자산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는 순자산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이 금액이 통상 자본이 되나 국가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여재산 성격인 순자산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의 자본은 주주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이 크다는 것이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건전성이 높다는 것으로 단순 해석되기보다, 국가자산과 국가부채의 균형을 설명하거나 세대간 부의 이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기본순자산	-	-	-
적립금 및 잉여금	-	-	-
순자산조정	-	-	-

①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기준에 기업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던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와 기금의 경우 자본금을 의미한다.

② 적립금 및 잉여금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와 기금의 경우 임의적립금, 결손금·잉여금 등을 포함한다. 결산 시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결과가 적립금 및 잉여금에 반영된다.

③ 순자산 조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기타순자산의증감 등을 포함한다.

Ⅰ. 기초순자산

1. 기초순자산 정의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의미하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때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후 기초순자산을 표시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기초순자산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오류수정손실	-
	회계변경누적효과	회계변경누적이익	-
		회계변경누적손실	-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기초순자산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가	-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감소	-

①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오류로 인하여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①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②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금액을 재작성한다.
- (2)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은 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3) 전기오류수정이익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

수정사항을 말한다.
(4) 전기오류수정손실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 수정사항을 말한다.

② 회계변경누적효과

회계변경이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과와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소급하여 적용하되,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 (1) 회계변경누적이익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기초순자산의 증가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회계변경누적손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기초순자산의 감소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1)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중앙관서의 순자산증감 중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증가분을 말한다.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감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중앙관서의 순자산증감 중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감소분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오류수정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구분

회계추정의 변경은 오류수정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II. 재원의 조달

1. 재원의 조달 정의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은 순자산의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로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사회보험, 부담금, 제재금 및 기타 이전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등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으로 구분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은 회계·기금 단위 및 중앙관서 단위에서만 표시되며, 국가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또는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의 대체에 따라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재원의조달	국고수입	-	-
	국고이전수입	-	-
	사회보험수익	-	-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	-
		부담금수익환급금	-
	재재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과태료수익
			과태료수익환급금
			과징금수익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가금수익
			징계부가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환급금
기타이전수익	채무면제이익	-	-
	자산수증이익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재원의조달	기타이전수익	정부내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국고금회계전입금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① 국고수입

국고수입은 일반·특별회계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제 사용한 예산금액을 의미한다.
자금배정단계가 아닌 자금집행단계에서 국고금 실물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자금집행 시 국고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국고이전수입

일반·특별회계에 수납된 수입금을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킬 때 국고금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③ 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④ 부담금수익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하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부담금수익을 순자산변동표에 인식한다. 부담금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수익자부담금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을 말한다.
- (2) 원인자부담금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을 말한다.
- (3) 조세성부담금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법정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수익의 종류에 따른 예시〉

종 류	예 시
수익자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원인자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소음부담금
조세성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배출부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출국납부금

⑤ 제재금수익

법령과 계약의 위반에 따라 해당 법령 및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회계실체가 징수하거나 지급받은 수익을 말한다.

- (1) 변상금수익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을 말한다.
- (2) 위약금수익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3) 가산금수익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가산세는 국세와 관련하여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본세의 과목에 가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종료하고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4) 벌금수익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형벌의 성질을 갖는 벌금 및 과료, 즉결 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징계부가금 등이 해당되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벌금 및 과료 이외에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① 벌금 및 과료: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벌금: 5만원 이상, 과료: 5만원 미만)
- ② 범칙금: 「도로교통법」·「경범죄 처벌법」 등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 ③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전벌
- ④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벌
- ⑤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벌

(5)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등을 말한다.

[6] 기타이전수익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국고수입, 국고이전수입,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전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은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2) 자산수증이익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관리전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자로부터 현금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기부채납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이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의 무상관리전환 시 자산을 이전 받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다.
- ② 정부외자산수증: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경우 발생한다. 정부외기부금은 현금성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인데 반해 정부외자산수증의 경우 비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임에 유의한다.
- ③ 정부외기부금: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수증 받는 경우 발생한다. 국가회계실체가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정부외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④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부여한 사용수익권을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3) 정부내전입금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부내전입금은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국가회계실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 ②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 ③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 ④ 기금전입금: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 ⑤ 국고금회계전입금: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 국고금예탁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 경우 및 국고금회계가 국고금예탁계정으로부터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전입금
 - ⑥ 농특세이전수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농어촌특별세수입으로 농어촌특별세수익은 기획재정부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농어촌특별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거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농특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인식된다.
 - ⑦ 주세이전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이전받는 주세수입으로 주세수익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주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거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해당 특별회계의 주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인식된다.
- (4)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중 (1)~(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의 재무제표 반영 시 회계실체별 차이**
-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국고통일주의에 따라 모든 세입을 국고에 불입 후 예산배정을 통해 재정운영결과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므로 재정운영표가 아닌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반영된다.

- 반면,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원의 조달 및 이전(순자산변동표)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 후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된다.
- (2) 한편,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된다. 다만,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경우 각 기금의 업무 특성에 따른 재원의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한다. (☞ [Ⅳ. 조정항목의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Ⅲ. 재원의 이전

1. 재원의 이전 정의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재원의이전	국고이전지출	-	-
	세출예산지출액	-	-
	기타이전비용	정부내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재원의이전	기타이전비용	정부내전출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
		기타의기타이전비용	-

① 국고이전지출

국고이전지출은 일반·특별회계에서 사용하며 일반·특별회계의 수익 중 수납되어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수입금을 의미한다.

② 세출예산지출액

각 정부부처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 후 실제 집행 시 국고금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다.

③ 기타이전비용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부내전출금

국가회계실체에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로, 정부내전출금은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국가회계실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②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③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④ 기금전출금: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금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⑤ 국고금회계전출금: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 국고금예탁계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경우 및 국고금회계가 국고금예탁계정으로 자금을 이체받을 경우 발생하는 전출금

(2)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의 무상관리전환 시 자산을 이전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다.

(3) 기타의기타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중 (1)~(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무상이전거래의 재무제표 반영방법 - 국가재무제표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에 반영되고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 내부거래 상계 후 잔액이 분야별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 항목에 반영된다.

IV. 조정항목

1. 조정항목 정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며, 투자증권 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기타순자산의증감을 포함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조정항목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증권평가이익	-
		투자증권평가손실	-
	자산재평가이익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사회기반시설 재평가이익	-
	보험수리적손익	연금보험수리적손익	공무원연금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연금보험수리적손실
			군인연금보험수리적이익
			군인연금보험수리적손실
		퇴직수당 보험수리적손익	공무원퇴직수당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실
			군인퇴직수당보험수리적이익
			군인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실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가	-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감소	-
	기타순자산의증감	납입자본의증감	납입자본의증가
			납입자본의감소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출연금의증감	출연금의증가
			출연금의감소
		기타의기타 순자산의증감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기타의기타순자산의감소

①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

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 (1) 투자증권평가이익: 재정상태표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금액을 말한다.
- (2) 투자증권평가손실: 재정상태표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말한다.
추후 해당 투자증권에 대한 처분시점에는 양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조정항목으로 계상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여 투자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한다. 즉, 투자증권평가손익은 미 실현보유손익의 성격으로 처분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② 자산재평가이익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재정운영결과)"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재정운영결과)"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 (1)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 (2)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③ 보험수리적손익

- (1) 연금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말한다.

- ① 공무원연금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 ② 군인연금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군인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2) 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퇴직수당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말한다.

- ① 공무원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공무원퇴직수당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 ② 군인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군인퇴직수당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④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 (1)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편한 중앙관서의 순자산 증감 중 이관 또는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증가분
-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감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편한 중앙관서의 순자산 증감 중 이관 또는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감소분

⑤ 기타순자산의증감

(1) 납입자본의증감

당 회계연도에 증가 또는 감소된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 ① 납입자본의증가: 회계연도 중 증가된 납입자본금
- ② 납입자본의감소: 회계연도 중 감소된 납입자본금

(2) 파생상품평가손익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파생상품이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금, 석유와 같은 현물자산을 기초상품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자산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의 4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다양한 변형상품이 있다.

선도거래란 미래의 일정시점에 매매하기로 하고 가격, 수량 등을 당사자간에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대상에 대하여 현재시점에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 또는 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옵션거래는 계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스왑거래는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파생상품은 매매목적과 위험회피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위험회피의 유형은 공정가액 위험회피와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나눌 수 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부터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변동이자율 조건의 이자수입액 및 지급액의 변동을 들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유형 및 구분에 따른 재무제표 인식 방법〉

구 분		재무제표	비 고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으로 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3) 출연금의증감

- ① 출연금의증가: 기금 등의 출연금이 증가했을 경우 인식
- ② 출연금의감소: 기금 등의 출연금이 감소했을 경우 인식

(4)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감

- ①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기타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인식
- ② 기타의기타순자산의감소: 기타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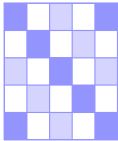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기금 출연금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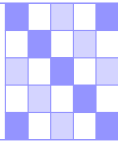
- (1)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는 그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기금설치 근거법상 기금설치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구 분	비 고	주요 용도(사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의 등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총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 사업비용 총당 - 관리, 운영비 등에 총당 - 연구개발 관련 비용 총당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 시설 신·증설 등 자본적 지출 - 자산매입 또는 융자금 자원 - 신용보증, 채무보증 자원 - 차입금·이자 상환 자원

- (2) 순자산변동표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되는 조정항목인 '출연금의증가'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정부내전입금으로 회계처리 된다.



제 5 장 수 익



제 1 절 국	세	수	익 ...	691
제 2 절 이	전	수	익 ...	695
제 3 절 국	가	운	영 수 익 ...	705

1. 수익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수익은 국가의 재정 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2. 수익의 인식기준

①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 될 때 인식한다.

- (1) 측정요건으로 수익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수익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 (2) 가득요건으로 수익창출 활동을 위한 결정적이며 대부분의 노력이 발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을 인식 할 수 있다.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수익의 원천에 따라 구분된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기준을 달리 하고 있다.

- (1)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한다.

- (2)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및 제재금 등의 수익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 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구 분		인식 시점
국세와 관련된 비교환수익	신고납부제도 적용세액	신고 시점
	부과과세제도 적용세액	부과고지 시점
	원천징수 조세수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국세수익을 제외한 비교환수익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무제표 중 재정부영표(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를 통해 보고되는데, 수익의 원천에 따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교환수익은 다시 프로그램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나뉜다. 한편, 수익의 성질에 따라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한다.

4. 수익의 원천별 구분

① 교환수익

(1) 프로그램수익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수익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한다.
- ※ 수입대체경비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함. 이 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경비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익 중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대부분 프로그램별 대응이 어려우므로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하는 부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비배분수익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②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사회보험, 부담금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말한다.

비교환수익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및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반영된다. 다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듯이 국고금 통합 관리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인 국세의 경우 순자산변동표가 아닌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하며, 국가 분야별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한다.

5. 수익의 성질별 구분

① 국세수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세수익은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액을 말한다.

② 이전수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전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을 말한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은 이전수익을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세수익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한다.

③ 국가운영수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을 말하며, 교환수익에 대응된다. 즉,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자원을 수취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제 1 절 국세수익

I. 국 세 수 익 693

I. 국세수익

1. 국세수익의 정의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세수익은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국세수익은 해당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세수익	국세수익	국세수익	-
		미수국세대손상각비	-
		미수국세대손충당금환입	-

① 국세수익

(1) 국세수익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액을 말한다.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되며 국가 재무제표에서는 재정운영표에 나타난다.

- ① 각종 국세수익: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수익
- ② 국세환급금: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2) 미수국세대손상각비

미수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설정액 및 대손발생액을 말한다.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미수국세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추가로 설정한다.

(3) 미수국세대손충당금환입

미수국세채권에 대하여 결산 전 대손충당금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 초과분을 미수국세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액을 환입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재정운영표 및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비교

국가 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중앙관서(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의 합계와 일치한다.

② 국세수익 종류별 수익인식기준 비교

- ① 신고납부제도 적용세액: 신고 시점
- ② 부과과세제도 적용세액: 부과고지 시점
- ③ 원천징수 조세수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4.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제 2 절 이전수익

I.	사	회	보	험	수	익		697
II.	부	담	금	수	익		698	
III.	제	재	금	수	익		699	
IV.	기	타	이	전	수	익		701

I. 사회보험수익

1. 사회보험수익 정의

사회보험수익은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및 「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사회보험수익이 아닌, 연금수익으로 별도 구분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이전수익	사회보험수익	국민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사학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고용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보험수익환급금
		산재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산재보험수익환급금

I 사회보험수익

(1) 국민연금수익

국민연금수익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의 고용주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고용주부담금: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2) 사학연금수익

사학연금수익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본인부담금, 학교기관부담금 및 국가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연금가입자가 사학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고용주부담금: 학교경영기관이 사학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③ 국가기여금: 국가가 연금액의 일정 금액을 국가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3) 고용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기여금을 말한다. 고용보험수익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고용보험수익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4) 산재보험수익

산재보험수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기여금을 말한다. 산재보험수익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산재보험 수익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사회보험수익의 인식시점

사회보험수익은 모두 부과지로 청구권이 확정되므로 부과지 시 수익을 인식하고, 실제 현금수취 시 관련 미수채권을 상계한다. 부과지 시 징수결정되는 금액은 전월 급여를 기준으로 추산하므로 실제 수취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과 채권상계액과의 차이는 사회보험수익에 가감한다.

② 사회보험수익의 구성

사회보험수익은 고용주실체로부터 지급받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피고용자기여금,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국가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사학연금기금의 국가기여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액의 일정 금액이며, 이는 타 연금의 보전금과는 성격이 다른 수익으로서 사회보험수익으로 구분한다.

4. 관련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1. 제44조의4항에 따라 교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II. 부담금수익

1. 부담금수익 정의

부담금이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또는 정부 등 공적기관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사용자 및 수익자가 해당 서비스와 연관이 깊은 재화나 서비스 사용 시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와 간접적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국가회계실체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를 의미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이전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	-
		부담금수익환급금	-

① 부담금수익

(1) 부담금수익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수익은 국가의 법적,

계약적, 행정적 청구권이 확정된 때 수익을 인식한다. 부담금수익에 대한 행정적 청구권은 징수결의에 의하여 부과지 시 발생하므로 부과지 시 수익을 인식하고, 향후 수취 시 미수채권을 상계처리한다.

부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익자부담금: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대체산림지원 조성비 등
- ② 원인자부담금: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개발부담금, 소음부담금 등
- ③ 조세성부담금: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법정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배출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2) 부담금수익환급금

부담금수익을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부담금수익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부담금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수익은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수익은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4. 관련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 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III. 제재금수익

1. 제재금수익 정의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제재금수익은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지급의무를 발생하는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이전수익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이전수익	제재금수익	벌금수익	과태료수익
			과태료수익환급금
			과징금수익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가금수익
			징계부가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환급금

Ⅰ 제재금수익

- (1) 변상금수익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을 말한다.
- (2) 위약금수익은 계약당사자와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 (3) 가산금수익은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을 말한다.
- (4) 벌금수익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및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징계부가금 등을 말한다. 벌금수익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벌금 및 과료: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벌금: 5만원 이상, 과료: 5만원 미만)
 - ② 범칙금: 「도로교통법」·「경범죄 처벌법」 등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 ③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전벌
 - ④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벌

- ⑤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벌
- (5) 몰수금및추징금수익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한 몰수금, 몰수 물품 및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등을 말한다.

Ⅱ 환급금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Ⅰ 제재금수익의 인식 시 유의사항

- (1) 제재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 (2) 일반적으로 제재금수익은 세부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수익을 인식한다.
 - ① 변상금수익: 고지하는 때
 - ② 위약금수익: 고지하는 때
 - ③ 가산금수익: 납부기한 종료 후 고지하는 때
 - ④ 벌금수익
 - 벌금 및 과료: 납부하는 때
 - 범칙금: 납부하는 때
 - 과태료: 고지하는 때 다만,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 과징금: 고지하는 때
 - 징계부가금: 고지하는 때
- ⑤ 몰수금및추징금수익: 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가 집행된 때 또는 비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품이 처분된 때

② 몰수금및추징금수익의 인식 시 유의사항

몰수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불관리를 하되 이러한 물품 중 화폐성자산은 압류 및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자산 및 몰수금및추징금수익을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은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처분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하여 주석으로 기재하였다가 몰수판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 처분된 때에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한다.

③ 국가회계실체별 제재금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제재금수익 중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④ 환급금의 인식 시 유의사항

이전수익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4.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2008. 3. 28.]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4. 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IV. 기타이전수익

1. 기타이전수익 정의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기타이전수익은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채무면제이익	-
		자산수증이익	정부외기부금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정부외자산수증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정부내자산수증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①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은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② 자산수증이익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관리전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자로부터 현금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기부채납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이익

- ① 정부외기부금: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수증 받는 경우 발생
- ② 정부외자산수증: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경우 발생
- ③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부여한 사용수익권을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발생하는 이익

④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간의 무상 관리전환시 발생

③ 정부내전입금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

- ①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 ② 기타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 ③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 ④ 기금전입금: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④ 기타의기타이전수익

- ① 기타의기타이전수익: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정부내전입금을 제외한 각종 기타이전수익을 말하며,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 ②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기타의기타이전수익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채무면제이익의 인식 시 유의사항

채무면제이익의 인식시점은 실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이 인식시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인식시점으로 한다.

② 채무면제이익의 재무제표 표시

채무면제이익 중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예산배정의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순자산변동거래로 보아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③ 자산수증이익 인식 시 유의사항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을 제외한 자산수증이익은 청구권이 확정되는 자산수취 시점에 인식한다.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은 사용수익권을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할 때 인식한다.

④ 정부내전입금 인식 시 유의사항

국가의 법적, 계약적, 행정적 청구권이 확정된 시점인 부과고지시점에 인식한다. 예산회계가 아닐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는 금전의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납부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나, 예산회계에 따라 징수결의에 의하여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징수결의를 거친 후 부과고지 시에 이미 청구권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과고지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⑤ 기업특별회계 내 계정 간 내부거래

기업특별회계전입금에는 다른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뿐 아니라 기업특별회계의 한 계정이 동일 기업특별회계의 다른 계정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도 포함된다. 기업특별회계전출금도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계정전출(입)금, 자본계정전출(입)금, 감가상각전출(입)금, 당기순이익전출(입)금과 같이 기업특별회계 내 수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세입예산의 이전을 위해 발생한 전출(입)금 거래는 각각 기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계정 간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제 3 절 국가운영수익

I. 재 화 및 용 역 제 공 수 익	707
II. 연 금 수 익 (공 무 원 · 군 인)	710
III. 이 자 수 익	712
IV. 배 당 수 익	713
V. 자 산 처 분 이 익	714
VI. 자 산 평 가 이 익	715
VII. 기 타 국 가 운 영 수 익	716

I.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의 정의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가운영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환급금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환급금
		기타재화및 용역제공수익	사용료수익
			사용료수익환급금
			수수료수익
			수수료수익환급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환급금

①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회계 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3)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및용역제공수익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관리과목을 가진다.

- ① 사용료수익: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일반유형 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과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
- ②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 ③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② 환급금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재화판매수익의 인식기준

재화판매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② 국가회계실체가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재화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나므로 재화의 인도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경우에 따라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계정과목	예시
재화판매수익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잡곡·기타부산물 판매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 사업수입 복권기금의 복권사업수입 간행물, 영상물 판매수입 및 행정용품 판매수입

② 용역제공수익의 인식기준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를 의미한다.

-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정과목	예시
용역제공수익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익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의 수탁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 사업 관련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 사업 관련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 사업수입 병원운영에 따른 용역판매수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용역판매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③ 용역제공수익 인식을 위한 진행기준

용역의 수익인식 기준인 진행기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제공된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 계약기간의 경과 또는 용역대가 수령정도를 통해 작업진행정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진행률은 다음 ①~③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① 총예산작업량(시간) 대비 실제작업량(시간)의 비율
- ② 총예산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 ③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 * 총추정원가: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계한 금액
 - *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를 누적인 금액

④ 사용료수익의 인식기준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입장료수익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사용료수익과 별개로 보증금의 형태로 예치한 예납금은 사용수익 기간의 만료 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사용료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임대보증금)로 처리한다.

계정과목	예시
사용료수익	전기통신 수탁사업수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항공,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 토지·건물의 대여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⑤ 수수료수익의 인식기준

수수료수익은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으로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고시수수료 등의 경우 기간단위의 계약이

아니라 1회성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사용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검사수수료 등의 경우는 계약 형태에 따라 기간단위 또는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정과목	예시
수수료수익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조달특별회계의 나라장터운영수입

⑥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수익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과목을 선택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 국립재활원 의료수익의 경우 용역제공수익으로,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판매수익의 경우 재화판매수익으로 처리한다.

⑦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의 구분

용역제공수익은 국가회계실체가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며, 수익 창출을 위하여 실질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발생 가능한 수익이며,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의 경우는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 사업으로서 기존의 자산을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수익을 의미한다.

⑧ 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수입대체경비수입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익 중 유일하게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수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경비와 관련된 수입이 예산을 초과

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여권발급경비, 대학입시경비, 등기소 등·초본 발급경비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수입대체경비수입은 그 정의 상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대부분이 '재화및용역제공수익'으로서 프로그램수익에 해당한다.

4.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II. 연금수익(공무원·군인)

1. 연금수익의 정의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금수익은 공무원 및 군인 연금기금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기여금, 보전금*을 말한다.

*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가운영수익	연금수익 (공무원·군인)	공무원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군인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① 연금수익

(1) 공무원연금수익

공무원연금수익은 크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본인부담금과 국가부담금으로 나뉘며, 이 중 국가부담금은 중앙정부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부담금,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나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연금가입자인 피고용자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본인부담금)
- ② 고용주부담금: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 실체로서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국가부담금)

(2) 군인연금수익

군인연금수익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으로 구분된다.

- ① 피고용자기여금: 연금가입자인 피고용자가 군인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고용주부담금: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 실체로서 군인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연금수익의 인식시점

연금의 경우 매달 부과고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과고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수익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고지 시에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연금기금의 연금 수취액은 고용주실체로부터 지급받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피고용자기여금,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받는 보전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기여금은 국가운영수익의 연금수익(공무원·군인)으로 처리된다.

다만,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받는 보전금은 연금기금의 자원 부족으로 다른

국가회계실체 등에서 재원을 보조받는 금액으로 연금수익(공무원·군인)이 아닌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정부내전입금'으로 인식한다.

③ 연금수익의 회계처리

(1) 공무원연금의 회계처리

고용주실체 입장의 국가회계실체는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운영비(고용부담금)'로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고용주부담금을 각 부처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사혁신처 일반회계가 각 부처의 고용주부담금을 '전출금'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 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기금 측에 납부한 고용주부담금 중에서 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해당액은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의 기타이전비용'으로 처리하고,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해당액은 재정운영표 상 '운영비(고용부담금)'로 처리한다.

이 때 타 중앙관서는 인사혁신처의 전출금 예산으로 집행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해당액을 재정운영표 상 '운영비(고용부담금)'와 순자산변동표 상 '기타의기타이전수익'로 처리한다.

한편, 공무원연금기금 측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고용주부담금 납부액을 재정운영표 상 '연금수익(공무원·군인)'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고용주부담금 관련 거래는 국가회계실체 간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재무제표 작성 시 고용주부담액인 '고용부담금'은 연금기금의 '연금수익(공무원·군인)'과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Ⅲ. 이자수익

1. 이자수익의 정의

이자수익이란 금융상품 예치, 국·공채 등 투자증권 보유, 외부자금 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수익	이자수익	금융상품이자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
			정기적금이자수익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투자증권이자수익	국채이자수익
			공채이자수익
			지방채이자수익
			회사채이자수익
		대여금이자수익	일반용자금이자수익
			저리용자금이자수익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

① 이자수익

- (1) 금융상품이자수익
 - ① 정기예금이자수익: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② 정기적금이자수익: 정기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③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기타의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2) 투자증권이자수익
 - ① 국채이자수익: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② 공채이자수익: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③ 지방채이자수익: 지방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④ 회사채이자수익: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3) 대여금이자수익
 - ① 일반용자금이자수익: 대여금 중 일반용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② 저리용자금이자수익: 대여금 중 저리용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③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대여금 중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④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대여금 중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⑤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대여금 중 정부내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4) 기타이자수익
 - 상기 (1)~(3)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수익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이자수익의 인식

- (1)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경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손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2)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계상한다. 이자수익이란 실제 수령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미수수익)까지 포함한다. 즉, 이자수익은 그 성격상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선수취 하였으나 수익인식기간 미경과시에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 (3)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연불조건의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는 총 금액이 현재시점의 가치와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채권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다.

IV. 배당수익

1. 배당수익의 정의

배당수익은 주식이나 정부출자금 등의 투자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통해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수익	배당수익	정부출자기업출자금배당수익	-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배당수익	-
		지분증권배당수익	-
		국세물납증권배당수익	-
		기타배당수익	-

① 배당수익

- (1) 정부출자기업배당수익: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자기업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
- (2) 정부출자기업외배당수익: 정부출자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의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
- (3) 지분증권배당수익: 정부가 보유한 지분증권에 대한 배당수익
- (4) 국세물납증권배당수익: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 받음에 따라 보유하게 된 증권에 대한 배당수익
- (5) 기타배당수익: 상기 (1)~(4)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수익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배당수익의 인식 시 유의사항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V. 자산처분이익

1. 자산처분이익 정의

자산처분이익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수익	자산처분이익	투자증권처분이익	-
		KIC위탁자산처분이익	-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무형자산처분이익	-
		기타자산처분이익	-

① 자산처분이익

(1) 투자증권처분이익: 투자증권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2) KIC위탁자산처분이익: KIC위탁운용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3)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기타금융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4)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5)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6) 무형자산처분이익: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 (7) 기타자산처분이익: 기타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자산처분손익 인식 시 고려사항

- (1) 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자산처분손익 계산 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용수익권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재평가대상 자산의 경우 조정항목으로 처리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2)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증권평가손익을 고려하여 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처분손익은 교환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 및 현금 증감액을 고려하여 계상한다.

② 자산의 처분 시점

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고, 처분 후 매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을 처분 시점으로 본다.

VI. 자산평가이익

1. 자산평가이익 정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자산평가이익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수익	자산평가이익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 재평가손실환입
		파생상품평가이익	-
		외화자산평가이익	-
		기타자산평가이익	-

① 자산평가이익

(1)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 재평가이익(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재정운영순원가)'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재정운영순원가)'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 재평가이익(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

②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환입

(2) 파생상품평가이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파생상품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시) 이를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3) 외화자산평가이익

재정상태표일 현재 화폐성 외화자산을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이익을 말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도록 한다.

여기서 화폐성자산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자산을 의미한다. 화폐성자산의 예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대여금 등이 있다.

(4) 기타자산평가이익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1)~(3) 이외의 자산평가이익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재무제표 표시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계약 시와 재정상태표일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 때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매매목적과 위험회피수단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 목적의 거래는 위험회피 유형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구분되며, 발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재무제표	비 고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으로 처리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과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혹은 순자산변동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되, 파생상품계약별 공정가액(자산·부채)과 평가손익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②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1)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한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함께 반영하며, 손익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3)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Ⅶ. 기타국가운영수익

1. 기타국가운영수익 정의

기타국가운영수익은 국가운영수익 중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공무원·군인),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및 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환입
			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환입
			구상채권대손충당금환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미수재화및옹역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부당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환입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환입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
		감액손실환입	금융상품감액손실환입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정부출자금감액손실환입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충당부채환입	보증충당부채환입
			보험충당부채환입
			소송충당부채환입
			기타충당부채환입
		기타부채환입	사회보험부채환입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
			기타의기타부채환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평가이익	외화부채평가이익
			기타부채평가이익
		보증수익	보증수익
			보증수익환급금
		보험수익	보험수익
			보험수익환급금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
		과오지급금회수금	-
		지출금반납금	-
		기타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구상이익
			국채물가연동이익
			신탁사업이익
			채무상환이익
			보험차익
			외환차익
			법인세환급금
			잡이익

① 기타국가운영수익

- (1) 대손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대손추산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한다.
-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 되어야 할 융자보조원가충당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을 융자보조 원가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한다.

(3) 감액손실환입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환입 처리하는 계정이다.

- ① 금융상품감액손실환입
- ②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 ③ 정부출자금감액손실환입
- ④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환입
- 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 ⑥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 ⑦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 ⑧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4) 충당부채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충당부채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충당부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을 환입하거나,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5) 기타부채환입

- ① 사회보험부채환입: 기설정되어 있던 사회보험사업 관련 준비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사회보험사업 관련 준비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을 사회보험부채환입으로 계상한다.
- ②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의 금액인 경우를 말한다.
- ③ 기타의기타부채환입
사회보험부채환입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을 제외한 기타부채환입

(6) 기타평가이익

- ① 외화부채평가이익: 재정상태표일 현재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이익을 말한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도록 한다.
여기서 화폐성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 화폐성부채의 예로 미지급금, 차입금, 국·공채 등이 있다.
- ② 기타부채평가이익: 기타부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부채의 평가이익을 말한다.

(7) 보증수익

- ① 보증수익: 보증수익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의미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보증수익환급금: 보증수익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보증수익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8) 보험수익

- ① 보험수익: 보험수익은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험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무역보험, 우체국보험 등을 말한다. 이때 사회보험사업은 제외된다.

② 보험수익환급금: 보험수익을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환급금을 '보험수익환급금'으로 처리하되, 해당수익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9)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우체국예금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으로 표시하고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으로 표시한다.

(10) 전기오류수정이익

오류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오류 중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및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말한다.

(11) 과오지급금회수금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비용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12) 지출금반납금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비용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13) 기타수익

①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의 실행에 따라 실제 현금수취·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이익이다.

② 구상이익

손해배상, 변상 혹은 배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장부가액(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만약, 구상채권, 대위변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배상·변상으로 변제받는 금액 전체가 구상이 된다.

③ 국채물가연동이익

물가연동국채 발행 시 물가연동지수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하락하는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감소시키면서 물가연동이익을 인식한다. 이 때, 물가연동 국채란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이다.

④ 신탁사업이익

분양형 및 임대형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탁사업수익권의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순자산증가액을 말한다.

⑤ 채무상환이익

국채 등의 채무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차이금액을 말한다.

⑥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액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액을 의미한다.

⑦ 외환차익

화폐성 외화자산의 회수와 화폐성 외화부채의 상환 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수취·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⑧ 법인세환급금

법인세 납부 대상인 국가회계실체가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는 금액으로 법인세환급이 확정되어 현금유입액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다.

⑨ 잡이익

국가운영수익의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대손충당금 환입 및 충당부채환입

매년 기말 결산시점에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재계상하고,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와 비교하여 기설정액이 설정대상액보다 많을 경우 인식한다.

② 보증수익의 인식

보증수수료 등의 보증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보험수익의 인식

보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④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처리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⑤ 기타수익

(1) 채무상환이익

채무상환이익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적인 협상 등을 통해 채무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기타이전수익)으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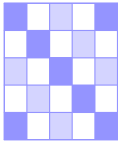
(2) 보험차익

보험차익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멸실 자산가액 만큼 기타의미수금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확정 금액으로 기타의미수금을 조정하고 이때 이전에 계상한 기타의미수금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보험차익으로, 적으면 그 차액을 재해손실로 계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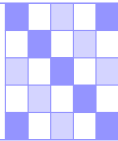
(3) 잡이익의 인식 및 예시

잡이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잡이익은 다음 내역을 포함한다.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 기타 영업의 차액 및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예: 간행물광고/판매수입, 관리비수입 등 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
- 기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제 6 장 비 용



제 1 절 이 전 비 용	 727
제 2 절 국 가 운 영 비 용	 737

1. 비용의 정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비용은 국가의 재정 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2. 비용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2 등에 따라 비용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 (2)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 (3)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

3.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구분

성질별 재정운영표 상에서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 비용으로 구분된다.

① 이전비용

-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2) 이전비용은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 및 기타이전비용으로 구분한다. 「비용 회계처리지침」은 이전비용을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② 국가운영비용

-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비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운영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 (2) 국가운영비용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공무원·군인),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및 기타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4. 프로그램별(분야별)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구분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에서는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으로 구분된다.

① 프로그램총원가

-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로 프로그램 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 (2)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는 회계실체의 성격에 따라 그 계산 방법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두고 있다.
 - ① 행정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행정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 원가 ± 국가회계실체간 간접원가

② 사업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사업형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 원가 ± 국가회계실체 내 간접원가

즉, 예산을 부서 간 통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는 직접원가에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배부 받은 간접원가는 가산하고 다른 국가회계실체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사업형회계에서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었으나, 다른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는 국가회계실체 내 간접원가로 보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사업에 배부한다.

(3) 한편,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하면 프로그램순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② 관리운영비

(1)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① 행정형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② 사업형회계(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 기금)에서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사업형회계에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함

③ 비배분비용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제 1 절 이전비용

I. 국 고 보 조 사 업 비	729
II. 출 연 사 업 비	730
III. 사 회 보 험 비 용	731
IV. 지 방 교 부 금	732
V. 기 타 이 전 비 용	733

1. 국고보조사업비

1. 국고보조사업비의 정의

국고보조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또는 해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이전비용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공공기관	-
		국고보조사업비/자치단체	-
		국고보조사업비/민간	-
		국고보조사업비/해외	-

① 국고보조사업비

(1) 국고보조사업비/공공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에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을 말한다.

(2) 국고보조사업비/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및 경상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및 경상적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및 경상적 지원 등을 말한다.

(3) 국고보조사업비/민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과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및 자본형성적 지원 등을 말한다.

(4) 국고보조사업비/해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장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및 자본형성 보조금,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등을 말한다.

3. 관련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7. 24., 2018. 12. 31., 2023. 8. 8.>

- 1. 「과학기술기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3. 「근로복지기초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4. 삭제 <2016. 3. 29.>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 7. 지방자치단체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II. 출연사업비

1. 출연사업비의 정의

출연사업비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해 지급근거가 있는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공공기관, 민간 또는 해외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출연금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이전비용	출연사업비	일반사업출연비	일반사업출연비/공공기관
			일반사업출연비/민간
			일반사업출연비/해외
		연구개발출연비	연구개발출연비/공공기관
			연구개발출연비/민간
			연구개발출연비/해외

1 출연사업비

(1) 일반사업출연비

관련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정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출연금(일반출연금)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 대상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 해외로 구분한다.

(2) 연구개발출연비

정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연구개발출연금)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 대상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 해외로 구분한다.

3. 관련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III. 사회보험비용

1. 사회보험비용의 정의

사회보험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사업에서 지출원인이 발생하였거나 부채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이전비용	사회보험비용	산재보험비용	-
		고용보험비용	-
		국민연금비용	-
		사학연금비용	-
		사학퇴직수당비용	-

① 사회보험비용

(1) 산재보험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산정한 사회보험 부채의 순증가액으로 구성된다.

(2) 고용보험비용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과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사회보험부채의 순증가액으로 구성된다.

(3) 국민연금비용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4) 사학연금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5) 사학퇴직수당비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다음 연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 [전문개정 2008. 12. 31.]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IV. 지방교부금

1. 지방교부금의 정의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 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이전비용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① 지방교부금

- (1)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말하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유아교육지원교부금을 포함한다.

V. 기타이전비용

1. 계정과목의 정의

기타이전비용은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전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용자보조비용	-
		보전비	손실보상비
			재해복구지원비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보전비	포상금
			배상비
			기타보전비
		사회보장지원금	보훈유공자지원금
			장학금및학자금
			기타사회보장지원금
		원가보상비	공공기관원가보상비
			기타민간원가보상비
		사립학교고용부담금 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보조비
		건강보험재정부담비	-
		구호및교정비	-
		국제부담금	-
		이차보전비용	-
		정부외자산기부	-
		정부내자산기부	-
		정부내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기타의기타이전비용	-

① 기타이전비용

- (1) 용자보조비용
저리융자금과 관련하여 계상하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비용 계정을 말한다.

(2) 보전비

- ① 손실보상비: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로 다음을 포함한다.
 - 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 (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현업관서에서 적법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② 재해복구지원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 ③ 포상금: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한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과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등을 말한다.
- ④ 배상비: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손해배상금, 국가 배상금 등)을 말한다.
- ⑤ 기타보전비: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금 등을 말한다.

(3) 사회보장지원금

- ① 보호유공자지원금: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 ② 장학금및학자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③ 기타사회보장지원금: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 원가보상비: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공공기관원가보상비와 기타민간원가보상비로 구분한다.

(5) 사립학교교직원부담금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 ①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금
-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6) 건강보험재정부담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지원금

(7) 구호및교정비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1} 및 피복비^{*2} 등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 취사용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의 구입비,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포함

(8) 국제부담금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9) 이차보전비용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를 말한다.

(10) 정부외자산기부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현금 외의 자산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의 무상관리전환 시 자산을 이전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다.

(12) 정부내전출금

정부내전출금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출금을 말한다.

- ①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②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③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 ④ 기금전출금: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금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13) 기타의기타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중 상기 (1)~(12)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비용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지급대상에 따른 구분 차이

- (1) 국가가 공무원 등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교육훈련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타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장학금및학자금(기타이전비용 - 사회보장지원금)으로 계상한다.
- (2)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그 지급대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진다. 즉, 공무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상여금, 상금 및 예산절약 상여금은 기타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은 포상금(보전비)으로 계상한다.

② 기업특별회계 내 계정 간 내부거래

기업특별회계전입금에는 다른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뿐 아니라 기업특별회계의 한 계정이 동일 기업특별회계의 다른 계정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도 포함된다. 기업특별회계전출금도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계정전출(입)금, 자본계정전출(입)금, 감가상각전출(입)금, 당기 순이익전출(입)금과 같이 기업특별회계 내 수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세입 예산의 이전을 위해 발생한 전출(입)금 거래는 각각 기업특별회계전출금과 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계정 간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4.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제 2 절 국가운영비용

I. 재 화 및 용 역 제 공 원 가	739
II. 연 금 비 용 (공 무 원 · 군 인)	739
III. 인 건 비	741
IV. 이 자 비 용	744
V. 운 영 비	745
VI. 감 가 상 각 비	751
VII. 자 산 평 가 손 실	753
VIII. 기 타 국 가 운 영 비 용	755

I.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 계정과목의 정의

재화및용역제공원가는 재화판매로 인하여 판매·소모된 재고자산의 원가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 재화판매원가와 용역제공원가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재화판매원가	-
		용역제공원가	-

①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 재화판매원가

재화판매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말한다.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관련된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하고,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과 관련된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2) 용역제공원가

용역제공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용역제공의 원가를 말한다.

II. 연금비용(공무원·군인)

1. 계정과목의 정의

연금비용(공무원·군인)은 공무원·군인의 연금, 퇴직수당 등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였거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연금비용 (공무원·군인)	공무원연금비용	-
		군인연금비용	-
		퇴직수당비용	공무원퇴직수당비용 군인퇴직수당비용
		기타연금비용	공무원기타연금비용
			군인기타연금비용

① 연금비용(공무원·군인)

(1) 공무원연금비용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군인연금비용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수당비용

- ① 공무원퇴직수당비용: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한 금액
- ② 군인퇴직수당비용: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한 금액

(4) 기타연금비용

- ① 공무원기타연금비용: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지 않는 급여의 현금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 ② 군인기타연금비용: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지 않는 급여의 현금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3.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직유족연금
-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 3. 비공무상 장해급여
-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4. 퇴직수당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총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급여
-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 나. 심리상담비
- 3. 장해급여
- 가. 장해연금
- 나. 장해일시금
- 4. 간병급여
- 5. 재해유족급여
- 가. 장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 가. 퇴역연금
 - 나. 퇴역연금일시금
 -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역유족연금
 -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부담금·보전금·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군인재해보상법」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 가. 상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연금
 -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
 - 1) 군인사망조위금
 - 2) 가족사망조위금

Ⅲ. 인건비

1. 인건비의 정의

인건비는 「비용 회계처리지침」에서 공무원 등으로부터 고용관계 또는 위임 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인건비	급여	정액급여
			상여금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보수
			연가보상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

① 인건비

(1) 급여

① 정액급여: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기타직보수), 법관 및 검사의 봉급

② 상여금: 성과상여금

③ 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근수당^{*1}, 정액수당^{*2}, 기타수당^{*3}

*1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2 정액수당: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3 기타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

④ 기타직보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사법연수생,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 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외교관후보자, 수습직원, 대체역, 각종 위원회 상근직 등

⑤ 기타보수: 교수보직경비^{*1}, 월정액여비^{*2}, 월정직책급^{*3} 등

*1 교수보직경비: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

*2 월정액여비: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3 월정직책급: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⑥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의한 연가보상비^{*}

* 기타직의 연가보상비는 기타직보수로 처리

⑦ 상용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의한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보수 등

⑧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

(2)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계정이다. 퇴직급여의 일반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만약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퇴직급여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 * - (전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 - 당기 중 실제 퇴직금 지급액)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은 당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을 말하며, 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전직원(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발생주의에 의한 인건비 산정

급여 등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 처리한다. 즉,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경과에 따라 급여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한다.

② 교수보직경비와 월정직책급의 연계처리 시 유의할 점

교수보직경비는 예산과목의 특정업무비와 연계되어서는 안 되며, 월정직책급은 예산과목의 특정업무비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4. 관련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2024. 8.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2020. 12. 31., 2024. 1. 5.>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면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금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금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IV. 이자비용

1. 이자비용의 정의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 또는 국내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재정상태표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이자비용	국채이자비용	-
		공채이자비용	-
		차입금이자비용	국내차입금이자비용
			해외차입금이자비용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재정증권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청약저축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BTL임대료이자비용
			기타의기타이자비용

① 이자비용

(1) 국공채이자비용

국채(공채)이자비용이란 발행한 국채(공채)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국채(공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국채(공채)이자비용에서 가산하고 국채(공채)할증발행차금환입액은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2) 차입금이자비용

- ① 국내차입금이자비용: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 ② 해외차입금이자비용: 다음과 같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 ※ 해외차입금이자비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계정과목	예시
해외차입금이자비용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수수료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 ③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 ④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 ⑤ 재정증권이자비용: 발행한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포함함

(3) 기타이자비용

- ① 청약저축이자비용: 주택청약저축과 관련하여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말함
- ② 금융리스이자비용: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융리스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함
- ③ BTL임대료이자비용: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자산 취득시 인식하는 BTL임대료미지급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함
- ④ 기타의기타이자비용: 국공채, 차입금, 청약저축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및 BTL임대료이자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을 말함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① 이자비용의 산정
- (1) 이자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이자비용에는 실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이자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되며, 선급이자는 포함 되지 않는다.
- (2) 즉, 이자비용은 그 성격상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V. 운영비

1. 운영비의 정의

운영비는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가운영비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제세
			수도광열비
			지급보험료
		소모품비	-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가운영비용	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안보비
		지급임차료	토지임차료
			건물임차료
			운용리스료
			기타자산임차료
		유류비	-
		교육훈련비	내부교육비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학교운영비	-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피복비
			급식비
		고용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국민연금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① 운영비

(1) 일반수용비

- ① 인쇄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②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 등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으로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 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 지급액, 상품·제품 등의 품질, 형상 등을 거래처 또는 사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제품 등의 일부를 시용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따르는 견본비 등을 말한다.
- ③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지급의료비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공공요금및제세

- ①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을 말한다.
- ② 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 ③ 수도광열비: 전기료, 연료비, 수도료, 오물수거료 등을 말한다.
- ④ 지급보험료: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제품 판매시의 운송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소모품비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내용연수가 1년 이내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을 말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상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임에 따라 소액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을 포함한다.

(4) 업무추진비

① 일반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외빈초청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기관 간 업무협약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등을 말한다.

② 직무수행경비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등 특정한 업무에 따른 경비를 말한다.

③ 특수활동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 안보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말한다.

(5) 지급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리스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 ① 토지임차료: 토지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 ② 건물임차료: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 ③ 운용리스료: 운용리스계약으로 비품이나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리스료 지급액을 말한다.
- ④ 기타자산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에 따른 임차료 등을 말한다.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다.

(6) 유류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구입비를 말한다.

(7)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는 견학비, 초청강사료, 학원수강료, 연수원임차료, 수련회비, 위탁교육훈련비, 해외연수비용 등 공무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① 내부교육비: 자체 교육을 위한 강사료, 연수원임차료 등
- ② 국내교육비: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직원의 학자금 지원액, 학원수강료 지원액, 견학비 등
- ③ 국외교육비: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 해외연수비용 등

(8) 여비교통비

- ①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 ② 국외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및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외출장여비, 해외출장지원경비

(9) 학교운영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중 국립부설유치원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공무원 인건비 및 공사비는 제외)
또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10) 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을 말한다.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피복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다.

- ① 특근매식비: 경상사무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등
- ② 일숙직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 ③ 피복비: 작업복을 포함한 상시착용 근무피복, 침구(당직용 침구 포함) 및 개인장구 구입비, 근무피복을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④ 급식비: 주식비, 부식비 및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로서 합숙할 경우

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상기 항목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및 공고료),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 ⑤ 기타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피복비 및 급식비 외의 복리후생비(예: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11) 고용부담금

- ① 공무원연금부담비: 정규직공무원^{*2}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부담비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② 군인연금부담비: 군인^{*3}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군인연금부담비

^{*2} 「군인연금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

- ③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1}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부담비

^{*3}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

- ④ 사학연금부담비: 사립학교교직원^{*4}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부담비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⑤ 건강보험부담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금 (50%)

- ⑥ 고용보험부담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부담비

- ⑦ 산재보험부담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부담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광고선전비의 범위

- (1)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 및 회계실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2) 광고선전비의 지출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한다.
- (3)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금융리스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 물품·용역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선급되거나 미지급된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의 처리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하는 경우, 기말결산 시에 미리 지급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미지급된 부분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③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지급수수료와 지급보험료

- (1)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지급수수료(예: 설계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 (2) 자산을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지급보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 자산구입을 위한 공공요금과 제세의 처리

자산의 구입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과 제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비용인식 시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출이 발생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해당 비용이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재정상태표일 현재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상당하는 비용 지출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⑥ 유류비와 수도광열비의 구분

차량운반과 관련된 연료비의 경우에는 수도광열비가 아닌 유류비로 분류하며,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는 수도광열비로 분류한다.

⑦ 소모품비에 속하는 군수품

통상품으로 분류되는 군수품 중 급식·피복·연료·유류·수리부속 이외의 소모성 물품이 소모되는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⑧ 소모품비의 비용 인식 시기

소모품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⑨ 도서구입비의 구분

일반도서 구입비는 소모품비로 분류하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 성격의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⑩ 특수활동비와 직무수행경비의 구분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단순한 제도·단속 및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직무수행경비로 분류된다.

⑪ 여비교통비의 비용인식 시기

여비교통비는 지출이 발생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여비교통비가 장기에 걸쳐 발생하여 선지급 및 후지급 등의 사유로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결산 기말에 선급비용 및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다.

⑫ 국립학교 관련비용의 구분

국립학교에 속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인건비로 분류되며, 시설비는 그 내역에 따라 관련 유형자산 또는 수선유지비 등으로 처리한다.

⑬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의 구분 시 유의사항

- (1) 회식비는 식대가 아닌 일반업무추진비로 분류된다.
- (2) 특근매식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하게 발생하는 매식비, 현물식사대체 급식비를 말한다. 식대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급식비는 공무원·군인에게 직접 급여되는 주 식대 등을 말한다.
- (3)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비는 보전비 중 재해복구지원비로 분류된다.
- (4) 선택적 복지제도란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이다.

⑭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고용주부담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고용주실체는 국가이며, 고용주실체가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운영비(고용부담금)로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타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의기타이전비용'으로 처리하고 타중앙관서는 재정운영표 상 '운영비(고용부담금)와 순자산변동표 상 '기타의기타이전수익'으로 처리한다.

4.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전문개정 2012. 3. 21.]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본조신설 2012. 3. 21.]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21.]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군인연금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6. 4.>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6. 4., 2017. 10. 24.>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2. 30.]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 1. 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2. 6.>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VI.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비 정의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적절한 기간손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가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건물감가상각비
			구축물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감가상각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전비품감가상각비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국도감가상각비
			고속국도감가상각비
			철도감가상각비
			항만감가상각비
			댐감가상각비
			공항감가상각비
			하천감가상각비
			상수도감가상각비
			국가어항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

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자산평가과정이 아니라 원가배분과정을 말한다. 즉,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즉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무형자산이 상각대상자산이며, 토지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1)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는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을 가진다.

- ① 건물감가상각비
- ② 구축물감가상각비
- ③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④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 ⑤ 전비품감가상각비
- ⑥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는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을 가진다.

- ① 국도감가상각비
- ② 고속국도감가상각비
- ③ 철도감가상각비
- ④ 항만감가상각비
- ⑤ 댐감가상각비
- ⑥ 공항감가상각비
- ⑦ 하천감가상각비
- ⑧ 상수도감가상각비
- ⑨ 국가어항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내용연수의 산정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 ①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 수준
- ② 자산의 부속물 교체빈도, 수선 또는 보수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 관리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 ③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

② 감가상각방법의 선정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증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잔존가액의 관리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한다.

잔존가액이 '0'인 경우라도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④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며, 일반유형자산 등과는 달리 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을 그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Ⅶ. 자산평가손실

1. 자산평가손실의 정의

「비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자산평가손실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 및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종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자산평가손실	자산재평가손실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
		외화자산평가손실	-
		기타자산평가손실	-

㉠ 자산평가손실

(1) 자산재평가손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재정운영결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에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손실(재정운영결과)"로 인식한다.

(2) 파생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재정상태표 기말시점에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한다.

(3) 외화자산평가손실

재정상태표일 현재 화폐성 외화자산을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실을 말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화폐성 외화자산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자산을 의미한다. 화폐성자산의 예로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대여금 등이 있다.

(4) 기타자산평가손실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1)~(3) 이외의 자산평가손실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파생상품평가손익 구분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매매목적과 위험회피수단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 목적의 거래는 위험회피 유형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구분된다.

- (1) 매매목적: 매매목적이란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를 의미함
- (2) 위험회피: 위험회피란 위험회피대상항목^{*1}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2}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1} 위험회피대상항목: '공정가액 변동위험 회피대상항목'은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이며 '현금흐름 변동위험 회피대상항목'은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예상거래를 의미함

^{*2} 위험회피수단: 그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과는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및 금융자산

②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재무제표 표시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계약 시와 각 결산기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 때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구 분		재무제표	비 고
매매목적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으로 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으로 처리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과 평가손익은 파생상품계약별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혹은 순자산변동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되, 파생상품계약별 공정가액(자산·부채)과 평가손익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③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기준

- (1)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화폐성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각 재정상태표일마다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한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조정항목에 반영하며, 손익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3)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Ⅷ. 기타국가운영비용

1. 기타국가운영비용의 정의

기타국가운영비용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공무원·군인),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국가 운영비용을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자산처분손실	투자증권처분손실
			KIC위탁자산처분손실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무형자산처분손실
			기타자산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건물수선유지비
			건축물수선유지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전비품수선유지비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국도수선유지비
			고속국도수선유지비
			철도수선유지비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항만수선유지비
			댐수선유지비
			공항수선유지비
			하천수선유지비
			상수도수선유지비
			국가어항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자산폐기손실	－
		대손상각비	전대차관대여금대손상각비
			일반용자금대손상각비
			구상채권대손상각비
			미수재화및용역수익대손상각비
			미수제재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부담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연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이자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종수익대손상각비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기타수익대손상각비
			기타의미수금대손상각비
		감액손실	금융상품감액손실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감액손실	투자증권감액손실
			정부출자금감액손실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무형자산감액손실
			기타자산감액손실
		보험비용	보험비용
			보험책임준비금전입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전입
		보증비용	보증충당부채전입
			보증보조비용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용역비
			정책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외주용역비	관리용역비
			위탁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기타용역비
		기타평가손실	외화부채평가손실
			기타부채평가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과오납금반환금	-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
		기타비용	소송충당부채전입
			기타충당부채전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비용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
			외환차손
			채무상환손실
			파생상품거래손실
			국채물가연동손실
			유산자산취득비
			관리토지취득비
			법인세비용
			재해손실
			신탁사업손실
			예비비
			잡손실

① 기타국가운영비용

(1) 자산처분손실

자산처분손실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용수익권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 ① 투자증권처분손실
- ② KIC위탁자산처분손실
- ③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
- ④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⑤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⑥ 무형자산처분손실
- ⑦ 기타자산처분손실

(2)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는 수선비 지출 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으로 나누어진다.

- ① 건물수선유지비
- ② 구축물수선유지비
- ③ 기계장치수선유지비
- ④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 ⑤ 전비품수선유지비
- ⑥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3)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는 수선비 지출 대상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부관리과목으로 나누어진다.

- ① 국도수선유지비
- ② 고속국도수선유지비
- ③ 철도수선유지비
- ④ 항만수선유지비
- ⑤ 댐수선유지비
- ⑥ 공항수선유지비
- ⑦ 하천수선유지비
- ⑧ 상수도수선유지비
- ⑨ 국가어항수선유지비

(4)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자산폐기손실

국가회계실체가 보유중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등이 재해 등으로 전부 멸실, 폐기되었을 때 인식한다.

(6) 대손상각비

미수채권, 대여금 등 자산의 전기 대손추산액과 당기에 계산된 대손추산액과의 차이를 조정하고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과목을 말한다.

(7) 감액손실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 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이때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의미한다.

- ① 금융상품감액손실
- ② 투자증권감액손실
- ③ 정부출자금감액손실
- ④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
- 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⑥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⑦ 무형자산감액손실

⑧ 기타자산감액손실

(8) 보험비용

① 보험책임준비금전입, 보험비용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재정운영표에 국가운영비용으로 인식한다. 보험책임준비금전입이 부의 금액인 경우 보험충당부채환입(국가운영수입)으로 인식한다.

②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인식한다.

(9) 보증비용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가능성을 추정한 결과에 따라 보증충당부채 금액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0)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일반연구용역비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② 정책연구용역비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용역 비용

③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등의 비용 및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용되는 소모성 재료비로서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와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비용

(11)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국가사업의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비용과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소요경비, 전력화사업 연구위탁비, 청사, 시설 등의 유지관리 용역비 및 기타용역비를 말한다.

① 관리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② 위탁사업비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③ 대행사업비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 민간의 경우 위탁과는 달리 개별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한함

④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등을 말한다.

(12) 기타평가손실

① 외화부채평가손실

재정상태표일 현재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실을 말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때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 화폐성부채의 예로서는 미지급금, 차입금, 국·공채 등이 있다.

② 기타부채평가손실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실, 외화부채평가손실 이외의 부채평가손실을 말한다.

(13) 전기오류수정손실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회계 처리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및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이다.

(14) 전기과오납금반환금

과오납반환금(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및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해 그 반환이 결정된 것) 중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당기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을 말한다.

(15)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오류정정(과거 징수결의 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 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 중 당초 징수결의 시점과 오류정정 시점이 상이한 회계연도일 경우 그 정정금액을 말한다.

(16) 기타비용

① 소송충당부채전입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타충당부채전입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타의기타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타의기타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자산처분손실, 자산평가손실 등) 및 예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표시한다.

④ 외환차손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회수 및 상환 시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실제 현금 수취 또는 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⑤ 채무상환손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의 지출에 따른 손실을 의미한다.

⑥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의 실행일에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말한다.

⑦ 국채물가연동손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 분을 반영하여 원금을 재계산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로, 물가연동지수가 직전연도보다 상승한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증가시키면서 물가연동손실을 인식한다.

⑧ 유산자산취득비, 관리토지취득비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각각 유산자산취득비, 관리토지취득비로 비용 처리한다.

⑨ 법인세비용

법인세 등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⑩ 재해손실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상하는 손실이다.

⑪ 신탁사업손실

「국유재산법」 제58조에 따라 신탁개발과 관련하여 수탁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또는 자산가액이 신탁사업수익권을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말한다.

⑫ 잡손실

국가운영비용의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손실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손실 등을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자산처분손익 산정 시 고려사항

투자증권, KIC위탁운용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처분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② 교환으로 인한 처분가액의 산정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처분가액은 교환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 및 현금증가액을 고려하여 계상한다.

③ 처분 시 장부가액의 산정

자산처분손실 인식 시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용수익권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기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월할 계산한다. 또한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자산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인식해야 한다.

④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유·무형자산의 수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1)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2)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⑤ 기계장치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특정 여비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기상관측장비 및 철도시설장비의 기계장치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은 기계장치수선유지비에 계상한다.

⑥ 유산자산수선유지비와 유산자산취득비의 비교

유산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 시에는 유산자산취득비로 계상하며 취득 이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계상한다.

⑦ 자산감액손실과 자산폐기손실의 비교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유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로 처리한다. 한편,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⑧ 대손상각비의 인식 및 회계처리

-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해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 ②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대손추산액이라고 하고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④ 한편, 재정상태표일 현재 대손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한다.

⑨ 위탁과 대행의 구분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로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는 것이다.

민간에 사무를 맡기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민간위탁은 위탁사업비, 법정 대행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류한다.

4. 관련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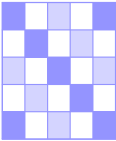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권”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국유재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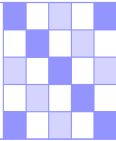
제58조(신탁 개발)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 7 장 국세징수



I. 국	세	수	익	765
II. 처			분	769

1. 국세징수활동의 의의

국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수입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이하 '과세관청')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세금수입을 과세관청의 수익으로 계상하게 되면 재정운영표 상 수익이 과다 계상되어 이에 따른 중앙관서 성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와 관련된 국세수익금액과 국세수입금액(현금수납액)의 회계처리는 중앙관서 고유의 업무에 따른 수익과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국세징수활동표를 통해 국세징수활동의 성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2. 국세징수 계정과목의 구분

국세징수 계정과목은 중분류(Level II)로 '국세수익'과 '처분'으로 구분되며, 국가가 부과 또는 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국세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 등을 수납하여 국고금회계 등으로 이전시키는 금액을 '처분'으로 인식한다. 국세징수활동표 상 국세수익 금액과 처분 금액은 항상 동일하다.

3. 국세징수활동표

국세징수활동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주석으로 보고되며 국세 및 관세 징수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이의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청,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등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만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통합결산보고서 작성 시 국세징수활동표 상 국세수익은 국가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대체되므로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국세징수활동표가 포함되지 않는다.

I. 국세수익

1. 국세수익의 정의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계정과목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의 회수가능가액을 의미한다.

2. 세부 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국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	-
		소득세수익국세환급금	-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	-
		법인세수익국세환급금	-
	부당이득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	-
		부당이득세수익국세환급금	-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	-
		상속세수익국세환급금	-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	-
		증여세수익국세환급금	-
	재평가세수익	재평가세수익	-
		재평가세수익국세환급금	-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	-
		부가가치세수익국세환급금	-
	주세수익	주세수익	-
		주세수익국세환급금	-
	전화세수익	전화세수익	-
		전화세수익국세환급금	-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	-
		증권거래세수익국세환급금	-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	-
		인지세수익국세환급금	-
	관세수익	관세수익	-
		관세수익국세환급금	-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	-
		방위세수익국세환급금	-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국세환급금	-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	-
		교육세수익국세환급금	-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
		농어촌특별세수익국세환급금	-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	-
		종합부동산세수익국세환급금	-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
		기타내국세수익국세환급금	-
	토지초과이득세수익	토지초과이득세수익	-
		토지초과이득세수익국세환급금	-
	지방교육양여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	-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국세환급금	-
		개별소비세수익	-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국세환급금	-
		소득세수익대손상각비	-
	대손상각비	법인세수익대손상각비	-
		부당이득세수익대손상각비	-
		상속세수익대손상각비	-
		증여세수익대손상각비	-
		재평가세수익대손상각비	-
		부가가치세수익대손상각비	-
		주세수익대손상각비	-
		전화세수익대손상각비	-
		증권거래세수익대손상각비	-
		인지세수익대손상각비	-
		관세수익대손상각비	-
		방위세수익대손상각비	-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대손상각비	-
		교육세수익대손상각비	-
		농어촌특별세수익대손상각비	-
		종합부동산세수익대손상각비	-
		기타내국세수익대손상각비	-
		토지초과이득세수익대손상각비	-
		지방교육양여세수익대손상각비	-
		개별소비세수익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환입	소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법인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부당이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상속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증여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재평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부가가치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주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전화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증권거래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인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방위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교육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농어촌특별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종합부동산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기타내국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토지초과이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지방교육양여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개별소비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

<국세수익의 종류>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방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기타내국세	토지초과이득세	지방교육양여세
개별소비세			

① 각종 국세수익(회계과목)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1) 각종 국세수익(관리과목): 각 수익인식시점에 따라 인식한 수익금액을 말한다.
- (2) 각종 국세수익국세환급금: 국가가 법령 또는 과오납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각종 국세수익(관리과목)의 차감계정이다.

② 대손상각비

각종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시 각종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③ 대손충당금환입

각종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시 각종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인식한다.

<참고. 폐지세목>

- 방위세: 1990.12.31. 「방위세법」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 전화세: 2001.09.01. 「전화세법」 폐지
- 지방교육양여세: 2005.01.01. 「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
- 부당이득세: 2007.07.19. 「부당이득세법」 폐지
- * 법이 폐지된 국세도 미수납액이 미수국세로 남아있거나 세무조사 등에 따라 국세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국세수익의 인식시점

국세수익의 인식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 인식시점에 해당되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

수익인식시점	세 목
신고 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과 시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기 타	인지세-과세문서 작성 시, 전화세-사용료 영수 시

② 국세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 (1)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 수입원으로 징수기관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각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에 예산배정된다. 각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은 국세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배정을 받은 후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 (2) 따라서 중앙관서 결산의 관점에서는 국세수익에 대해 징수기관의 수익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국세징수활동표를 작성하여 부과 및 징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에서 국세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배정을 받은 후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의 지출 시 국고수입(순자산변동표)처리 한다.

③ 국세징수활동표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세금(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세금(국고이전지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주석사항으로 과세관청(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에서 작성한다.

④ 국세징수활동표 표시

- (1)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2) 국세수익에 대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환입은 각 국세수익에 대한 금액을 합산하여 표시한다.

< 국세징수활동표 구조 >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구 분	20XY	20XX
I. 국세수익	xxx	xxx
(1) 국세수익발생금액	xxx	xxx
1. 소득세수익	xx	xx
2. 법인세수익	xx	xx
3. 부당이득세수익	xx	xx
4. 상속세수익	xx	xx
5. 증여세수익	xx	xx
...	xx	xx
(2) 대손상각비	(xxx)	(xxx)
(3) 대손충당금환입	xxx	xxx

< 국세징수활동표 구조 >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구 분	20XY	20XX
II.처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가) 총현금수입	xxx	xxx
1. 소득세수입	xx	xx
2. 법인세수입	xx	xx
3. 부당이득세수입	xx	xx
4. 상속세수입	xx	xx
5. 증여세수입	xx	xx
...	xx	xx
(나) 국세환급금	(xxx)	(xxx)
(2) 타회계이전	xxx	xxx
(3) 물납이전	xxx	xxx
(4) 미수국세의증감	xxx	xxx
(5) 대손충당금의증감	xxx	xxx
III.차감계 (I-II)	-	-

II. 처 분

1. 처분의 정의

'처분'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계정과목으로 국세수익 인식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현금수납액의 국고이전 등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고 이전지출, 타회계이전 및 물납이전 등을 포함한다.

2. 세부 계정과목 설명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처분	국고이전지출	총현금수익	소득세수입
			법인세수입
			부당이득세수입
			상속세수입
			증여세수입
			재평가세수입
			부가가치세수입
			주세수입
			전화세수입
			증권거래세수입
			인지세수입
			관세수입
			방위세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
			교육세수입
			농어촌특별세수입
			종합부동산세수입
			기타내국세수입
			토지초과이득세수입
			지방교육양여세수입
			개별소비세수입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처분	국고이전지출	국세환급금	-
	타회계이전	농특세이전지출	-
		주세이전지출	-
		기타타회계이전	-
	물납이전	-	-
	미수국세의증감	-	-
	대손충당금의증감	-	-

① 국고이전지출(국세징수)

총현금수입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총현금수입

국세수익이 실제로 징수되어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금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고금회계로부터 이전받은 금액으로 세액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으로 합쳐서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② 타회계이전

국세수익이 국고금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 농특세이전지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이전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2) 주세이전지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징수한 주세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100분의 60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이전한다.

(3) 기타타회계이전

'농특세이전지출', '주세이전지출' 이외 타 회계로 이전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다.

③ 물납이전

국세를 물납 받는 경우 해당하는 자산은 국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해당 자산을 이전하면서 '물납이전'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미수국세의 증감

재정상태표에서 미수국세의 증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⑤ 대손충당금의 증감

'미수국세의 증감' 계정과목과 같은 성격으로 미수국세 관련된 대손충당금의 내역을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물납 회계처리〉

예) 국세청은 상속세 100,000,000원을 부동산으로 물납 받았다. 물납가액은 토지 60,000,000원, 건물 40,000,000원이다.

구 분	회계실체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물납	국세청	건설중인가타의 유형자산	100,000,000	상속세수익	100,000,000
국유재산 이전	국세청	물납이전	100,000,000	건설중인가타의 유형자산	100,000,000
	기획재정부	토지	60,000,000	정부내자산수증	100,000,000
		건물	40,000,000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국세수익 현금유입액 회계처리

정부는 국세수익으로 유입된 현금을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관세청 등의 국가회계실체는 국세수익의 수납액을 '국고이전지출'이라는 계정과목을 통해서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국고이전지출'의 금액은 현금으로 유입된 국세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위해 국고금회계로부터 이전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한다.

② 간접세의 인식

국세수익 중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본세에 부가되는 간접세의 경우에도 본세와 동일하게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및 처분으로 인식한다.

③ 국세물납 회계처리

국세를 물납 받는 경우 해당하는 자산은 국세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게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된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해당 자산을 이전하면서 '물납이전'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서는 '정부내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

④ 국고이전지출과 타회계이전의 차이

과세관청을 통하여 국세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처는 징수기관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국고금회계로 해당 수입을 이전시키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국고이전지출'이다. 반면, 해당 국세수입이 타 법률 등에 따라 국고금회계가 아닌 타 중앙관서의 특별회계 등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타회계이전'으로 처리한다.

⑤ 국세징수활동 관련 기말 결산조정 사항

- (1) 국세징수활동을 하는 과세관청의 경우 국세수익의 인식과 대응하여 미수국세가 재정상태표에 인식된다. 재정상태표에는 해당 부처의 재정상태만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활동과 관련한 미수국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말 결산조정을 통해 당기에 증가 혹은 감소한 미수국세와 대응되는 미지급국세를 설정하여 해당 증감효과를 제거하게 된다.
- (2) 미수국세와 관련하여 인식되는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미수국세와 마찬가지로 기말 결산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국세를 설정하여 해당 증감효과를 제거하게 된다.

시점	차변		대변	
중앙관서 결산조정 시	미수국세의증감 (국세징수활동표)	xxx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xxx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xxx	대손충당금의증감 (국세징수활동표)	xxx

(3)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각 중앙관서의 국세징수활동표에 반영되었던 국세수익이 국가재정운영표로 대체되면서 미수국세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금액과 부채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었던 미지급국세에 대해서 취소시키는 분개가 이루어진다.

시점	차변		대변	
국가통합 시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xxx	미수국세의증감 (국세징수활동표)	xxx
	대손충당금의증감 (국세징수활동표)	xxx	미지급국세 (재정상태표-부채)	xxx
	국세수익 (국세징수활동표)	xxx	국세수익 (재정운영표)	xxx
	대손상각비 (재정운영표)	xxx	대손상각비 (국세징수활동표)	xxx
	대손충당금환입 (국세징수활동표)	xxx	대손충당금환입 (재정운영표)	xxx

4. 관련법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 2018. 3. 20., 2019. 12. 31., 2023. 6. 9.>

-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 가. 첨단 농림수산업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 다. 어항(漁港) 건설
 -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전문개정 2014. 3.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후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후략>

V

계정과목 총괄표

계정과목 총괄표는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시 사용할 표준화된 계정과목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대분류, 중분류 및 회계과목은 공시과목으로서 국가회계기준상의 분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계 및 기금 또는 중앙관서에서 임의로 수정·추가할 수 없습니다.

1 계정과목의 이해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시 사용할 표준화된 계정과목이 필요함에 따라 「재무제표 계정과목 총괄표」를 제시하였다.

국가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의 5단계 구조로 구성(Level I, II, III, IV, V)된다.

〈계정과목 체계(예)〉

대분류(I)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자산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대분류(Level I)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기본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의 구분을 말하며, 이는 다시 일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항목으로 나뉜다.

중분류(Level II)는 대분류를 국가회계기준(자산 유형 등)에 따라 구분(예: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등)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과목(Level III)은 재무결산 보고의 기본단위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과목(예: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미수채권 등)이다.

관리과목(Level IV) 및 세부관리과목(Level V)은 회계과목의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회계처리시 사용되는 기표과목이며,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은 향후 필요시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

2 재무회계과목 분류의 이해 및 유의사항

대분류, 중분류 및 회계과목은 공시과목으로서 국가회계기준상의 분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계 및 기금 또는 중앙관서에서 임의로 수정·추가할 수 없다.

- 대분류: 제7조(재정상태표),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 중분류: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 회계과목: 중분류 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에 의한 계정과목분류와 동과목의 평가기준에 의해 파생되는 과목

관리과목 또는 세부관리과목은 기표과목으로서 회계 및 기금의 고유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은 지침 등을 통하여 각 회계 및 기금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표준관리과목 또는 세부관리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과목들을 통합하여 단일 과목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3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
		금융상품	정기예금/단기	
			정기예금/장기	
			정기적금/단기	
			정기적금/장기	
			기타의금융상품/단기	
			기타의금융상품/장기	
		투자증권	지분증권	주식/단기
				주식/장기
				기타지분증권/단기
				기타지분증권/장기
			채무증권	국채/단기
				국채/장기
				공채/단기
				공채/장기
				지방채/단기
				지방채/장기
				회사채/단기
				회사채/장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금융자산	투자증권	국세물납증권	주식/국세물납증권단기
				주식/국세물납증권장기
				기타지분증권/국세물납증권단기
				기타지분증권/국세물납증권장기
				국채/국세물납증권단기
				국채/국세물납증권장기
				공채/국세물납증권단기
				공채/국세물납증권장기
				지방채/국세물납증권단기
				지방채/국세물납증권장기
				회사채/국세물납증권단기
				회사채/국세물납증권장기
		정부출자금	정부출자기업출자금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	
		대여금	일반용자금	일반용자금/단기
				일반용자금/장기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단기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장기
				일반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일반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저리용자금	저리용자금/단기
				저리용자금/장기
				용자보조원가충당금/단기
				용자보조원가충당금/장기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단기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장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단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장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단기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장기
			정부내예탁금/단기	
			정부내예탁금/장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국세	미수국세/단기
				미수국세/장기
				미수국세대손충당금/단기
				미수국세대손충당금/장기
				국세수익조정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장기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사회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단기
				미수사회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장기
			미수부담금수익	미수부담금수익/단기
				미수부담금수익/장기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부담금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단기
				미수부담금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장기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단기
				미수제재금수익/장기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제재금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단기
				미수제재금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장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장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단기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장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연금수익	미수연금수익/단기
				미수연금수익/장기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연금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단기
				미수연금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장기
			미수이자수익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단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장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단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장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단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장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투자증권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가타이자수익/단기
				미수가타이자수익/장기
				미수가타이자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가타이자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험수익	미수보험수익/단기
				미수보험수익/장기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단기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단기
				미수보험수익현재가치할인처금/장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금융자산	미수채권	미수보증수익	미수보증수익/단기	자산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지급보증금	임차보증금-국유/단기
				미수보증수익/장기					임차보증금-국유/장기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단기					임차보증금-채권/단기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장기					임차보증금-채권/장기
				미수보증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임차보증금-일반/단기
				미수보증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임차보증금-일반/장기
			미수기타수익	미수기타수익/단기					전신전화가입권
				미수기타수익/장기					기타지급보증금/단기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단기					기타지급보증금/장기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장기					
				미수기타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신탁사업수익권	
				미수기타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투자회원권	
			기타의미수금	기타의미수금/단기				대지급금/단기	
				기타의미수금/장기				대지급금/장기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단기				기타의기타금융자산/단기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장기				기타의기타금융자산/장기	
				기타의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금융자산	KIC위탁운용자산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파생상품자산/단기				토지사용수익권		
			파생상품자산/장기				건물		
			조달사업회전자금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상채권				건물사용수익권		
				구상채권/단기			구축물		
				구상채권/장기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구상채권대손충당금/단기			구축물사용수익권		
				구상채권대손충당금/장기				전비품및소모성군수품	전비품
				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전비품감가상각누계액
				구상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소모성군수품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기계장치	고정성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고정성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이동성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사용수익권	고정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이동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선풍및항공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전기통신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선풍및항공기감가상각누계액
				운반건설기계및차량감가상각누계액
				전기통신기기감가상각누계액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사무용기기사용수익권
				사무용집기사용수익권
				선풍및항공기사용수익권
				운반건설기계및차량사용수익권
				전기통신기기사용수익권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차관유지자산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차관유지자산감가상각누계액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토지
				건설중인건물
				건설중인구축물
				건설중인준비품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건설중인사무용기기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건설중인선풍및항공기
				건설중인운반건설기계및차량
				건설중인전기통신기기
				건설중인차관유지자산
				건설중인입목
				건설중인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국도	토지	자산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항만	토지
				건물					건물
				건축물					건축물
				기타					기타
			국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항만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국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항만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고속국도	토지				댐	토지
				건물					건물
				건축물					건축물
				기타					기타
			고속국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댐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고속국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댐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철도	토지				공항	토지
				건물					건물
				건축물					건축물
				기타					기타
			철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공항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철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공항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하천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하천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하천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상수도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상수도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상수도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국가어항	토지
				건물
				건축물
				기타
			국가어항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타감가상각누계액
			국가어항사용수익권	토지사용수익권
				건물사용수익권
				건축물사용수익권
				기타사용수익권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민국도/토지
				건설중민국도/건물
				건설중민국도/건축물
				건설중민국도/기타
				건설중인고속국도/토지
				건설중인고속국도/건물
				건설중인고속국도/건축물
				건설중인고속국도/기타
				건설중인철도/토지
				건설중인철도/건물
				건설중인철도/건축물
				건설중인철도/기타
				건설중인항만/토지
				건설중인항만/건물
				건설중인항만/건축물
				건설중인항만/기타
				건설중인댐/토지
				건설중인댐/건물
				건설중인댐/건축물
				건설중인댐/기타
				건설중인공항/토지
				건설중인공항/건물
				건설중인공항/건축물
				건설중인공항/기타
				건설중이하천/토지
				건설중이하천/건물
				건설중이하천/건축물
				건설중이하천/기타
				건설중인상수도/토지
				건설중인상수도/건물
				건설중인상수도/건축물
				건설중인상수도/기타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국가어항/토지	부채	차입부채	국채	국채/단기	
				건설중인국가어항/건물				국채/유동성장기	
				건설중인국가어항/구축물				국채/장기	
				건설중인국가어항/기타				재정증권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국채할인발행차금/단기	
				외부구입소프트웨어				국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국채할인발행차금/장기	
			산업재산권					국채할증발행차금/단기	
			광업권					국채할증발행차금/유동성장기	
			기타무형자산					국채할증발행차금/장기	
	기타자산	재고자산		상품				국채할증발행차금/유동성장기	
				제품				국채할증발행차금/장기	
				재공품				자가국채/단기	
				원재료				자가국채/유동성장기	
				부재료				자가국채/장기	
				미착품					
				축산물					
				기타의저장품					
		저장품				차입금	국내차입금	국내차입금/단기	
		선급비용	선급이자비용/단기					국내차입금/유동성장기	
								국내차입금/장기	
				선급임차료/단기				국내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선급임차료/장기				국내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의선급비용/단기				전대차관/단기	
				기타의선급비용/장기			정부내차입금	전대차관/유동성장기	
		선급금/단기						전대차관/장기	
								정부내예수금/단기	
								정부내예수금/유동성장기	
								정부내예수금/장기	
		선급법인세					해외차입금	해외차입금/단기	
								해외차입금/유동성장기	
								해외차입금/장기	
								해외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부가세대금급						해외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의기타자산/단기							
		기타의기타자산/장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부채	차입부채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국고채무부담행위액/단기	
			국고채무부담행위액/장기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국고채무부담행위액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기타차입부채	공채	공채/단기
				공채/유동성장기
				공채/장기
				공채할인발행차금/단기
				공채할인발행차금/유동성장기
				공채할인발행차금/장기
				공채할증발행차금/단기
				공채할증발행차금/유동성장기
				공채할증발행차금/장기
				자기공채/단기
				자기공채/유동성장기
				자기공채/장기
			미지급금	BTL임대료미지급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금/장기
				BTL임대료미지급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BTL임대료미지급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사회보험미지급금/단기
				사회보험미지급금/장기
				보험미지급금/단기
				보험미지급금/장기
				보증미지급금/단기
				보증미지급금/장기
				연금미지급금/단기
				연금미지급금/장기
				퇴직수당미지급금/단기
				퇴직수당미지급금/장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부채	차입부채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금/단기
				기타의미지급금/장기
				기타의미지급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지급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비용/단기
				미지급이자비용/장기
				미지급법인세
				기타의미지급비용/단기
				기타의미지급비용/장기
				기타의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단기
				기타의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
			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부가세예수금
				임대보증금/단기
				임대보증금/장기
				기타의예수금/단기
				기타의예수금/유동성장기
				기타의예수금/장기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단기
				파생상품부채/장기
			금융리스부채/유동성장기	
			금융리스부채/장기	
			기타의기타차입부채/단기	
			기타의기타차입부채 /유동성장기	
			기타의기타차입부채/장기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부채	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군인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공무원퇴직수당충당부채		
			군인퇴직수당충당부채		
		보충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기타의기타충당부채			
	기타부채	사회보험부채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채권보장부채		
		선수수익	선수이자수익/단기		
			선수이자수익/장기		
			선수국채수익/단기		
			기타의선수수익/단기		
			선수국채수익/장기		
기타의선수수익/장기					
선수금					
기타의기타부채/단기					
기타의기타부채/유동성장기					
기타의기타부채/장기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수익	국세수익	국세수익		
		미수국세대손상각비		
		미수국세대손충당금환입		
	이전수익	사회보험수익	국민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사학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보험수익	국가기여금	국가기여금
				피고용자기여금
			고용보험수익	고용주부담금
				고용보험수익환급금
		산재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주부담금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환급금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환급금
		제재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과태료수익
				과태료수익환급금
				과징금수익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가금수익	징계부가금수익
				징계부가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환급금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수익	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정부외기부금
				정부외자산수증
				사용수익관상각이익
				정부내자산수증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
				재화판매수익환급금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
				용역제공수익환급금
			기타재화및용역제공수익	사용료수익
				사용료수익환급금
				수수료수익
				수수료수익환급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환급금
	연금수익 (공무원·군인)	공무원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군인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수익	국가운영수익	이자수익	금융상품이자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
				정기적금이자수익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투자증권이자수익	국채이자수익
				공채이자수익
				지방채이자수익
				회사채이자수익
			대여금이자수익	일반용자금이자수익
				저리용자금이자수익
				정부외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배당수익	정부출자기업출자금 배당수익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 배당수익	
			지분증권배당수익	
			국세물납증권배당수익	
			기타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투자증권처분이익	
			KC위탁자산처분이익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무형자산처분이익	
			기타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자산재평가손실환입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자산평가이익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환입
			기타자산평가이익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일반용자금대손충당금환입	수익	국가운영수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부채환입	사회보험부채환입
				전대차관대여금대손충당금환입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
				구상채권대손충당금환입					기타의기타부채환입
				미수재화및용역수익대손충당금환입				기타평가이익	외화부채평가이익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기타부채평가이익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보증수익	보증수익
				미수연금수익대손충당금환입					보증수익환급금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환입				보험수익	보험수익
				미수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보험수익환급금
				미수보증수익대손충당금환입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충당금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환입					과오지급금회수금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환입					자출금반납금
			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기타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감액손실환입	금융상품감액손실환입					구상이익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국채물가연동이익
				정부출자금감액손실환입					신탁사업이익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환입					채무상환이익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보험차익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환입					외환차익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법인세환급금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잡이익
			충당부채환입	보증충당부채환입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공공기관
				보험충당부채환입					국고보조사업비/지역단체
				소송충당부채환입					국고보조사업비/민간
				기타충당부채환입					국고보조사업비/해외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이전비용	출연사업비	일반사업출연비	일반사업출연비/공공기관
				일반사업출연비/민간
				일반사업출연비/해외
			연구개발출연비	연구개발출연비/공공기관
				연구개발출연비/민간
				연구개발출연비/해외
		사회보험비용		신재보험비용
				고용보험비용
				국민연금비용
				사학연금비용
		지방교부금		사학퇴직수당비용
				지방재정교부금
		기타이전비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융자보조비용
			보전비	손실보상비
				재해복구지원비
				포상금
				배상비
			사회보장지원금	기타보전비
				보호유공자지원금
				장학금및학자금
				기타사회보장지원금
			원가보상비	공공기관원가보상비
				기타민간원가보상비
			사업학교교육부담금보조비	사업학교교직원건강보험보조비
				사업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건강보험재정부담비
				구호및교정비
				국제부담금
				이차보전비용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정부외자산기부	
			정부내자산기부	
			정부내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국유영양비용	재화및용역제공원가	기타의기타이전비용	
			재화판매원가	
		연금비용 (공무원·군인)	용역제공원가	
			공무원연금비용	
			군인연금비용	
			퇴직수당비용	공무원퇴직수당비용
			기타연금비용	군인퇴직수당비용
				공무원기타연금비용
		인건비	급여	군인기타연금비용
				정책급여
				상여금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보수
				연가보상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국가운영비용	이자비용	국채이자비용	
			공채이자비용	
			차입금이자비용	국내차입금이자비용
				해외차입금이자비용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재정증권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청약저축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BTI임대료이자비용
				기타의기타이자비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공공요금및제세	제세
				수도광열비
				지급보험료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지급임차료	토지임차료
				건물임차료
				운용리스료
				기타자산임차료
			유류비	
			교육훈련비	내부교육비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국가운영비용	운영비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학교운영비	국외여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피복비
				급식비
				기타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국민연금부담비
				사회연금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감가상각비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건물감가상각비
				구축물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감가상각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전비품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국도감가상각비
				고속국도감가상각비
				철도감가상각비
				항만감가상각비
				댐감가상각비
				공항감가상각비
				하천감가상각비
				상수도감가상각비
				국가여항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국가운영비용	자산평가손실	자산재평가손실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외화자산평가손실	
			기타자산평가손실	
		기타국가운영비용	자산처분손실	투자증권처분손실 KIC위탁자산처분손실 기타금융자산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무형자산처분손실 기타자산처분손실
				건물수선유지비
				건축물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전비품수선유지비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국도수선유지비
				고속국도수선유지비
				철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항만수선유지비 댐수선유지비 공항수선유지비 하천수선유지비 상수도수선유지비 국가어항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자산평가손실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	대손상각비	전대차관대여금대손상각비 일반융자금대손상각비 구상채권대손상각비 미수재화및용역수익대손상각비 미수제재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부담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연금수익대손상각비 미수이자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보증수익대손상각비 미수사회보험수익대손상각비 미수기타수익대손상각비 기타의미수금대손상각비
				금융상품감액손실
				투자증권감액손실
				정부출자금감액손실
				기타금융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무형자산감액손실
				기타자산감액손실
			보험비용	보험비용
				보험책임준비금전입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
			보증비용	보증충당부채전입
				보증보조비용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순자산변동	기초순자산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변경누적효과	회계변경누적이익	
			회계변경누적손실	
		정부조작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감	정부조작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증가	
			정부조작개편등에 따른순자산의감소	
	재원의조달	국고수입		
		국고이전수입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환급금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
				변상금수익환급금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
				위약금수익환급금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
				가산금수익환급금
		제재금수익	벌금수익	벌금및과료수익
				벌금및과료수익환급금
				과태료수익
				과태료수익환급금
				과징금수익
				과징금수익환급금
				징계부기금수익
				징계부기금수익환급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몰수금및추징금수익환급금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순자산변동	재원의조달	기타이전수익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가부금
				사용수익권상각이익
			정부내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국고금회계전입금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이전수익환급금
	재원의이전	국고이전지출		
		세출예산지출액		
		기타이전비용	정부내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기타의기타이전비용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순자산변동	조정항목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증권평가이익	
			투자증권평가손실	
		자산재평가이익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연금보험수리적손익	공무원연금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연금보험수리적손실
				군인연금보험수리적이익
				군인연금보험수리적손실
			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익	공무원퇴직수당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실
				군인퇴직수당보험수리적이익
				군인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실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증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증가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감소	
		기타순자산의증감	납입자본의증감	납입자본의증가
				납입자본의감소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출연금의증감	출연금의증가
				출연금의감소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감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기타의기타순자산의감소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징수	국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	
			소득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소득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소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	
			법인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법인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법인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부당이득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	
			부당이득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부당이득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부당이득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	
			상속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상속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상속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	
			증여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증여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증여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재평가세수익	재평가세수익	
			재평가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재평가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재평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징수	국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	
			부가가치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부가가치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부가가치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주세수익	주세수익	
			주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주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주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전화세수익	전화세수익	
			전화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전화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전화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	
			증권거래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증권거래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증권거래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	
			인지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인지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인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관세수익	관세수익	
			관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관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관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징수	국세수익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	
			방위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방위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방위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	
			교육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교육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교육세수익대손충당금환입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농어촌특별세수익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농어촌특별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	
			종합부동산세수익 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종합부동산세수익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종합부동산세수익대손충 당금환입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징수	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기타내국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기타내국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토지초과이득세수익	토지초과이득세수익	
			토지초과이득세수익 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토지초과이득세수익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토지초과이득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지방교육양여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	
			지방교육양여세수익 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지방교육양여세수익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지방교육양여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국세환급금	
		대손상각비	개별소비세수익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	개별소비세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국세징수	처분	국고이전지출	총현금수입	소득세수입
				법인세수입
				부당이득세수입
				상속세수입
				증여세수입
				재평가세수입
				부가가치세수입
				주세수입
				전환세수입
				증권거래세수입
				인지세수입
				관세수입
				방위세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
				교육세수입
				농어촌특별세수입
				종합부동산세수입
				기타내국세수입
				토지초과이득세수입
				지방교육양여세수입
				개별소비세수입
		타회계이전	국세환급금	
			농특세이전지출	
			주세이전지출	
		타회계이전	기타타회계이전	
		마수국세의증감		
		대손충당금의증감		
		물납이전		

국가회계편람

인 쇄 : 2025년 1월

발 행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편 집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 화 : 044-215-5439, 044-414-2561

팩 스 : 044-215-8121, 044-414-2570

인 쇄 : (주)삼일기획 044-866-3011

본 국가회계편람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사이트
(<https://gafsc.kipf.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